

2013 國民年金財政計算

國民年金 長期財政推計，

國民年金 制度 및 基金運用 改善方向

2013. 10

國民年金財政推計委員會
國民年金制度發展委員會
國民年金基金運用發展委員會

〈목 차〉

2013 國民年金財政計算

報告書 1. 國民年金 長期財政推計

報告書 2. 國民年金 制度改善方向

報告書 3. 國民年金 基金運用改善方向

2013 國民年金財政計算

國民年金 長期財政推計

2013. 10

國民年金財政推計委員會

머 리 말

1997년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을 포함한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제1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제2차 재정계산에 이어 2013년도에 제3차 재정계산을 수행하였다. 제3차 재정계산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를 비롯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 운용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재정추계위원회가 담당하였던 재정추계에 관한 보고서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2012년 6월에 발족하여 2013년 3월까지 총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재정추계결과는 3개 위원회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최종적인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단체의 추천 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대표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영역에 따라 재정추계모형 및 기초율, 인구전망, 거시경제변수 전망, 재정목표 및 재정평가 지표 등 재정전망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각 과제는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제3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전망은 2060년까지 국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가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제반 가정들을 검토하여 국민연금에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논의가 수반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망은 이삼식 위원, 거시경제변수 전망은 신석하 위원과 김진일 위원, 노동변수의 검토는 금재호 위원, 재정추계모형 및 기초율은 전병목 위원, 제도변수의 가정 설정은 이덕만 위원과 오건호 위원, 기금운용 수익률의 전망은 양준모 위원, 민감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은 이항석 위원, 재정목표 및 재정평가는 성주호 위원, 연금부채는 신화연 위원께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 주셨으며, 특히, 박유성 위원께서는 인구 및 재정추계 모형 등 여러 분야에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다. 바쁘신 중에도 짧은 시간 안에 각 연구 과제를 수행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또한 위원회의 참석하여 노동변수의 전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신 한국개발원의 황수경 박사님과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관한 발표를 해주신 통계청과 통계개발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재정계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김성숙 원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계산지원단을 구성하고 행정적 업무의 진행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논의를 위하여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과 논의를 위한 자료의 작성 및 여러 가지 추계작업의 수행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분석실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재정추계분석실의 박성민 실장이 재정추계위원회의 간사로서 활동하였고, 신경혜 연구위원의 주도하에 한정림 전문연구원, 신승희 전문연구원 및 김형수 전문연구원의 노고로 위원회에서 검토할 기초자료 및 추계자료의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기간 내에 최종적인 추계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위원으로써 매회 회의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류근혁 과장 및 김영호 서기관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완섭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재정추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정계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70년 이상의 초장기적인 전망을 수행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는 연금제도와 관련한 제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추계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전망을 필요로 하며 또한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따라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추계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수행된 재정추계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참석한 모든 위원들의 지혜를 모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망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정적인 상황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재정추계를 위한 모든 논의는 재정추계위원들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집대성한 것이며 여기에 논의의 투명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재정추계결과가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과 발전 및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모든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김용하

< 목 차 >

요 약	1
제1장 추진경과	13
1.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도입배경 및 추진근거	15
2. 제1·2차 재정계산 추진 개요	16
3. 추진여건과 기본방향	17
4. 추진체계	19
5. 추진경과	21
제2장 재정추계의 여건변화	23
1. 인구 및 경제여건의 변화	25
2. 제도여건의 변화	28
제3장 추계방법	31
1. 추계모형	33
2. 추계방법	34
제4장 주요가정	43
1. 인구변수 가정	45
2. 경제변수 가정	50
3. 제도변수 가정	55
제5장 추계결과	59
1. 추계기간	61
2. 인구구조	61
3. 재정추계결과	67
제6장 민감도분석(Sensitivity Test)	73
1. 민감도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75

2. 민감도분석 결과	83
제7장 재정평가	89
1. 재정평가 방법 및 기준	91
2.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93
부록	97
부록1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99
부록2 : 제2차 재정계산과의 비교	127
부록3 : 민감도분석의 재정수지표	133
부록4 : 재정평가관련 재정수지표	149
부록5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	152
부록6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구성	161
부록7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일지	162

< 표 차례 >

<요약 표 1> 재정수지전망	5
<요약 표 2>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6
<요약 표 3> 민감도분석 결과	9
<요약 표 4>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11
<표 1> 추계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25
<표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26
<표 3> 국민연금 가입종별 변화 추이	28
<표 4> 국민연금 급여 관련 주요 법 개정 내용	29
<표 5> 합계출산율 가정	47
<표 6> 기대수명 가정	48
<표 7> 국제순이동률 가정	49
<표 8> 경제변수 가정	52
<표 9>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52
<표 10> 경제활동참가율 가정(남자)	54
<표 11> 경제활동참가율 가정(여자)	54
<표 12>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55
<표 13>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56
<표 14>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56
<표 15> 징수율 가정	57
<표 16>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의 비율	57
<표 17>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58
<표 18> 관리운영비와 국고부담 비율에 대한 가정	58
<표 19>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62
<표 20>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64
<표 21>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66
<표 22> 재정수지전망	68
<표 23>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69
<표 24>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1

<표 25> 조합시나리오의 구분	78
<표 26> 인구추계의 출산율(합계출산율) 변화가정	79
<표 27> 인구추계의 사망률(기대수명) 변화가정	79
<표 28> 인구추계의 국제이동력(순국제이동률) 변화가정	79
<표 29>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실질)	80
<표 30>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명목)	81
<표 31> 경제활동참가율 조정 가정	82
<표 32> 민감도분석 결과	87
<표 33>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94
<표 34> 적립배율 및 적립기금 추이	95
<부록 표 1-1> 재정추계모형 모듈(실행순서별)	100
<부록 표 1-2> 경제활동참가율	104
<부록 표 1-3> 가입률	105
<부록 표 1-4> 성별·연령별 가입률(2011년 말 현재)	105
<부록 표 1-5> 성별·연령별 지역가입률	105
<부록 표 1-6> 가입자의 이동률	111
<부록 표 1-7>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111
<부록 표 1-8> 성별·연령별 소득지수	114
<부록 표 1-9>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징수율지수	115
<부록 표 1-10>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	115
<부록 표 1-11> 재직수급률	121
<부록 표 1-12> 조기노령연금수급률	122
<부록 표 1-13> 장애발생률(남자)	123
<부록 표 1-14> 장애발생률(여자)	123
<부록 표 1-15> 연령계층별 유유족률	124
<부록 표 2-1> 출산율 및 기대수명 비교	127
<부록 표 2-2> 경제변수 가정 비교	127
<부록 표 2-3> 제도변수 가정 비교	128
<부록 표 2-4> 추계결과 비교	129
<부록 표 2-5> 요인별 추계결과 비교	132

<부록 표 3-1> 표 번호	133
<부록 표 3-2> 재정수지표 : 기본가정	134
<부록 표 3-3>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저위중립)	134
<부록 표 3-4>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중위비관)	135
<부록 표 3-5>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중위낙관)	135
<부록 표 3-6>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고위중립)	136
<부록 표 3-7>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 (저위중립)	136
<부록 표 3-8>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 (중위중립)	137
<부록 표 3-9>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 (고위중립)	137
<부록 표 3-10>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대안1)	138
<부록 표 3-11>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대안2)	138
<부록 표 3-12>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대안3)	139
<부록 표 3-13>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0.5%pt	139
<부록 표 3-14>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0.5%pt	140
<부록 표 3-15>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1.0%pt	140
<부록 표 3-16>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1.0%pt	141
<부록 표 3-17> 재정수지표 : 임금상승률, 기본가정+0.5%pt	141
<부록 표 3-18> 재정수지표 : 임금상승률, 기본가정-0.5%pt	142
<부록 표 3-19>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1.0%pt	142
<부록 표 3-20>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1.0%pt	143
<부록 표 3-21>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5.0%pt	143
<부록 표 3-22>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5.0%pt	144
<부록 표 3-23>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 +0.5%pt	144

<부록 표 3-24>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 -0.5%pt	145
<부록 표 3-25>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0.5%pt	145
<부록 표 3-26>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0.5%pt	146
<부록 표 3-27> 재정수지표 :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기본가정 +0.5%pt	146
<부록 표 3-28> 재정수지표 :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기본가정 -0.5%pt	147
<부록 표 3-29> 재정수지표 :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기본가정 x 0.5배	147
<부록 표 3-30> 재정수지표 :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기본가정 x 2배	148
<부록 표 4-1> 표 번호	149
<부록 표 4-2> 재정수지표 : 적립배율 2배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12.91%	149
<부록 표 4-3> 재정수지표 : 적립배율 5배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13.48%	150
<부록 표 4-4> 재정수지표 : 수지적자 미발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료율 14.11%	150
<부록 표 4-5> 재정수지표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15.85%	151
<부록 표 7-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	162

< 그림 차례 >

[요약 그림 1] 재정수지전망	5
[요약 그림 2]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
[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34
[그림 2] 인구 수 및 노인부양비	63
[그림 3] 가입자수, 수급자수 및 제도부양비	65
[그림 4]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66
[그림 5] 재정수지전망	68
[그림 6]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70
[그림 7]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71
[그림 8] 재정목표에 따른 적립배율 추이	95
[그림 9] 재정목표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96
[부록 그림 1-1] 인구추계 흐름도	101
[부록 그림 1-2]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103
[부록 그림 1-3] 가입자의 연간이동형태	107
[부록 그림 1-4] 사업장가입자의 이동률(남자)	108
[부록 그림 1-5] 사업장가입자의 이동률(여자)	108
[부록 그림 1-6] 지역가입자의 이동률(남자)	109
[부록 그림 1-7] 지역가입자의 이동률(여자)	109
[부록 그림 1-8] 대기자의 이동률(남자)	110
[부록 그림 1-9] 대기자의 이동률(여자)	110
[부록 그림 1-10]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 흐름도	120
[부록 그림 2-1] 적립기금 추이 비교	129

요약

1. 추진경과

■ 제3차 재정계산

- 금번 재정계산은 제3차 재정계산으로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

■ 제3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재정계산지원단 설치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 동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재정계산에 필요한 재정추계모형의 검토, 주요 변수의 가정설정, 재정수지전망 등의 역할 수행
- '12년 6월 5일 발족하여 '13년 3월 말 기준으로 재정추계위원회 회의 16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의 공동 Workshop 1회 개최

2.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

-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을 포함한 주요 재정분야의 장기적인 종합전망을 추진 중이며, 장기재정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기본적으로 고려
- 이에 3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계산 프로세스의 객관화와 분야 간 동일한 기준에서의 재정전망 비교를 위해 2060년까지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인구 중위가정 및 거시경제변수 중위전망을 적용하며, 2060년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가정을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
- 인구 가정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중위가정(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가용한 추계가 2060년까지이므로 그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정
 - 2060년 이후 출산율과 국제이동 가정은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60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60년 이후 사망률 가정은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2083년¹⁾에 남자 88.1세, 여자 92.0세로 가정
- 경제변수 가정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가용한 추계가 2060년까지이므로 그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정

1)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70년'인 2083년까지 추계함

- 인구가정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와 부합하는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를 전망한 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과 결합하여 명목임금상승률 및 명목금리의 전망치를 도출함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41~2050년 1.4%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2.7%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한 후 2.0%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실질금리는 2011~2020년 2.6%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11~2020년 3.2%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40년 경에 2.0% 수준에 도달한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3년 만기 회사채(AA-) 수익률의 1.1배 수준으로 가정
- 제도변수 가정
-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재 87.4%(2011년 기준)에서 점차 높아져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가입자 비율은 현재 44.1%(2011년 기준)에서 장기적으로 2050년에 30%까지 감소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은 현재 56.5%(2011년 기준)에서 점차 낮아져 30%(2050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현재 66.6%(2011년 기준)에서 점차 높아져 80%(2050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현재 53.4%(2011년 기준)에서 점차 높아져 70%(2050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3. 재정추계결과

■ 재정추이

- 국민연금은 초기에 부과방식비용률²⁾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 옴으로써 지금까지 상당한 적립기금이 축적되어 왔음
 - 부과방식비용률 보다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으나, 완전적립에 필요한 보험료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 부분적립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앞으로 20~30년간은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3년에 최고 2,561조원(1,084조원, 2010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2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이 달라졌으나, 각 변수들 간의 변동효과가 상쇄되어 2차 재정계산(기본가정)의 수지적자 발생시점(2044년) 및 기금소진 시점(2060년)은 동일하게 전망됨
 - 2008년 2차 재정계산 시 기본가정에서는 2044년에 최초로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 대안가정에서는 2047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4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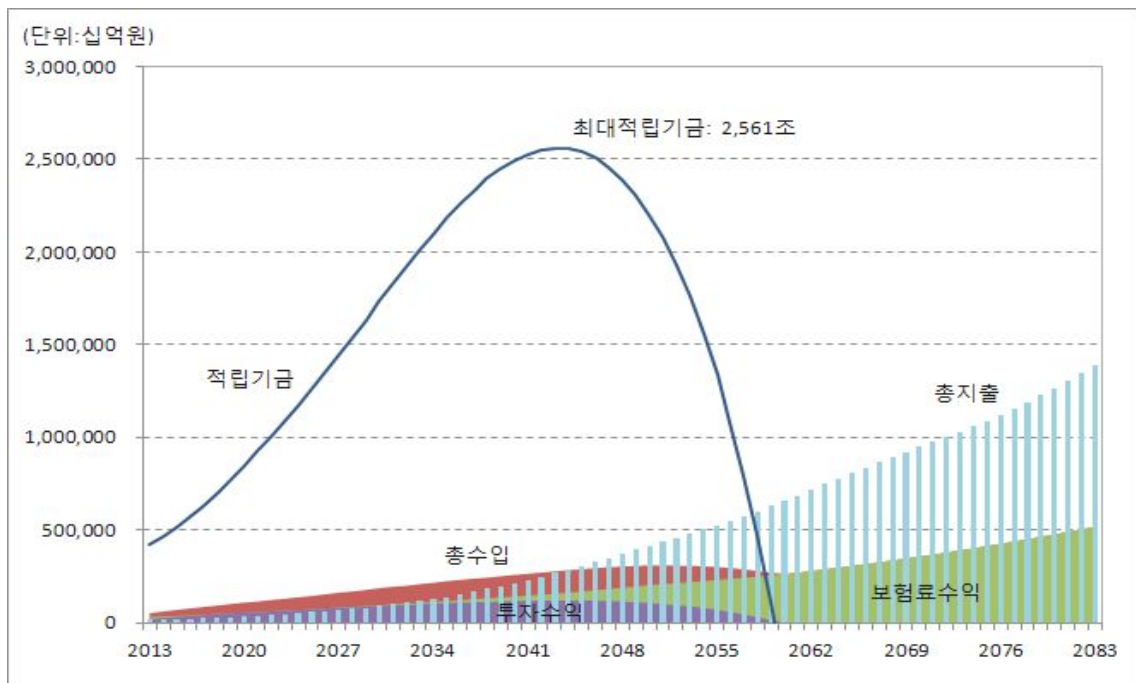
2)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요약 표 1>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요약 그림 1] 재정수지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 GDP 대비 적립기금은 2013년 31.1%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5년에 49.4%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 GDP 대비 급여지출은 2013년 1.0%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8% 수준에 접근

■ 수지구조

○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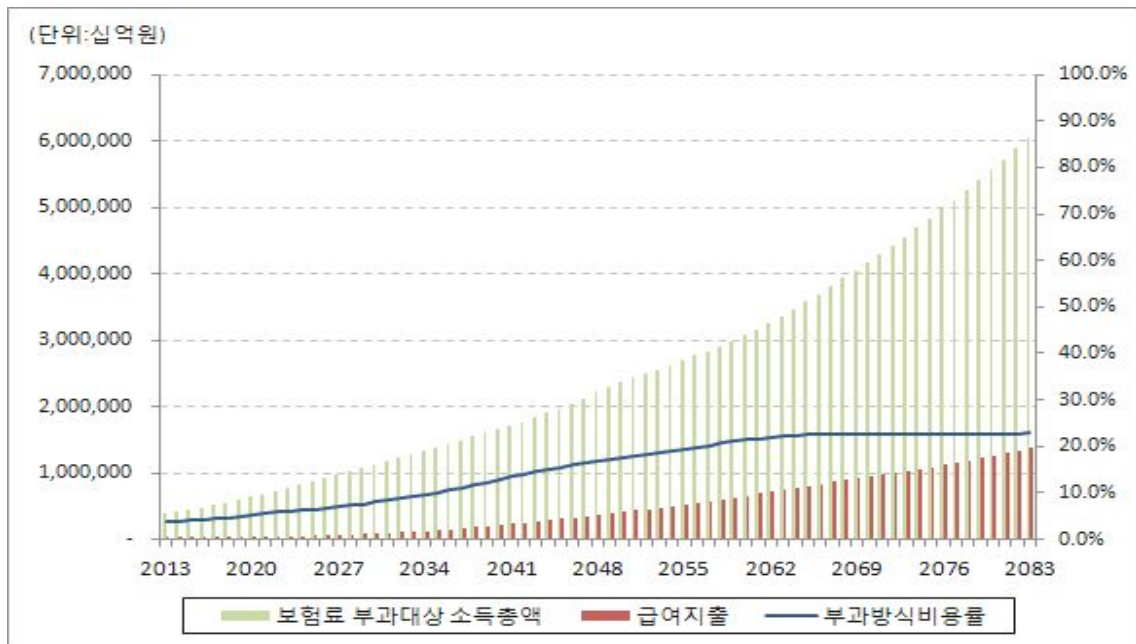
- 부과방식비용률은 2013년 3.7%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23% 수준을 나타냄

<요약 표 2>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단위 : 십억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 (가)	급여지출 (나)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GDP (다)	GDP대비 보험료부과 대상소득총액 (가)/(다)
2013	380,460	14,032	3.7	1,344,421	28.3
2014	409,216	15,490	3.8	1,430,072	28.6
2015	442,113	17,849	4.0	1,531,088	28.9
2020	637,961	33,487	5.2	2,155,210	29.6
2025	862,903	55,735	6.5	2,859,011	30.2
2030	1,118,105	89,176	8.0	3,624,205	30.9
2035	1,375,840	137,826	10.0	4,422,196	31.1
2040	1,658,895	212,563	12.8	5,257,143	31.6
2045	1,973,358	305,324	15.5	6,182,966	31.9
2050	2,368,033	412,288	17.4	7,215,394	32.8
2055	2,691,275	523,193	19.4	8,361,023	32.2
2060	3,067,613	655,155	21.4	9,583,907	32.0
2065	3,578,296	803,692	22.5	10,883,472	32.9
2070	4,171,889	944,311	22.6	12,326,434	33.8
2075	4,830,159	1,084,768	22.5	14,061,039	34.4
2080	5,568,678	1,257,811	22.6	16,135,257	34.5
2083	6,046,878	1,381,971	22.9	17,512,741	34.5

[요약 그림 2]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4. 민감도분석

-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연도, 기금소진연도, 부과방식비용률의 차이를 분석
 - 조합시나리오 : 인구변수와 경제변수를 함께 변화시킴
 - 개별시나리오 : 주요변수에 대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다른 변수는 기본가정을 사용
- 조합시나리오
 - 시나리오별로 수지적자 발생연도, 기금소진연도, 부과방식비용률에 차이 발생
- 개별시나리오
 - 기금투자수익률의 변화는 수지적자 발생연도, 기금소진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부과방식비용률과는 무관

- 임금상승률의 변화는 기금소진연도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다소 영향을 미침
-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가입자 규모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기금소진연도 및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침
- 납부예외자 비율,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한 재정민감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의 변화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며, 기금소진연도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침

<요약 표 3> 민감도분석 결과

시나리오		현행제도 유지 시		부과방식비용률			
		수지적자	기금소진	2050년	2070년	2083년	
기본가정		2044년	2060년	17.4%	22.6%	22.9%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저위중립	2043년	2058년	18.4%	28.8%	31.5%
		중위비관	2043년	2059년	18.3%	23.9%	24.2%
		중위낙관	2046년	2061년	16.6%	21.4%	21.5%
		고위중립	2046년	2062년	16.3%	19.1%	18.6%
	재정추계위원회	저위중립	2043년	2058년	18.5%	29.0%	31.7%
		중위중립	2044년	2060년	17.5%	22.8%	23.0%
		고위중립	2046년	2062년	16.3%	19.2%	18.7%
		대안1	2045년	2061년	16.6%	19.5%	18.5%
		대안2	2045년	2061년	16.5%	17.3%	15.0%
		대안3	2044년	2060년	17.2%	19.5%	16.8%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 + 0.5%pt	2047년	2063년	17.4%	22.6%	22.9%
		기본가정 - 0.5%pt	2042년	2057년	17.4%	22.6%	22.9%
		기본가정 + 1.0%pt	2051년	2068년	17.4%	22.6%	22.9%
		기본가정 - 1.0%pt	2040년	2055년	17.4%	22.6%	22.9%
임금상승률	기본가정 + 0.5%pt	2045년	2060년	16.4%	21.1%	21.3%	
	기본가정 - 0.5%pt	2044년	2060년	18.5%	24.3%	24.6%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 + 1.0%pt	2045년	2060년	17.4%	22.7%	22.9%	
	기본가정 - 1.0%pt	2044년	2060년	17.5%	22.6%	22.8%	
	기본가정 + 5.0%pt	2045년	2061년	17.2%	22.8%	23.0%	
	기본가정 - 5.0%pt	2043년	2059년	17.7%	22.5%	22.8%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비율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6%	22.8%	23.0%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5년	2060년	17.2%	22.5%	22.7%	
지역가입자징수율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5%	22.8%	23.0%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4%	22.5%	22.7%	
지역가입자소득수준(사업장 대비)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3%	22.6%	22.8%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5%	22.7%	22.9%	
조기노령연금수급률	기본가정 × 0.5배	2044년	2060년	17.6%	23.1%	23.3%	
	기본가정 × 2배	2045년	2060년	17.0%	22.0%	22.3%	

5. 재정평가

■ 재정평가 방법 및 기준

- 국민연금의 재정평가는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를 추계함으로써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줌
- 재정추계결과에 의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 현행 보험료율로는 추계기간 동안인 향후 70년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계됨
 - 부과방식비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83년에 23% 수준으로 현재 보험료율 9%와 큰 차이를 보임
- 재정평가는 '재정평가기간',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적립기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의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
 - 첫째, 재정평가기간은 재정추계기간과 동일하게 향후 70년으로 설정,
 - 둘째,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³⁾을 기준으로 설정,
 - 셋째,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정함
-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에 대한 복수의 기준을 설정
 -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안정의 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바 복수의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3) 적립배율은 해당년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기금 비율임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

○ 기금적립 목표에 대한 4가지 기준

-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상태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적립기금에 대한 4가지 목표를 적용하여,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계함

○ 보험료율 추정결과

- 적립배율 2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12.91%로 추정되었고,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15.85%로 추정됨

<요약 표 4>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제1장 추진경과

제1장 추진경과

1.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도입배경 및 추진근거

가. 도입 배경

-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의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의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 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

나. 추진 근거

- 국민연금법(제4조)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 *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2차 재정계산 추진 개요

가. 제1차 재정계산(2003년)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설치 ('02.3.19)
 -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분석전문위원회(15인) 및 제도발전전문위원회(19인)를 설치·운영
 - 재정분석전문위원회와 제도발전전문위원회에서 각각 재정추계 수행 및 제도개선방안 모색
- (재정추계 결과) 당시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 유지 시 기금 최대 2035년 1,715조, 2036년에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 기금 소진
- (제도개선 방안) 재정안정화방안, 급여제도개선방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제시

나. 제2차 재정계산(2008년)

- (추진체계)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중심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16인)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16인)를 구성·운영
 - 재정추계위원회는 재정추계를 수행하고 운영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각각 소위원회 구성·운영
 - 재정추계('07.6~'08.3)와 운영개선('07.9~'08.8)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재정추계 결과) 인구변수 중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라 기본가정(통계청 중위가정)과 대안가정(정부출산율 목표)의 2가지로 추계

- 기본가정 : 기금최대 2043년 2,465조원, 수지적자 발생 2044년, 기금 소진 2060년
- 대안가정 : 기금최대 2046년 2,670조원, 수지적자 발생 2047년, 기금 소진 2064년
 - * 기본가정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06)의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2050년까지는 통계청의 가정을, 그 이후는 합계출산율이 2050년 수준인 1.28명이 지속된다고 가정
 - * 대안가정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의 정부목표 수준으로서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에서 2015년에 1.60명으로 상승하고, 그 이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 (제도개선 방안)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 재정안정화는 제3차 재정계산 시 검토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신뢰제고 방안 등을 제시

3. 추진여건과 기본방향

가. 추진여건

- 제1차 재정계산(2003년) 결과에 기초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07.7월에 국회 통과
 - * 급여수준 하향 조정(60→40%)
- 국민연금법 개정 직후 이뤄진 제2차 재정계산(2008년)은 재정추계(장기재정전망 및 분석)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기금 운용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시행
- 제3차 재정계산은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하고 기금의 거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기금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나. 추진 기본방향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와 제도 개선방안 논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객관성 제고
- 위원회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3개로 구성·운영
 - * 지난 제1·2차 재정계산과 달리 기금운용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 개선방안 도출

■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재정추계 실시('12.6~'13.3)
 -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거시경제 전망, 추계모형에 대한 검증, 추계결과 도출 등
- 제도개선 논의 및 종합운영계획(안) 마련('12.10~'13.9)
 -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자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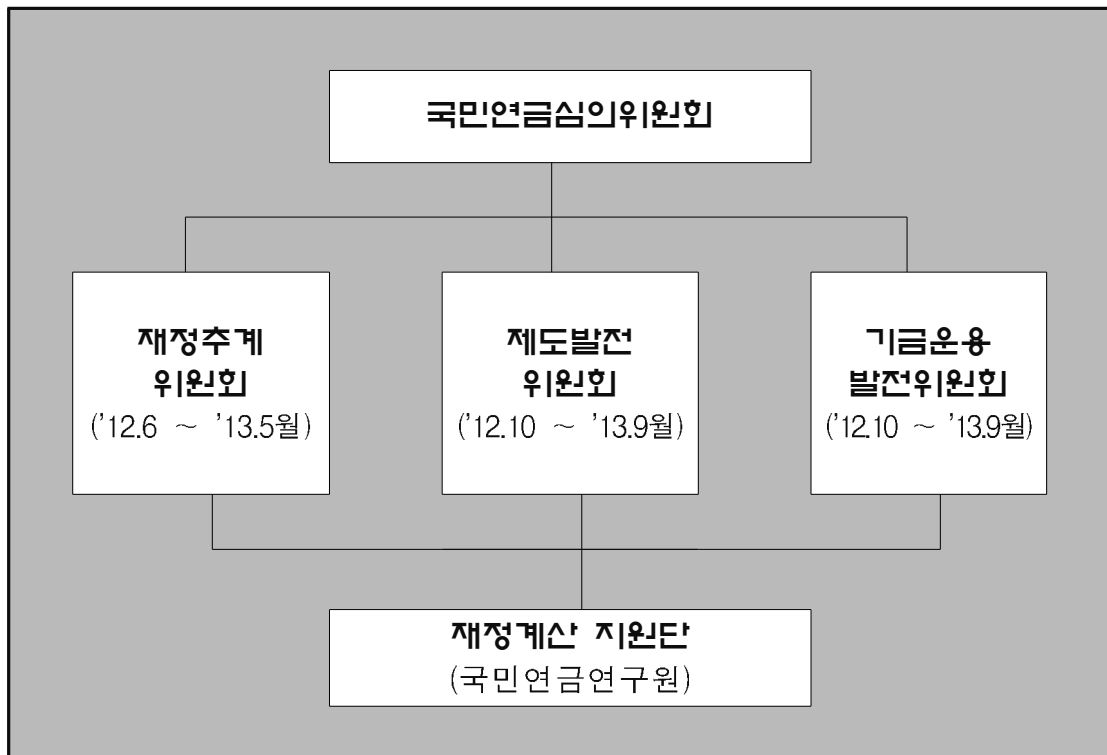
■ 정부 공통 변수 활용

-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재정계산 프로세스의 객관화와 정부차원의 공통기준(인구, 거시경제변수 등) 적용
 - * 정부차원의 통합된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구성·운영 중(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및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8조)

4. 추진체계

-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자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재정계산지원단 설치

■ 구성도



■ 추진기구별 역할 및 구성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기능 :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보고·심의(법 제5조 제1항)

※ 보고 : 재정계산 시행 계획,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12.6)

※ 심의 :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13.8)

② 재정추계위원회

○ 기능

- 재정추계의 총괄·조정
- 재정계산 기본 틀 검토 및 설정
- 재정건전성 기준, 재정추계기간 설정
-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거시경제 가정 설정, 추계모형 및 기초율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주요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및 민감도분석
- 기타 재정추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계산 관련 위원회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구성시점	2012.6월	2012.10월	2012.10월
운영기간	~ 2013.5월 (12개월)	~ 2013.9월 (12개월)	~ 2013.9월 (12개월)
위원수	김용하 위원장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포함 15인	문형표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포함 15인	김경수 위원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포함 15인
위원구성	· 정부: 2인(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정부: 2인(복지부, 기재부) · 민간 전문가	· 정부: 3인(복지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 민간 전문가
논의사항	· 가정변수 검토 · 추계모형 검증 · 재정목표 · 재정평가기준 · 시나리오 설정 및 민감도 분석	· 재정안정화 방안 · 다층소득보장체계 · 급여체계 개선 · 사각지대 해소방안 · 기타 제도 내실화	· 기금운용목표·운용전략 · 해외투자체계 개선 · 장기 리스크관리체계 마련 · 장기전략에 부응하는 조직·인프라 구축 방안

③ 재정계산지원단

- 기능 :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운영 및 전체 재정계산 수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적으로 지원
 -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계산지원단을 설치·운영(단장: 연구원장)

5. 추진경과

- 「재정추계위원회」는 '12년 6월 5일 발족하여 '13년 3월 말 기준으로 재정추계위원회 회의 16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의 공동 Workshop 1회 개최
- 재정추계위원회는 다음의 약 10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재정추계가 시행되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실시
 - 「재정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제
 -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추계 가정 및 결과 검토
 -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가정 검토
 - 재정추계의 거시 가정 : 다른 성장률 전망들과의 비교와 변수들 간의 타당성에 관한 분석
 -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재정추계 방법 및 모형
 - 제도관련 변수의 가정 설정
 -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에 관한 연구
 - 재정평가기준의 설정
 - 민감도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미국 사회보장청 연차보고서 심층검토

■ 재정추계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은 '13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동년 5월 「재정추계 보고서」 작성 완료 및 「재정추계위원회」 활동 종료

제2장 재정추계의 여건변화

제2장 재정추계의 여건변화

1. 인구 및 경제여건의 변화

■ 인구변화

○ 장래인구구조의 고령화

-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최근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계속된 저출산 현상 및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근로세대 인구는 급격히 감소

<표 1> 추계연도별 인구구조의 변화

구 분	1996년 인구추계	2001년 인구추계	2006년 인구추계	2011년 인구추계
○ 총인구 (천명)	2000년	47,275천명	47,008천명	47,008천명
	정점	52,776천명(28년)	50,683천명(23년)	49,340천명(18년)
	2030년	52,744천명	50,296천명	48,635천명
	2070년 ¹⁾	42,457천명	34,961천명	31,446천명
○ 65세 이상 구성비	7%	2000년	2000년	2000년
	14%	2022년	2019년	2018년
	20%	2032년	2026년	2026년
○ 최종 합계출산율(명)	1.80 (2015년~)	1.40 (2035년~)	1.28 (2030년~)	1.42 (2045년~)
○ 기대수명(세)	2030년 남	75.4	78.4	79.8
	여	82.5	84.8	86.3
○ 국제이동	매년 +30천명	성 및 연령별 이동률 일정 (+21천 ~+8천명)	2005년 -81천명 ~ 2050년 -16천명	2010년 +82천명 ~ 2060년 +23천명

주 : 1) 통계청 인구추계 이후 기간의 인구전망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연장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001, 2006, 2011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10년 현재 15.2%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60년 80.6%수준으로 급증,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는 2010년 68.4%에서 2060년 394.0%로 우리나라의 장래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

<표 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2.6	15.2	22.1	38.6	57.2	71.0	80.6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68.4	119.1	193.0	288.6	376.1	39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1.

○ 인구고령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지출의 추이와 재원조달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세대 인구는 줄고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며 수급기간도 길어져 재정악화 가능성 증가

■ 경제변화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임금, 금리,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경제성장률

-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상승 등 고령화의 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 205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
- 임금상승률
- 실질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장기적인 추세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 우리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에 근접해 감에 따라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향후 실질임금상승률은 3%대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한 후 2%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금리
- 실질금리는 3%대 초반을 정점으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까지 점차 하락하다 2040년 이후부터는 저축률 하락으로 실질금리 또한 재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
- 우리나라는 외환이후 이후 물가안정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 2.5~3.5%⁴⁾로 설정하여 운용
 -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목표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 경제가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해감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4) 한국은행(2012.10.)은 2013년 이후 중기(2013~2015)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물가안정목표(중심치 ±변동 허용폭, 3.0±0.5)와 달리 중심치가 없는 목표범위(target range)형태로 설정

2. 제도여건의 변화

■ 가입자 규모 증가 및 가입종별 가입자 분포 변화

○ 전체 가입자수의 증가

- 도시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1999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규모의 증가로 전체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사업장 확대적용으로 인한 가입종별 구조변화

- 2003. 7. 1일부터 2006. 1월까지 3단계 사업장확대사업 등의 결과로, 사업장가입자 규모는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꾸준히 감소

<표 3> 국민연금 가입종별 변화 추이

(단위 : 명, 개소)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수	가입자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32,868	168,570
'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34,148	80,122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9,982	115,815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27,614	32,868
'09.12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36,368	40,935
'10.12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90,222	49,381
'11.12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71,134	62,846
'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207,890	88,576

■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2009.2)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았어야 했으나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

■ 급여제도 관련

-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 강화, 수급연령상향 조정으로 미가입상태로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 보장 등 지속적으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 이로 인하여 사안별로 향후 수급자 규모와 재정에 다양한 효과를 미침

<표 4> 국민연금 급여 관련 주요 법 개정 내용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	○ 자녀(손·자녀)가 유족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받는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대상자 확대 및 가산율 조정	○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제3장 추계방법

제3장 추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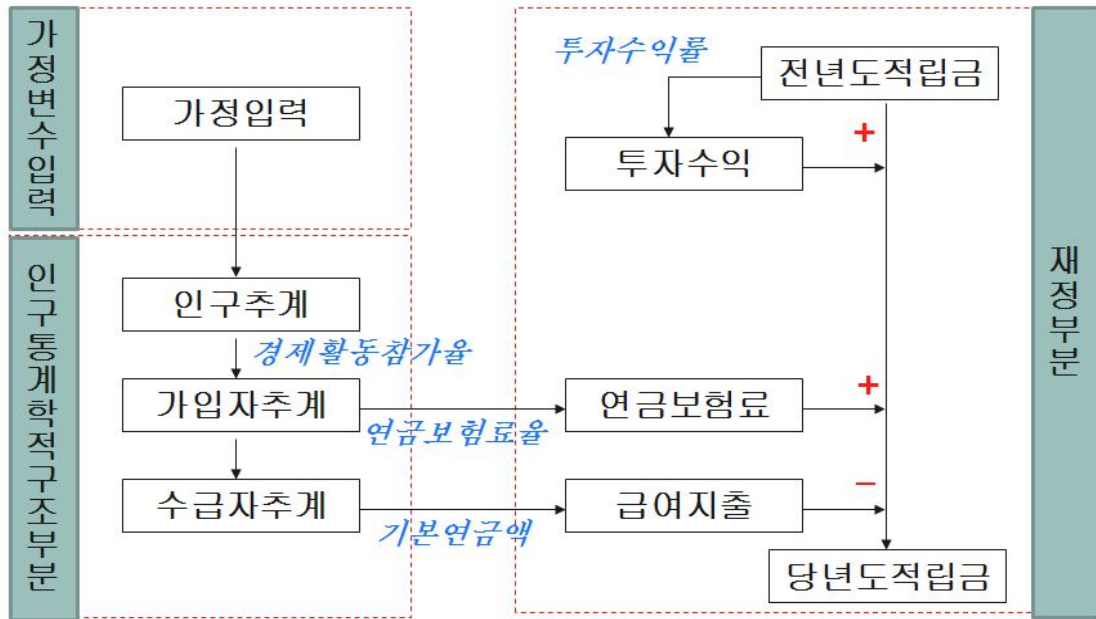
1. 추계모형

■ 모형의 특징과 구조

-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추계모형은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사망으로 연금수급을 마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금제도 내용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 보험료 수입, 수급자, 급여지출 등을 계산하는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임
- 재정추계모형은 크게 “가정변수입력부분”,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 및 “재정추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정변수입력부분”에서는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보험료율, 급여조건⁵⁾, 소득수준 및 납부예외자비율 등) 등의 외생변수를 설정
 -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은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합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를 전망하며,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를 산출
 - “재정추계부분”에서는 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 등 재정전망 결과를 산출
- 실질적으로 재정추계모형은 모든 연산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모듈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듈의 실행순서에 의해서 먼저 산출된 결과는 다음 모듈들의 입력 자료로 이용되는 구조임

5) 수급연령, 가입기간, 소득활동여부 등

[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2. 추계방법

■ 인구추계

- 인구추계는 성별·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사용함
 - 인구추계뿐만 아니라 출산율, 사망률 등의 구성요소(segment)로 구분하여 추계가 가능하도록 궁극적으로 재정추계에 필요한 성별·연령별 인구 및 사망률 등 인구지표를 산출
- 연도별·성별·연령별 인구수는 당해 연도 성별·연령별 인구수에 사망률과 국제이동률을 적용하여 구하며,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출생성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 가입자추계

- 가입자추계는 인구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가입종별(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자수를 산출하는 것임
- 가입자 추계는 먼저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으로 미래의 가입대상(18~59세) 연령범위의 인구 중 경제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를 추계하고, 최근의 경제활동인구와 가입자의 비율로 부터 추정된 가입률을 적용하여 전체 가입자를 추계한 후 지역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를 구분함

■ 가입기간별 가입자추계

-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가입기간별 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대기자⁶⁾로 구분하고, 가입종별 간, 공적연금 간 이동 및 사망, 국외이주로 인한 제도에서의 완전탈퇴를 고려하여 가입자의 이동률을 추정하고 가입상태와 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가입기간의 변화 과정을 모형화함
- 공적연금 가입자의 이동행태를 살펴보면,
 - 당해 연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다음해에 국민연금 가입자로 계속 가입하거나 대기자로 머무를 수 있으며, 직역연금 가입자로 이동하거나 사망이나 국외이주 등으로 연금제도에 재가입할 수 없는 완전탈락상태로 변동
 - 한편 대기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자에서 대기자로, 대기자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자로, 대기자에서 직역연금의 가입자로 그리고 대기자에서 완전탈락자로 그 상태가 변동

6) 대기자란 과거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으나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직역연금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직역연금의 가입자는 직역연금의 가입자로 계속가입하거나 직역연금의 가입자에서 탈퇴로 그 상태가 변동
- 가입자의 이동행태에 따른 이동률을 적용하여 가입종별 간 계속가입자, 재가입자, 탈퇴자 등을 산출하게 되며, 계속가입자와 재가입자의 합과 인구로부터 산출된 총가입자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신규가입자를 산출함
- 국민연금의 신규가입자가 발생한 경우, 직역연금에서 탈퇴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들의 규모와 비교하여 직역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의 가입 가능성을 판단하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의 신규가입자의 규모와 연관성을 갖도록 모형화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규로 수급하게 되는 자들은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총가입자의 규모를 변동시킴

■ 수급자추계

가.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인 60세⁷⁾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수급자를 산출하는데, 가입기간별로 구분된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노령연금의 신규수급자를 산출
 - 즉, 가입자의 가입기간분류에 의해서 연도별·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가입자 및 대기자가 산출되므로, 연령과 가입기간이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들을 신규수급자로 산출함
- 수급자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수급자와 전년도에 이어서 수급하게 되는 계속수급자로 구분하며 총 수급자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의 합으로 산출함

7) 2013년 61세에서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 이후 65세가 됨

- 계속수급자는 전년도 총 수급자에 생존율을 적용하여 산출
-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수급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조건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 이외에 소득활동 여부⁸⁾와 수급에 대한 본인의 의사 결정이 있음
-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을 적용하며,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은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연령조건과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조기수급에 대한 의사를 가진 자의 비율로 정의하여 실적자료를 통해서 산출
-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을 하는 자들의 비율을 재직수급률로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⁹⁾을 받게 되는 수급지를 산출
-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제도 초기 및 제도 개정 시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만족하면 60세에 연금을 수급하도록 한 한시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자이며, 2010년도 까지 신규수급자가 발생하므로¹⁰⁾, 이에 따라 특례노령연금은 계속수급자를 고려함

나. 장애연금

-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는 가입자의 규모 및 장애발생률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됨
- 장애발생률은 1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 중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의 비율로 구하며, 최근 실적(2010년)을 이용하여 산출

8) 수급자의 소득활동 기준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음

9)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은 노령연금액을 연령별로 감액하여 지급함

10) 제도 도입과 농어촌지역 확대 시는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1999년 도시지역 확대 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하였으므로, 농어촌지역 확대 시 가입한 자가 2010년 6월까지 신규수급자로 발생하고 더 이상의 신규수급자가 발생되지 않음. 실제적으로는 청구지연으로 2012년도 현재에도 신규로 수급자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들의 규모는 미미함.

- 장애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사망 등으로 수급이 종료되거나,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다른 급여를 선택하는 경우를 수급자수에서 제외
 - 사망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 종료는 사망률¹¹⁾을 적용하여 수급자수에서 제외
 - 중복급여의 발생은 가입기간별 가입자의 산출방법과 같이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중복급여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노령연금을 선택한 자를 장애연금에서 제외하고 장애연금을 선택한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제외

다.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함
 - 사망률¹²⁾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산출한 다음 유유족률(有遺族率)을 적용하여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를 구하고, 사망자에서 수급자로의 전환은 사망자와 수급자의 관계를 이용하게 됨
 - 유유족률(有遺族率)은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의 비율로 정의하며, 사망자를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와 수급자로 구분 가능하므로 이 구분에 따라 각각의 방법으로 유유족률(有遺族率)을 구함
- 유족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사망, 19세 도달, 재혼 등으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들을 제외해 나가며, 또한 제도 내의 중복급여 발생으로 다른 급여를 선택하는 자를 제외
 - 19세 도달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는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재혼으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는 재혼으로 인한 실권율을 산출하여 적용

11), 10) 인구추계의 사망률을 적용함

- 유족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기여에 의한 노령연금이 발생가능하며,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가족의 기여에 의한 유족연금이 중복적으로 발생가능 함
- 유족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과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며 노령연금을 선택한 자는 유족연금 수급자에서 차감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수에서 차감
-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신규 수급자 산출 시 대상자 중에 노령연금을 선택한 자는 유족연금 신규 수급자수에서 차감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한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수에서 차감
- 중복급여 대상자 중 노령연금을 선택한 자는 유족연금의 20%를 수급하는 수급자로 산출

라. 일시금

- 반환일시금 수급자추계는 수급사유별로 수급자수와 급여액을 각각 산출
 - '60세 도달자'는 가입기간별 가입자추계 결과를 사용하여 해당연도에 60세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들로 산출
 -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수급자'는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사망률과 유유족률(有遺族率)을 적용하여 산출
 -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자'는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 국외이주한 자와 국적상실한 자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

■ 보험료수입,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추계

가. 보험료수입 추계

- 보험료수입은 가입자수,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율, 소득신고자비율 (=1-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함
-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연령별·성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산출
 - 사업장가입자의 전체 평균소득은 초기치를 기준으로 거시경제 변수에서 설정된 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일정 수준을 적용
 - 연령별·성별 평균소득은 각 가입종별 전체 평균소득에 연도별 소득지수¹³⁾를 적용함으로써 연령별·성별 소득의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역가입자의 징수율과 납부예외자 비율은 성별 및 연령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성별·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 보험료수입은 가입종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관련된 변수들 모두 성별 및 연령을 구분단위로 하여 추계

$$\text{보험료수입}_{\text{사업장}} = \text{가입자수}_{\text{사업장}}[t,g,a] \times \text{평균소득}_{\text{사업장}}[t,g,a] \\ \times \text{보험료율}[t] \times \text{징수율}_{\text{사업장}}[t]$$

$$\text{보험료수입}_{\text{지역}} = \text{가입자수}_{\text{지역}}[t,g,a] \times \text{평균소득}_{\text{지역}}[t,g,a] \\ \times \text{보험료율}[t] \times \text{징수율}_{\text{지역}}[t,g,a] \\ \times (1 - \text{납부예외자 비율}_{\text{지역}}[t,g,a])$$

(t: 연도, g: 성별, a: 연령)

13) 추계모형에서 방법론상 성별·연령별 평균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대비 성별·연령별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됨.

나. 기본연금액 추계

- 기본연금액은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
-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이용하여 기본연금액의 계산을 위한 급여수준 및 B값을 산출
 - 즉,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속해 있는 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각 가입시점별로 평균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의 급여수준과 평균소득이 현실적으로 추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가입종별의 이동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여부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
 - 여기에 실적자료 분석에서 나타나는 B값과 가입기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적합모형을 통해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의 노령연금액이 과소 추계되고 가입기간이 짧은 수급자의 노령연금액이나 반환 일시금이 과대 추계되는 문제점 해소
 - 각 연도의 A값은 가입종별 가입자 소득의 평균으로 산출

다. 급여지출 추계

- 급여지출액은 수급자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되며, 신규수급자의 급여액과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
 -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각 연금별 급여수준 조건을 부과하여 산출
 - 계속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년도 총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라. 적립기금 추계

- 총수입은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투자수입의 합이고, 총지출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액과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총수입과 총지출의 수지차가 전년도의 적립기금에 누적되어 금년도의 적립기금이 됨
- 당해 연도 기금투자수입은 전년도 말 적립기금에 당해 연도의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

제4장 주요가정

제4장 주요가정

-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을 포함한 주요 재정분야의 장기적인 종합전망을 추진 중이며, 장기재정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인구 및 거시경제 변수 전망을 기본적으로 고려
- 이에 3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계산 프로세스의 객관화와 분야 간 동일한 기준에서의 재정전망 비교를 위해 2060년까지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인구 중위가정 및 거시경제변수 중위전망을 적용하며, 2060년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가정을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
- 인구변수 중 출산율 가정에 따라 기본가정(통계청('06)의 중위가정) 및 대안가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의 정부목표 수준)을 설정했던 2차 재정계산과 달리 3차 재정계산에서는 단일가정을 적용
 - 다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 정부목표로 설정한 합계출산율 가정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반영

1. 인구변수 가정

■ 인구 가정

- 인구 가정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중위가정(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가용한 추계가 2060년까지이므로 그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정

- 2060년 이후 출산율과 국제이동 가정은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60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60년 이후 사망률 가정은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2083년¹⁴⁾에 남자 88.1세, 여자 92.0세로 가정
- 통계청의 기대수명 가정이 다소 낮다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나,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국가공식 통계이며 사회정책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통계청의 중위 가정을 이용
-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는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출산 3개×사망 3개×국제이동 3개 =27개)를 설정하였으며,
-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통계청의 시나리오 및 출산율 및 사망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인구가정 설정

■ 출산율 가정

-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연령의 가임기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산한 아이수이며, 합계출산율은 연령별출산율을 따른다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함
-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일부 불규칙한 변동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 1.08명 최저치 이후 2007년 1.25명까지 증가,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에는 1.23명 수준임
- 지난 5년간 출산율의 증가는 주로 30~40대(1980~1970년생) 여성의 출산율 상승에 기인

14)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70년'인 2083년까지 추계함

- 과거 출산율자료를 기초로 시계열회귀분석과 보정형 로그감마모형으로 코호트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을 예측하여 출산율 가정
 - 2010년에 가임기(15-49세)에 접어든 15세, 1995년생이 49세에 도달하는 2044년까지의 완결출산율을 추정하고, 이후 동일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
-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상승 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통계청(2011년) 인구추계 중위가정과 동일

<표 5> 합계출산율 가정

	(단위 : 명)			
	2010	2020	2030	2045년 이후
합계출산율	1.23	1.35	1.41	1.4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1.

- 2차 재정계산에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06)의 중위가정 (최종수준 1.28명)을 기본가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의 정부목표(최종수준 1.6명)를 대안가정으로 사용
 - 3차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 최종수준은 1.42명으로 2차 재정계산의 기본가정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통계청(2011년) 인구추계 중위가정과 동일)

■ 출생성비 가정

- 출생성비(출생한 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2010년 106.9에서 2015년 106.2, 2020년 105.7 등 점진적으로 자연 수준에 접근하여 2025년부터는 105.4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
 - 말띠, 용띠, 범띠 해는 다른 해에 비해 다소 높은 성비를 보이는

추세를 반영함

- 통계청(2011년) 인구추계와 동일

■ 사망률 가정

- 유소년 인구 및 고령층의 사망이 감소하면서 기대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은 지난 30년간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며, 남녀 간의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로 남자의 기대수명이 여자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
- 사망률은 통계청(2011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며, 2060년 이후 사망률은 기대수명의 개선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되나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가정
- 통계청에서는 Li and Lee 모형¹⁵⁾을 사용하여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산출하며, 상한연령은 기존 95세에서 100세로 설정
- 이에 따라 남자 기대수명은 2010년 77.20세에서 2060년 86.59세로 9.39세 증가 이후 2083년에 88.12세, 여자는 2010년 84.07세에서 2060년 90.30세로 6.23세 증가 이후 2083년에 92.00세로 전망

<표 6> 기대수명 가정

(단위 : 세)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83
남자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88.12
여자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92.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1. 2060년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정

- 2차 재정계산에서는 남자 기대수명이 2010년 75.1세에서 2050년 이후 82.9세, 여자는 2010년 81.9세에서 2050년 이후 88.9세로 가정

15) Li, N. and Lee, R.(2005). "Coherent Mortality Forecasts for a Group of Populations: An Extension of the Lee-Carter Method". *Demography* 42(3): 575-594

- 최근의 기대수명이 2차 재정계산의 전망보다 더 빠르게 증가되었고, 남자의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어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50년 기대수명이 남자 2.2세, 여자 0.4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제이동 가정

- 국제이동 가정은 통계청(2011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되, 2060년 이후는 206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연령별 이동스케줄 모델(Model Migration Schedule)¹⁶⁾을 이용하여 국제이동을 추정
 - 입국과 출국요인에 연령별 차이가 있어 입·출국 모형을 분리하여 장래 이동수준을 추정한 후 입국과 출국을 합해 순이동 산출
-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는 2010년 8만 명(인구천명당 1.67명)에서 2020년 4만 명, 2060년에는 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7> 국제순이동률 가정

(단위 : 인구천명당)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년 이후
국제순이동률	1.67	0.71	0.57	0.63	0.64	0.5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1.

2010년은 기간기준, 이후 연도는 연앙기준 수치임

- 2006년 이후 순유입추세가 반영되어 2050년에 1만 6천 명의 순유출을 예상했던 2차 재정계산과 달리 3만 1천 명이 순유입되는 것으로 전망

16) Wilson T. (2010). "Model Migration Schedules Incorporating Student Migration Peaks". *Demographic Research* 23(8)

2. 경제변수 가정

■ 경제변수 가정 설정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가용한 추계가 2060년까지이므로 그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정
- 경제변수 가정은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위해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로 투입되는 임금상승률, 금리 및 기금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먼저 실질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와 부합하는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를 전망한 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과 결합하여 명목임금상승률 및 명목금리의 전망치를 도출함

■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금리, 물가상승률 전망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41~2050년 1.4%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상승 등 고령화의 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됨
 - 205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2.7%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한 후 2.0%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우리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에 근접해 감에 따라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편, 2016년까지의 실질임금은 정부의 중기 경제성장률¹⁷⁾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금리는 2011~2020년 2.6%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실질금리는 3%대 초반을 정점으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까지 점차 하락하다 2040년 이후부터는 저축률 하락으로 실질금리 또한 재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은 2011~2020년 3.2%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40년 경에 2.0% 수준에 도달한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5%~3.5%¹⁸⁾) 및 선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감안하여 설정
 -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목표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 경제가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해감에 따라 물가안정 목표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수준이 2.0% 수준에 근접하게 되는 2040년경부터 같은 수준에서 안정화 되는 것으로 설정

17)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12.9)의 경제 전망치 및 관련 계획을 반영

18) 한국은행(2012.10.)은 2013년 이후 중기(2013~2015)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물가안정목표(중심치 ±변동허용폭, 3.0±0.5)와 달리 중심치가 없는 목표범위(target range)형태로 설정

<표 8> 경제변수 가정

(단위 : %)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3
실질경제성장률	3.8	2.9	1.9	1.4	1.1	0.7	0.9
실질임금상승률	2.7	3.1	2.4	2.1	2.0	2.0	2.0
실질금리	2.6	2.7	2.5	2.4	2.5	2.6	2.7
물가상승률	3.2	2.8	2.2	2.0	2.0	2.0	2.0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3년 만기 회사채(AA-) 수익률의 1.1배 수준으로 가정
 - '06년부터 '11년까지의 회사채 수익률과 기금투자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실현된 기금투자수익률은 회사채수익률의 1.1배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명목기금투자수익률은 2011~2020년 6.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이후에는 5%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실질기금투자수익률은 2011~2020년 3.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 이후에는 3%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표 9>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단위 : %)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3
실질기금투자수익률	3.2	3.3	2.9	2.8	2.9	3.0	3.2
명목기금투자수익률	6.3	6.1	5.1	4.8	4.9	5.0	5.2

주 : 제시된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경제활동참가율 가정

- 성·연령으로 구분된 인구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을 상정하고 각 설명변수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되, 2030년 이후 전망에서는 외국의 추이와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감안하는 시계열 연장방법으로 추계
 - 우리나라 여성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속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6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70% 이상)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선진국의 2050년 수준(80% 중반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
 - 남성 핵심연령층(30~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30년까지 정체 내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될 수 있는 2030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전환
 -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60년에 대략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2100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가정
 - 장기적으로는 6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되, 연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7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 2030년까지의 변화추이, 성별 격차의 조정 등을 감안할 때,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표 10>, <표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효과로 인해 2070년까지는 하락하고 이후 소폭 상승

<표 10> 경제활동참가율 가정(남자)

(단위 : %)

연령계층	2011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3
15~19	6.3	6.2	9.8	16.6	23.3	29.3	31.3	32.9
20~24	42.3	44.0	46.8	52.9	58.9	64.4	66.3	67.9
25~29	77.6	75.8	77.0	79.7	82.3	84.8	86.3	87.9
30~34	91.6	90.9	91.6	92.8	93.9	94.9	95.3	95.6
35~39	94.4	93.4	93.5	94.3	95.2	95.9	96.3	96.6
40~44	94.3	94.2	94.5	95.0	95.5	96.0	96.3	96.6
45~49	93.0	92.9	93.2	94.1	95.1	95.9	96.3	96.6
50~54	90.4	91.0	91.3	91.9	92.4	93.0	93.8	94.7
55~59	83.8	84.1	85.0	86.6	88.3	89.9	90.8	91.7
60~64	72.2	72.2	72.7	73.5	74.2	75.1	76.3	77.9
65~69	53.8	55.6	56.3	56.6	56.8	57.1	57.8	58.7
70~74	42.6	42.3	41.3	39.2	37.1	35.1	33.8	32.1
75세 이상	23.2	22.9	22.3	21.5	20.8	19.9	18.8	17.1
계 ¹⁾	72.1 (76.0)	71.7 (77.5)	69.3 (79.3)	65.3 (80.2)	62.9 (81.8)	61.6 (83.8)	59.8 (84.8)	60.1 (85.3)

1) ()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표 11> 경제활동참가율 가정(여자)

(단위 : %)

연령계층	2011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3
15~19	9.0	8.2	12.2	18.2	24.1	29.4	31.3	32.9
20~24	52.3	50.5	53.4	59.0	64.5	69.5	71.3	72.9
25~29	71.4	76.2	79.5	83.0	86.5	89.7	91.3	92.9
30~34	55.4	60.5	65.5	70.7	75.8	80.6	83.0	85.6
35~39	55.6	59.9	64.6	71.1	77.5	83.4	85.8	88.0
40~44	65.7	69.7	75.7	79.1	82.6	85.8	87.5	89.5
45~49	66.8	71.1	76.0	79.3	82.7	85.8	87.5	89.5
50~54	62.3	64.2	68.5	73.3	78.2	82.6	85.0	87.6
55~59	54.0	56.9	60.5	66.7	72.8	78.5	81.0	83.6
60~64	42.2	45.2	48.6	53.4	58.2	62.7	65.8	69.3
65~69	32.0	32.3	35.0	39.0	43.0	46.7	48.3	49.9
70~74	25.3	26.6	27.0	27.4	27.7	27.9	27.3	26.3
75세 이상	11.7	13.7	14.1	14.4	14.7	14.8	13.8	12.1
계 ¹⁾	49.5 (54.8)	50.8 (58.2)	50.1 (61.7)	49.2 (66.1)	49.4 (71.0)	50.6 (75.6)	50.6 (78.0)	51.9 (80.0)

1) ()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3. 제도변수 가정

■ 국민연금 가입률¹⁹⁾ 가정

- 제2차 재정계산(2008)에서는 최근 실적치(2007년)인 82.8%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84.2%, 2011년 87.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국민연금 가입률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로그함수형태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해외사례 : 미국 92.2%(2005), 영국 93.2%(2005), 일본 95.3%(2005) 등²⁰⁾

<표 12>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단위 :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87.4	88.5	89.2	89.8	90.0

■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 지역가입자 비율은 최근 실적치(2011년)에서 장기적으로 2050년에 30%까지 감소 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2차 재정계산에서는 최근 실적치(2007년)에서 2050년에 35%까지 감소 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지역가입자 비율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종 수준을 5%pt로 낮은 30%로 설정
- 1인 이상 사업장가입자가 기존의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비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반영

19) 국민연금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18세~59세)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20) 자료: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표 13>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단위 : %)

	2011년	...	2050년 이후
지역가입자 비율	44.1	선형보간	30.0

■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 2011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 비율은 56.5% 수준이나, 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적으로 소득과악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납부예외자 비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2차 재정계산과 동일하게 최근 실적치(2011년)에서 2050년에 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표 14>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단위 : %)

	2011년	...	2050년 이후
납부예외자 비율	56.5	선형보간	30.0

■ 징수율 가정

- 사업장가입자 징수율은 최근 5년 평균치인 98.6%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단년도 실적치를 적용한 2차 재정계산과 다르게 안정적인 5년 평균치 적용
-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최근 실적치 66.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50년에 정책적 목표수준인 80%가 되는 것으로 가정
 - 2차 재정계산과 동일하게 최근 실적치를 일정기간 유지 후 2050년에 8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표 15> 징수율 가정

(단위 : %)

	2011~2015년	...	2050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징수율	98.6		
지역가입자 징수율	66.6	선형보간	80.0

■ 소득수준 가정

- 소득수준은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은 최근 실적치(2011년)를 초기치로 하여 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시키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설정
-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은 현재(2011년)의 하락 추세를 일정기간 반영하여 50% 수준까지 감소 후 50% 수준이 일정 기간(5년) 유지되다 2050년에 최종 목표치인 70%가 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지역가입자 소득과약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이로 인한 소득수준 상승이 예상됨을 반영
 - 다만, 최근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았던 지역가입자(1인 이상 사업장 종사)를 중심으로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는 등 지역가입자의 내부적인 구조가 종전보다 악화되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단시일 내에 향상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정기간 최근의 하락추세 반영 후 목표수준으로 수렴시킴

<표 16>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의 비율

(단위 : %)

	2011년	...	2015~2019년	...	2050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	53.4	선형보간	50.0	선형보간	70.0

■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가정

- 법 개정(2009.8)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의 통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계신청을 통해 각 기관에서 기여한 가입기간만큼 연계연금을 지급
- 연계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신청률을 설정하며, 공적연금 연계신청률은 연계대상자 대비 연계급여 신청자의 비율로 각 직역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근(2010년)의 연계신청률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7>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단위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20	47.3(20년 미만) /10(20년 이상)	0.5

■ 기타

- 관리운영비 가정
 - 관리운영비는 최근의 실적을 초기치로 하여 임금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관리운영비 중에서 국고부담과 기금전입금에 대한 가정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은 국고부담이 2.5%, 기금 97.5%인 것으로 가정하되, 그 이후는 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와 기금전입금 부담이 각각 50%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 18> 관리운영비와 국고부담 비율에 대한 가정

(단위 : 억원, %)			
	2011년	2012~2016	2017년 이후
관리운영비 총액	4,927	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상승	
국고 부담 비율	2.2	2.5	50.0

제5장 추계결과

제5장 추계결과

1. 추계기간

-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70년'인 2083년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수지를 추계함
 - 2070년을 추계기간 최종시점으로 설정한 2003년 제1차 재정계산과 달리 제2차 재정계산(2008)에서는 추계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설정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최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추계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과 평가지표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향후 70년'으로 설정²¹⁾

2. 인구구조

■ 인구추이

- 인구추이
 - 전체인구는 2013년 50,220천명에서 다소 증가하여 2030년 52,160천명에 이르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83년 33,994천명으로 감소
 -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6,138천명(구성비 12.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9년에는 17,996천명(구성비 37.1%)이 되나,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세대가 이 연령대에 도달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83년 13,848천명(구성비 40.7%)으로 감소
 - 18~64세의 근로연령인구는 2013년 34,750천명(구성비 69.2%)에서 다소 증가하여 2018년 35,380천명(구성비 69.2%)에 이르나, 저출산의

21) 외국의 경우 추계기간은 제도가 성숙하는데 필요한 시간, 가입자의 일생주기를 감안하여 60~10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미국의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75년, 일본의 후생연금은 100년, 캐나다의 CPP(Canada Pension Plan)는 약 70년, 영국의 NIF(National Insurance Fund)는 60년임)

영향으로 유소년인구의 유입이 감소하여 2083년에는 16,102천명(구성비 47.4%)으로 2013년의 46% 수준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노인인구부양비²²⁾(65세 이상 인구/18-64세 인구)는 2013년 17.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7년에 91.1%로 최고수준에 이르고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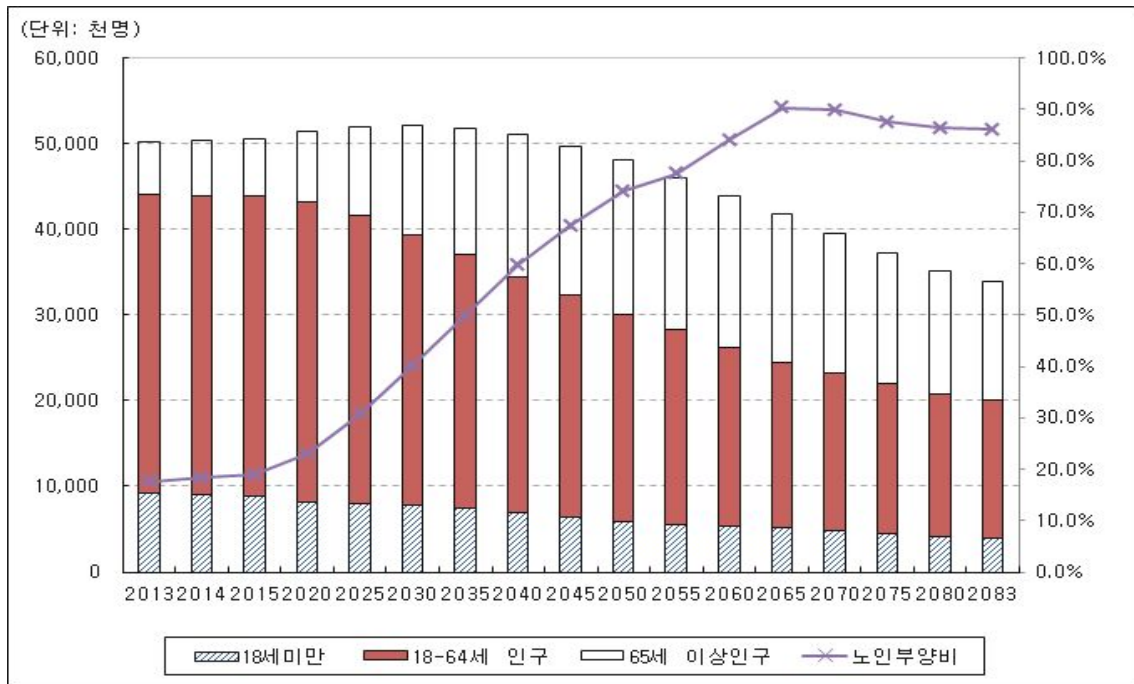
<표 19>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단위 : 천명, %)

	인구				구성비			노인 부양비 (나)/(가)
	계	18세미만	18-64세 (가)	65세이상 (나)	18세미만	18-64세	65세이상	
2013	50,220	9,332	34,750	6,138	18.6	69.2	12.2	17.7
2014	50,424	9,099	34,939	6,386	18.0	69.3	12.7	18.3
2015	50,617	8,886	35,107	6,624	17.6	69.4	13.1	18.9
2020	51,435	8,159	35,193	8,084	15.9	68.4	15.7	23.0
2025	51,972	8,090	33,552	10,331	15.6	64.6	19.9	30.8
2030	52,160	7,899	31,570	12,691	15.1	60.5	24.3	40.2
2035	51,888	7,561	29,577	14,751	14.6	57.0	28.4	49.9
2040	51,091	7,015	27,575	16,501	13.7	54.0	32.3	59.8
2045	49,810	6,395	25,947	17,468	12.8	52.1	35.1	67.3
2050	48,121	5,875	24,255	17,991	12.2	50.4	37.4	74.2
2055	46,125	5,560	22,852	17,713	12.1	49.5	38.4	77.5
2060	43,959	5,382	20,956	17,622	12.2	47.7	40.1	84.1
2065	41,863	5,201	19,270	17,392	12.4	46.0	41.5	90.3
2070	39,628	4,931	18,281	16,416	12.4	46.1	41.4	89.8
2075	37,389	4,585	17,497	15,308	12.3	46.8	40.9	87.5
2080	35,232	4,230	16,640	14,362	12.0	47.2	40.8	86.3
2083	33,994	4,043	16,102	13,848	11.9	47.4	40.7	86.0

22) 통상 사회통계에서 노인부양비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되나, 여기서는 국민연금제도 내의 인구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최소가입연령인 18세부터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분석함. 따라서 통상 사회통계의 노인부양비보다 높게 산출됨.

[그림 2] 인구 수 및 노인부양비



■ 가입자 및 수급자수 추이

- 가입자는 2013년 20,396천명에서 2015년 20,621천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83년에는 10,975천명이 됨
-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13년 2,656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596천명이 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60년 이후 수급자수의 감소는 제도가 성숙한 상태에서 1980년 이후 저출산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임
-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제도 초기단계이어서 수급자의 수가 적은 2013년에는 13.0%이나,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8년 112.9%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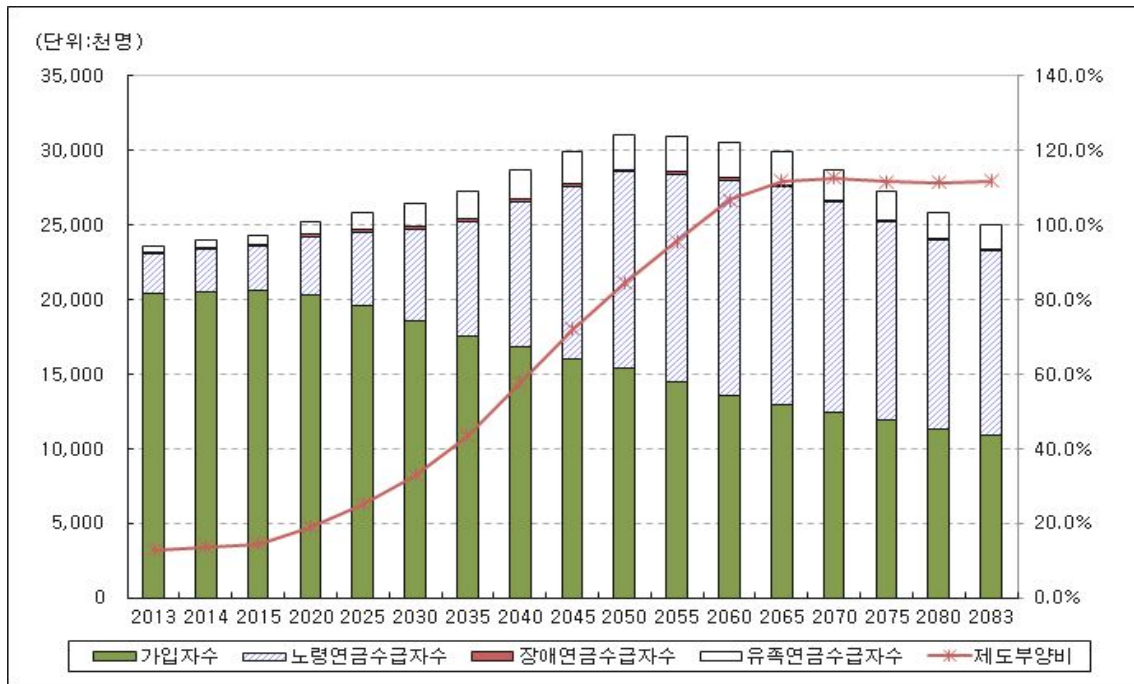
-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2013년 93천명에서 2035년 198천명으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83년에는 108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노령연금수급자수 대비 장애연금수급자수의 비율은 2~3%에서 점차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1% 내외 수준을 유지
- 한편, 유족연금수급자수는 2013년 501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5년에는 2,388천명으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83년에는 1,640천명이 될 것으로 추계됨
 - 노령연금수급자수 대비 유족연금수급자수의 비율은 20~25%에서 점차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13% 내외 수준을 유지

<표 20>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단위 : 천명, %)

	가입자수 (가)	수급자수				제도부양비 (나)/(가)
		전체	노령연금 (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3	20,396	3,249	2,656	93	501	13.0
2014	20,570	3,463	2,815	100	548	13.7
2015	20,621	3,699	2,994	108	597	14.5
2020	20,367	4,893	3,881	143	870	19.1
2025	19,579	6,288	4,949	169	1,171	25.3
2030	18,627	7,803	6,138	188	1,477	33.0
2035	17,599	9,640	7,680	198	1,761	43.6
2040	16,823	11,940	9,743	195	2,001	57.9
2045	16,015	13,958	11,573	188	2,197	72.3
2050	15,479	15,603	13,088	178	2,337	84.6
2055	14,508	16,445	13,889	168	2,388	95.7
2060	13,573	16,951	14,475	150	2,326	106.6
2065	13,010	16,893	14,563	132	2,198	111.9
2070	12,497	16,240	14,072	124	2,045	112.6
2075	11,937	15,335	13,330	119	1,887	111.7
2080	11,356	14,495	12,649	112	1,733	111.4
2083	10,975	14,026	12,277	108	1,640	111.9

[그림 3] 가입자수, 수급자수 및 제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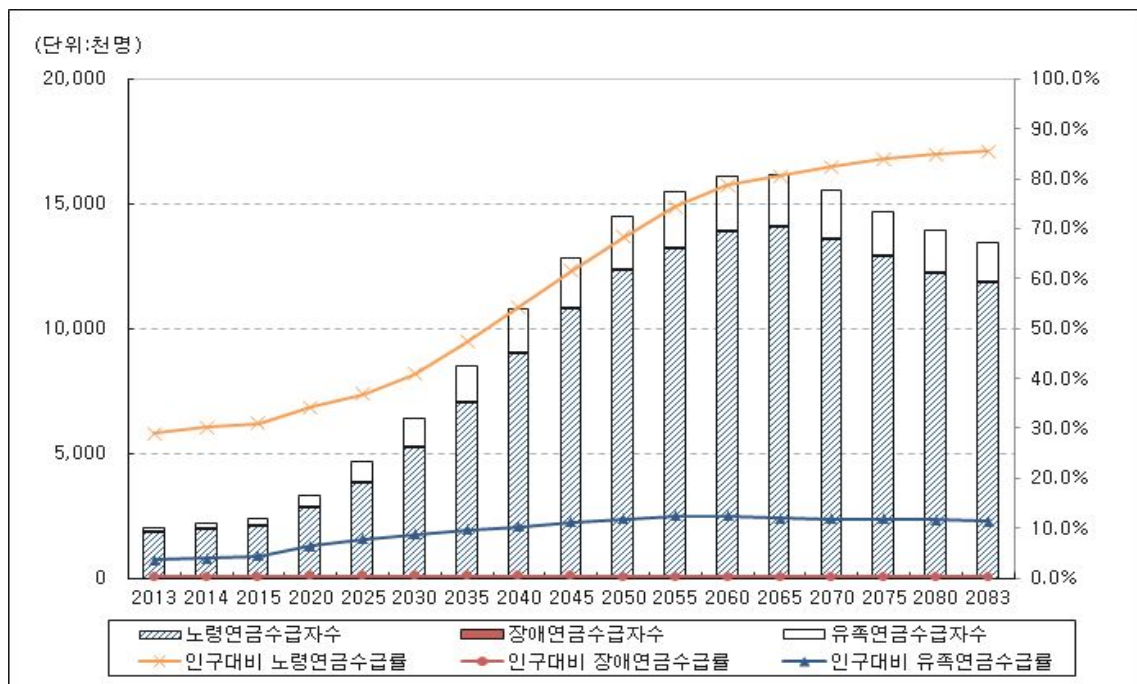
- 노령연금수급자는 2013년 인구 대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83년에는 85.4% 수준에 도달
- 장애연금수급자는 2013년 인구 대비 0.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1년에 0.4%에 이르고 이후는 점차 감소하여 0.2% 수준 유지
- 유족연금수급자는 2013년 3.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55년에 12.5% 수준에 이르고 이후는 점차 감소함

<표 21>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단위 : 천명, %)

	수급자수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3	2,015	1,782	13	220	32.8	29.0	0.2	3.6
2014	2,199	1,929	15	254	34.4	30.2	0.2	4.0
2015	2,363	2,056	17	291	35.7	31.0	0.3	4.4
2020	3,311	2,764	28	519	41.0	34.2	0.3	6.4
2025	4,650	3,803	42	805	45.0	36.8	0.4	7.8
2030	6,367	5,194	55	1,118	50.2	40.9	0.4	8.8
2035	8,463	6,973	62	1,428	57.4	47.3	0.4	9.7
2040	10,746	8,972	65	1,709	65.1	54.4	0.4	10.4
2045	12,777	10,766	62	1,949	73.1	61.6	0.4	11.2
2050	14,498	12,310	57	2,130	80.6	68.4	0.3	11.8
2055	15,438	13,171	51	2,216	87.2	74.4	0.3	12.5
2060	16,087	13,857	45	2,185	91.3	78.6	0.3	12.4
2065	16,145	14,022	39	2,084	92.8	80.6	0.2	12.0
2070	15,528	13,542	34	1,953	94.6	82.5	0.2	11.9
2075	14,685	12,846	30	1,810	95.9	83.9	0.2	11.8
2080	13,885	12,193	26	1,666	96.7	84.9	0.2	11.6
2083	13,435	11,833	24	1,579	97.0	85.4	0.2	11.4

[그림 4]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3. 재정추계결과

■ 재정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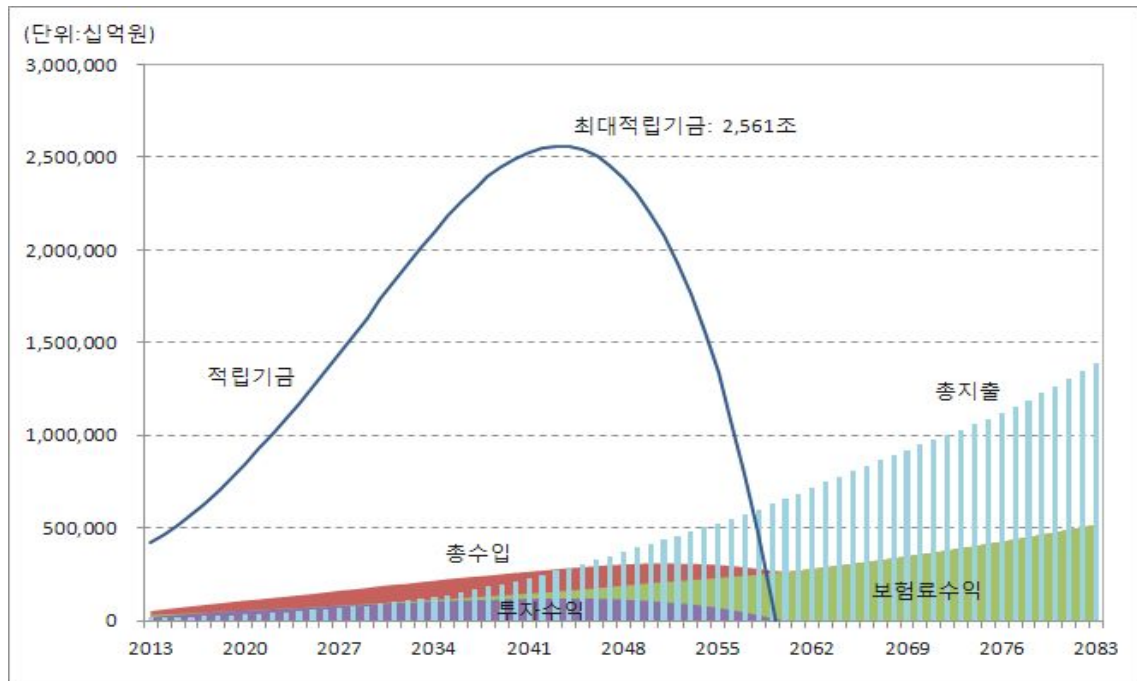
- 국민연금은 초기에 부과방식비용률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 옴으로써 지금까지 상당한 적립기금이 축적되어 왔음
 - 부과방식비용률 보다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으나, 완전적립에 필요한 보험료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 부분적립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앞으로 20~30년간은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3년에 최고 2,561조원(1,084조원, 2010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이 달라졌으나, 각 변수들 간의 변동효과가 상쇄되어 2차 재정계산(기본가정)의 수지적자 발생시점(2044년) 및 기금소진 시점(2060년)은 동일하게 전망됨
 - 2008년 재정계산 시 기본가정에서는 2044년에 최초로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 대안가정에서는 2047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4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

<표 22>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그림 5] 재정수지전망



○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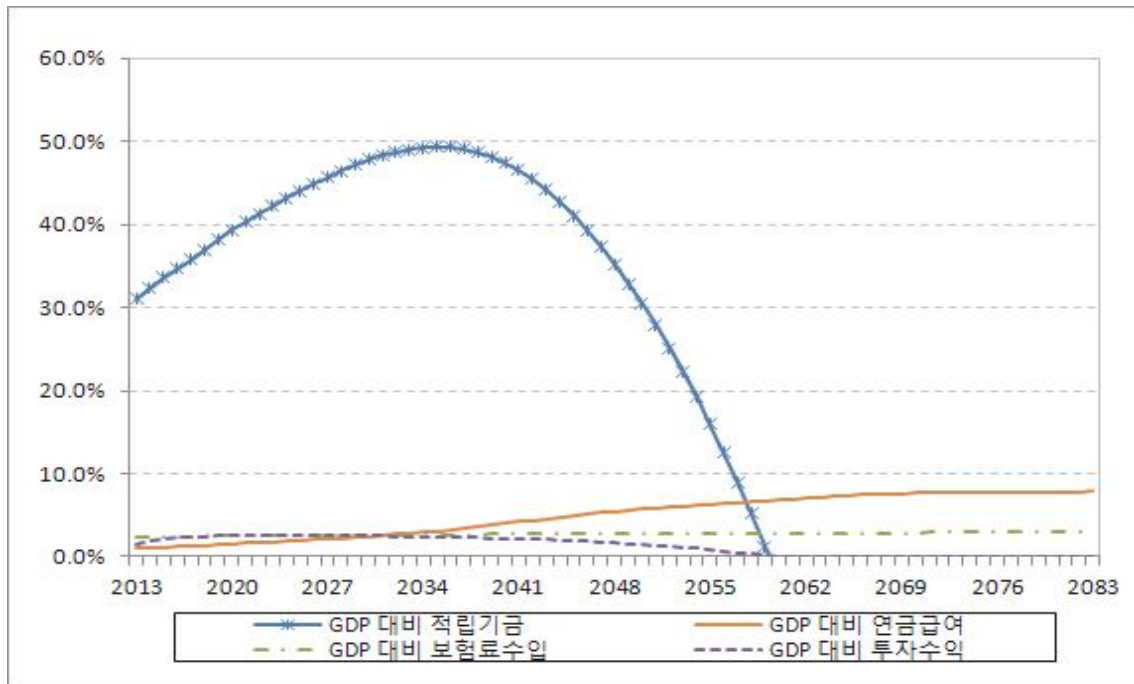
- 적립기금은 현재 31.1%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5년에 49.4%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 급여지출은 2013년 1.0%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8% 수준에 접근

<표 23>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단위 : %,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GDP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31.1	3.9	2.4	1.5	1.1	1.0	2.8	1,344,421
2015	33.6	4.5	2.4	2.1	1.2	1.2	3.3	1,531,088
2020	39.3	5.1	2.5	2.6	1.6	1.6	3.5	2,155,210
2025	44.1	5.1	2.6	2.5	2.0	1.9	3.1	2,859,011
2030	47.8	5.2	2.6	2.5	2.5	2.5	2.7	3,624,205
2035	49.4	5.1	2.6	2.4	3.1	3.1	2.0	4,422,196
2040	47.4	4.9	2.7	2.2	4.1	4.0	0.8	5,257,143
2043	44.2	4.8	2.7	2.1	4.6	4.6	0.2	5,800,541
2044	42.7	4.7	2.7	2.0	4.8	4.8	0.0	5,989,862
2045	41.1	4.7	2.7	1.9	5.0	4.9	-0.3	6,182,966
2050	30.5	4.3	2.8	1.5	5.7	5.7	-1.4	7,215,394
2055	16.0	3.6	2.8	0.8	6.3	6.3	-2.7	8,361,023
2060	-2.9	2.7	2.7	0.0	6.9	6.8	-4.1	9,583,907
2065	-	2.8	2.8	0.0	7.4	7.4	-4.6	10,883,472
2070	-	2.9	2.9	0.0	7.7	7.7	-4.8	12,326,434
2075	-	2.9	2.9	0.0	7.7	7.7	-4.8	14,061,039
2080	-	3.0	3.0	0.0	7.8	7.8	-4.9	16,135,257
2083	-	3.0	3.0	0.0	7.9	7.9	-5.0	17,512,741

[그림 6]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 수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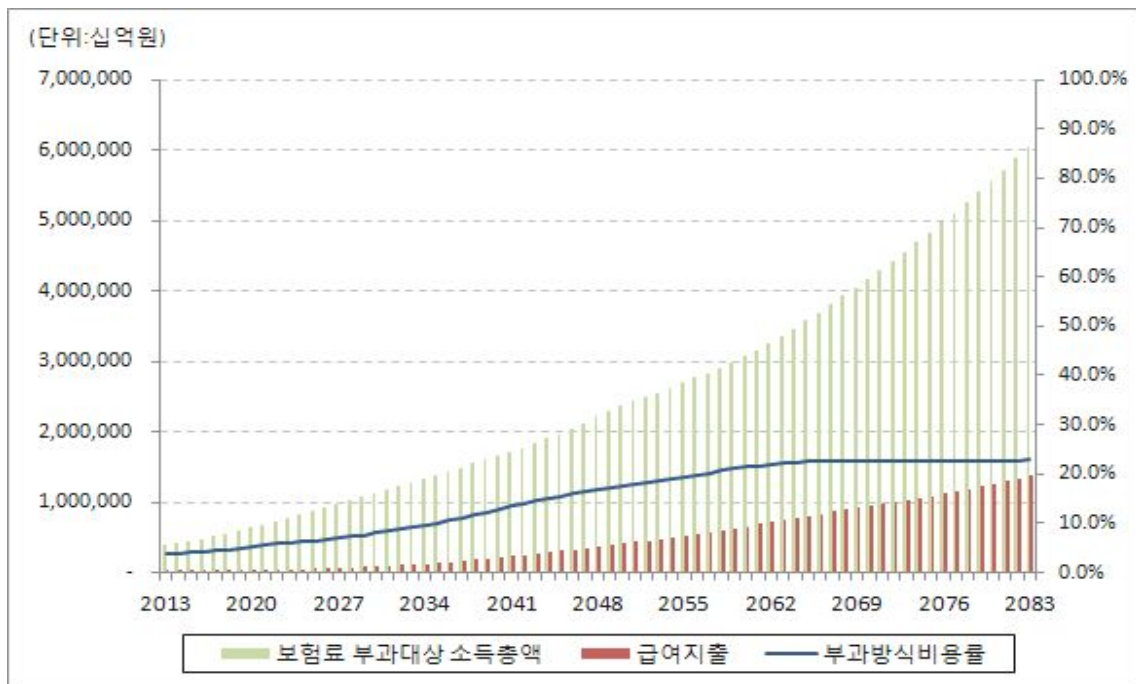
-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 부과방식비용률은 2013년 3.7%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23% 수준을 나타냄

<표 24>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단위 : 십억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 (가)	급여지출 (나)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GDP (다)	GDP대비 보험료부과 대상소득총액 (가)/(다)
2013	380,460	14,032	3.7	1,344,421	28.3
2014	409,216	15,490	3.8	1,430,072	28.6
2015	442,113	17,849	4.0	1,531,088	28.9
2020	637,961	33,487	5.2	2,155,210	29.6
2025	862,903	55,735	6.5	2,859,011	30.2
2030	1,118,105	89,176	8.0	3,624,205	30.9
2035	1,375,840	137,826	10.0	4,422,196	31.1
2040	1,658,895	212,563	12.8	5,257,143	31.6
2045	1,973,358	305,324	15.5	6,182,966	31.9
2050	2,368,033	412,288	17.4	7,215,394	32.8
2055	2,691,275	523,193	19.4	8,361,023	32.2
2060	3,067,613	655,155	21.4	9,583,907	32.0
2065	3,578,296	803,692	22.5	10,883,472	32.9
2070	4,171,889	944,311	22.6	12,326,434	33.8
2075	4,830,159	1,084,768	22.5	14,061,039	34.4
2080	5,568,678	1,257,811	22.6	16,135,257	34.5
2083	6,046,878	1,381,971	22.9	17,512,741	34.5

[그림 7]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제6장 민감도분석(Sensitivity Test)

제6장 민감도분석(Sensitivity Test)

1. 민감도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확정적인(deterministic) 추계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민감도분석

- 확정적인 재정추계방법은 인구, 경제변수 및 기초율에 대한 단일 가정값을 사용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함으로써 각 변수의 확률적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
- 추계결과가 단일값으로 산출되고 추계결과의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확률적 해석이 불가능함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한 가정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추계결과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가정변수 및 추계결과가 가지는 불확실성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음

■ 시나리오 설정 방법

- 통상 여러 변수를 함께 변화시키는 조합시나리오(set scenario)를 설정하거나 개별 변수만을 변화시키는 개별 시나리오 방법을 사용함
 - 개별 시나리오 방법의 경우에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개별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기본가정을 사용
- 조합시나리오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공통지침으로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 중 금번 재정계산에서 기본가정으로 설정한 시나리오(중위 중립) 외 4가지 시나리오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수정·조정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 및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 변화가정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총 10개의 조합시나리오를 설정
 - 조합시나리오는 인구와 경제변수의 상관성을 반영하여 인구변수

및 경제변수를 함께 변화시킴

- 개별 시나리오는 주요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 개별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은 주요 경제변수와 장래 불확실성이 큰 제도관련변수를 포함시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납부예외자 비율,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
 - 개별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pm \alpha$ 를 적용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에 관한 민감도를 추가
 - 조기노령연금 지급자의 규모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조합시나리오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5가지 시나리오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는 통계청(2011년)의 저위, 중위, 고위 3가지 인구전망에 따른 경제성장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
 - 인구전망 관련,
 - 통계청에서는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별 중위가정을 조합하여 인구성장 중위가정을 설정하였으며,
 - 인구변동요인별 저위(고위)가정을 조합하여 인구성장 저위(고위)가정을 설정함
 -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2010년~2060년까지로 2060년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연장추정
 - 거시경제변수 관련,
 - 저위, 중위, 고위 인구전망에 따른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으며,

이를 경제변수 '중립'으로 나타냄

- 중위 인구전망에 대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비관, 낙관 2개 시나리오를 추가 설정
-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5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중위가정과 인구 중위가정에 따른 경제변수 중립가정에 의한 추계결과를 재정계산결과로 설정
- 재정추계위원회의 6가지 시나리오
 -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수정
 - 60대 이상 경활률이 높고 '60년 이후의 여성 경활률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
 -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적으로 1.0%p 내외 하락
 - 인구의 저위, 중위, 고위의 3가지 가정별로 별도의 경제변수를 설정한 3가지 기본가정 시나리오와, 인구 중위-경제변수 중위 가정 하에서 출산율 변화가정에 따른 3가지 대안가정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총 6가지 시나리오 설정
 - 인구 중위가정 중 출산율 변화의 3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변수를 설정
 - 대안가정1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 정부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까지 1.7명에 도달하고, 이후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대안가정2는 정부목표가정과 동일하게 합계출산율이 2020년까지 1.7명에 도달하되,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여 2035년에 2.1명(인구 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대안가정3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45년까지 2.1명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출산율 외 사망률 및 국제이동 가정은 기본가정의 중위가정 적용

<표 25> 조합시나리오의 구분

구분		인구	경제변수	비고
시나리오1	장기재정 전망협의회	저위	중립	
시나리오2		중위	비관	
기본가정			중립	
시나리오3			낙관	
시나리오4		고위	중립	
시나리오5	재정추계 위원회	저위	중립	인구 가정은 장 기전망협의회와 동일
시나리오6		중위	중립	
시나리오7		고위	중립	
시나리오8		대안1: 출산율 1.7('20)	중립	사망률과 국제이 동률은 재정추계 위원회 중위가정 과 동일
시나리오9		대안2: 출산율 1.7('20)→2.1('35)	중립	
시나리오10		대안3: 출산율 2.1('45)	중립	

주 : 1) 경제변수의 비관, 중립, 낙관은 인구 가정 하에서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설정됨

- 2) 경제변수는 인구가정과 연관되어서 설정되므로 인구 고위의 중립과 인구 저위의 중립 및 인구 중위의 중립으로 설정된 경제변수는 서로 다르며, 이러한 관계는 재정추계위원회의 경우도 동일함
- 3) 재정추계위원회의 경제변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경황률이 조정된 상태에서 산출되었으므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다름(시나리오 5~10)

<표 26> 인구추계의 출산율(합계출산율) 변화가정

(단위: 명)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대안가정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대안1	대안2	대안3
2010	1.23	1.23	1.23	1.23	1.23	1.23
2020	1.01	1.35	1.63	1.70	1.70	1.43
2030	1.00	1.41	1.76	1.70	1.97	1.67
2040	1.01	1.42	1.79	1.70	2.10	1.95
2045~2060	1.01	1.42	1.79	1.70	2.10	2.10
2060년 이후	1.01	1.42	1.79	1.70	2.10	2.10

<표 27> 인구추계의 사망률(기대수명) 변화가정

(단위: 세)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및 재정추계위원회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0	77.2	84.1	77.2	84.1	77.2	84.1
2020	76.9	83.5	79.3	85.7	81.6	87.7
2030	78.7	84.6	81.4	87.0	84.0	89.2
2040	80.5	85.7	83.4	88.2	86.0	90.4
2050	82.1	86.8	85.1	89.3	87.7	91.6
2060	83.6	87.8	86.6	90.3	89.1	92.5
2083	85.6	89.3	88.1	92.0	90.8	95.0

<표 28> 인구추계의 국제이동력(순국제이동률) 변화가정

(단위: 인구 1천명당)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및 재정추계위원회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2010	1.67	1.67	1.67
2020	-0.16	0.71	1.82
2030	-0.25	0.57	1.61
2040	-0.17	0.63	1.67
2050	-0.06	0.64	1.64
2060년 이후	-0.07	0.53	1.50

<표 29>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실질)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3
장기 재정 전망 협의회	저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6	2.8	1.7	0.9	0.5	-0.1	-0.3
			실질 임금상승률	2.8	3.3	2.6	2.3	2.2	2.1	2.0
			실질 금리	2.6	2.7	2.3	2.1	2.1	2.1	2.2
			물가상승률	3.1	2.8	2.1	2.0	2.0	2.0	2.0
	중위	비관	실질 GDP성장률	3.4	2.5	1.5	1.0	0.7	0.3	0.5
			실질 임금상승률	2.4	2.8	2.0	1.7	1.6	1.6	1.6
			실질 금리	2.5	2.6	2.3	2.2	2.2	2.3	2.4
			물가상승률	3.0	2.6	2.0	2.0	2.0	2.0	2.0
		중립	실질 GDP성장률	3.8	2.9	1.9	1.4	1.1	0.7	0.9
			실질 임금상승률	2.7	3.1	2.4	2.1	2.0	2.0	2.0
			실질 금리	2.6	2.7	2.5	2.4	2.5	2.6	2.7
			물가상승률	3.2	2.8	2.2	2.0	2.0	2.0	2.0
	낙관	실질 GDP성장률	4.1	3.3	2.3	1.8	1.5	1.2	1.4	
		실질 임금상승률	3.1	3.5	2.8	2.5	2.4	2.4	2.4	
		실질 금리	2.7	2.9	2.7	2.6	2.8	2.9	3.1	
		물가상승률	3.3	3.1	2.4	2.1	2.0	2.0	2.0	
	고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9	3.0	2.2	1.9	1.6	1.4	1.8
			실질 임금상승률	2.7	3.0	2.3	2.0	1.9	1.9	2.0
			실질 금리	2.6	2.8	2.7	2.7	2.9	3.1	3.2
			물가상승률	3.2	2.9	2.3	2.1	2.0	2.0	2.0
재정 추계 위원회	저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6	2.8	1.6	0.9	0.4	-0.2	-0.3
			실질 임금상승률	2.8	3.3	2.6	2.3	2.2	2.1	2.0
			실질 금리	2.6	2.7	2.3	2.1	2.1	2.1	2.2
			물가상승률	3.1	2.8	2.1	2.0	2.0	2.0	2.0
	중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8	2.8	1.8	1.3	1.0	0.7	0.9
			실질 임금상승률	2.7	3.1	2.4	2.1	2.0	2.0	2.0
			실질 금리	2.6	2.7	2.5	2.4	2.4	2.5	2.7
			물가상승률	3.2	2.8	2.1	2.0	2.0	2.0	2.0
	고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9	3.0	2.1	1.8	1.5	1.4	1.8
			실질 임금상승률	2.7	3.0	2.3	2.0	1.9	1.9	2.0
			실질 금리	2.6	2.8	2.6	2.7	2.8	3.0	3.2
			물가상승률	3.2	2.9	2.3	2.0	2.0	2.0	2.0
	대안1	중립	실질 GDP성장률	3.8	2.8	1.8	1.3	1.0	0.8	1.1
			실질 임금상승률	2.7	3.1	2.4	2.1	2.0	2.0	2.1
			실질 금리	2.6	2.8	2.5	2.4	2.5	2.5	2.6
			물가상승률	3.1	2.8	2.1	2.0	2.0	2.0	2.0
	대안2	중립	실질 GDP성장률	3.8	2.8	1.7	1.3	1.0	0.8	1.1
			실질 임금상승률	2.7	3.1	2.3	2.1	2.0	2.1	2.2
			실질 금리	2.6	2.8	2.5	2.5	2.5	2.6	2.6
			물가상승률	3.1	2.8	2.1	2.0	2.0	2.0	2.0
대안3	중립	실질 GDP성장률	3.8	2.8	1.8	1.3	1.0	0.8	1.1	
		실질 임금상승률	2.7	3.1	2.4	2.0	2.0	2.0	2.1	
		실질 금리	2.6	2.7	2.5	2.4	2.5	2.6	2.7	
		물가상승률	3.2	2.8	2.1	2.0	2.0	2.0	2.0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표 30>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명목)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3
장기 재정 전망 협의회	저위	중립	명목 GDP성장률	6.7	5.6	3.7	2.9	2.5	1.9	1.7
			명목 임금상승률	5.9	6.1	4.6	4.3	4.2	4.1	4.0
			명목 금리	5.7	5.4	4.4	4.1	4.1	4.1	4.2
			기금운용수익률	6.2	6.0	4.8	4.5	4.5	4.5	4.6
	중위	비관	명목 GDP성장률	6.4	5.1	3.5	3.0	2.7	2.3	2.5
			명목 임금상승률	5.4	5.3	4.0	3.7	3.6	3.6	3.6
			명목 금리	5.5	5.2	4.3	4.2	4.2	4.3	4.4
			기금운용수익률	6.1	5.7	4.7	4.6	4.6	4.7	4.8
		중립	명목 GDP성장률	6.9	5.7	4.0	3.4	3.1	2.7	2.9
			명목 임금상승률	5.9	5.9	4.5	4.1	4.0	4.0	4.0
			명목 금리	5.7	5.5	4.6	4.4	4.5	4.6	4.7
			기금운용수익률	6.3	6.1	5.1	4.8	4.9	5.0	5.2
	낙관	명목 GDP성장률	7.3	6.3	4.7	3.9	3.5	3.2	3.4	
		명목 임금상승률	6.3	6.6	5.2	4.5	4.4	4.4	4.4	
		명목 금리	5.9	6.0	5.1	4.7	4.8	4.9	5.1	
		기금운용수익률	6.5	6.6	5.6	5.2	5.2	5.4	5.6	
	고위	중립	명목 GDP성장률	7.1	5.9	4.5	3.9	3.6	3.4	3.8
			명목 임금상승률	5.8	5.9	4.6	4.1	3.9	3.9	4.0
			명목 금리	5.8	5.7	5.0	4.8	4.9	5.1	5.2
			기금운용수익률	6.4	6.3	5.5	5.3	5.4	5.6	5.7
재정 추계 위원회	저위	중립	명목 GDP성장률	6.7	5.6	3.7	2.9	2.4	1.9	1.7
			명목 임금상승률	5.9	6.1	4.7	4.3	4.2	4.1	4.0
			명목 금리	5.7	5.4	4.4	4.1	4.1	4.1	4.2
			기금운용수익률	6.2	6.0	4.8	4.5	4.5	4.5	4.6
	중위	중립	명목 GDP성장률	6.9	5.6	4.0	3.3	3.0	2.7	2.9
			명목 임금상승률	5.9	5.9	4.5	4.1	4.0	4.0	4.0
			명목 금리	5.7	5.5	4.6	4.4	4.4	4.5	4.7
			기금운용수익률	6.3	6.1	5.0	4.8	4.9	5.0	5.1
	고위	중립	명목 GDP성장률	7.1	5.9	4.4	3.8	3.5	3.4	3.8
			명목 임금상승률	5.9	5.9	4.5	4.1	3.9	3.9	4.0
			명목 금리	5.8	5.7	4.9	4.7	4.8	5.0	5.2
			기금운용수익률	6.4	6.3	5.4	5.2	5.3	5.5	5.7
	대안1	중립	명목 GDP성장률	6.9	5.6	3.9	3.3	3.0	2.8	3.1
			명목 임금상승률	5.9	5.9	4.5	4.1	4.0	4.0	4.1
			명목 금리	5.7	5.5	4.6	4.4	4.5	4.5	4.6
			기금운용수익률	6.3	6.1	5.1	4.8	4.9	5.0	5.0
	대안2	중립	명목 GDP성장률	6.9	5.6	3.8	3.3	3.0	2.8	3.1
			명목 임금상승률	5.9	5.9	4.4	4.1	4.0	4.1	4.2
			명목 금리	5.7	5.5	4.6	4.5	4.5	4.6	4.6
			기금운용수익률	6.3	6.1	5.1	5.0	5.0	5.1	5.0
대안3	중립	명목 GDP성장률	6.9	5.6	3.9	3.3	3.0	2.8	3.1	
		명목 임금상승률	5.9	5.9	4.5	4.0	4.0	4.0	4.1	
		명목 금리	5.7	5.5	4.6	4.4	4.5	4.6	4.7	
		기금운용수익률	6.3	6.1	5.0	4.9	5.0	5.1	5.2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표 31> 경제활동참가율 조정 가정

(단위 : %)

	연령계층	2011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3
남자	15~19	6.3	6.2	9.8	14.9	19.9	24.7	27.5	30.8
	20~24	42.3	44.0	46.8	51.9	56.9	61.6	64.0	66.6
	25~29	77.6	75.8	77.0	79.0	81.0	82.9	84.0	85.3
	30~34	91.6	90.9	91.6	92.8	93.9	94.9	95.3	95.6
	35~39	94.4	93.4	93.5	94.3	95.2	95.9	96.3	96.6
	40~44	94.3	94.2	94.5	95.0	95.5	96.0	96.3	96.6
	45~49	93.0	92.9	93.2	94.1	95.1	95.9	96.3	96.6
	50~54	90.4	91.0	91.3	91.9	92.4	93.0	93.5	94.1
	55~59	83.8	84.1	85.0	86.6	88.3	89.9	90.8	91.7
	60~64	72.2	72.2	72.7	73.5	74.2	75.1	76.3	77.9
	65~69	53.8	55.6	56.3	56.6	56.8	57.1	57.8	58.7
	70~74	42.6	42.3	41.3	38.5	35.8	33.3	32.3	31.3
75세 이상	23.2	22.9	22.3	21.5	20.8	19.9	18.8	17.1	
여자	15~19	9.0	8.2	12.2	16.5	20.7	24.8	27.5	30.8
	20~24	52.3	50.5	53.4	58.3	63.1	67.6	70.0	72.6
	25~29	71.4	76.2	79.5	82.3	85.2	87.8	89.0	90.3
	30~34	55.4	60.5	65.5	70.7	75.8	80.6	83.0	85.6
	35~39	55.6	59.9	64.6	71.1	77.5	83.4	85.8	88.0
	40~44	65.7	69.7	75.7	79.1	82.6	85.8	87.5	89.5
	45~49	66.8	71.1	76.0	79.3	82.7	85.8	87.5	89.5
	50~54	62.3	64.2	68.5	73.0	77.5	81.7	83.8	86.0
	55~59	54.0	56.9	60.5	66.3	72.2	77.5	80.0	82.6
	60~64	42.2	45.2	48.6	53.1	57.5	61.8	64.5	67.8
	65~69	32.0	32.3	35.0	38.4	41.7	44.8	46.5	48.5
	70~74	25.3	26.6	27.0	26.0	25.0	24.0	23.3	22.3
75세 이상	11.7	13.7	14.1	13.4	12.7	11.9	10.5	8.5	

■ 개별변수 시나리오

- 기금투자수익률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0.5\%pt$, $\pm 1.0\%pt$ 적용
- 실질임금상승률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0.5\%pt$ 적용
-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1.0\%pt$, $\pm 5.0\%pt$ 적용
- 납부예외자 비율 시나리오는 최종값(2050년)을 기준으로 기본가정에 $\pm 5.0\%pt$ 적용

- 최종값과의 선형보간법을 통해서 2012~2049년 가정설정
- 지역가입자 징수율 시나리오는 최종값(2050년)을 기준으로 기본가정에 $\pm 5.0\%pt$ 적용
 - 2011~2015년의 가정은 기본가정과 동일하고 최종값과의 선형보간법을 통해서 2016~2049년 가정설정
-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시나리오는 최종값(2050년)을 기준으로 기본가정에 $\pm 5.0\%pt$ 적용
 - 2011~2019년의 가정은 기본가정과 동일하고 최종값과의 선형보간법을 통해서 2020~2049년 가정설정
- 조기노령연금수급률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0.5배 및 2배 설정

2. 민감도분석 결과

■ 조합시나리오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저위가정, 고위가정의 수지적자 발생시점은 2043년, 2046년으로 추계되며, 기금소진년도는 2058년, 2062년으로 기본가정 대비 ± 2 년의 변화를 가져옴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중위가정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비관적으로 가정한 경우 수지적자년도는 2043년, 기금소진년도는 2059년으로 추계되며, 낙관적으로 가정한 경우 수지적자년도는 2046년, 기금소진년도는 2061년으로 추계됨
- 재정추계위원회의 수정된 경제변수를 반영한 중위중립 가정(시나리오6)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부과방식비용률이 다소 높아지나 기금소진년도에는 변화가 없이 저위, 중위, 고위가정 각각 2058년, 2060년, 2062년으로 추계됨
- 기본가정에 비해 출산율을 좀 더 낙관적으로 가정한 대안1(1.7("20년)),

대안2(1.7('20년)→2.1('35년)), 대안3(2.1('45))의 경우 기금소진연도는 각각 2061년, 2061년, 2060년으로 추계되며, 출산율이 낙관적일수록 부과방식비용률은 낮아짐

- 인구 가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노인부양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과방식비용률에 큰 변화가 있음
 - 2083년 기준으로 통계청 저위가정의 부과방식비용률은 31.5%이나, 출산율이 정부목표(1.7명)에 도달 후 단계적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에 이르는 대안2의 경우 부과방식비용률이 15.0%임

■ 개별 시나리오

- 기금투자수익률을 $\pm 0.5\%pt$, $\pm 1.0\%pt$ 범위에서 변화시킬 경우의 재정 민감도는 매우 크게 나타남
 - 기금투자수익률의 0.5%pt 변화는 기금소진연도에 3년의 변화를 가져옴
 - 기금투자수익률의 1.0%pt 변화는 기금소진연도에 5~8년의 변화를 가져옴
- 임금상승률의 가정 변화는 수지적자 발생연도, 기금소진연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으나,
 - 임금상승률에 $+0.5\%pt$ 변화를 줄 경우, 수입과 지출의 규모 확대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부과소득기반이 강화되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 반대로 임금상승률에 $-0.5\%pt$ 변화를 줄 경우, 수입과 지출의 규모 축소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부과대상 소득기반이 약화되어 부과방식비용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pm 1.0\%pt$ 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pm 5.0\%pt$ 의 변화는 가입자 규모에 영향을 미쳐 기금소진

연도에 1년의 변화를 가져옴

- 납부예외자 비율, 징수율,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 대비)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의 $\pm 5.0\%$ pt 변화는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을 기본가정의 0.5배, 2배로 변화시킬 경우 수지 적자 발생연도는 각각 2044년, 2045년, 기금소진연도는 2060년으로 기본가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
 -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이 높아질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초반에 급여지출이 늘어나지만, 조기노령연금 급여액은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반에 급여지출 감소로 이어져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 민감도분석 결과

- 조합시나리오에서는 주로 인구와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기금소진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큰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부과방식비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출산율의 증가는 향후 가입자의 증가로 나타나 사망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상황의 개선도 큰 영향을 나타냄
 - 따라서, 출산율의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개별시나리오에 적용된 변수들은 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금소진시점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기금투자 수익률은 수입부분에만 작용하게 되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금투자수익률의 경우에도 부과방식비용률은 기본안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은 지출과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임

<표 32> 민감도분석 결과

시나리오		현행제도 유지 시		부과방식비용률			
		수지적자	기금소진	2050년	2070년	2083년	
기본가정		2044년	2060년	17.4%	22.6%	22.9%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저위중립	2043년	2058년	18.4%	28.8%	31.5%
		중위비관	2043년	2059년	18.3%	23.9%	24.2%
		중위낙관	2046년	2061년	16.6%	21.4%	21.5%
		고위중립	2046년	2062년	16.3%	19.1%	18.6%
	재정추계위원회	저위중립	2043년	2058년	18.5%	29.0%	31.7%
		중위중립	2044년	2060년	17.5%	22.8%	23.0%
		고위중립	2046년	2062년	16.3%	19.2%	18.7%
		대안1	2045년	2061년	16.6%	19.5%	18.5%
		대안2	2045년	2061년	16.5%	17.3%	15.0%
		대안3	2044년	2060년	17.2%	19.5%	16.8%
개별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 + 0.5%pt	2047년	2063년	17.4%	22.6%	22.9%
		기본가정 - 0.5%pt	2042년	2057년	17.4%	22.6%	22.9%
		기본가정 + 1.0%pt	2051년	2068년	17.4%	22.6%	22.9%
		기본가정 - 1.0%pt	2040년	2055년	17.4%	22.6%	22.9%
	임금상승률	기본가정 + 0.5%pt	2045년	2060년	16.4%	21.1%	21.3%
		기본가정 - 0.5%pt	2044년	2060년	18.5%	24.3%	24.6%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 + 1.0%pt	2045년	2060년	17.4%	22.7%	22.9%
		기본가정 - 1.0%pt	2044년	2060년	17.5%	22.6%	22.8%
		기본가정 + 5.0%pt	2045년	2061년	17.2%	22.8%	23.0%
		기본가정 - 5.0%pt	2043년	2059년	17.7%	22.5%	22.8%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비율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6%	22.8%	23.0%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5년	2060년	17.2%	22.5%	22.7%
	지역가입자징수율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5%	22.8%	23.0%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4%	22.5%	22.7%
	지역가입자소득수준(사업장 대비)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3%	22.6%	22.8%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2044년	2060년	17.5%	22.7%	22.9%
조기노령연금수급률	기본가정 × 0.5배	2044년	2060년	17.6%	23.1%	23.3%	
	기본가정 × 2배	2045년	2060년	17.0%	22.0%	22.3%	

제7장 재정평가

제7장 재정평가

1. 재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재정평가의 방법

-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지출발생에 맞추어서 수입흐름을 설계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재정평가 시에는 국민연금의 지출재원을 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 수익금으로만 한정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평가는
 -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를 추계함으로서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줌
- 앞서 제5장에서의 재정추계결과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 현행 보험료율로는 추계기간 동안인 향후 70년간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계됨
 - 부과방식비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83년에 23% 수준으로 현재 보험료율 9%와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험료 크기를 추계함으로서 재정을 평가하고자 함

■ 재정평가 기준

- 재정평가는 '재정평가기간',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적립기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의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

- 첫째, 재정평가기간은 재정추계기간과 동일하게 향후 70년으로 설정,
 - 둘째,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²³⁾을 기준으로 설정,
 - 셋째,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정함
-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에 대한 복수의 기준을 설정,
-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안정의 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바 복수의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함으로서,
 -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과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금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
- 기금적립 목표에 대한 4가지 기준
- 적립배율 2배 : 추계기간 말인 2083년에 적립배율 2배의 기금을 보유한다는 목표로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성격의 적립기금 보유를 목표로 함²⁴⁾
 - 적립배율 5배 : 추계기간 말인 2083년에 적립배율 5배의 기금을 보유한다는 목표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기금 보유를 목표로 함²⁵⁾

23) 적립배율은 해당년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기금 비율임

24) 미국의 사회보장연금(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에서 사용하는 재정평가지표인 Actuarial Balance는 추계기간 말의 '적립배율 1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본의 후생연금은 추계기간 말의 적립목표를 '적립배율 1배'로 하여 보험료율을 책정. 적립배율 1배 또는 2배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비상준비금 성격의 적립규모로서 의미를 가짐.

25) 캐나다의 사회보험 연금인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에서는 적립배율이 5배~6배인

- 수지적자 미발생 : 추계기간 말인 2083년까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이 경우 추계기간동안 적립기금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 상태에 있으므로 적립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연금 지불이 가능한 규모²⁶⁾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 장기적인 적립배율의 추이가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steady-state)한다는 목표로서, 이 경우 추계기간 이후에도 추계기간 이전과 유사한 재정 상태를 보이게 됨²⁷⁾

※ 2008년 재정계산과 동일한 재정평가 기준

2.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보험료율 추정을 위한 가정

- 적립기금에 대한 4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정하되 보험료율은 2015~2083년 사이에 고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상태에 대한 조건
 -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진행과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추계기간 중 최종 20년 동안의 적립배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적용²⁸⁾

상태에서 정상상태(steady-state) 유지.

26) 일본의 후생연금에서 1994년 재정계산 시 적용하였던 기준임.

27) 캐나다의 사회보험 연금인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에서는 정상상태 적립배율 유지를 재정평가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율 책정.

28) 기술적으로 2063~2083년 사이에 적립배율의 변화폭이 5%이내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적용함.

■ 보험료율 추정 결과

- 적립기금에 대한 4가지 목표를 적용하여,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계함
- 보험료율 추정결과
 - 적립배율 2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12.91%로 추정되었고,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15.85%로 추정됨

<표 33>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 위에서 추정된 각각의 보험료율 하에서 적립배율 및 적립기금 추이를 보면(<표 34>)
 - 보험료율 12.91% 적용 시, 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40년대에 80% 초반 수준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며, 적립배율은 장기적으로 2배 수준에 접근함
 - 보험료율 15.85% 적용 시, 적립배율은 장기적으로 17배 수준에서 안정되고, 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130%~140%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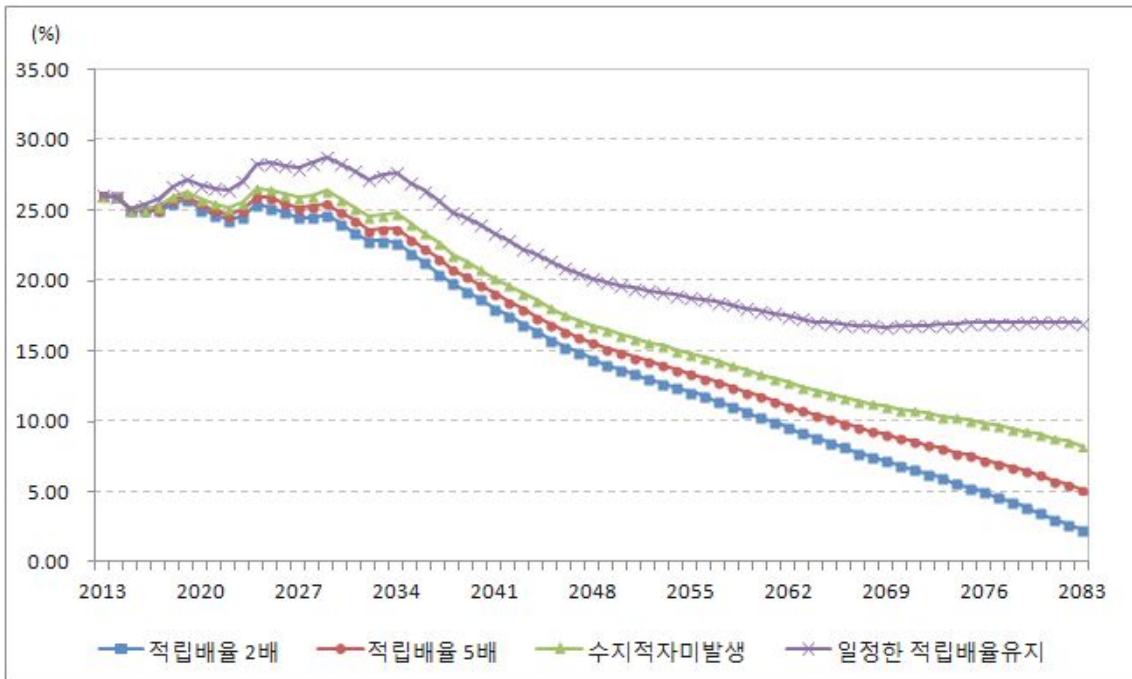
<표 34> 적립배율 및 적립기금 추이

(단위 : 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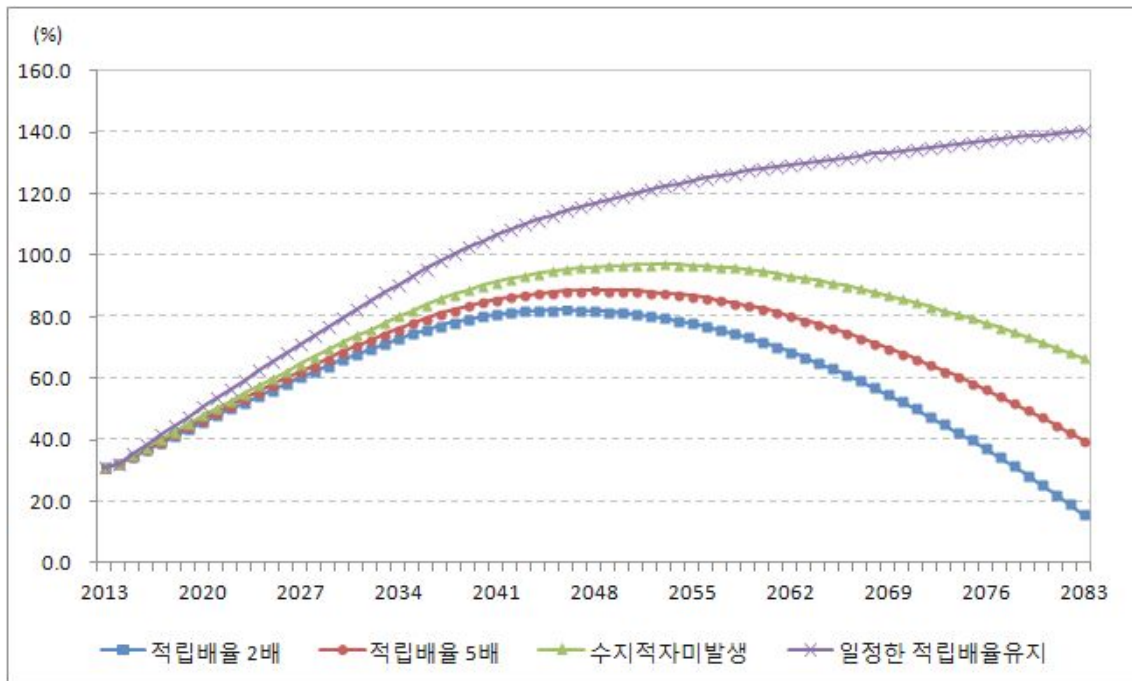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적립 배율	적립 기금 ¹⁾	적립 배율	적립 기금 ¹⁾	적립 배율	적립 기금 ¹⁾	적립 배율	적립 기금 ¹⁾
2013	26.10	31.1	26.10	31.1	26.10	31.1	26.10	31.1
2015	25.10	34.7	25.10	34.8	25.10	35.0	25.10	35.5
2020	25.10	45.9	25.50	46.8	25.80	47.9	26.80	50.8
2025	25.20	56.2	25.90	58.0	26.50	59.9	28.40	65.3
2030	24.10	66.0	24.90	68.7	25.80	71.6	28.30	79.8
2035	22.00	74.4	23.00	78.1	24.10	82.1	27.00	93.3
2040	18.70	80.1	19.70	84.9	20.80	90.1	24.00	104.6
2045	15.80	82.2	16.90	88.2	18.10	94.8	21.40	113.1
2050	13.70	81.3	14.90	88.7	16.20	96.8	19.70	119.4
2055	12.10	77.8	13.40	86.8	14.80	96.8	18.80	124.3
2060	10.30	71.9	11.80	82.8	13.40	94.8	17.90	128.1
2065	8.50	63.3	10.20	76.5	12.00	91.0	17.00	131.2
2070	6.90	52.5	8.80	68.3	10.90	85.8	16.80	134.1
2075	5.30	39.9	7.60	58.7	10.10	79.5	17.00	136.9
2080	3.50	25.5	6.20	47.5	9.10	71.9	17.10	139.2
2083	2.30	15.7	5.20	39.9	8.30	66.7	17.00	140.5

주 : 1)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그림 8] 재정목표에 따른 적립배율 추이



[그림 9] 재정목표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주: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부 록

- 부록 1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 부록 2 : 제2차 재정계산결과의 비교
- 부록 3 : 민감도분석의 재정수지표
- 부록 4 : 재정평가관련 재정수지표
- 부록 5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
- 부록 6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구성
- 부록 7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일지

부록1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전망은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관계 속에 결합하는 과정을 모형화한 재정추계 모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
 -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주로 가입자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및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증가되는 가입 기간과 연령 등이 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면 발생하게 되는 수급자 및 수급자의 급여액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요소들과의 관계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변수와 향후 산업화의 변화에 의한 고용이나 취업상태 등 외부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 재정추계모형은 이러한 연금제도내외의 변수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합리적으로 전망된 변수들의 예측치를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연금재정의 상태를 전망함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은 크게 가정변수입력부분,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 및 재정추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정변수입력부분”에서는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보험료율, 급여조건, 소득수준 및 납부예외자비율 등) 등의 외생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은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를 전망하며,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를 산출
 - 마지막으로, “재정추계부분”에서는 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 등 재정전망 결과를 산출

<부록 표 1-1> 재정추계모형 모듈(실행순서별)

모듈	입력변수	출력변수
가정변수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금리, 보험료율, 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 등
인구추계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률	인구수
가입자추계	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가입률	가입자수
가입기간추계	가입자수, 대기자수, 이동률, 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	가입기간별 가입자수, 가입기간별 대기자수
기본연금액	평균소득, 가입기간 가중치,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금리	기본연금액, 반환일시금액
연금보험료	가입자수, 평균소득, 보험료율, 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 임금상승률	보험료수입
노령연금	가입자수, 대기자수, 사망률,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률	노령연금 수급자수, 급여액
장애연금	가입자수, 장애발생률, 사망률,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률	장애연금 수급자수, 급여액
유족연금	가입자수, 대기자수, 노령연금 수급자수, 장애연금 수급자수, 사망률, 유유족률,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률	유족연금 수급자수, 급여액
중복급여	중복급여 대상자수, 평균급여액, 물가상승률	노령연금 수급자수, 급여액
반환일시금	가입자수, 사망률, 유유족률, 반환일시금액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급여액
결과정리	보험료수입, 급여지출, 임금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적립기금

○ 실질적인 장기재정추계모형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 외생변수들인 가정을 설정하는 모듈이 우선 수행되고 이 모듈에서 산출된 결과는 이하 거의 모든 모듈에서 입력자료로 활용됨
- 가정설정이 끝나면 인구추계 모듈이 수행되고 인구전망치를 입력자료로 가입자추계 모듈에서 가입자를 전망하며,
- 가입자 전망결과는 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모듈에서 입력자료로 활용됨
- 보험료 납부여부와 가입자 이동행태에 따른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모듈의 결과는 이후 수행되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 산출의 입력자료로 활용되고 기본연금액 모듈에서 산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출하며,

- 최종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적용하여 매년 적립기금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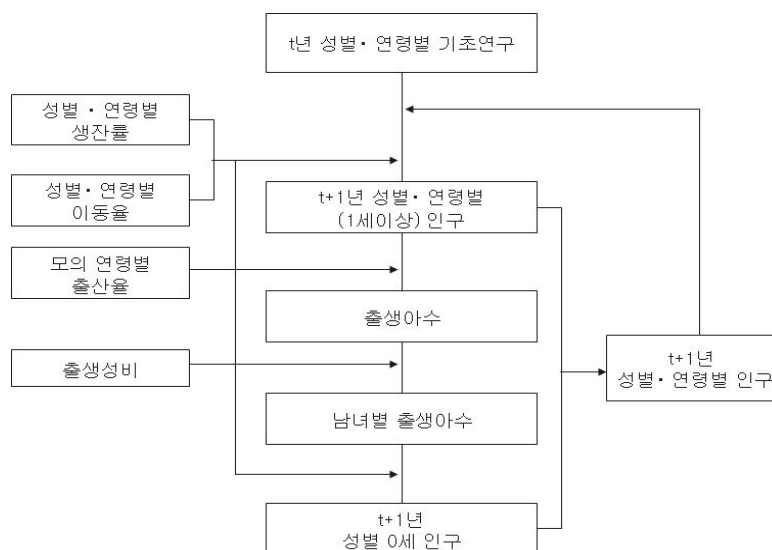
■ 인구추계

- 인구추계는 성별·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하여 특정연도 인구수에 이를 조합하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사용함
- 연도별·성별·연령별 인구수는 당해 연도 성별·연령별 인구수에 사망률과 순이민자수 등을 적용하여 구하며, 출생아수는 출산율과 출생성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P(t+n) = P(t)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아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부록 그림 1-1] 인구추계 흐름도



○ 조성법 구성요소

- 기준인구(base population)

- 인구추계가 시작이 되는 연도의 성·연령별 연앙인구로, 2010년 7월 1일 기준 남녀별 각 세별 인구를 기준인구로 설정

- 출산율 가정

- 출산율 가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설정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과거 추이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요인을 감안하는 것임
- 향후 출산율 변화는 어떠한 기제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인구추계를 저위, 중위, 고위의 세 가지 가정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 출산율 가정은 가장 있음직할 즉, 가능성 있도록 설정하며,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중위가정으로,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이 적은 가정을 고위 또는 저위 가정으로 설정

- 사망률 가정

- 사망률은 사회경제적 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이들 요인들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성 및 연령 요소만을 고려하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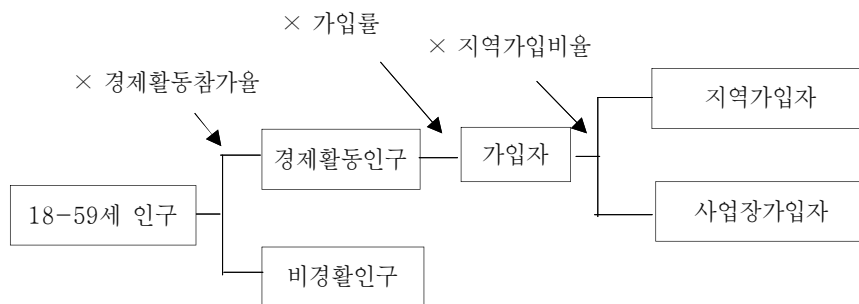
- 국제이동률 가정

- 일반적으로 국제이동은 추계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경제상황, 관련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변동 예측이 어려움
- 따라서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이동을 추정한 후, 그 패턴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가입자 추계

- 국민연금의 가입자 추계는 먼저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으로 미래의 가입대상 (18~59세) 연령범위의 인구 중 경제활동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를 추계하고, 최근의 경제활동인구와 가입자의 비율로 부터 추정된 가입률을 적용하여 전체 가입자를 추계한 후 지역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를 구분함

[부록 그림 1-2] 가입자 추계의 개념도



-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시나리오를 전제로 성별 연령계층별 구분된 인구그룹별 실적치(1986~2011년)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망하고, 그 이후는 외국의 경험 및 추세를 고려하여 예측함

<부록 표 1-2>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성별	연령계층	2011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3년
남자	15~19	6.3	6.2	9.8	16.6	23.3	29.3	31.3	32.9
	20~24	42.3	44.0	46.8	52.9	58.9	64.4	66.3	67.9
	25~29	77.6	75.8	77.0	79.7	82.3	84.8	86.3	87.9
	30~34	91.6	90.9	91.6	92.8	93.9	94.9	95.3	95.6
	35~39	94.4	93.4	93.5	94.3	95.2	95.9	96.3	96.6
	40~44	94.3	94.2	94.5	95.0	95.5	96.0	96.3	96.6
	45~49	93.0	92.9	93.2	94.1	95.1	95.9	96.3	96.6
	50~54	90.4	91.0	91.3	91.9	92.4	93.0	93.8	94.7
	55~59	83.8	84.1	85.0	86.6	88.3	89.9	90.8	91.7
	60~64	72.2	72.2	72.7	73.5	74.2	75.1	76.3	77.9
	65~69	53.8	55.6	56.3	56.6	56.8	57.1	57.8	58.7
	70~74	42.6	42.3	41.3	39.2	37.1	35.1	33.8	32.1
	75세이상	23.2	22.9	22.3	21.5	20.8	19.9	18.8	17.1
여자	15~19	9.0	8.2	12.2	18.2	24.1	29.4	31.3	32.9
	20~24	52.3	50.5	53.4	59.0	64.5	69.5	71.3	72.9
	25~29	71.4	76.2	79.5	83.0	86.5	89.7	91.3	92.9
	30~34	55.4	60.5	65.5	70.7	75.8	80.6	83.0	85.6
	35~39	55.6	59.9	64.6	71.1	77.5	83.4	85.8	88.0
	40~44	65.7	69.7	75.7	79.1	82.6	85.8	87.5	89.5
	45~49	66.8	71.1	76.0	79.3	82.7	85.8	87.5	89.5
	50~54	62.3	64.2	68.5	73.3	78.2	82.6	85.0	87.6
	55~59	54.0	56.9	60.5	66.7	72.8	78.5	81.0	83.6
	60~64	42.2	45.2	48.6	53.4	58.2	62.7	65.8	69.3
	65~69	32.0	32.3	35.0	39.0	43.0	46.7	48.3	49.9
	70~74	25.3	26.6	27.0	27.4	27.7	27.9	27.3	26.3
	75세이상	11.7	13.7	14.1	14.4	14.7	14.8	13.8	12.1

- 가입률은 최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로그함수형태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2015년에 선진국 수준인 90%까지 증가 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전체 가입률은 최근 실적분포(2011년)를 적용하여 성별·연령별 가입률로 전환

<부록 표 1-3> 가입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87.4	88.5	89.2	89.8	90.0

<부록 표 1-4> 성별·연령별 가입률(2011년 말 현재)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남자	100.0	57.3	90.7	94.9	88.3	91.0	84.1	90.0	92.2
여자	85.4	69.4	91.0	100.0	88.6	82.0	77.2	89.3	100.0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성비율은 최근 2011년도의 실적치인 사업장가입자 55.9%, 지역가입자 44.1%에서 장기적으로 2050년에 사업장 70%, 지역가입자 30%가 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는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현재보다 32%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부록 표 1-5> 성별·연령별 지역가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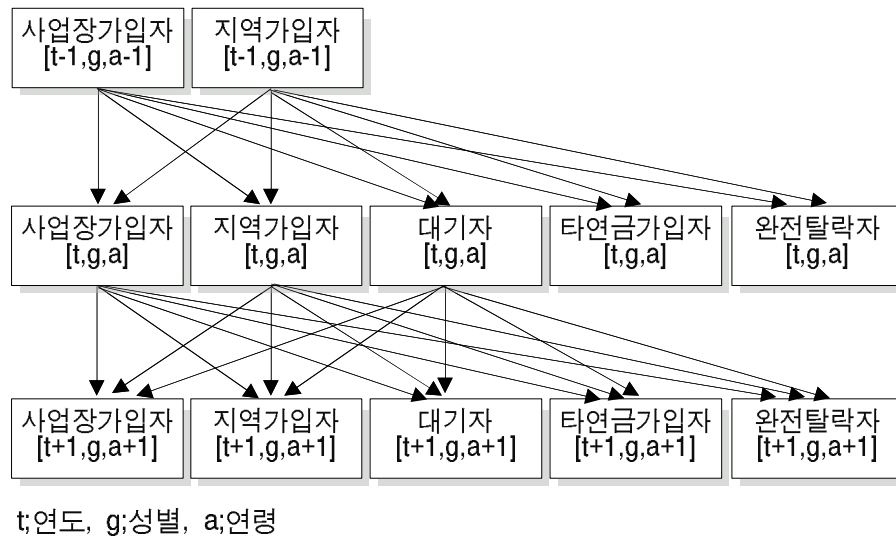
성별	연령계층	2011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남자	18~19세	37.7	33.6	30.2	27.0	24.0
	20~24세	50.1	44.6	40.2	35.9	31.9
	25~29세	36.1	32.2	28.9	25.9	23.0
	30~34세	32.4	28.8	26.0	23.2	20.6
	35~39세	33.8	30.1	27.1	24.3	21.5
	40~44세	39.5	35.2	31.7	28.4	25.2
	45~49세	45.0	40.2	36.1	32.3	28.7
	50~54세	51.4	45.8	41.3	36.9	32.8
여자	55~59세	58.5	52.2	47.0	42.0	37.3
	18~19세	22.1	19.7	17.8	15.9	14.1
	20~24세	30.6	27.3	24.6	22.0	19.5
	25~29세	33.2	29.6	26.6	23.8	21.2
	30~34세	41.7	37.2	33.4	29.9	26.6
	35~39세	44.5	39.7	35.7	32.0	28.4
	40~44세	47.8	42.6	38.3	34.3	30.4
	45~49세	53.8	48.0	43.2	38.6	34.3
50~54세	62.9	56.1	50.5	45.1	40.1	
55~59세	71.9	64.1	57.7	51.6	45.8	

■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가입기간별 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대기자²⁹⁾로 구분하고 가입종별 간, 공적연금 간 이동 및 사망, 국외이주로 인한 완전탈퇴를 고려하여 가입자의 이동률을 추정하고, 가입상태와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가입기간의 변화 과정을 모형화함
- 가입종별 가입자 및 대기자는 아래의 흐름도와 같이 이동하게 되는데, 즉 't-1'년도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t'년도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계속 가입하거나 대기자이외에 직역연금가입자(타연금으로 이동한자), 완전탈락자(사망이나 국외이주)로 탈퇴하게 되고, 't-1'년도의 대기자는 't'년도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거나 대기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으며, 직역연금가입자가 되거나 완전탈락자로 탈퇴할 수 있음
- 사망이나 국외이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 다시 재가입할 수 없는 자들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들의 국민연금 재가입은 고려하지 않되 연계대상자는 반영함

29) 대기자란 과거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으나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부록 그림 1-3] 가입자의 연간이동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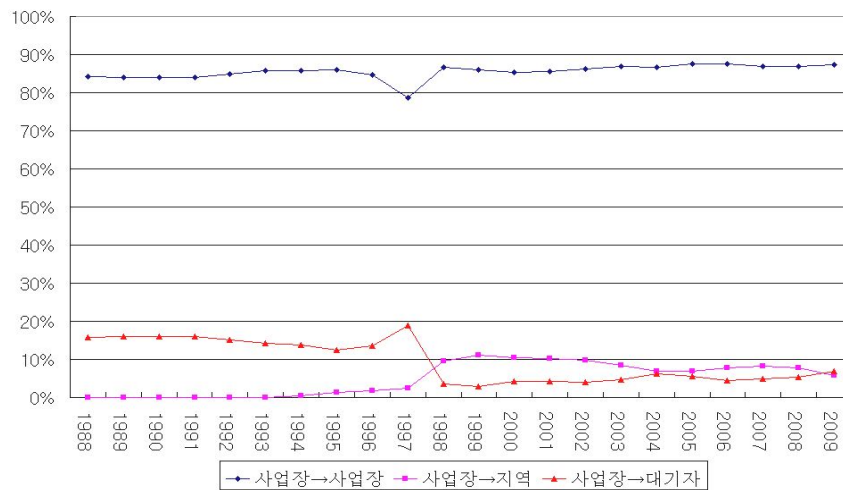
- 이동률을 적용하여 가입종별 간 계속가입자, 재가입자, 탈퇴자 등을 산출하게 되며, 계속가입자와 재가입자의 합과 인구로부터 산출된 총가입자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신규가입자를 산출
- 총가입자와 계속가입자와 재가입자의 합의 차이를 기준으로 신규가입자를 산출하는 이외에 이동한 가입자의 규모도 변동이 발생하므로 변동된 이동자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이동률을 재산출하는데, 특히 대기자로의 이동률의 경우 완전탈락율과 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을 고려하여 재산출함
- 국민연금의 신규가입자가 발생한 경우, 직역연금에서 탈퇴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들의 규모와 비교하여 직역연금 탈퇴자의 국민연금의 가입 가능성을 판단하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의 신규가입자의 규모와 연관성을 갖도록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규로 수급하게 되는 자들은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총가입자의 규모를 변동시킴
- 가입자의 이동행태에 따른 이동률은 실적자료에 의한 이동률의

추이를 근거로 산출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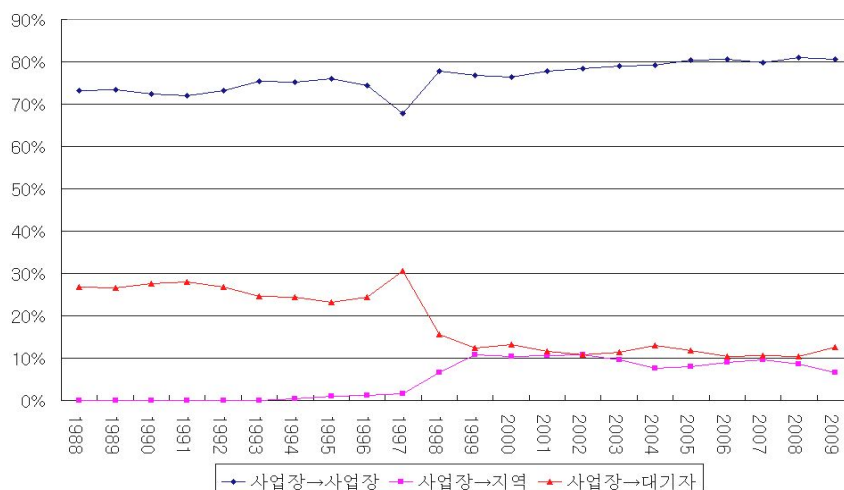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 계속가입률, 즉, 가입자에서 가입자로 계속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며, 특히 여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서 대기자로의 이동률이 10%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부록 그림 1-4] 사업장가입자의 이동률(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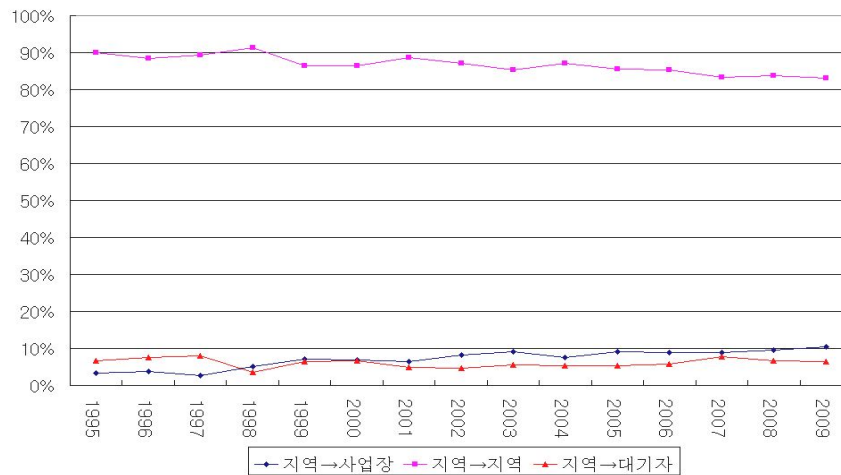
[부록 그림 1-5] 사업장가입자의 이동률(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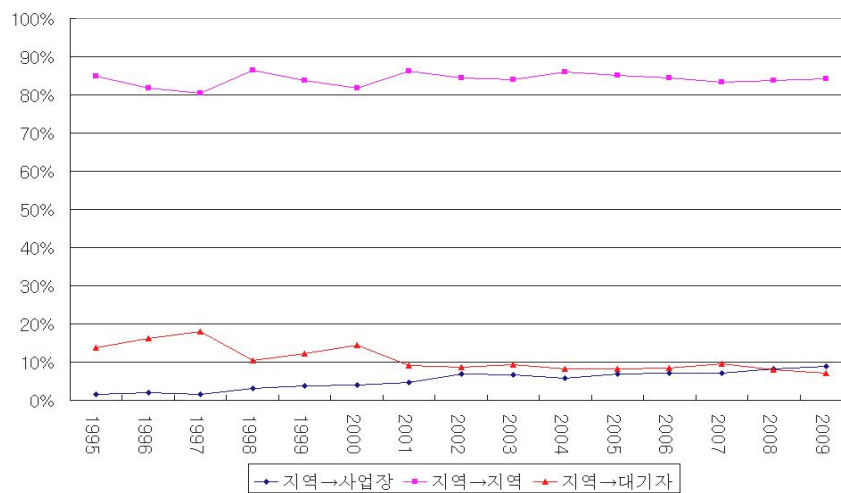
- 지역가입자의 경우,

- 남자 지역가입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이동률이 사업장 범위 확대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자 지역가입자의 대기자로의 이동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고 사업장 가입자로의 이동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부록 그림 1-6] 지역가입자의 이동률(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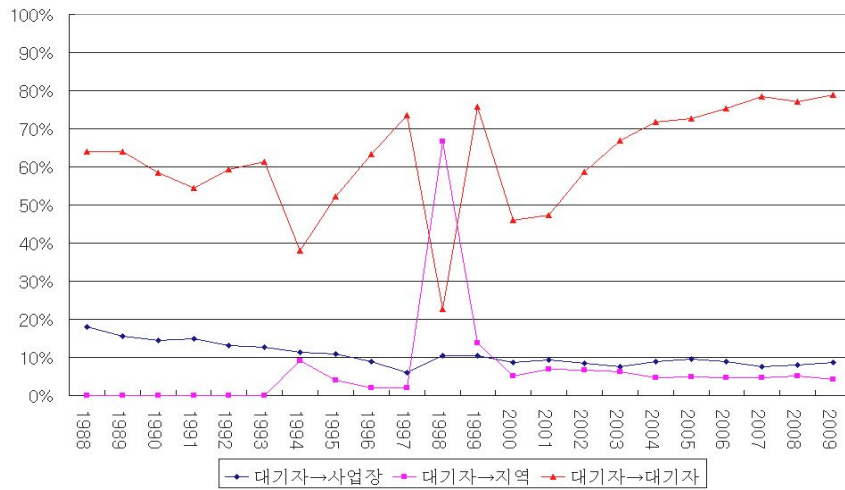
[부록 그림 1-7] 지역가입자의 이동률(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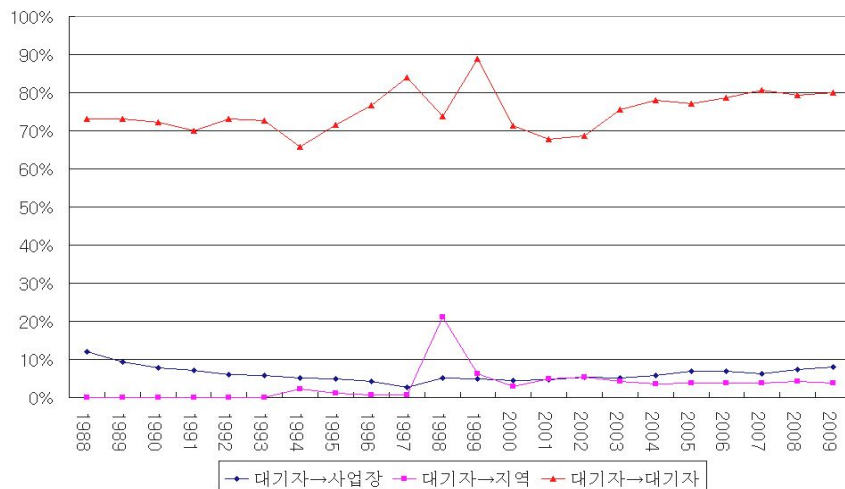
- 대기자의 경우,

- 1999년 도시지역 지역가입자의 확대는 특히 남자 대기자의 이동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남자 대기자의 대기자로의 이동률이 20% 초반대로 하락한 반면 여자 대기자의 대기자로의 이동률은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가입자로의 이동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부록 그림 1-8] 대기자의 이동률(남자)



[부록 그림 1-9] 대기자의 이동률(여자)



<부록 표 1-6> 가입자의 이동률

(단위 : %, 2010년 기준)

구분 금년도 전년도	남자					여자				
	사업장	지 역	대기자	타연금 가입자	완전 탈퇴자	사업장	지 역	대기자	타연금 가입자	완전 탈퇴자
사업장	87.29	5.76	6.48	0.11	0.36	80.66	6.65	12.69	0.18	0.15
지역	10.42	83.09	6.03	0.10	0.36	8.81	84.17	7.02	0.10	0.15
대기자	8.72	4.19	76.93	9.80	0.36	7.95	3.79	83.84	4.26	0.15

-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 이외에 직역연금가입자의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을 모형화함
- 직역연금가입자의 탈퇴율 및 가입자 전망은 각 직역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율이나 관련 연구자료를 활용

<부록 표 1-7>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단위 : %)

구분	계	공무원	사학	군인
계	65.25	68.15	58.12	70.88
남	76.61	79.45	66.81	79.57
여	46.43	45.94	52.52	7.16

■ 보험료수입 추계

- 보험료수입은 가입종별로 나누어 계산
 -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연령별 지역가입자수에 성별·연령별 평균 소득, 성별·연령별 징수율, '1-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율' 및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begin{aligned} \text{보험료수입}_{\text{사업장}} &= \text{가입자수}_{\text{사업장}}[t,g,a] \times \text{평균소득}_{\text{사업장}}[t,g,a] \\ &\quad \times \text{징수율}_{\text{사업장}}[t] \times \text{보험료율}[t]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보험료수입}_{\text{지역}} &= \text{가입자수}_{\text{지역}}[t,g,a] \times \text{평균소득}_{\text{지역}}[t,g,a] \\ &\quad \times \text{징수율}_{\text{지역}}[t] \times (1 - \text{납부예외자 비율}_{\text{지역}}[t,g,a]) \\ &\quad \times \text{보험료율}[t] \end{aligned}$$

(t : 연도, g : 성별, a : 연령)

- 추계산식에서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평균소득, 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을 사용하나 이와 관련된 입력자료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계산식에 맞추어서 자료구조를 전환해줌

- 평균소득, 징수율, 납부예외자 비율

- 평균소득은 임금상승률과 추계 시작연도의 가입종별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추정

- 우선 가입종별로 연도별 평균소득을 추정하고 다음으로 가입종별·연도별·성별·연령별 평균소득으로 전환

- 가입종별 전체소득을 성별·연령별 소득($W_{\text{사업장}}[t,g,a]$, $W_{\text{지역}}[t,g,a]$)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은 가입종별 평균소득($W_{\text{사업장}}[t]$, $W_{\text{지역}}[t]$) 대비 성별·연령별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정의되는 소득지수($I_{W_{\text{사업장}}}[t,g,a]$, $I_{W_{\text{지역}}}[t,g,a]$)를 적용

$$W_{\text{사업장}}[t,g,a] = W_{\text{사업장}}[t] \times I_{W_{\text{사업장}}}[t,g,a]$$

$$W_{\text{지역}}[t,g,a] = W_{\text{지역}}[t] \times I_{W_{\text{지역}}}[t,g,a]$$

-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성별·연령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고 지역 가입자는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징수율을 적용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징수율은 100%에 가깝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징수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징수율($RC_{지역}[t]$)을 성별·연령별 징수율($RC_{지역}[t, g, a]$)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전체 징수율에 성별·연령별 징수율 지수($I_{RC}[g, a]$)를 곱해 주는 방법을 사용

$$RC_{지역}[t, g, a] = RC_{지역}[t] \times I_{RC}[g, a]$$

- 납부예외자비율의 경우도 연도별 납부예외자비율을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율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징수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연령별 비율의 차이를 지수화한 납부예외자비율 지수를 사용하며, 납부예외자비율 지수는 전체 납부예외자 비율 대비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율임
-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R_{ex}[t, g, a]$)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R_{ex}[t]$)에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I_{R_{ex}}[g, a]$)를 곱하여 산출함

$$R_{ex}[t, g, a] = R_{ex}[t] \times I_{R_{ex}}[g, a]$$

- 소득지수는 최근시점을 기준으로 1988~2010년의 과거 연도별 소득지수와 2010년 이후 미래의 소득지수 추정값이 필요
 - 1988~2010년의 소득지수는 과거 가입종별 성별·연령별 소득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적에서 산출된 값을 그대로 적용
 - 미래의 성별·연령별 소득추정을 위한 소득지수는 미래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최근 실적자료(2010년)에 기초해서 불변값 적용
- 징수율지수 및 납부예외자비율지수는 연도별 추이가 관찰되나 향후 추가적인 추세 변화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장 최근값인 2010년의 지수를 기초로 설정

<부록 표 1-8> 성별·연령별 소득지수

연령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8	0.467	0.478	0.962	0.872
19	0.508	0.595	1.013	0.955
20	0.499	0.561	0.927	0.916
21	0.526	0.573	0.859	0.826
22	0.571	0.600	0.879	0.816
23	0.620	0.639	0.902	0.831
24	0.660	0.677	0.920	0.867
25	0.700	0.709	0.851	0.821
26	0.752	0.738	0.848	0.819
27	0.816	0.780	0.861	0.841
28	0.891	0.823	0.891	0.874
29	0.968	0.874	0.889	0.878
30	1.039	0.904	0.910	0.901
31	1.101	0.910	0.930	0.923
32	1.148	0.869	0.944	0.934
33	1.188	0.834	0.962	0.950
34	1.229	0.789	0.974	0.959
35	1.270	0.756	0.991	0.964
36	1.307	0.723	1.003	0.967
37	1.334	0.720	1.019	0.970
38	1.335	0.683	1.024	0.964
39	1.336	0.662	1.029	0.956
40	1.344	0.636	1.030	0.956
41	1.352	0.642	1.032	0.957
42	1.358	0.638	1.041	0.958
43	1.357	0.639	1.042	0.961
44	1.350	0.631	1.045	0.960
45	1.343	0.627	1.047	0.964
46	1.334	0.620	1.054	0.966
47	1.331	0.617	1.051	0.959
48	1.322	0.617	1.058	0.964
49	1.282	0.599	1.052	0.953
50	1.253	0.594	1.048	0.955
51	1.224	0.587	1.052	0.955
52	1.187	0.580	1.056	0.956
53	1.159	0.576	1.066	0.963
54	1.116	0.572	1.079	0.975
55	1.077	0.556	1.100	0.985
56	1.002	0.521	1.103	0.975
57	0.938	0.508	1.093	0.966
58	0.859	0.477	1.064	0.932
59	0.830	0.470	1.052	0.907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부록 표 1-9>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징수율지수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18~25	0.829	0.741	43	0.910	0.805
26	0.835	0.751	44	0.927	0.816
27	0.835	0.764	45	0.946	0.831
28	0.840	0.785	46	0.966	0.849
29	0.832	0.789	47	0.987	0.873
30	0.830	0.787	48	1.010	0.895
31	0.819	0.776	49	1.039	0.927
32	0.813	0.770	50	1.066	0.963
33	0.811	0.764	51	1.092	1.001
34	0.813	0.763	52	1.117	1.037
35	0.821	0.764	53	1.145	1.073
36	0.825	0.764	54	1.173	1.112
37	0.833	0.772	55	1.199	1.150
38	0.842	0.778	56	1.225	1.185
39	0.856	0.788	57	1.251	1.215
40	0.867	0.791	58	1.279	1.246
41	0.880	0.794	59	1.293	1.259
42	0.896	0.800	-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부록 표 1-10>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별 납부예외자비율지수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18~25	1.560	1.553	43	0.881	0.854
26	1.553	1.545	44	0.850	0.833
27	1.536	1.529	45	0.822	0.815
28	1.524	1.520	46	0.796	0.802
29	1.495	1.497	47	0.767	0.793
30	1.450	1.460	48	0.736	0.789
31	1.395	1.414	49	0.706	0.785
32	1.348	1.370	50	0.678	0.782
33	1.298	1.319	51	0.655	0.783
34	1.238	1.253	52	0.631	0.783
35	1.163	1.170	53	0.608	0.787
36	1.114	1.111	54	0.584	0.791
37	1.083	1.072	55	0.558	0.800
38	1.063	1.047	56	0.533	0.813
39	1.028	1.006	57	0.510	0.826
40	0.988	0.963	58	0.488	0.845
41	0.952	0.921	59	0.477	0.853
42	0.913	0.882	-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기본연금액 추계

○ 기본연금액 추계

-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이용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출
- 기본연금액 산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sum_t c_t \times (\alpha_t A + \beta_t B) \times I_t$$

- A 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 B 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으로서 과거소득을 A 값의 상승률 기준으로 재평가한 후 평균한 값
 - c 는 급여계수로서 1988~1998에는 2.4, 1999~2007에는 1.8, 2008년에는 1.5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매년 0.015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1.2가 됨
 - α 와 β 는 소득재분배 정도를 결정하는 계수로서 1998~1998년에 α 는 1, β 는 0.75이었으나, 1999년 이후에는 α 와 β 모두 1
 - I_t 는 지시자(indicator)변수로서 t 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1, 납부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가지며, 이에 따라 개인의 생애 총 가입기간을 d 라고 하면, $d = \sum_t I_t$ 임
- 기본연금액 산식에서 B 값을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평균인 $B_{g,a,d}$ 로 대체하면,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평균 기본연금액($BPA_{g,a,d}$)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begin{aligned} BPA_{g,a,d} &= \frac{1}{n_{g,a,d}} \sum_j \sum_t c_t (\alpha_t A + \beta_t B_{g,a,d}) \times I_{t,j} \\ &= \sum_t c_t (\alpha_t A + \beta_t B_{g,a,d}) \times \frac{1}{n_{g,a,d}} \sum_j I_{t,j} \\ &= \sum_t c_t (\alpha_t A + \beta_t B_{g,a,d}) \times \bar{I}_t \end{aligned}$$

· $n_{g,a,d}$: 성별(g)·연령별(a)·가입기간별(d) 가입자수

· \bar{I}_t : $\bar{I}_t = \frac{1}{n_{g,a,d}} \sum_{j=1}^{n_{g,a,d}} I_{t,j}$ 로서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집단의 구성원

중 t 년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비율

-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가입자의 평균 기본연금액인 $BPA_{g,a,d}$ 가 위와 같이 나타내짐에 따라 기본연금액($BPA_{g,a,d}$)의 추정문제는 $B_{g,a,d}$ 와 \bar{I}_t 의 추정으로 귀결되며,
- $B_{g,a,d}$ 은 개인별 소득을 성별·연령별 평균소득($\bar{W}_{t,g,a}$)으로 대치하면 아래와 같으며

$$B_{g,a,d} = \frac{1}{d} \sum_t \bar{W}_{t,g,a} \times \bar{I}_t$$

- t 시점의 보험료 수입추계 시 사용한 가입자수와 징수율, 납부예외자 비율 및 가입자의 소득을 사용하여 $\bar{W}_{t,g,a}$ 와 \bar{I}_t 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B_{g,a,d}$ 를 추정
- 2008재정계산 모형에서는 보험료납부실적에 대한 정보는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기여량' 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는데,
- t 시점 현재 성별(g) 연령별(a) 가입기간별(d) 가입자 집단이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 납부 연수(年數)의 총합을 총기여량($TotCont[t,g,a,d]$)이라 하고, 각 집단이 i 년 전인 $t-i$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 납부실적을 $Cont[t,g,a,d,t-i]$ 라고 하면 $TotCont[t,g,a,d]$ 와 $Cont[t,g,a,d,t-i]$ 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음

$$TotCont[t,g,a,d] = \sum_i Cont[t,g,a,d,t-i]$$

- 총기여량 중에서 과거 각 연도에 납부한 기여량의 상대적 비중을 $f[t,g,a,d,t-i]$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f[t,g,a,d,t-i] = \frac{Cont[t,g,a,d,t-i]}{TotCont[t,g,a,d]}$$

- 각 연도의 기여량 $Cont[t,g,a,d,t-i]$ 중에서 그 당시, 즉 $t-i$ 시점에

사업장가입자로서 기여한 량을 $Cont[t, g, a, d, t-i]_{사업장}$, 지역가입자로서 기여한 량을 $Cont[t, g, a, d, t-i]_{지역}$ 라고 하면 아래의 식이 성립

$$Cont[t, g, a, d, t-i] = Cont[t, g, a, d, t-i]_{사업장} + Cont[t, g, a, d, t-i]_{지역}$$

- t연도 기준 성별(g) 연령별(a) 가입기간별(d) 가입자집단이 i년 전(前)인 t-i연도에 기여한 기여량 $Cont[t, g, a, d, t-i]$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기여량의 비중을 $r[t, g, a, d, t-i]_{사업장}$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내짐

$$r[t, g, a, d, t-i]_{사업장} = \frac{Cont[t, g, a, d, t-i]_{사업장}}{Cont[t, g, a, d, t-i]}$$

- 2008재정계산 모형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t시점에서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생애평균소득($B^{old}[t, a, g, d]$)을 아래와 같이 추정

$$B^{old}[t, g, a, d] = \sum_{i=1}^{a-18} \{ W_{사업장}[t-i, g, a-i] \times r[t, g, a, d, t-i]_{사업장} + W_{지역}[t-i, g, a-i] \times (1 - r[t, g, a, d, t-i]_{사업장}) \} \times \frac{A[t-1]}{A[t-i]} \times f[t, g, a, d, t-i]$$

- 2008재정계산 모형의 기본연금액 추정방법은 실적자료에서 나타나는 생애평균소득과 가입기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생애평균소득점수(생애평균소득을 직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준 값)와 가입기간사이에 다음의 관계식을 적용하여 개선함

$$B^s(g, a, d) = \alpha + \beta_1 d + \beta_2 R_{wk}(g, a, d)$$

(g : 성별, a : 연령 d: 가입기간)

B^s : 생애평균소득점수,

α : 회귀모형의 상수,

β_1, β_2 : 회귀계수,

R_{wk} :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별 사업장기여비율, 즉 이 코호트가 현재까지 기여한 보험료실적 중에서 사업장가입자로서 기여한 실적의 비중

- 생애소득추정값 B^{alt} 는 생애평균소득점수(B^s)에 가입자 전체소득(A)을

곱하여 도출

- 단, B^{alt} 를 재정추계 모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급여추계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 필요

- 과거모형에서의 생애평균소득 추정값 B^{old} 는 성별·연령별 보험료 수입추계와 급여지출추계 사이에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B^{old} 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조정

- 먼저 아래의 식을 만족시키는 $\gamma[t,g,a]$ 를 찾아서

$$\begin{aligned} & \sum_d B^{old}[t,g,a,d] \times Ins[t,g,a,d] \\ & = \gamma[t,g,a] \times \sum_d B^{alt}[t,g,a,d] \times Ins[t,g,a,d] \end{aligned}$$

- 위 식을 만족시키는 $\gamma[t,g,a]$ 와 B^{alt} 로부터 최종적으로 생애평균 소득($B^{new}[t,g,a,d]$)을 다음과 같이 추정

$$B^{new}[t,g,a,d] = \gamma[t,g,a] \times B^{alt}[t,g,a,d]$$

- 결과적으로 기본연금액(BPA)은 아래와 같이 산출됨

$$\begin{aligned} & BPA[t,g,a,d] \\ & = d \times \sum_{i=1} c_{t-i} \alpha_{t-i} A(t-1) + \beta_{t-i} B^{new}[t,g,a,d] \times f[t,g,a,d,t-i] \end{aligned}$$

(t : 연도, g : 성별, a : 연령 d: 가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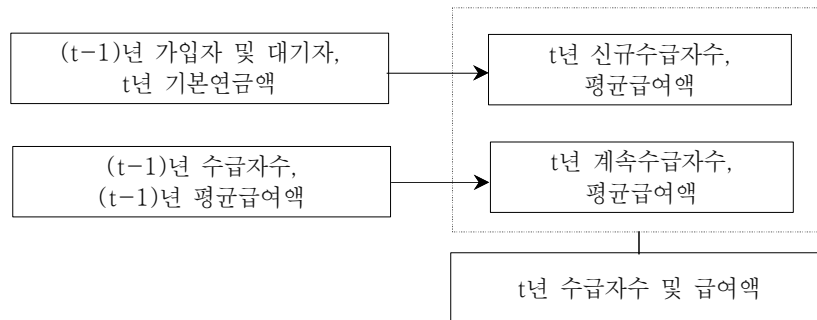
■ 수급자 및 급여액추계

- 수급자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수급자와 전년도에 이어서 수급을 계속하는 계속수급자로 나뉘는데,

-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 가입자와 대기자로부터 수급조건과 발생률을 적용하여 신규수급자를 구하고,
- 전년도 수급자 중에서 사망 등으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속수급자를 구해 이들의 합으로 연차별 수급자를 산출함(유량방식(flow))

- 급여액은 수급자수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하는데,
 -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기본연금액을 토대로 하여 산출하고, 계속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년도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을 물가 상승률로 인상함

[부록 그림 1-10] 수급자 및 급여액 추계 흐름도



- 노령연금 수급자 산출
 -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수급자를 산출하는데,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자들의 비율을 재직수급률로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를 각각 구분함
 -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연령에 따른 재직수급률 감소추이를 이용하여 출생 코호트별 재직수급률을 추정하였으며, 2033년³⁰⁾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30)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상향과 연동하여 상향되며,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69세까지로 동일함. 이에 따라 2033년도까지의 재직수급률은 이전연도의 재직수급률을 토대로 결정하고 2033년도 이후부터는 동일한 값을 적용함.

<부록 표 1-11> 재직수급률

연령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40년
61	0.0949	-	-	-	-
62	0.0851	0.0851	-	-	-
63	0.0761	0.0761	0.0761	-	-
64	0.0690	0.0690	0.0690	0.0690	-
65	0.0619	0.0619	0.0619	0.0619	0.0619
66	-	0.0548	0.0548	0.0548	0.0548
67	-	-	0.0477	0.0477	0.0477
68	-	-	-	0.0406	0.0406
69	-	-	-	-	0.0335
61	0.0272	-	-	-	-
62	0.0259	0.0259	-	-	-
63	0.0248	0.0248	0.0248	-	-
64	0.0229	0.0229	0.0229	0.0229	-
65	0.0210	0.0210	0.0210	0.0210	0.0210
66	-	0.0191	0.0191	0.0191	0.0191
67	-	-	0.0172	0.0172	0.0172
68	-	-	-	0.0152	0.0152
69	-	-	-	-	0.0133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산출

- 특례노령연금은 제도 초기 및 제도 개정 시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일정 연령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만족하면 60세에 연금을 수급하도록 한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 1995년 농어촌지역 확대, 그리고 1999년 도시지역 확대에만 적용되어 2010년도 까지만 신규수급자가 발생함³¹⁾

- 이에 따라 특례노령연금은 계속수급자만 산출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산출

-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연령조건과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대상자

31) 제도 도입과 농어촌확대 시는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1999년 도시지역확대 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하였으므로, 농어촌지역확대 시 가입한 자가 2010년 6월까지 신규수급자로 발생하고 더 이상의 신규수급자가 발생되지 않음. 하지만 2011년 말 기준으로 매월 약 500명 정도의 신규수급자가 발생되고 있음. 실제적으로 이들은 청구지연으로 인하여 신규로 발생하는 자임. 하지만 모형에서는 청구 지연으로 인한 신규수급자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조기수급에 대한 의사를 가진 자의 비율을 조기노령연금수급률로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를 산출

- 조기노령연금수급률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9년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6년 소득활동 기준변경과 1999년 제도 확대에 가입을 시작한 자들이 10년의 가입기간을 만족하게 되는 2009년 시점에 가입자가 대폭 증대된 결과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를 추이에 반영하는데 무리가 따르므로 최근 실적자료(2010년)를 이용하여 조기노령연금수급률을 설정하되 대기자와 가입자를 구분하여 적용함

<부록 표 1-12> 조기노령연금수급률

(단위 : %)

연령	대기자		가입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5세	18.84	38.01	1.82	3.31
56세	21.11	32.98	0.89	1.46
57세	19.19	23.95	1.06	1.67
58세	20.93	23.05	0.99	1.18
59세	18.69	19.73	0.70	0.92

○ 장애연금 수급자 산출

- 장애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의 규모와 장애발생률에 의해서 규모가 결정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부터 4급까지 구분
- 장애발생률은 1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 중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의 비율로 구하며, 최근 5년 동안의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산출
- 장애발생률은 2006년 0.1%수준에서 2010년 0.06%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심사규정의 개정과 장애심사담당자의

전문성장화 등으로 장애심사가 엄격해진 영향으로 분석되나, 이러한 감소추이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의 장애발생률은 최근 연도인 2010년도의 수준으로 함

<부록 표 1-13> 장애발생률(남자)

연령계층	1급	2급	3급	4급
18~19	0.0000054	0.0000088	0.0000150	0.0000288
20~24	0.0000084	0.0000130	0.0000197	0.0000302
25~29	0.0000164	0.0000280	0.0000468	0.0000688
30~34	0.0000239	0.0000517	0.0000932	0.0001210
35~39	0.0000357	0.0000731	0.0001326	0.0001740
40~44	0.0000517	0.0001186	0.0002060	0.0002388
45~49	0.0000830	0.0001983	0.0003472	0.0003258
50~54	0.0001475	0.0003510	0.0005583	0.0004476
55~59	0.0003154	0.0006723	0.0010233	0.0006287
60~64	0.0005123	0.0010918	0.0016619	0.0010210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부록 표 1-14> 장애발생률(여자)

연령계층	1급	2급	3급	4급
18~19	0.0000009	0.0000012	0.0000014	0.0000007
20~24	0.0000032	0.0000048	0.0000062	0.0000041
25~29	0.0000093	0.0000195	0.0000291	0.0000184
30~34	0.0000172	0.0000383	0.0000744	0.0000415
35~39	0.0000138	0.0000493	0.0000714	0.0000421
40~44	0.0000142	0.0000411	0.0000811	0.0000598
45~49	0.0000278	0.0000795	0.0001279	0.0001163
50~54	0.0000464	0.0001133	0.0002179	0.0001893
55~59	0.0000937	0.0002043	0.0003900	0.0002852
60~64	0.0001356	0.0002957	0.0005644	0.0004127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유족연금 수급자 산출

-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함
 - 사망률³²⁾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산출한 다음 유유족률(有遺族率)을

32) 인구추계의 사망률을 적용

적용하여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를 구하고, 사망자에서 수급자로의 전환은 사망자와 수급자의 관계를 이용함

- 유유족률(有遺族率)은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의 비율로 정의하여 사망자를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와 수급자로 구분하고, 이 구분에 따라 각각의 방법으로 유유족률(有遺族率)을 구함

<부록 표 1-15> 연령계층별 유유족률

연령계층	가입자 및 대기자		노령연금수급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24	0.049563	0.089720	-	-
25-29	0.225937	0.290232	-	-
30-34	0.573438	0.704426	-	-
35-39	0.746872	0.864626	-	-
40-44	0.774350	0.847984	-	-
45-49	0.769923	0.755365	-	-
50-54	0.752403	0.618547	-	-
55-59	0.751053	0.548564	0.844352	0.570588
60-64	-	-	0.859976	0.416525
65-69	-	-	0.865125	0.295992
70-74	-	-	0.859656	0.242224
75-79	-	-	0.811091	0.218499
80-84	-	-	0.697700	0.103600
85-89	-	-	0.583800	0.047500
90이상	-	-	0.409100	0.019100

○ 일시금 추계

- 일시금의 추계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수를 산출하고 이들의 가입정보를 통해서 급여액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수급자수 산출은 수급사유별로 각각 산출하여야 하며,
 - ‘60세 도달자’는 가입기간별 가입자추계모듈의 결과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해당연도에 60세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들로 산출
 -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수급자’는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사망률과 유유족률(有遺族率)을 적용하여 산출

- ‘국외이주로 인한 수급자’는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 국외이주한 자와 국적상실한 자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중복급여 추계

- 중복급여는 급여간의 조합을 의미하며, 모형에서는 중복급여 중 비교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급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중복만을 다루었음
- 즉,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³³⁾을 반영함
- 중복급여의 산출방법은 수급자의 가입이력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함

■ 적립기금추계

- 총수입은 연금보험료 수입, 투자수익의 합으로 구성되고, 총지출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으로 이루어지며, 총수입과 총지출의 수지차가 전년도의 적립기금에 누적되어 금년도의 적립기금이 됨
- 이자수입은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으로 각각 나누어서 투자된 적립기금에 각 부문별 이자율이 곱해져 총 이자수입이 결정됨
- 투자기간이 종료된 기금은 당해 연도 운용자금으로 회수되며, 각 부문별 회수자금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의 경우 5년 전에 각 부문에 투자된 금액이 회수되고 금융부문은 3년 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수됨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차는 신규조성자금을 의미하며, 당해

33)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가족의 기여에 의한 유족연금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노령연금이 발생되어 중복이 되는 경우임.

연도 적립기금은 신규조성자금과 전년도 적립기금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신규조성자금에 만기회수금이 더해진 새로운 기금운용자금은 각 부문별로 투자배분비율만큼 나뉘어져 재투자됨

부록2 : 제2차 재정계산과의 비교

■ 주요가정 비교

○ 인구 가정

<부록 표 2-1> 출산율 및 기대수명 비교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83	
3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1.23	1.35	1.41	1.42				
	기대수명(세)	남	77.2	79.3	81.4	83.4	85.1	86.6	88.1
		여	84.1	85.7	87.0	88.2	89.3	90.3	92.0
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합계출산율(명)	1.15	1.20	1.28					
	기대수명(세)	남	76.1	78.0	79.8	81.4	82.9	-	
		여	82.9	84.7	86.3	87.7	88.9	-	

○ 경제변수 가정

<부록 표 2-2> 경제변수 가정 비교

(단위 : %)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3
3차 재정계산	실질경제성장률	3.8	2.9	1.9	1.4	1.1	0.7	0.9
	실질임금상승률	2.7	3.1	2.4	2.1	2.0	2.0	2.0
	실질금리	2.6	2.7	2.5	2.4	2.5	2.6	2.7
	물가상승률	3.2	2.8	2.2	2.0	2.0	2.0	2.0
	명목기금투자수익률	6.3	6.1	5.1	4.8	4.9	5.0	5.2
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실질경제성장률	4.1	2.8	1.7	1.2	0.9	0.7	-
	실질임금상승률	3.6	3.3	2.9	2.6	2.5	2.5	-
	실질금리	3.6	2.9	2.4	2.2	2.0	1.8	-
	물가상승률	2.6	2.0				-	-
	명목기금투자수익률	6.8	5.4	4.8	4.6	4.4	4.2	-

주: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제도변수 가정

<부록 표 2-3> 제도변수 가정 비교

(단위 : %)

		'07~'10	'11	...	2050 이후
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률	-	87.4	90.0 ¹⁾	
	지역가입자 비율	-	44.1	선형보간	30.0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	56.5	선형보간	30.0
	사업장가입자 소득대비 지역가입자소득	-	53.4	선형보간 ²⁾	70.0
	지역가입자 징수율 (사업장가입자 98.6)	-	66.6	선형보간	80.0
2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률	82.8			
	지역가입자 비율	49.8	선형보간		35.0%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56.3	선형보간		30.0
	사업장가입자 소득대비 지역가입자소득	55.0	선형보간		70.0
	지역가입자 징수율 (사업장가입자 98.7)	64.0	선형보간		80.0

주: 1) 2012년 88.5%, 2013년 89.2%, 2014년 89.8%, 2015년 이후 90.0%

2) 2011년의 하락추세를 일정기간 반영하여 50%수준까지 감소 후 50% 수준이 일정기간(5년) 유지되다 2050년에 목표치인 70%가 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비교

- 제2차 재정계산에서는 인구변수 중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라 기본가정(통계청 중위가정)과 대안가정(정부출산율 목표)으로 각각 추계함
 - 기본가정 : 기금최대 2043년 2,465조원, 수지적자 발생연도 2044년, 기금소진연도 2060년
 - 대안가정 : 기금최대 2046년 2,670조원, 수지적자 발생연도 2047년, 기금소진연도 2064년
- 제3차 재정계산은 제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과 수지적자 발생연도(2044년) 및 기금소진연도(2060년)는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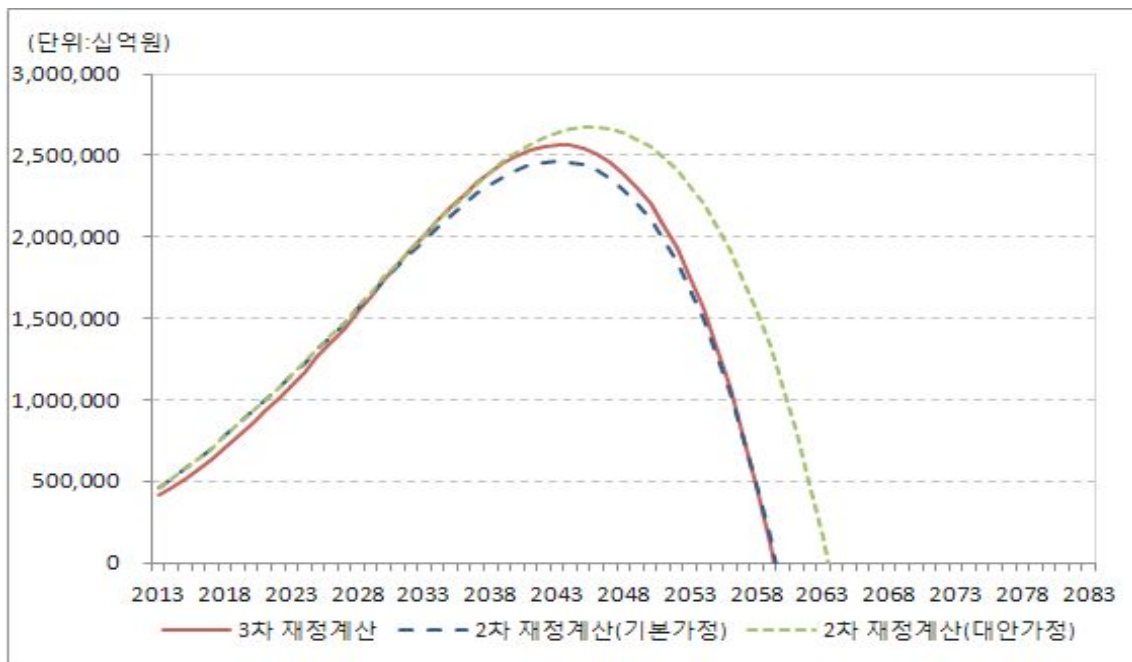
- 기금최대 2043년 2,561조원, 수지적자 발생연도 2044년, 기금소진 연도 2060년

<부록 표 2-4> 추계결과 비교

(단위 : 경상가)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3차 재정계산		2043년(2,561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2043년(2,465조원)	2044년	2060년(△214조원)
	대안가정	2046년(2,670조원)	2047년	2064년(△220조원)

[부록 그림 2-1] 적립기금 추이 비교



■ 추계결과의 변화 요인

- 2차 재정계산결과를 기점으로 3차 재정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모형의 개선에 의한 효과, 인구 전망에 의한 효과, 거시경제변수에 의한 효과 및 제도변수에 의한 효과로 구분

할 수 있음

- 모형의 개선에 의한 효과는 추계모형의 방법론 개선, 초기치 변화, 2차 재정계산 이후의 제도변화(공적연금연계제도 등)의 적용 등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음
- 인구전망에 의한 효과는 2차 재정계산에서 적용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전망(2006년)과 3차 재정계산에서 적용한 통계청의 장래인구 전망(2011년)에 의한 차이에 의한 효과임
- 거시경제변수에 의한 효과는 2차 재정계산에서 적용되었던 거시경제 변수와 3차 재정계산에서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임
- 제도변수에 의한 효과는 2차 재정계산 이후의 제도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3차 재정계산에서 변화된 효과임

■ 요인별 추계결과의 비교

○ 모형개선에 의한 효과

- 3차 재정계산에 사용된 모형에 2차 재정계산의 인구전망, 거시경제 변수 및 제도변수를 적용할 경우 2058년도에 기금이 소진됨
- 3차 재정계산모형에서 기초율과 초기치를 최근 자료를 반영하였고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추계방법론의 개선 등으로 기금의 소진시점을 2년 앞당기는 효과를 나타냄

○ 모형개선 및 인구전망에 의한 효과

- 3차 재정계산모형에 3차 재정계산의 인구전망, 2차 재정계산의 거시 경제변수와 제도변수를 적용할 경우 2058년도에 기금이 소진됨
- 3차 재정계산의 인구전망은 출산의 증가, 국제이동의 순유입증가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기대수명의 개선으로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상쇄되며 전체적으로

기금소진시점에 미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모형개선 및 거시경제변수에 의한 효과

- 3차 재정계산모형에 3차 재정계산의 거시경제변수, 2차 재정계산의 인구전망과 제도변수를 적용할 경우 2057년도에 기금이 소진됨
- 3차 재정계산의 거시경제변수는 보험료수입과 지출에 각각 영향을 미쳐 적립금 규모를 변화시키는 임금상승률의 하락과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금리(기금투자수익률=금리×1.1)의 변동효과가 맞물려 기금 소진시점을 1년 정도 앞당김

※ 2차 재정계산 : '30년까지 임금=금리, '30년 이후 임금>금리

3차 재정계산 : '30년까지 임금>금리, '30년 이후 임금<금리

○ 모형개선 및 제도변수에 의한 효과

- 3차 재정계산모형에 3차 재정계산의 제도변수, 2차 재정계산의 인구전망 및 거시경제변수를 적용할 경우 2060년도에 기금이 소진됨
- 제도변수 중 징수율, 납부예외자비율, 지역가입자 비중 등의 변화가 소진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3차 재정계산의 경제활동참가율, 가입률 상승 등은 보험료 수입의 증가와 장래의 수급자 증가로 작용
- 그러나 보험료 수입 증가가 수급자 규모 증가에 의한 지출증가 보다 먼저 효과를 나타내어 기금소진시점을 2년 정도 늦추게 됨

○ 3차 재정계산 결과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됨

- 추계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개선의 효과, 인구전망,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변수의 변화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5> 요인별 추계결과 비교

(단위 : 경상가 기준)

추계 모형	가정변수 ¹⁾			수지적자 시점 (최대적립금)	기금소진 시점 (적자규모)	주요지표(2083년 기준)		
	인구	경제 변수	제도 변수			성숙도 ³⁾	필요 보험료율 ⁴⁾	부과방식 비용률 ⁵⁾
2차 재정계산 ²⁾	2008	2008	2008	2044년 (2,465조원)	2060년 (-214조원)	113.5%	13.31%	22.8%
	2008	2008	2008	2042년 (1,901조원)	2058년 (-258조원)	120.7%	14.11%	23.5%
3차 재정계산	2013	2008	2008	2043년 (1,980조원)	2058년 (-148조원)	129.1%	14.17%	22.7%
	2008	2013	2008	2042년 (1,997조원)	2057년 (-185조원)	121.1%	13.56%	25.1%
	2008	2008	2013	2044년 (2,319조원)	2060년 (-197조원)	105.8%	13.36%	22.1%
	2013	2013	2013	2044년 (2,561조원)	2060년 (-281조원)	111.9%	12.91%	22.9%

- 주: 1) 가정변수에서 '2008'은 2008년 재정계산의 가정, '2013'은 2013년 재정계산의 가정을 의미
 2) 2차 재정계산의 '기본가정'을 기준으로 비교
 3) 성숙도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의 백분율임.
 4) 필요보험료율은 2083년에 적립배율이 2배되기 위한 보험료율이며, 보험료율은 2015년부터 인상
 5) 부과방식비용률은 연간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총액의 비율

부록3 : 민감도분석의 재정수지표

<부록 표 3-1> 표 번호

가 정			
기본가정		<부록 표 3-2>	
조합 시나리오	장기 재정전망 협의회	저위중립	<부록 표 3-3>
		중위비관	<부록 표 3-4>
		중위낙관	<부록 표 3-5>
		고위중립	<부록 표 3-6>
	재정추계 위원회	저위중립	<부록 표 3-7>
		중위중립	<부록 표 3-8>
		고위중립	<부록 표 3-9>
		대안1	<부록 표 3-10>
		대안2	<부록 표 3-11>
		대안3	<부록 표 3-12>
개별 시나리오	기금투자 수익률	기본가정 + 0.5%pt	<부록 표 3-13>
		기본가정 - 0.5%pt	<부록 표 3-14>
		기본가정 + 1.0%pt	<부록 표 3-15>
		기본가정 - 1.0%pt	<부록 표 3-16>
	임금 상승률	기본가정 + 0.5%pt	<부록 표 3-17>
		기본가정 - 0.5%pt	<부록 표 3-18>
	경제활동 참가율	기본가정 + 1.0%pt	<부록 표 3-19>
		기본가정 - 1.0%pt	<부록 표 3-20>
		기본가정 + 5.0%pt	<부록 표 3-21>
		기본가정 - 5.0%pt	<부록 표 3-22>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부록 표 3-23>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부록 표 3-24>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부록 표 3-25>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부록 표 3-26>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부록 표 3-27>
		기본가정 - 5.0%pt(50년 이후)	<부록 표 3-28>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기본가정 × 0.5배	<부록 표 3-29>
		기본가정 × 2배	<부록 표 3-30>

<부록 표 3-2> 재정수지표 : 기본가정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부록 표 3-3>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저위중립)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611	52,132	32,053	20,079	14,561	14,036	37,571	26.1	9.00	384,072
2015	512,577	68,763	37,148	31,614	18,434	17,835	50,328	25.1	9.00	446,518
2020	837,660	106,106	53,279	52,827	33,687	33,249	72,419	22.7	9.00	617,967
2025	1,241,061	142,294	71,983	70,310	55,616	55,019	86,677	20.8	9.00	790,547
2030	1,691,562	179,456	93,080	86,376	88,402	87,615	91,054	18.1	9.00	948,660
2035	2,101,797	208,993	113,589	95,404	135,145	134,148	73,848	15.0	9.00	1,058,243
2040	2,365,660	241,389	135,349	106,040	206,352	205,113	35,037	11.3	9.00	1,078,813
2042	2,401,351	251,319	143,131	108,187	239,728	238,380	11,590	10.0	9.00	1,052,565
2043	2,399,883	255,946	147,527	108,419	257,414	256,008	-1,468	9.3	9.00	1,031,296
2045	2,348,876	261,482	157,130	104,351	294,701	293,171	-33,220	8.1	9.00	970,182
2050	1,917,014	270,035	182,706	87,328	394,238	392,359	-124,203	5.2	9.00	717,162
2055	932,992	245,441	198,709	46,732	495,866	493,557	-250,425	2.4	9.00	316,132
2058	-18,618	208,065	208,065	0	565,343	562,734	-357,279	0.6	9.00	-5,944
2060	-	215,630	215,630	0	616,698	613,871	-401,068	-	9.00	-
2065	-	238,920	238,920	0	751,791	748,334	-512,871	-	9.00	-
2070	-	261,232	261,232	0	879,827	875,609	-618,594	-	9.00	-
2075	-	285,891	285,891	0	1,005,696	1,000,560	-719,806	-	9.00	-
2080	-	312,548	312,548	0	1,138,185	1,131,954	-825,637	-	9.00	-
2083	-	329,907	329,907	0	1,217,072	1,210,063	-887,165	-	9.00	-

<부록 표 3-4>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중위비관)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6,932	51,533	31,890	19,643	14,551	14,030	36,982	26.1	9.00	383,822
2015	510,154	67,706	36,716	30,990	18,366	17,778	49,340	25.1	9.00	445,709
2020	821,602	101,959	51,689	50,270	33,226	32,809	68,732	22.7	9.00	612,029
2025	1,194,384	132,327	68,106	64,221	54,036	53,486	78,290	20.7	9.00	774,981
2030	1,594,059	162,637	85,915	76,722	84,333	83,630	78,304	18.0	9.00	919,554
2035	1,944,291	191,072	102,727	88,345	126,662	125,801	64,410	14.8	9.00	1,013,870
2040	2,164,656	218,674	121,542	97,132	191,159	190,120	27,515	11.2	9.00	1,022,372
2042	2,188,673	227,527	128,830	98,697	221,020	219,902	6,507	9.9	9.00	993,575
2043	2,183,654	231,751	133,017	98,734	236,770	235,611	-5,019	9.2	9.00	971,859
2045	2,135,931	239,368	142,206	97,162	269,962	268,716	-30,594	8.0	9.00	913,706
2050	1,753,139	249,562	167,899	81,662	358,550	357,063	-108,989	5.2	9.00	679,258
2055	902,428	232,839	187,183	45,656	447,706	445,932	-214,867	2.5	9.00	316,687
2059	-225,478	204,439	204,439	0	528,887	526,843	-324,448	0.2	9.00	-73,101
2060	-	209,309	209,309	0	550,790	548,673	-341,482	-	9.00	-
2065	-	239,463	239,463	0	663,567	661,040	-424,104	-	9.00	-
2070	-	273,831	273,831	0	766,423	763,407	-492,592	-	9.00	-
2075	-	310,975	310,975	0	865,372	861,773	-554,397	-	9.00	-
2080	-	351,618	351,618	0	985,140	980,844	-633,522	-	9.00	-
2083	-	377,434	377,434	0	1,069,965	1,065,189	-692,531	-	9.00	-

<부록 표 3-5>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중위낙관)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8,920	53,329	32,382	20,948	14,561	14,033	38,768	26.1	9.00	384,901
2015	518,026	71,387	37,987	33,400	18,513	17,905	52,873	25.1	9.00	449,075
2020	871,189	115,412	56,396	59,016	34,539	34,083	80,873	22.9	9.00	631,601
2025	1,335,976	160,909	78,845	82,063	58,691	58,054	102,218	21.0	9.00	824,232
2030	1,894,677	211,528	105,576	105,952	96,262	95,399	115,267	18.5	9.00	1,014,221
2035	2,470,047	265,873	134,184	131,689	152,599	151,473	113,275	15.4	9.00	1,167,509
2040	2,930,209	316,184	167,350	148,833	241,851	240,420	74,333	11.8	9.00	1,237,373
2045	3,101,654	360,654	204,449	156,205	354,981	353,189	5,673	8.7	9.00	1,180,502
2046	3,086,432	366,155	213,423	152,732	381,376	379,504	-15,221	8.1	9.00	1,151,675
2050	2,845,843	396,862	251,093	145,770	487,612	485,389	-90,750	6.0	9.00	981,032
2055	1,988,972	397,082	290,909	106,174	628,934	626,176	-231,852	3.5	9.00	621,012
2060	243,864	362,042	338,050	23,993	801,742	798,321	-439,699	0.9	9.00	68,963
2061	-246,978	349,040	349,040	0	839,882	836,312	-490,842	0.3	9.00	-68,475
2065	-	401,916	401,916	0	1,001,711	997,469	-599,795	-	9.00	-
2070	-	477,621	477,621	0	1,197,925	1,192,664	-720,304	-	9.00	-
2075	-	563,677	563,677	0	1,400,754	1,394,230	-837,078	-	9.00	-
2080	-	662,337	662,337	0	1,655,000	1,646,908	-992,662	-	9.00	-
2083	-	729,657	729,657	0	1,839,821	1,830,586	-1,110,164	-	9.00	-

<부록 표 3-6>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장기재정전망협의회(고위중립)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8,267	52,719	32,206	20,513	14,552	14,029	38,167	26.1	9.00	384,676
2015	515,060	69,799	37,554	32,245	18,442	17,845	51,357	25.1	9.00	447,809
2020	854,332	110,324	54,849	55,475	34,060	33,625	76,264	22.8	9.00	624,800
2025	1,288,549	150,480	75,012	75,468	56,997	56,408	93,483	21.0	9.00	808,955
2030	1,795,322	197,003	98,304	98,700	91,655	90,881	105,348	18.4	9.00	986,539
2035	2,310,969	243,972	122,979	120,993	143,083	142,105	100,889	15.4	9.00	1,127,890
2040	2,718,995	290,278	152,123	138,154	223,234	222,026	67,044	11.9	9.00	1,190,219
2045	2,902,696	336,870	187,853	149,017	323,901	322,421	12,969	8.9	9.00	1,145,226
2046	2,901,107	345,912	196,598	149,314	347,501	345,961	-1,589	8.4	9.00	1,121,057
2050	2,725,960	375,345	233,315	142,030	443,256	441,457	-67,911	6.3	9.00	973,157
2055	2,053,725	386,623	273,921	112,701	570,424	568,247	-183,802	3.9	9.00	664,056
2060	642,720	367,163	323,098	44,064	723,348	720,712	-356,186	1.4	9.00	188,228
2062	-197,833	347,681	347,681	0	790,281	787,435	-442,600	0.3	9.00	-55,688
2065	-	390,721	390,721	0	895,037	891,845	-504,316	-	9.00	-
2070	-	476,234	476,234	0	1,061,566	1,057,696	-585,332	-	9.00	-
2075	-	571,837	571,837	0	1,236,444	1,231,737	-664,608	-	9.00	-
2080	-	685,752	685,752	0	1,479,700	1,473,972	-793,947	-	9.00	-
2083	-	763,890	763,890	0	1,660,966	1,654,511	-897,076	-	9.00	-

<부록 표 3-7>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저위중립)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608	52,133	32,054	20,078	14,561	14,036	37,572	26.1	9.00	384,069
2015	512,566	68,761	37,147	31,614	18,435	17,835	50,326	25.1	9.00	446,508
2020	837,637	106,106	53,281	52,825	33,686	33,249	72,420	22.7	9.00	617,951
2025	1,241,020	142,280	71,972	70,308	55,615	55,018	86,665	20.8	9.00	790,521
2030	1,691,541	179,449	93,074	86,375	88,396	87,609	91,053	18.1	9.00	948,648
2035	2,099,655	208,862	113,555	95,306	135,054	134,056	73,808	15.0	9.00	1,058,199
2040	2,360,126	241,069	135,271	105,798	206,392	205,151	34,676	11.3	9.00	1,077,342
2042	2,392,235	248,320	142,985	105,335	239,875	238,524	8,446	9.9	9.00	1,049,595
2043	2,387,397	252,786	147,369	105,418	257,624	256,215	-4,838	9.3	9.00	1,026,934
2045	2,334,176	260,605	156,876	103,729	295,007	293,474	-34,402	8.0	9.00	965,053
2050	1,893,699	268,566	182,219	86,347	394,880	392,997	-126,314	5.1	9.00	709,133
2055	895,399	243,116	197,967	45,150	496,953	494,640	-253,836	2.3	9.00	303,691
2058	-67,414	207,209	207,209	0	566,682	564,068	-359,473	0.5	9.00	-21,546
2060	-	214,685	214,685	0	618,202	615,370	-403,517	-	9.00	-
2065	-	237,868	237,868	0	753,793	750,330	-515,925	-	9.00	-
2070	-	259,610	259,610	0	882,054	877,837	-622,444	-	9.00	-
2075	-	284,152	284,152	0	1,007,206	1,002,070	-723,054	-	9.00	-
2080	-	310,415	310,415	0	1,138,735	1,132,510	-828,320	-	9.00	-
2083	-	327,360	327,360	0	1,216,879	1,209,883	-889,519	-	9.00	-

<부록 표 3-8>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중위중립)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4	52,219	32,137	20,082	14,556	14,032	37,662	26.1	9.00	384,176
2015	514,118	69,572	37,381	32,191	18,448	17,849	51,124	25.1	9.00	446,990
2020	847,150	109,099	54,075	55,024	33,922	33,485	75,176	22.8	9.00	621,346
2025	1,260,666	144,626	73,212	71,414	56,328	55,736	88,298	20.8	9.00	797,607
2030	1,732,348	186,906	95,036	91,870	89,945	89,168	96,960	18.2	9.00	963,086
2035	2,179,071	222,372	116,904	105,468	138,693	137,712	83,679	15.1	9.00	1,084,422
2040	2,481,692	257,297	141,055	116,243	213,299	212,089	43,999	11.4	9.00	1,117,502
2043	2,546,278	276,207	156,083	120,124	266,853	265,489	9,354	9.5	9.00	1,080,453
2044	2,542,506	282,246	161,986	120,260	286,018	284,598	-3,772	8.9	9.00	1,057,698
2045	2,523,973	287,788	168,052	119,737	306,321	304,843	-18,533	8.3	9.00	1,029,400
2050	2,175,854	307,578	202,202	105,376	413,696	411,895	-106,118	5.5	9.00	803,764
2055	1,291,777	296,119	229,591	66,527	525,242	523,052	-229,124	2.9	9.00	432,201
2060	-344,682	261,583	261,583	0	657,933	655,268	-396,350	0.1	9.00	-104,452
2065	-	305,096	305,096	0	807,349	804,107	-502,253	-	9.00	-
2070	-	355,561	355,561	0	948,920	944,976	-593,359	-	9.00	-
2075	-	410,595	410,595	0	1,089,875	1,085,090	-679,280	-	9.00	-
2080	-	473,415	473,415	0	1,262,518	1,256,696	-789,103	-	9.00	-
2083	-	514,184	514,184	0	1,386,170	1,379,621	-871,986	-	9.00	-

<부록 표 3-9>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고위중립)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899	52,326	32,238	20,088	14,552	14,029	37,774	26.1	9.00	384,337
2015	515,261	70,365	37,623	32,742	18,445	17,847	51,921	25.1	9.00	447,550
2020	854,943	110,468	54,955	55,513	34,107	33,671	76,361	22.8	9.00	624,642
2025	1,289,682	150,676	75,142	75,534	57,093	56,503	93,583	21.0	9.00	808,882
2030	1,797,085	197,279	98,483	98,796	91,806	91,031	105,473	18.4	9.00	986,551
2035	2,307,812	241,460	122,920	118,540	143,212	142,232	98,248	15.4	9.00	1,126,358
2040	2,700,868	286,197	151,662	134,534	223,104	221,896	63,093	11.8	9.00	1,184,609
2045	2,859,650	330,808	186,844	143,964	323,543	322,065	7,266	8.8	9.00	1,132,679
2046	2,852,092	339,260	195,299	143,961	346,818	345,280	-7,558	8.2	9.00	1,107,535
2050	2,658,099	367,867	231,982	135,886	442,184	440,385	-74,316	6.2	9.00	953,596
2055	1,957,408	377,816	272,108	105,708	569,571	567,393	-191,754	3.8	9.00	636,024
2060	506,140	357,056	320,771	36,284	722,729	720,092	-365,673	1.2	9.00	148,958
2062	-346,164	345,144	345,144	0	789,765	786,918	-444,621	0.1	9.00	-97,920
2065	-	387,860	387,860	0	894,769	891,576	-506,909	-	9.00	-
2070	-	472,099	472,099	0	1,061,859	1,057,993	-589,760	-	9.00	-
2075	-	566,563	566,563	0	1,236,470	1,231,771	-669,907	-	9.00	-
2080	-	679,703	679,703	0	1,478,208	1,472,491	-798,505	-	9.00	-
2083	-	757,358	757,358	0	1,658,007	1,651,564	-900,649	-	9.00	-

<부록 표 3-10>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대안1)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934	52,362	32,273	20,089	14,556	14,032	37,806	26.1	9.00	384,370
2015	514,835	69,857	37,629	32,228	18,447	17,848	51,410	25.1	9.00	447,614
2020	849,191	108,745	54,404	54,341	33,919	33,482	74,826	22.8	9.00	623,446
2025	1,266,859	146,485	73,499	72,986	56,283	55,693	90,202	20.9	9.00	802,300
2030	1,740,304	185,602	95,030	90,572	89,767	88,994	95,836	18.3	9.00	970,336
2035	2,193,354	223,051	116,904	106,147	138,327	137,352	84,724	15.2	9.00	1,094,718
2040	2,515,792	262,155	141,825	120,329	212,423	211,223	49,732	11.6	9.00	1,137,281
2044	2,598,181	287,645	164,922	122,724	284,409	282,999	3,236	9.1	9.00	1,085,080
2045	2,587,985	294,325	171,762	122,563	304,521	303,053	-10,196	8.5	9.00	1,059,629
2050	2,308,914	323,649	212,413	111,236	411,814	410,024	-88,166	5.8	9.00	856,247
2055	1,554,584	327,963	248,071	79,892	523,904	521,727	-195,941	3.3	9.00	522,161
2060	128,877	305,219	290,392	14,827	657,495	654,845	-352,276	0.7	9.00	39,207
2061	-257,473	300,145	300,145	0	686,495	683,739	-386,350	0.2	9.00	-76,793
2065	-	346,757	346,757	0	807,759	804,535	-461,002	-	9.00	-
2070	-	417,293	417,293	0	949,786	945,853	-532,493	-	9.00	-
2075	-	501,835	501,835	0	1,091,989	1,087,180	-590,154	-	9.00	-
2080	-	597,239	597,239	0	1,278,731	1,272,853	-681,492	-	9.00	-
2083	-	659,115	659,115	0	1,426,988	1,420,350	-767,873	-	9.00	-

<부록 표 3-11>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대안2)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934	52,362	32,273	20,089	14,556	14,032	37,806	26.1	9.00	384,370
2015	514,835	69,857	37,629	32,228	18,447	17,848	51,410	25.1	9.00	447,614
2020	849,191	108,745	54,404	54,341	33,919	33,482	74,826	22.8	9.00	623,446
2025	1,266,859	146,485	73,499	72,986	56,283	55,693	90,202	20.9	9.00	802,300
2030	1,740,304	185,602	95,030	90,572	89,767	88,994	95,836	18.3	9.00	970,336
2035	2,189,894	222,334	116,348	105,986	138,026	137,055	84,308	15.3	9.00	1,095,132
2040	2,506,897	260,541	140,623	119,917	211,539	210,349	49,002	11.6	9.00	1,136,593
2044	2,598,937	289,066	163,654	125,412	282,889	281,492	6,177	9.2	9.00	1,088,588
2045	2,592,132	295,980	170,580	125,400	302,786	301,331	-6,806	8.6	9.00	1,064,448
2050	2,338,207	327,183	212,227	114,957	408,647	406,878	-81,464	5.9	9.00	869,660
2055	1,638,583	336,199	252,576	83,623	518,749	516,596	-182,549	3.5	9.00	551,994
2060	326,404	327,542	303,910	23,633	649,631	647,012	-322,089	1.0	9.00	99,591
2061	-35,572	316,071	316,071	0	678,047	675,323	-361,976	0.5	9.00	-10,641
2065	-	374,825	374,825	0	796,996	793,803	-422,171	-	9.00	-
2070	-	464,727	464,727	0	937,705	933,801	-472,978	-	9.00	-
2075	-	576,119	576,119	0	1,080,110	1,075,338	-503,991	-	9.00	-
2080	-	713,788	713,788	0	1,268,182	1,262,320	-554,394	-	9.00	-
2083	-	808,404	808,404	0	1,418,162	1,411,530	-609,758	-	9.00	-

<부록 표 3-12> 재정수지표 : 조합시나리오, 재정추계위원회(대인3)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934	52,362	32,273	20,089	14,556	14,032	37,806	26.1	9.00	384,370
2015	514,835	69,857	37,629	32,228	18,447	17,848	51,410	25.1	9.00	447,614
2020	850,106	109,660	54,455	55,205	33,919	33,482	75,741	22.8	9.00	623,513
2025	1,267,180	145,478	73,707	71,772	56,342	55,750	89,136	20.9	9.00	801,728
2030	1,741,932	186,130	95,479	90,652	89,996	89,220	96,134	18.3	9.00	969,360
2035	2,193,777	223,553	117,386	106,167	138,797	137,818	84,755	15.2	9.00	1,092,807
2040	2,501,884	258,438	141,273	117,164	213,073	211,870	45,365	11.5	9.00	1,129,908
2043	2,572,216	277,990	156,694	121,296	266,352	264,996	11,638	9.6	9.00	1,094,669
2044	2,571,200	284,382	162,832	121,550	285,398	283,986	-1,016	9.0	9.00	1,072,781
2045	2,555,755	290,159	168,994	121,165	305,605	304,136	-15,446	8.4	9.00	1,045,428
2050	2,238,155	315,358	204,836	110,522	413,168	411,385	-97,810	5.7	9.00	829,210
2055	1,413,315	310,440	236,930	73,510	524,553	522,386	-214,113	3.1	9.00	474,256
2060	-120,544	277,599	277,599	0	656,042	653,413	-378,443	0.4	9.00	-36,637
2065	-	336,963	336,963	0	802,600	799,401	-465,637	-	9.00	-
2070	-	413,625	413,625	0	940,538	936,638	-526,913	-	9.00	-
2075	-	509,084	509,084	0	1,078,706	1,073,939	-569,622	-	9.00	-
2080	-	626,167	626,167	0	1,255,793	1,249,966	-629,627	-	9.00	-
2083	-	708,898	708,898	0	1,389,944	1,383,363	-681,045	-	9.00	-

<부록 표 3-13>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21,553	54,260	32,135	22,125	14,556	14,032	39,704	26.2	9.00	387,698
2015	523,161	72,388	37,383	35,006	18,448	17,849	53,940	25.4	9.00	454,852
2020	878,821	114,950	54,073	60,878	33,923	33,487	81,027	23.5	9.00	644,575
2025	1,333,620	154,661	73,224	81,437	56,327	55,735	98,334	21.9	9.00	843,763
2030	1,872,006	202,669	95,041	107,628	89,953	89,176	112,716	19.6	9.00	1,040,728
2035	2,422,374	247,724	117,173	130,552	138,809	137,826	108,916	16.7	9.00	1,203,146
2040	2,868,249	288,834	141,595	147,239	213,773	212,563	75,061	13.1	9.00	1,287,780
2045	3,095,230	329,322	168,889	160,433	306,804	305,324	22,519	10.0	9.00	1,258,685
2046	3,103,765	336,704	175,459	161,245	328,169	326,630	8,535	9.4	9.00	1,237,408
2047	3,097,616	343,558	182,246	161,312	349,708	348,107	-6,149	8.9	9.00	1,210,741
2050	2,984,534	359,975	203,282	156,693	414,088	412,288	-54,113	7.3	9.00	1,099,259
2055	2,404,601	363,009	231,040	131,970	525,383	523,193	-162,374	4.9	9.00	802,168
2060	1,127,836	331,979	263,375	68,604	657,820	655,155	-325,841	2.2	9.00	340,775
2063	-102,126	288,569	288,569	0	746,112	743,115	-457,543	0.5	9.00	-29,078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부록 표 3-14>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3,918	50,192	32,135	18,057	14,556	14,032	35,636	26.0	9.00	380,676
2015	505,220	66,825	37,383	29,443	18,448	17,849	48,378	24.8	9.00	439,254
2020	816,618	103,555	54,073	49,482	33,923	33,487	69,632	22.0	9.00	598,952
2025	1,191,814	135,426	73,224	62,202	56,327	55,735	79,099	19.8	9.00	754,045
2030	1,603,273	172,846	95,041	77,805	89,953	89,176	82,893	16.9	9.00	891,328
2035	1,968,854	205,491	117,173	88,318	138,809	137,826	66,682	13.7	9.00	977,891
2040	2,164,767	233,143	141,595	91,548	213,773	212,563	19,370	10.0	9.00	971,933
2041	2,172,383	238,580	146,456	92,124	230,964	229,704	7,617	9.4	9.00	956,228
2042	2,167,062	243,422	151,246	92,176	248,743	247,432	-5,322	8.7	9.00	935,182
2045	2,065,874	257,706	168,889	88,816	306,804	305,324	-49,098	6.9	9.00	840,094
2050	1,548,240	272,100	203,282	68,817	414,088	412,288	-141,988	4.1	9.00	570,245
2055	476,362	257,661	231,040	26,621	525,383	523,193	-267,722	1.4	9.00	158,913
2057	-153,165	243,070	243,070	0	574,817	572,448	-331,747	0.3	9.00	-49,111
2060	-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	9.00	-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부록 표 3-15>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 + 1.0%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25,397	56,321	32,135	24,185	14,556	14,032	41,764	26.4	9.00	391,233
2015	532,317	75,269	37,383	37,887	18,448	17,849	56,821	25.8	9.00	462,812
2020	911,604	121,126	54,073	67,053	33,923	33,487	87,202	24.3	9.00	668,620
2025	1,410,767	165,548	73,224	92,324	56,327	55,735	109,221	23.1	9.00	892,574
2030	2,022,979	220,291	95,041	125,250	89,953	89,176	130,338	21.0	9.00	1,124,660
2035	2,685,800	273,877	117,173	156,705	138,809	137,826	135,069	18.4	9.00	1,333,985
2040	3,291,713	325,228	141,595	183,632	213,773	212,563	111,454	14.9	9.00	1,477,907
2045	3,739,740	379,082	168,889	210,193	306,804	305,324	72,279	12.0	9.00	1,520,777
2050	3,924,714	425,721	203,282	222,439	414,088	412,288	11,633	9.4	9.00	1,445,544
2051	3,920,735	431,501	208,839	222,662	435,480	433,608	-3,979	9.0	9.00	1,415,764
2055	3,732,727	449,032	231,040	217,993	525,383	523,193	-76,351	7.3	9.00	1,245,228
2060	2,952,192	440,385	263,375	177,010	657,820	655,155	-217,435	4.8	9.00	892,003
2065	1,305,610	396,250	307,180	89,070	806,934	803,692	-410,684	2.1	9.00	357,301
2068	-211,766	337,024	337,024	0	894,324	890,677	-557,300	0.4	9.00	-54,610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부록 표 3-16> 재정수지표 :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 - 1.0%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0,127	48,185	32,135	16,050	14,556	14,032	33,629	25.9	9.00	377,189
2015	496,432	64,141	37,383	26,759	18,448	17,849	45,694	24.4	9.00	431,614
2020	787,128	98,309	54,073	44,236	33,923	33,487	64,385	21.3	9.00	577,322
2025	1,126,722	126,963	73,224	53,739	56,327	55,735	70,636	18.7	9.00	712,862
2030	1,483,910	160,309	95,041	65,267	89,953	89,176	70,356	15.7	9.00	824,969
2035	1,774,246	188,623	117,173	71,450	138,809	137,826	49,814	12.4	9.00	881,233
2039	1,875,557	207,288	136,813	70,475	197,249	196,086	10,039	9.5	9.00	858,926
2040	1,874,016	212,233	141,595	70,637	213,773	212,563	-1,540	8.8	9.00	841,392
2045	1,658,148	232,771	168,889	63,882	306,804	305,324	-74,033	5.6	9.00	674,291
2050	1,006,993	244,445	203,282	41,162	414,088	412,288	-169,644	2.8	9.00	370,894
2055	-205,570	231,040	231,040	0	525,383	523,193	-294,343	0.2	9.00	-68,578
2060	-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	9.00	-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부록 표 3-17> 재정수지표 : 임금상승률,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8,189	52,541	32,444	20,097	14,563	14,034	37,978	26.1	9.00	384,604
2015	515,876	70,376	38,095	32,281	18,488	17,877	51,889	25.1	9.00	448,518
2020	857,788	112,058	56,400	55,659	34,314	33,859	77,744	22.7	9.00	629,148
2025	1,291,488	151,260	78,189	73,071	57,808	57,176	93,451	20.7	9.00	817,107
2030	1,798,163	199,145	103,911	95,234	93,922	93,072	105,223	18.0	9.00	999,676
2035	2,297,967	244,557	131,193	113,364	147,832	146,732	96,725	14.9	9.00	1,141,355
2040	2,658,362	286,729	162,376	124,354	232,695	231,308	54,034	11.2	9.00	1,193,546
2044	2,752,278	320,252	190,243	130,009	317,060	315,399	3,192	8.7	9.00	1,141,607
2045	2,739,460	328,157	198,372	129,786	340,975	339,238	-12,818	8.1	9.00	1,114,010
2050	2,393,911	360,326	244,563	115,763	469,772	467,606	-109,446	5.3	9.00	881,721
2055	1,452,824	360,935	284,704	76,231	608,234	605,536	-247,300	2.8	9.00	484,658
2060	-362,217	332,427	332,427	0	778,634	775,271	-446,208	0.1	9.00	-109,444
2065	-	397,127	397,127	0	977,074	972,883	-579,947	-	9.00	-
2070	-	474,194	474,194	0	1,173,327	1,168,104	-699,133	-	9.00	-
2075	-	562,318	562,318	0	1,377,795	1,371,286	-815,477	-	9.00	-
2080	-	663,912	663,912	0	1,635,302	1,627,191	-971,390	-	9.00	-
2083	-	731,391	731,391	0	1,823,037	1,813,781	-1,091,646	-	9.00	-

<부록 표 3-18> 재정수지표 : 임금상승률,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266	51,895	31,828	20,067	14,549	14,030	37,346	26.1	9.00	383,755
2015	512,401	68,783	36,680	32,102	18,408	17,821	50,374	25.1	9.00	445,497
2020	836,829	106,239	51,832	54,407	33,541	33,122	72,698	22.8	9.00	613,775
2025	1,231,250	138,383	68,553	69,829	54,899	54,345	83,483	20.9	9.00	778,996
2030	1,670,595	175,600	86,892	88,708	86,191	85,481	89,409	18.3	9.00	928,755
2035	2,079,477	207,447	104,595	102,852	130,409	129,532	77,038	15.4	9.00	1,032,836
2040	2,347,243	233,450	123,394	110,056	196,504	195,450	36,946	11.8	9.00	1,053,860
2043	2,395,881	247,772	134,655	113,117	242,690	241,517	5,082	9.9	9.00	1,013,654
2044	2,389,076	252,201	139,122	113,080	259,006	257,791	-6,805	9.3	9.00	990,956
2045	2,369,022	256,128	143,679	112,448	276,181	274,922	-20,053	8.7	9.00	963,371
2050	2,041,924	267,659	168,821	98,838	365,129	363,634	-97,470	5.9	9.00	752,078
2055	1,256,142	252,902	187,304	65,598	453,981	452,205	-201,079	3.2	9.00	419,045
2060	-168,543	208,435	208,435	0	555,990	553,882	-347,555	0.3	9.00	-50,925
2065	-	237,315	237,315	0	666,770	664,266	-429,456	-	9.00	-
2070	-	270,067	270,067	0	766,778	763,803	-496,711	-	9.00	-
2075	-	305,224	305,224	0	862,045	858,512	-556,822	-	9.00	-
2080	-	343,452	343,452	0	976,797	972,601	-633,345	-	9.00	-
2083	-	367,602	367,602	0	1,057,834	1,053,182	-690,232	-	9.00	-

<부록 표 3-19>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 + 1.0%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8,578	52,670	32,556	20,114	14,558	14,034	38,112	26.1	9.00	384,962
2015	516,037	70,151	37,852	32,299	18,469	17,870	51,682	25.1	9.00	448,659
2020	853,093	110,166	54,772	55,394	34,000	33,563	76,166	22.9	9.00	625,704
2025	1,273,081	146,232	74,134	72,098	56,406	55,815	89,825	21.0	9.00	805,462
2030	1,754,692	189,221	96,194	93,027	90,011	89,234	99,210	18.4	9.00	975,508
2035	2,219,095	228,129	118,543	109,586	139,145	138,162	88,984	15.3	9.00	1,102,181
2040	2,543,395	262,273	143,198	119,075	214,759	213,549	47,514	11.6	9.00	1,141,928
2044	2,619,561	288,399	164,594	123,805	288,122	286,700	277	9.1	9.00	1,086,558
2045	2,605,118	294,315	170,840	123,474	308,758	307,279	-14,444	8.5	9.00	1,059,380
2050	2,277,309	315,709	205,638	110,070	417,608	415,808	-101,899	5.7	9.00	838,775
2055	1,421,278	307,597	233,490	74,107	530,352	528,162	-222,756	3.1	9.00	474,134
2060	-194,874	266,123	266,123	0	664,884	662,220	-398,761	0.3	9.00	-58,881
2065	-	310,301	310,301	0	815,624	812,382	-505,323	-	9.00	-
2070	-	361,695	361,695	0	958,754	954,810	-597,059	-	9.00	-
2075	-	418,719	418,719	0	1,101,881	1,097,082	-683,161	-	9.00	-
2080	-	482,614	482,614	0	1,277,726	1,271,887	-795,112	-	9.00	-
2083	-	523,957	523,957	0	1,403,571	1,397,003	-879,614	-	9.00	-

<부록 표 3-20>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 - 1.0%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6,875	51,765	31,714	20,051	14,555	14,031	37,210	26.1	9.00	383,395
2015	512,211	68,992	36,909	32,084	18,429	17,831	50,563	25.0	9.00	445,332
2020	841,193	108,027	53,374	54,653	33,851	33,414	74,176	22.7	9.00	616,976
2025	1,248,052	143,033	72,314	70,719	56,292	55,700	86,741	20.6	9.00	789,626
2030	1,709,566	184,542	93,852	90,690	89,881	89,104	94,661	18.0	9.00	950,421
2035	2,148,726	221,978	115,801	106,177	138,429	137,447	83,549	14.9	9.00	1,067,230
2040	2,444,998	254,495	139,934	114,561	212,723	211,512	41,772	11.3	9.00	1,097,750
2043	2,503,239	273,129	154,990	118,139	265,847	264,481	7,282	9.4	9.00	1,059,076
2044	2,497,558	279,081	160,900	118,181	284,763	283,341	-5,682	8.8	9.00	1,035,953
2045	2,477,307	284,511	166,939	117,572	304,761	303,281	-20,250	8.2	9.00	1,007,405
2050	2,123,444	303,838	200,926	102,912	410,509	408,709	-106,671	5.4	9.00	782,103
2055	1,247,943	294,399	228,590	65,809	520,331	518,141	-225,932	2.8	9.00	416,310
2060	-366,244	260,606	260,606	0	650,711	648,046	-390,104	0.0	9.00	-110,660
2065	-	303,998	303,998	0	797,952	794,710	-493,954	-	9.00	-
2070	-	354,428	354,428	0	937,517	933,573	-583,089	-	9.00	-
2075	-	410,327	410,327	0	1,077,193	1,072,394	-666,866	-	9.00	-
2080	-	472,971	472,971	0	1,249,505	1,243,666	-776,534	-	9.00	-
2083	-	513,713	513,713	0	1,373,544	1,366,977	-859,831	-	9.00	-

<부록 표 3-21>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 + 5.0%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21,943	54,460	34,222	20,238	14,583	14,059	39,877	26.2	9.00	388,056
2015	523,528	72,389	39,669	32,720	18,539	17,940	53,850	25.3	9.00	455,171
2020	876,380	114,357	57,513	56,844	34,289	33,852	80,068	23.2	9.00	642,784
2025	1,321,110	152,481	77,724	74,756	57,192	56,600	95,289	21.4	9.00	835,849
2030	1,839,042	198,118	100,721	97,397	90,411	89,634	107,706	19.1	9.00	1,022,402
2035	2,351,488	239,842	123,843	115,999	140,621	139,639	99,220	16.0	9.00	1,167,938
2040	2,728,960	277,026	149,441	127,585	218,554	217,343	58,472	12.2	9.00	1,225,243
2044	2,850,773	306,103	171,643	134,459	294,323	292,901	11,780	9.6	9.00	1,182,462
2045	2,847,665	313,030	178,362	134,668	316,138	314,659	-3,108	9.0	9.00	1,158,012
2050	2,570,195	337,805	214,105	123,700	430,698	428,897	-92,893	6.2	9.00	946,650
2055	1,753,606	332,646	242,652	89,995	548,466	546,276	-215,820	3.6	9.00	584,998
2060	151,890	293,235	276,165	17,070	691,788	689,123	-398,553	0.8	9.00	45,894
2061	-286,490	283,863	283,863	0	722,243	719,472	-438,380	0.2	9.00	-84,865
2065	-	321,822	321,822	0	849,172	845,930	-527,350	-	9.00	-
2070	-	374,475	374,475	0	999,156	995,211	-624,681	-	9.00	-
2075	-	433,143	433,143	0	1,148,540	1,143,741	-715,397	-	9.00	-
2080	-	498,461	498,461	0	1,329,544	1,323,705	-831,083	-	9.00	-
2083	-	540,709	540,709	0	1,458,665	1,452,097	-917,956	-	9.00	-

<부록 표 3-22> 재정수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 - 5.0%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3,462	49,954	30,030	19,925	14,549	14,025	35,405	26.0	9.00	380,256
2015	504,437	66,624	34,975	31,648	18,375	17,776	48,248	24.8	9.00	438,573
2020	816,524	103,692	50,576	53,116	33,621	33,184	70,072	22.2	9.00	598,883
2025	1,195,956	136,480	68,629	67,851	56,205	55,613	80,275	19.9	9.00	756,665
2030	1,616,720	174,970	89,095	85,875	89,471	88,694	85,499	17.1	9.00	898,804
2035	2,004,273	209,337	110,157	99,180	136,960	135,978	72,376	14.1	9.00	995,483
2040	2,242,078	238,468	133,214	105,254	208,612	207,401	29,857	10.6	9.00	1,006,644
2042	2,268,637	249,506	142,458	107,048	242,155	240,844	7,351	9.3	9.00	979,016
2043	2,263,591	254,734	147,628	107,106	259,779	258,414	-5,045	8.7	9.00	957,685
2045	2,213,753	264,447	159,053	105,394	296,440	294,960	-31,992	7.6	9.00	900,230
2050	1,807,587	279,656	191,448	88,208	395,803	394,002	-116,147	4.9	9.00	665,767
2055	895,842	267,337	218,404	48,933	498,865	496,675	-231,528	2.3	9.00	298,851
2059	-332,327	242,429	242,429	0	594,917	592,355	-352,488	0.0	9.00	-102,421
2060	-	249,054	249,054	0	621,347	618,682	-372,292	-	9.00	-
2065	-	290,545	290,545	0	760,186	756,944	-469,642	-	9.00	-
2070	-	338,859	338,859	0	893,694	889,750	-554,836	-	9.00	-
2075	-	392,320	392,320	0	1,027,001	1,022,202	-634,681	-	9.00	-
2080	-	452,250	452,250	0	1,191,755	1,185,916	-739,504	-	9.00	-
2083	-	491,705	491,705	0	1,311,479	1,304,912	-819,775	-	9.00	-

<부록 표 3-23>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698	52,198	32,116	20,081	14,556	14,032	37,642	26.1	9.00	384,152
2015	514,020	69,527	37,341	32,186	18,448	17,849	51,078	25.1	9.00	446,905
2020	846,456	108,924	53,941	54,983	33,934	33,497	74,990	22.7	9.00	620,836
2025	1,258,282	144,232	72,944	71,288	56,394	55,802	87,838	20.8	9.00	796,099
2030	1,726,189	186,109	94,548	91,560	90,112	89,335	95,996	18.1	9.00	959,662
2035	2,171,362	223,695	116,405	107,290	139,032	138,050	84,663	15.0	9.00	1,078,473
2040	2,471,329	256,272	140,477	115,795	214,038	212,827	42,235	11.3	9.00	1,109,572
2043	2,529,911	274,808	155,407	119,400	267,547	266,181	7,261	9.4	9.00	1,070,360
2044	2,523,961	280,730	161,295	119,435	286,680	285,259	-5,950	8.8	9.00	1,046,904
2045	2,503,165	286,145	167,338	118,807	306,941	305,461	-20,796	8.2	9.00	1,017,920
2050	2,141,758	304,999	201,168	103,831	413,911	412,111	-108,912	5.4	9.00	788,849
2055	1,249,815	294,636	228,639	65,998	524,578	522,387	-229,941	2.8	9.00	416,935
2060	-389,810	260,649	260,649	0	655,914	653,250	-395,265	0.0	9.00	-117,781
2065	-	303,988	303,988	0	803,632	800,390	-499,645	-	9.00	-
2070	-	354,368	354,368	0	943,315	939,370	-588,947	-	9.00	-
2075	-	410,261	410,261	0	1,082,768	1,077,970	-672,508	-	9.00	-
2080	-	472,876	472,876	0	1,254,630	1,248,792	-781,754	-	9.00	-
2083	-	513,501	513,501	0	1,378,029	1,371,461	-864,528	-	9.00	-

<부록 표 3-24>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56	52,237	32,154	20,083	14,556	14,032	37,681	26.1	9.00	384,206
2015	514,239	69,622	37,425	32,197	18,448	17,849	51,174	25.1	9.00	447,095
2020	847,886	109,273	54,205	55,067	33,912	33,475	75,360	22.8	9.00	621,885
2025	1,263,137	145,048	73,504	71,544	56,262	55,670	88,786	20.9	9.00	799,170
2030	1,738,567	187,716	95,533	92,182	89,791	89,014	97,925	18.3	9.00	966,544
2035	2,196,973	226,440	117,940	108,500	138,591	137,609	87,849	15.2	9.00	1,091,193
2040	2,517,570	260,579	142,714	117,865	213,521	212,310	47,058	11.6	9.00	1,130,334
2044	2,593,368	286,761	164,198	122,563	286,326	284,905	435	9.1	9.00	1,075,693
2045	2,579,376	292,688	170,441	122,247	306,680	305,200	-13,992	8.5	9.00	1,048,911
2050	2,258,902	314,546	205,397	109,149	414,307	412,507	-99,761	5.7	9.00	831,995
2055	1,418,399	307,313	233,439	73,874	526,229	524,039	-218,916	3.1	9.00	473,174
2060	-172,644	266,100	266,100	0	659,722	657,057	-393,622	0.3	9.00	-52,164
2065	-	310,372	310,372	0	810,214	806,972	-499,842	-	9.00	-
2070	-	361,834	361,834	0	953,165	949,221	-591,331	-	9.00	-
2075	-	418,915	418,915	0	1,096,335	1,091,536	-677,420	-	9.00	-
2080	-	482,907	482,907	0	1,272,700	1,266,861	-789,793	-	9.00	-
2083	-	524,386	524,386	0	1,399,159	1,392,592	-874,774	-	9.00	-

<부록 표 3-25>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356	109,169	54,134	55,035	33,924	33,487	75,245	22.8	9.00	621,497
2025	1,261,680	144,861	73,395	71,466	56,317	55,725	88,544	20.8	9.00	798,248
2030	1,735,309	187,403	95,386	92,017	89,929	89,152	97,474	18.2	9.00	964,732
2035	2,190,646	225,957	117,757	108,199	138,846	137,864	87,110	15.2	9.00	1,088,051
2040	2,506,355	259,864	142,501	117,363	213,970	212,759	45,894	11.5	9.00	1,125,298
2043	2,577,575	279,444	157,898	121,546	267,696	266,330	11,748	9.6	9.00	1,090,526
2044	2,576,402	285,770	163,970	121,800	286,943	285,522	-1,173	9.0	9.00	1,068,656
2045	2,560,684	291,614	170,209	121,405	307,332	305,852	-15,718	8.4	9.00	1,041,310
2050	2,229,713	312,979	205,153	107,826	415,092	413,292	-102,114	5.6	9.00	821,244
2055	1,375,287	305,026	233,161	71,866	527,025	524,835	-221,999	3.0	9.00	458,792
2060	-230,519	265,785	265,785	0	660,387	657,722	-394,602	0.2	9.00	-69,651
2065	-	310,002	310,002	0	810,688	807,446	-500,686	-	9.00	-
2070	-	361,401	361,401	0	953,450	949,506	-592,049	-	9.00	-
2075	-	418,414	418,414	0	1,096,457	1,091,658	-678,043	-	9.00	-
2080	-	482,327	482,327	0	1,272,743	1,266,904	-790,416	-	9.00	-
2083	-	523,756	523,756	0	1,399,218	1,392,650	-875,462	-	9.00	-

<부록 표 3-26> 재정수지표 :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6,985	109,027	54,012	55,015	33,923	33,486	75,104	22.8	9.00	621,224
2025	1,259,738	144,418	73,053	71,366	56,337	55,745	88,082	20.8	9.00	797,020
2030	1,729,455	186,422	94,696	91,726	89,976	89,199	96,446	18.1	9.00	961,478
2035	2,177,717	224,179	116,588	107,591	138,771	137,789	85,408	15.1	9.00	1,081,629
2040	2,482,628	256,989	140,688	116,301	213,579	212,369	43,410	11.4	9.00	1,114,645
2043	2,545,380	275,724	155,628	120,096	266,963	265,597	8,761	9.5	9.00	1,076,904
2044	2,541,050	281,724	161,520	120,204	286,054	284,633	-4,330	8.9	9.00	1,053,992
2045	2,521,999	287,222	167,566	119,656	306,272	304,792	-19,050	8.3	9.00	1,025,579
2050	2,171,414	306,576	201,402	105,174	413,028	411,228	-106,452	5.5	9.00	799,772
2055	1,294,405	296,975	228,905	68,070	523,560	521,370	-226,585	2.9	9.00	431,810
2060	-328,477	260,954	260,954	0	654,860	652,195	-393,906	0.1	9.00	-99,249
2065	-	304,346	304,346	0	802,595	799,353	-498,249	-	9.00	-
2070	-	354,787	354,787	0	942,340	938,396	-587,553	-	9.00	-
2075	-	410,745	410,745	0	1,081,874	1,077,075	-671,128	-	9.00	-
2080	-	473,435	473,435	0	1,253,791	1,247,953	-780,356	-	9.00	-
2083	-	514,107	514,107	0	1,377,199	1,370,631	-863,092	-	9.00	-

<부록 표 3-27> 재정수지표 :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90	109,117	54,091	55,026	33,923	33,487	75,194	22.8	9.00	621,375
2025	1,261,203	144,816	73,376	71,440	56,351	55,759	88,465	20.8	9.00	797,946
2030	1,734,112	187,360	95,403	91,957	90,091	89,313	97,270	18.2	9.00	964,067
2035	2,187,753	225,888	117,822	108,065	139,230	138,248	86,657	15.1	9.00	1,086,614
2040	2,499,677	259,698	142,627	117,071	214,805	213,595	44,893	11.4	9.00	1,122,300
2043	2,566,901	279,141	158,064	121,078	268,904	267,538	10,238	9.5	9.00	1,086,010
2044	2,564,019	285,406	164,151	121,255	288,288	286,867	-2,882	8.9	9.00	1,063,520
2045	2,546,370	291,179	170,405	120,774	308,828	307,349	-17,649	8.3	9.00	1,035,489
2050	2,201,702	312,017	205,435	106,582	417,466	415,666	-105,450	5.5	9.00	810,927
2055	1,324,831	303,044	233,485	69,558	530,377	528,187	-227,334	2.9	9.00	441,960
2060	-311,021	266,152	266,152	0	664,696	662,031	-398,544	0.1	9.00	-93,975
2065	-	310,430	310,430	0	815,813	812,571	-505,383	-	9.00	-
2070	-	361,899	361,899	0	958,977	955,033	-597,078	-	9.00	-
2075	-	418,990	418,990	0	1,101,984	1,097,185	-682,993	-	9.00	-
2080	-	482,997	482,997	0	1,278,001	1,272,162	-795,003	-	9.00	-
2083	-	524,485	524,485	0	1,404,245	1,397,678	-879,760	-	9.00	-

<부록 표 3-28> 재정수지표 :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기본가정 - 0.5%pt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52	109,079	54,054	55,025	33,923	33,487	75,156	22.8	9.00	621,347
2025	1,260,215	144,464	73,072	71,392	56,303	55,711	88,161	20.8	9.00	797,321
2030	1,730,650	186,465	94,680	91,786	89,816	89,038	96,650	18.2	9.00	962,142
2035	2,180,608	224,248	116,523	107,725	138,387	137,404	85,861	15.1	9.00	1,083,065
2040	2,489,314	257,157	140,564	116,593	212,741	211,531	44,416	11.5	9.00	1,117,647
2043	2,556,081	276,031	155,466	120,565	265,752	264,386	10,280	9.6	9.00	1,081,432
2044	2,553,468	282,093	161,343	120,750	284,706	283,285	-2,613	9.0	9.00	1,059,144
2045	2,536,356	287,662	167,374	120,288	304,775	303,295	-17,113	8.4	9.00	1,031,417
2050	2,199,447	307,549	201,130	106,420	410,685	408,885	-103,136	5.6	9.00	810,097
2055	1,344,478	298,957	228,594	70,362	520,344	518,154	-221,388	3.0	9.00	448,514
2060	-249,663	260,598	260,598	0	650,870	648,205	-390,271	0.2	9.00	-75,436
2065	-	303,931	303,931	0	797,955	794,713	-494,024	-	9.00	-
2070	-	354,303	354,303	0	937,406	933,462	-583,103	-	9.00	-
2075	-	410,186	410,186	0	1,077,004	1,072,205	-666,818	-	9.00	-
2080	-	472,788	472,788	0	1,249,145	1,243,306	-776,357	-	9.00	-
2083	-	513,403	513,403	0	1,372,677	1,366,109	-859,274	-	9.00	-

<부록 표 3-29> 재정수지표 :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기본가정 × 0.5배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876	52,228	32,141	20,087	14,459	13,935	37,768	26.3	9.00	384,316
2015	514,768	69,614	37,390	32,224	18,204	17,605	51,410	25.5	9.00	447,555
2020	850,744	109,321	54,082	55,239	33,286	32,849	76,035	23.3	9.00	623,982
2025	1,269,726	145,148	73,236	71,912	55,721	55,129	89,428	21.2	9.00	803,339
2030	1,746,721	187,663	95,041	92,622	89,515	88,738	98,148	18.4	9.00	971,077
2035	2,206,122	226,123	117,173	108,950	137,859	136,876	88,264	15.4	9.00	1,095,738
2040	2,524,265	259,806	141,595	118,211	213,973	212,763	45,833	11.6	9.00	1,133,339
2043	2,592,522	279,054	156,765	122,289	268,842	267,477	10,212	9.6	9.00	1,096,849
2044	2,589,250	285,204	162,747	122,457	288,475	287,054	-3,271	9.0	9.00	1,073,986
2045	2,570,894	290,840	168,889	121,950	309,196	307,716	-18,356	8.4	9.00	1,045,462
2050	2,217,809	310,685	203,282	107,403	418,632	416,832	-107,947	5.6	9.00	816,860
2055	1,321,282	300,550	231,040	69,510	532,934	530,744	-232,384	2.9	9.00	440,776
2060	-349,360	263,375	263,375	0	669,282	666,617	-405,907	0.1	9.00	-105,559
2065	-	307,180	307,180	0	823,045	819,803	-515,86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67,805	963,861	-609,70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112,834	1,108,035	-698,246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90,812	1,284,973	-812,919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418,300	1,411,732	-899,355	-	9.00	-

<부록 표 3-30> 재정수지표 :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기본가정 × 2배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494	52,199	32,125	20,074	14,702	14,178	37,497	25.8	9.00	383,964
2015	513,154	69,510	37,369	32,141	18,809	18,211	50,700	24.6	9.00	446,152
2020	841,698	108,754	54,055	54,698	34,899	34,463	73,854	22.0	9.00	617,347
2025	1,247,348	143,875	73,200	70,675	57,034	56,443	86,840	20.3	9.00	789,181
2030	1,713,724	185,921	95,041	90,879	89,912	89,135	96,009	18.0	9.00	952,733
2035	2,159,953	223,880	117,173	106,707	138,925	137,943	84,955	14.9	9.00	1,072,806
2040	2,470,482	257,265	141,595	115,670	211,483	210,273	45,782	11.5	9.00	1,109,192
2044	2,547,735	283,119	162,747	120,372	281,258	279,837	1,861	9.1	9.00	1,056,765
2045	2,535,737	289,026	168,889	120,136	301,024	299,544	-11,998	8.5	9.00	1,031,166
2050	2,234,538	311,149	203,282	107,867	405,452	403,652	-94,303	5.7	9.00	823,021
2055	1,438,199	305,602	231,040	74,562	513,537	511,347	-207,936	3.2	9.00	479,779
2060	-82,432	263,375	263,375	0	642,893	640,228	-379,518	0.5	9.00	-24,907
2065	-	307,180	307,180	0	786,408	783,166	-479,227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22,381	918,437	-564,280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60,716	1,055,917	-646,128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32,381	1,226,542	-754,488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56,610	1,350,043	-837,666	-	9.00	-

부록4 : 재정평가관련 재정수지표

<부록 표4-1> 표 번호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이상의 기금유지	적립배율 5배 이상의 기금유지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부록 표 4-2>	<부록 표 4-3>	<부록 표 4-4>	<부록 표 4-5>

<부록 표4-2> 재정수지표: 적립배율 2배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12.91%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 험 료 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30,915	86,359	53,623	32,736	18,448	17,849	67,912	25.1	12.91	461,594
2020	988,265	141,124	77,565	63,559	35,114	34,677	106,010	25.1	12.91	724,847
2025	1,607,492	195,370	105,036	90,335	58,260	57,668	137,111	25.2	12.91	1,017,039
2030	2,393,456	262,273	136,331	125,942	92,398	91,621	169,876	24.1	12.91	1,330,625
2035	3,291,500	329,198	168,078	161,121	141,148	140,165	188,051	22.0	12.91	1,634,824
2040	4,210,668	397,787	203,111	194,676	216,020	214,810	181,766	18.7	12.91	1,890,498
2045	5,082,742	478,481	242,262	236,218	310,075	308,596	168,405	15.8	12.91	2,066,913
2050	5,862,636	565,175	291,597	273,578	417,451	415,651	147,724	13.7	12.91	2,159,316
2055	6,504,636	642,918	331,414	311,505	529,396	527,206	113,522	12.1	12.91	2,169,929
2060	6,886,784	709,390	377,797	331,593	662,250	659,586	47,139	10.3	12.91	2,080,837
2062	6,932,518	735,485	400,888	334,596	720,812	717,930	14,672	9.6	12.91	2,013,318
2063	6,930,680	748,848	413,936	334,911	750,686	747,688	-1,838	9.2	12.91	1,973,318
2065	6,887,201	781,380	440,633	340,747	811,998	808,756	-30,618	8.5	12.91	1,884,792
2070	6,468,737	835,950	513,676	322,274	954,002	950,058	-118,052	6.9	12.91	1,603,391
2075	5,615,670	883,219	594,704	288,515	1,095,798	1,090,999	-212,579	5.3	12.91	1,260,726
2080	4,110,923	902,140	685,510	216,630	1,270,415	1,264,577	-368,275	3.5	12.91	835,906
2083	2,750,135	895,789	744,397	151,393	1,395,868	1,389,300	-500,079	2.3	12.91	526,953

<부록 표4-3> 재정수지표: 적립배율 5배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13.48%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33,362	88,806	55,991	32,816	18,448	17,849	70,358	25.1	13.48	463,721
2020	1,008,834	145,792	80,989	64,803	35,288	34,851	110,505	25.5	13.48	739,933
2025	1,658,047	202,766	109,673	93,093	58,541	57,949	144,225	25.9	13.48	1,049,024
2030	2,489,830	273,260	142,351	130,909	92,754	91,977	180,506	24.9	13.48	1,384,203
2035	3,452,928	344,379	175,499	168,880	141,489	140,506	202,890	23.0	13.48	1,715,002
2040	4,460,857	418,103	212,078	206,024	216,348	215,137	201,755	19.7	13.48	2,002,826
2045	5,453,231	506,042	252,959	253,083	310,552	309,072	195,490	16.9	13.48	2,217,574
2050	6,396,507	602,407	304,472	297,935	417,941	416,141	184,466	14.9	13.48	2,355,951
2055	7,258,351	692,765	346,046	346,719	529,981	527,791	162,783	13.4	13.48	2,421,366
2060	7,932,263	774,998	394,477	380,520	662,896	660,232	112,102	11.8	13.48	2,396,728
2065	8,320,556	869,414	460,088	409,326	812,736	809,494	56,677	10.2	13.48	2,277,053
2069	8,422,350	935,674	520,104	415,570	927,795	924,002	7,879	9.1	13.48	2,129,381
2070	8,419,565	952,055	536,356	415,699	954,840	950,895	-2,785	8.8	13.48	2,086,938
2075	8,258,521	1,038,764	620,961	417,803	1,096,707	1,091,908	-57,943	7.6	13.48	1,854,050
2080	7,668,168	1,106,547	715,777	390,770	1,271,401	1,265,563	-164,854	6.2	13.48	1,559,229
2083	6,988,250	1,136,204	777,263	358,941	1,396,936	1,390,369	-260,733	5.2	13.48	1,339,017

<부록 표4-4> 재정수지표: 수지적자 미발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료율 14.11%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36,066	91,511	58,608	32,903	18,448	17,849	73,063	25.1	14.11	466,073
2020	1,031,568	150,952	84,774	66,178	35,479	35,042	115,473	25.8	14.11	756,608
2025	1,713,924	210,940	114,799	96,141	58,852	58,261	152,087	26.5	14.11	1,084,377
2030	2,596,348	285,402	149,004	136,399	93,148	92,371	192,254	25.8	14.11	1,443,421
2035	3,631,350	361,157	183,701	177,456	141,865	140,883	219,291	24.1	14.11	1,803,620
2040	4,737,382	440,557	221,990	218,567	216,710	215,499	223,848	20.8	14.11	2,126,980
2045	5,862,720	536,505	264,781	271,724	311,079	309,600	225,426	18.1	14.11	2,384,094
2050	6,986,578	643,558	318,702	324,856	418,483	416,683	225,075	16.2	14.11	2,573,285
2055	8,091,408	747,858	362,219	385,640	530,628	528,438	217,230	14.8	14.11	2,699,272
2060	9,087,796	847,512	412,914	434,598	663,610	660,945	183,902	13.4	14.11	2,745,871
2065	9,904,796	966,714	481,591	485,123	813,552	810,310	153,161	12.0	14.11	2,710,606
2070	10,575,750	1,080,382	561,423	518,959	955,766	951,821	124,616	10.9	14.11	2,621,387
2075	11,179,574	1,210,682	649,982	560,700	1,097,711	1,092,912	112,972	10.1	14.11	2,509,830
2080	11,599,868	1,332,470	749,229	583,241	1,272,491	1,266,653	59,979	9.1	14.11	2,358,692
2083	11,672,492	1,401,926	813,589	588,336	1,398,117	1,391,550	3,808	8.3	14.11	2,236,564

<부록 표4-5> 재정수지표: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15.85%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43,536	98,981	65,835	33,146	18,448	17,849	80,533	25.1	15.85	472,567
2020	1,094,359	165,204	95,228	69,976	36,009	35,572	129,196	26.8	15.85	802,662
2025	1,868,253	233,516	128,955	104,560	59,712	59,120	173,804	28.4	15.85	1,182,019
2030	2,890,546	318,939	167,378	151,561	94,236	93,458	224,704	28.3	15.85	1,606,978
2035	4,124,137	407,497	206,354	201,143	142,906	141,924	264,591	27.0	15.85	2,048,378
2040	5,501,124	502,575	249,365	253,210	217,709	216,499	284,866	24.0	15.85	2,469,884
2045	6,993,699	620,640	297,433	323,208	312,535	311,055	308,106	21.4	15.85	2,844,010
2050	8,616,306	757,214	358,003	399,211	419,979	418,179	337,235	19.7	15.85	3,173,544
2055	10,392,243	900,022	406,887	493,136	532,414	530,224	367,608	18.8	15.85	3,466,824
2060	12,279,285	1,047,791	463,833	583,958	665,582	662,917	382,209	17.9	15.85	3,710,178
2065	14,280,337	1,235,448	540,979	694,469	815,806	812,564	419,642	17.0	15.85	3,908,042
2070	16,530,954	1,434,809	630,656	804,154	958,323	954,379	476,486	16.8	15.85	4,097,489
2075	19,247,282	1,685,507	730,136	955,371	1,100,484	1,095,685	585,023	17.0	15.85	4,321,042
2080	22,458,898	1,956,452	841,622	1,114,830	1,275,502	1,269,663	680,950	17.1	15.85	4,566,744
2083	24,609,980	2,135,827	913,919	1,221,908	1,401,379	1,394,811	734,448	17.0	15.85	4,715,513

부록5 : 국민연금 재정계산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계산 시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계산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 시 인구·경제 등 가정변수와 가입자·수급자 등 제도 기초변수 설정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마련 시에는 각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3. 재정계산 시행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계산의 범위

제3조(재정수지에 관한 계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정추계기간 설정
2. 재정목표 및 재정건전성 평가척도 검토
3. 추계에 필요한 인구·경제변수 등 가정변수 검토, 설정
4. 추계모형 및 가입율·징수율 등 제도 기초변수 검토, 설정
5.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수지 전망의 제시
6. 가정변수 및 제도 기초변수 변경에 따른 재정전망 및 평가
7. 이전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 및 변화요인 분석
8. 그 밖에 재정수지 계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이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2. 국민연금기금 운용목표 및 운용전략 등 중장기 기금운용방향
3.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제5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재정추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②재정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수지 계산과 관련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6조(재정추계위원회의 구성) ①재정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연구경력 등을 감안하여 제3항 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부위원 :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4급 과장급 이상 국가공무원

2. 민간위원 :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재정학, 경영학, 회계학, 통계학, 수학, 보험수리 또는 보험계리학 등을 전공하고 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 기금운용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경력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재정추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추계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재정추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재정추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실장급 이상의 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관리, 각종 일정관리

및 제반 사무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재정추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및 의견청취) ①재정추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위원장은 재정추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다음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보고하고, 재정추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채택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재정추계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추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부연구위원급이상으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 관리, 각종 일정관리 및 제반 서무업무를 처리한다.

③각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②제도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15조(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이하 “기금운용발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②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

제16조(준용규정)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위원회”를 각각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로 본다.

제17조(재정계산지원단) ①재정계산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 재정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계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민연금연구원에 둔다.

②지원단은 국민연금연구원 관련 직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단장은 국민연금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지원단장은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추진일정 등

제18조(추진일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매 5년이 되는 당해 연도 3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매 5년이 되는 당해 연도 8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사용) 재정계산 실시를 위해 매 5년이 되는 해의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지출에 대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및 재정계산지원단의 운영
2. 재정계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여론조사,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4. 재정계산결과 보고서 인쇄
5. 재정계산 결과 공시
6. 기타 재정계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결과의 발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계산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 5년이 되는 해의 직전 연도에 재정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 기구의 설치·운영, 세부일정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지침 이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록6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위원장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위촉직
정부 위원 (2)	류 근 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당연직
	김 완 섭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	"
민간 위원 (12)	금 재 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직
	김 진 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 유 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2012.12 사퇴
	성 주 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신 석 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신 화 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양 준 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 건 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이 덕 만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이 향 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
	전 병 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간사	박 성 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	

부록7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일지

<부록 표7-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제1차 (2012.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추진경과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 2010~2060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안) 요약 ○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운영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공통 시나리오 관련 논의 - 인구전망관련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인구전망에 대한 검토를 제안 ②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새로운 인구전망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2차 (2012.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운영계획(안)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060 장래인구전망(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장래인구전망 발표 및 검토 - 2060년 이전의 인구전망은 통계청 중위가정을 수용하는 데 잠정 합의 - 2060년 이후의 인구전망에 대해서는 추가논의 필요(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의 필요)
제3차 (2012.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전망에 대한 추가논의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거시경제변수 검토 - 위원회 수행과제 및 과제책임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가정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생존연령, 국제이동률 가정 등 인구추계 가정 부분은 추후 집중 논의 ○ 거시경제변수 전망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와 보다 심도 있는 협의과정 필요
제4차 (201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 위원회 수행과제 및 과제책임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변수 가정에 대한 추가발표 ○ 노동공급 전망 발표 및 논의 ○ 위원회 수행과제 및 과제책임자 결정 - 관심과제 중복에 대한 조율 필요
제5차 (2012.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전망 검토(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재정전망 검토를 통해 실적치와 가정 및 추계결과에 대한 검토 - 고갈시점이 아닌 다른 평가지표의 개발 및 사용이 바람직 - 인구변수 뿐 아니라 경제변수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필요 있음 ○ 2008년 재정전망과 관련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부록 표7-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계속)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제6차 (2012.7.26)	○ 논의안건 - 인구변수 및 노동관련 변수에 대한 평가 및 확정	○ 인구변수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통계청의 중위, 고위, 저위가정을 사용하되, '60년 이후의 연장추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정 제안 - 주요 가정에 대해서는 장기재정전망 협의회와 협의 필요 ○ 노동관련 변수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선진국의 경황률 변동 사례를 반영한 추가적인 조정 요구
제7차 (2012.8.9)	○ 논의안건 - 2008년 장기재정전망 검토(II)	○ 실적과 추계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 국민연금 추계모형 관련 논의사항 - 임의가입자 반영 - 납부예외자비율, 지역가입자 비중 등의 projection curve - 신규가입자 추계 방법론 - 평균소득 대신 소득분포의 반영 ○ 제도변수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통한 정밀한 연구 필요
제8차 (2012.8.23)	○ 논의안건 - 거시경제전망 검토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2011 검토(I)	○ 거시경제변수(경황률) 검토 - 2030년 이후 변곡점의 수정 필요 - 65세 이후 경황률에 대한 수정 필요 ○ 거시경제변수(실업률) 검토 - 실업률에 대한 장기전망 수정안 제시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모형 2011검토 - (가입자)경황률 스무딩처리, 가입기간 0인 자들의 별도관리, 가입자와 대기자의 합이 인구보다 많을 경우에 대한 처리 등 - (수급자)중복급여 단순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과대추계 처리 등
제9차 (2012.9.7)	○ 논의안건 - 인구변수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2011 검토(II)	○ 인구변수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기본가정) 통계청 및 통계개발원의 2010~2100년 저위, 중위, 고위가정에 따라 장래인구 전망 - 기본가정 외에 합계출산율 및 사망연령 상향 조정안 논의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모형 2011검토 - 제8차 회의 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2011년 재정추계모형에 반영 여부 및 추계방법 등 설명

<부록 표7-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계속)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10차 (2012.9.21)</p>	<p>○ 논의안건 - 거시경제변수(노동변수 관련) 전망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제도변수관련 검토</p>	<p>○ 거시경제 변수 전망-노동대안 - 참가율 : 57.1%에서 57.0%로 조정 - 실업률 : 3%에서 3.5%로 변경 ○ 제도 관련 변수의 가정 설정 - 가입률 : 9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 (해외사례 등 근거 자료 보완) - 지역가입자 비율 : 35% 혹은 5%정도 낮은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 - 납부예외자 비율 :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검토(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최종 수준까지의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 징수율 · 사업장가입자는 최근 5년 평균치(98.56%)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 지역가입자는 '11년 실적(66.57%)에서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 -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은 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검토 - 관리운영비 : 향후 5년은 2.5%, 그 이후에는 50% 수준으로 검토</p>
<p>11차 (2012.11.2)</p>	<p>○ 논의안건 - 제도관련 변수의 가정 설정(확정) - 민감도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설정</p>	<p>○ 제도 관련 변수의 가정 설정 - 가입률은 9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정 - 지역가입비율은 30%까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정 - 납부예외자 비율은 최근 실적 및 선형 보간을 반영하여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정 ○ 민감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설정 - 세트 시나리오의 경우 이항석 위원과 신석하 위원, 금재호 위원이 초안을 작성할 것을 검토 - 거시경제 변수와 노동변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검토</p>
<p>12차 (2012.11.30)</p>	<p>○ 논의안건 - 기금운용수익률 설정 - 재정평가 검토</p>	<p>○ 재정평가 세부지표 관련 논의 - 적립배율은 기본지표로 사용하며, 재정목표 설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 미적립부채는 추후 연금부채 논의 후 고려하기로 함 - 미국 OASDI의 '허용한계(Allowable threshold)' 지표 사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 및 검토 요청</p>

<부록 표7-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계속)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추계기간 : ‘향후 70년’으로 협의하여 결정 ○ 기금운용수익률 설정 - 기금운용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AA-) 수익률의 1.1배로 확정
13차 (2012.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 연금부채 검토 -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부채 산출을 위한 주요쟁점검토 - 국민연금 부채는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확정 - 공무원 연금 : 20%, 사학연금 : 10%(20년 이상), 47.3%(20년 미만), 군인연금 : 0.5% ○ 인구 기본가정 설정 -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중위가정을 적용하되 2060년 이후 사망률은 상한연령 100세에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보사연(안)을 채택 ○ 인구 대안가정 설정 - 시나리오1: 기본가정에서 합계출산율을 정부목표(20년부터 1.7)로 적용 - 시나리오2: 기본가정에서 합계출산율은 정부목표(20년부터 1.7), 사망률은 수정안으로 적용
14차 (2013.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 민감도분석 기준 - 인구 기본가정 및 대안가정 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도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조합시나리오 : 인구, 경제변수에 따른 기재부의 5가지 조합시나리오 외에 가능한 시나리오 검토 - 개별시나리오 : 2차 재정계산의 개별시나리오에 추가하여, 개별변수에 대한 변동폭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 논의 ○ 사망률 및 인구가정에 대한 논의 - 통계청 인구가정 외에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사망률 추이도 함께 검토 ○ 연금부채 - 공무원연금의 산출방식 검토

<부록 표7-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계속)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15차 (2013.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평가기준 검토 - 재정추계시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평가는 재정평가기간(향후 70년) 동안 기금적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 설정(2차 재정계산과 동일) *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평가지표 요청 시 검토 ○ 제 3차 재정계산 시산결과 검토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 따른 재정변화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 추가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재정수지표, 적립금 등의 추이 그래프 ○ 기본안 및 대안은 공동워크숍(2.15)에서 논의 후 결정
16차 (2013.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추계 기본안 및 대안확정 - 민감도분석 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협의회의 인구추계(중위)와 경제 변수전망(중위)을 적용한 추계결과를 기본안으로 결정, 단 인구추계 및 경제 변수 전망의 경우 2060년 이후는 재정추계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서 연장한 결과를 적용함 - 대안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인구 및 경제 변수의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추계결과를 제시하기로 함. ○ 민감도분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pm 5\%$ 변화 및 조기수급률에 대한 시나리오 추가

2013 國民年金財政計算
國民年金 制度改善方向

2013.10

國民年金制度發展委員會

머 리 말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1998년에 도입된 재정계산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재정계산은 2003년에 이루어진 바 있고, 2008년에는 제2차 재정계산이 그리고 금년 2013년에는 제3차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시기이다.

제3차 재정계산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2년 초부터 관련 준비에 착수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재정추계위원회」를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위원회」의 활동은 2013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보다 늦은 2013년 9월에 종료되었다.

5년 전의 제2차 재정계산과 금년의 제3차 재정계산을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재정계산을 일선에서 수행한 위원회의 구성 형태에서 변화가 있었다. 제2차 재정계산의 경우 「재정추계위원회」와 「운영개선위원회」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는데, 운영개선위원회에는 「제도개선소위원회」와 「기금운용개선특별소위원회」라는 두 개의 하위 소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발전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라는 두 개의 별도 위원회를 「재정추계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계산 추진 조직체계를 다르게 한 이유는, 제도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발전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계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재정계산과 마찬가지로 제3차 재정계산에서도 위원회의 운영 시기를 달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추계위원회」를 먼저 가동시킨 뒤 「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뒤이어 구성하였다. 이렇게 재정추계위원회를 먼저 가동시킨 뒤에 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은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발전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재정계산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도 변화가 있었다. 제1차 재정계산의 경우 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제도 개혁을 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반면 2008년에 이루어진 제2차 재정계산의 경우, 2007년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직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안보다는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금년 제3차 재정계산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록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지만,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정립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도 검토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의 기본적인 논의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정부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소득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된 과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2년 10월에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까지 총 16회에 이르는 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 과제들을 토론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리된 결과가 본 보고서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KDI 문형표 박사)의 책임 하에 선정된 과제를 논의하였는데, 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크게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 내실화, 급여제도 합리화, 재정안정화, 총론의 4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들이 4 분야의 총 12개 세부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각 과제의 책임자는 아래와 같으며, 과제를 담당해주신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방안 : 허재준 위원
- 사회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 제갈현숙 위원
- 적용체계 및 가입자 구조 효율화 방안과 특수고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허용 여부 : 김수환 위원
-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권문일 위원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 : 이상은 위원
- 소득재분배 합리성 확보방안 : 홍백의 위원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정부의 역할 : 신기철 위원
- 재정안정 목표 설정 및 재정안정화 방안 : 윤석명 위원
- 국민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의 의미 : 주은선 위원
- 재정안정화에서의 국가의 역할 및 급여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 김상호 위원
-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 과제 : 김진수 위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원섭 위원

절차상 본 보고서는 위에서 소개된 각 과제별 수행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긴 하였지만, 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 내용은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제 책임자의 개인별 검토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보고서의 완성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위원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직접 과제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위원들도 참여하여 과제 내용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해주셨다.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신 양성일 위원(보건복지부), 홍남기 위원(기획재정부)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내용을 검토해주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의 류근혁 과장께 감사드린다. 또한 위원회의 모든 과정을 뒷받침한 보건복지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이 실무지원단이 되어 재정계산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주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지원 단장의 역할을 해 주신 김성숙 원장과 본 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을 맡으며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신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 그리고 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뒤에서 수고한 우해봉 팀장, 김경아 팀장, 조영은 주임연구원 및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인 본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의 틀에 기초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들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문형표

< 목 차 >

머리말

요 약	1
제 I 장 第3次 財政計算의 推進經過	9
1. 추진근거와 취지	11
2. 추진여건과 기본방향	11
가. 추진여건	11
나. 기본 추진방향	12
3. 추진체계	13
4. 추진경과	15
제 II 장 與件變化 및 制度改善(案) 樹立의 基本方向	17
1. 여건변화	19
2.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른 재정추계결과	23
3. 제도개선(안) 수립의 기본 논의방향	25
제 III 장 國民年金 制度部門의 改善事項	27
1. 검토 배경 및 방향	29
가. 배경	29
나. 방향	30
2.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32
가.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	32
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충	37
다. 크레딧 제도 확대	41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46
3. 국민연금의 부과 및 급여합리화	49
가. 보험료부과 소득 상·하한선 기준의 개선방안	49
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53

다. 유족연금제도 개선방안	59
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64
가.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64
<1 안>	64
<2 안>	69
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검토	73
5.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검토	77
6. 정책제언 종합	80
부록	83
부록1: 국민연금제도 개요	85
부록2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93
부록3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일지	94

요 약

I. 제3차 재정계산의 추진경위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에 의거하여 '03년 제1차 이하 매5년마다 실시
 - 이번 3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추계위원회」('12.6~'13.5),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12.10~'13.9)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
- 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총 15인(위원장 1, 당연직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
 -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노후소득보장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재정계산 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연구원에 재정계산지원단을 설치·운영
-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12.10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친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주제들을 검토하고, 심의·결정

II. 여건변화와 제도개선(안) 수립의 기본방향

-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구고령화는 2차 재정계산 시의 예상에 비해 보다 빠르게 진행
 -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인부양비가 상승하고, 연금수급기간 증가에 따라 수급자도 증가

- 기대여명 전망(2010년→2060년) : (男)77.2세→84.1세, (女)86.6세→90.3세
- 노인부양비(65세 이상/15~64세) : 221%(2020년) → 57.2%(2040년) → 80.6%(2060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2,187만명 수준까지 감소 전망(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전망)
- 그러나, 다른 가정변수의 조합결과 재정상태의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음
- 3차 재정추계 결과 : 2044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2060년에 기금 소진 등(2차 재정계산 결과와 시점 동일)
- 제도 내외적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도입 관련 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국민연금의 역할, 국민의 소득수준의 변화 등 관련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합리화 및 제도간 역할 분담관계의 조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감안, 3차 재정계산에 따른 제도개선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되었음.
 - 먼저, 1,2차 재정계산과는 달리 거시적인 제도개혁보다는 내실화에 초점을 둠.
 -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된 문제 검토와 부과 및 급여 합리화 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장기적 입장에서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공적 노후 보장제도로서의 역할 및 신뢰강화에 기여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
 - 다만, 개선이 시급한 제도 분야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III. 국민연금 제도부문의 개선사항

- 국민연금의 제도운영부문은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검토
 - 가입 내실화, 국민연금제도 부과 및 급여 합리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1.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 199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25년 경과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적용체계 및 가입 구조의 개편 필요
 - 효과적인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크레딧 제도,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개선 추진
- 광범위한 적용제외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 적용체계 개편을 추진
 - 혼인조건이 아닌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자로 관리하여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강화
 -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가입자/당연가입제외자/적용제외자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확충
 - 현행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기준은 유지하되, 신규가입자 유인 차원에서 초기 가입기간 집중 지원방식에서의 전환을 검토
 - 신규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주 책임 원칙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
 - EITC의 확충 등으로 소득 파악률이 향상되는 대로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보험료지원 사업의 확대도 적극 검토

○ 크레딧 제도 확대

- 제한된 크레딧 적용 및 국고지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축소 효과가 미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크레딧 적용 범위 및 지원 확대를 추진
- 출산크레딧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 제공하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 제고 도모
 - 자녀 당 12개월로 동일 적용하되, 최대 인정기간은 60개월로 확대
 -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시점에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선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연금액 산정 시 소득수준은 해외 사례 및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A값의 50%를 유지
 - 다만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또한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시점에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고려
-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도입가능성 및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후보장 사각지대 및 차별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2. 국민연금제도 부과 및 급여 합리화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하한선 기준의 개선방안
 - 상한액의 수준 및 조정기준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상한액 수준('13년 398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정기준만 'A값 상승률'에서 '중위임금상승률'로 변경 방안 검토
 - 하한액의 수준 및 조정기준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하한액 수준('13년 25만원)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정기준만 'A값 상승률'에서 '중위임금상승률'로 변경 방안 검토
-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높여, 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검토
 -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장애개념 및 장애판정기준의 개선
 - 현행 의학적 장애개념 편중에서 탈피, 근로능력 내지 소득활동능력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장애개념 및 판정기준으로의 점진적 전환 추진
 - 다만,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여부 및 소득수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근로능력을 반영한 장애판정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여건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 방안 모색
 - (1안) 기준가입기간은 현행(20년)대로 유지하되 등급별 지급률만 상향 조정(예시 : 1~3등급 100~60% → 120~80%)
 - (2안) 등급별 지급률은 현행(100~60%)대로 유지하되 기준가입기간만 상향조정(예시 : 20년 → 30년)
 - 다만, 2안은 1안에 비해 재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입자간 형평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1안 적극 권장
 -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 현재 진행 중인 가입구조 개편 논의가 확정된 후 그에 따른 수급요건 관련 구체적 안을 추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구주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의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여수준 관련 유족연금의 개선방안 검토
-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개선
 -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의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 수급권 보장 필요
 - 구체적인 수급자격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논의 확정 후 개선 방안 마련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률(40~60%)을 적용하는 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기본연금액의 60%로 급여수준 단일화 검토
 - 유족연금의 기준가입기간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미성숙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유족연금 기준 가입기간은 현행(2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경우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현행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간의 중복급여 조정 방식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음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합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 없이 두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일정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나 '노령연금 평균액' 등이 고려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방안은 해외 사례 및 조정 기준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나 보험료율의 인상 등 구체적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재정안정화 대책 제1안의 기본방향은 현행 재정방식(부분적립 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전제 하에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를 기준(2083년)으로 최소한 적립배율 2배 이상 유지'를 재정안정화 목표로 설정함
 - 설정된 재정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 후세대의 부담 경감 필요
 - 그 외 재정안정화 보완대책으로, 재정안정성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조기 재정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안정의 근본대책으로 고용률·출산율 제고가 필요함을 논의
- 재정안정화 대책 제2안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부과방식에서의 연착륙(soft landing)'으로 재설정하고 대안적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하는 것으로 함.
 - 기존 재정목표는 보험료율의 지속적 인상을 전제로 하며, 기금 과다적립·기금의 급격한 감소문제를 간과하는 등의 문제 내포
 - 이에 기본적으로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포괄적 대책 집중 강구 필요
 - 대규모 사회투자를 통해 출산율, 고용률, 경제성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장기적 재정안정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
 - 연금보험료 부과 소득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급여 지출을 억제하는 수단을 동시 강구

- 보험료율의 인상은 수지차, 기금규모 등 적절한 재정적 신호와 합리적 지표를 감안하여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 검토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연금제도 및 여건이 크게 다르고, 과거 제도개혁을 통한 낮은 소득대체율 등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는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은 장기적 복안으로만 검토 가능

4.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검토

-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노후소득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공적연금 양 제도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서로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운영
- 개선 대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기초노령연금을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 다른 사회적 논의기구(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문제를 보다 심층적인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 발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유보

제 I 장 第3次 財政計算의
推進經過

제 I 장 第3次 財政計算의 推進經過

1. 추진근거와 취지

○ 추진근거

- 1998년에 도입된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후 5년이 경과한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 2008년 제2차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금년 2013년에 제3차 재정계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제도의 취지

-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의 여건변화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제적으로 제도 및 기금운용의 방향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음.
- 즉, 재정계산제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 계획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2. 추진여건과 기본방향

가. 추진여건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의 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당한 진통 끝에 2007년 7월 국회 통과

- 이에 제2차 재정계산에서는 '07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높은 개혁 피로감,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제도 틀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 등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과 국민연금제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및 논의과제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

나. 기본 추진방향

- ▣ 먼저, 이번 재정계산은 신뢰성 있는 장기 재정수지의 추계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
- ▣ 재정계산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증진과 사회적 합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운영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 재정계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기능 부여
 - 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
 - 각 분야별 전문적인 과제 검토를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

- 세미나·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재정계산 결과의 수용성 제고

▣ 재정추계와 제도개선 부문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재정추계(재정전망과 분석)를 우선 실시('12.6~'13.3)
 - 인구·거시경제 전망, 추계모형에 대한 검증, 추계결과 도출 등
- 재정추계에 따른 제도개선계획의 수립은 재정추계가 상당히 진행된 후 순차적으로 추진('12.10~13.9)

3. 추진체계

-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되,
 - 재정계산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재정추계 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시·공간적으로 분리 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지원을 위해 **재정계산기획지원단** 설치

▣ 추진체계의 구성도



□ 제도발전위원회 역할 및 구성

① 제도발전위원회

○ 기능

- 재정추계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검토
- 급여수준(노후소득보장수준) 적절성 확보 방안 검토
- 국민연금제도의 장기발전방향 모색 등 연금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총원 : 위원장 포함 15인(간사 별도)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위촉)
 - 당연직 정부위원 (2인, 국장급)
 - 민간위원 (12인)
- 간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운영기간 : '12. 10 ~ '13. 9

② 재정계산지원단

○ 기능

-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운영 및 전체 재정계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적으로 지원

※ 용역과제에 대한 일정관리, 위원회 회의록 관리, 행사지원, 관계기관 업무 연락, 회계·서무 업무 등

○ 구성

- 복지부 관계자 (연금정책국 각 과 담당자 참여)
- 국민연금연구원 (위원회 간사위원 등 참여)
- ※ 단장 : 국민연금연구원장

4. 추진경과

□ 「제도발전위원회」는 '12.10.25일 발족하여 '13년 9월 말 기준 제도발전위원회 회의 16회, 자체 Workshop 1회, 재정추계위원회와의 공동 Workshop 1회 개최

□ 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설정한 다음의 4개 과제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운영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결정

○ 「제도발전위원회」 논의 과제

-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 적용체계 및 가입자 구조 효율화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및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 가입 허용 여부 관련 주제 논의
- 급여제도 합리화
 - 국민연금 장애 및 유족연금 개선방안, 보험료 부과 상하한선 기준 개선방안
- 재정안정화
 -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검토
- 구조개혁 검토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관련 논의

□ 제도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결과를 '13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연금제도개선보고서」를 제출
- '13년 9월 말 「제도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동년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동년 10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

제Ⅱ장 與件變化 및
制度改善(案) 樹立의
基本方向

제 II 장 與件變化 및 制度改善(案) 樹立의 基本方向

1. 여건변화

□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빈곤의 심화

○ 노인인구 증가

-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명(전체 인구 대비 11%), 2030년 1,269만명(49.9%), 2060년 1,762만명(40.1%)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10년 현재 15.2%에서 2060년 80.6%로,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는 2010년 68.4%에서 2060년 374.0%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초고령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

〈표 II- 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5.2	22.1	38.6	57.2	71.0	80.6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68.4	119.1	193.0	288.6	376.1	394.0

자료 : 장래인구추계, 2011, 통계청

○ 인구고령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기 사회보험제도로써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지출의 추이와 재원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

- 인구의 고령화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세대 인구의 감소(수입감소) 및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수급자수의 증가(지출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연금재정 악화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노인빈곤의 심화

- 중위소득의 50% 빈곤선 개념에 따라 살펴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45.1%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OECD, 2011).
 -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13.5%의 3배가 넘는 수치임.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76.6%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 2〉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중위소득 50% 기준)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OECD
75+	49.8	25.4	27.4	9.8	6.8	11.1	16.1
65+	45.1	22.0	22.4	6.2	5.9	8.4	13.5

-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는 단기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를 감안한다면 노인 빈곤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여건

○ 가입자 현황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33만명('12.12월말 기준)
- 도시지역으로 제도를 확대한 1999년 이후 사업장 가입자 규모의 증가로 전체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2006년부터 사업장적용범위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의 종별 전환이 크게

이루지면서 사업장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전체 가입자 중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부예외자는 약 467만명, 장기체납자(13개월이상)는 약 125만명

〈표 II- 3〉 국민연금 가입종별 변화추이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32,868	168,570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6,899	179,230
'03.12	17,181,778	423,032	6,958,794	9,964,234	23,983	234,767
'04.12	17,070,217	573,727	7,580,649	9,412,566	21,752	55,250
'05.12	17,124,449	646,805	7,950,493	9,123,675	26,568	23,713
'06.12	17,739,939	773,862	8,604,823	9,086,368	26,991	21,757
'07.12	18,266,742	856,178	9,149,209	9,063,143	27,242	27,148
'08.12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27,614	32,868
'09.12	18,623,845	979,861	9,866,681	8,679,861	36,368	40,935
'10.12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90,222	49,381
'11.12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71,134	62,846
'12.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207,890	88,576

○ 수급자 현황

- 수급자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350만명('12.12말 누계기준)
- 급여 지급액: 20년 이상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82만원 수령(최고 급여액은 1,604천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10~19년)인 노령연금 수급자 68.3만명, 월 평균 41만원 수령
-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최소 가입기간 5년 특례 적용)* 158만명,

월 평균 20만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58.3%
- 다층소득보장체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중요성 증가
 - 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도입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사적연금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은 불변
 - 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논의 중인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이 여전히 낮은 관계로 기초연금의 역할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가입자와 수급자 증가
 - 유형별 맞춤형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마련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 증가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등
- 국민연금제도 인식 변화와 소득신고자 증가
 -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 소득신고자 규모 증가
 - 납부신청자 순증가: 125천 명(08년)→262천 명(09년)→557천 명(10년)→858천 명(11년)

2.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른 재정추계결과

□ 재정추이

- 국민연금은 초기에 부과방식비용률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 옴으로써 지금까지 상당한 적립기금이 축적되어 왔음
 - 부과방식비용률 보다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으나, 완전적립에 필요한 보험료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 부분적립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앞으로 20~30년간은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 그러나 향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3년에 최고 2,561조원(1,084조원, 2010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이 달라졌으나, 각 변수들 간의 변동효과가 상쇄되어 2차 재정계산(기본 가정)의 수지적자 발생시점(2044년) 및 기금소진 시점(2060년)은 동일하게 전망됨

〈표 II- 4〉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2065	-	307,180	307,180	0	806,934	803,692	-499,754	-	9.00	-
2070	-	358,101	358,101	0	948,255	944,311	-590,154	-	9.00	-
2075	-	414,588	414,588	0	1,089,567	1,084,768	-674,979	-	9.00	-
2080	-	477,892	477,892	0	1,263,650	1,257,811	-785,757	-	9.00	-
2083	-	518,944	518,944	0	1,388,539	1,381,971	-869,595	-	9.00	-

○ GDP 대비 적립기금 및 연금지출 비중 전망

- 적립기금은 현재 GDP 대비 31.1%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5년에 49.4%에 도달한 이후 감소
- 급여지출은 2013년 1.0%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8% 수준에 접근

▣ 수지구조 및 부과방식 비용률

-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수지구조의 악화 불가피
- 이러한 수지구조의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임.
 - 부과방식비용률은 2013년 3.7%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23%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제도개선(안) 수립의 기본 논의방향

□ 국민연금 가입내실화

-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25년 경과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적용 체계 및 가입 구조의 개편 필요
- 효과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크레딧 제도,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개선 추진

□ 부과 및 급여제도 합리화

-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부과기준 상·하한선의 적정 수준 조정
- 가입구조 개편 등과 함께 장애 및 유족연금 급여 관련 개선

□ 장기 재정안정화

- 제2차 재정계산(2008) 시 제3차 재정계산으로 위임했던 보험료율 인상 관련 논의 등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가능성 검토

□ 제도 구조개혁 방안 검토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통해 제도간 역할 분담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Ⅲ장 國民年金 制度部門의 改善事項

제Ⅲ장 國民年金 制度部門의 改善事項

1. 검토 배경 및 방향

가. 배경

□ 재정안정성 측면

- 제3차 재정추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재정은 예상보다 빠른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측(2044년 수지적자 및 2060년 기금소진)과 유사한 재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급여-보험료간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 재정불안과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 및 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제도내실성 측면

- 먼저, 25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적용 및 가입체계가 복잡하여 관리가 어렵고 가입자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도입된 크레딧 제도의 경우 수혜범위가 제한적이고 수급시점에 비로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 체감도가 낮은 실정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가입자 확대가 한계에 직면

□ 급여합리성 측면

- 부과소득 상·하한선이 오랫동안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장애 및 유족연금 급여제도의 경우 적정 소득보장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도 재구조화 측면

- '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는데다 향후 급여수준이 A값의 1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과 충돌 가능성 내포
- 이에 연금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적정 소득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간 역할분담의 조정 내지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중

나. 방향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안정화, 제도내실화 및 합리화, 나아가 재구조화 문제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전반적 문제 중 검토가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 재정안정화

-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제2차 재정계산(2008) 시 제3차 재정계산으로 위임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적(parametric) 재정안정화 방안의 가능성과 함께,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함

□ 제도내실화

- 제도도입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의 개편 방안,
- 사각지대 해소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크레딧 제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지원사업 등의 개선 방안 그리고
-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방안 등도 주요 검토 과제로 선정

□ 부과 및 급여 합리화

-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 향상에 부응하도록 보험료부과 소득기준의 상·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생활수준의 향상, 가입구조 개편 등에 맞추어 장애 및 유족급여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재구조화

-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기초노령 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분담 구조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과제로 선정

2.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가.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민연금은 전 국민대상의 제1차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등)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 '12.12월 기준 18~59세 총 인구 가운데 무소득배우자를 포함하는 비경제활동인구 32.4%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혼인조건, 연령조건 및 소득활동 여부가 복잡하게 고려되어 가입자격이 결정
 -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임에도 혼인여부에 따라 가입자인 납부예외자 또는 가입자가 아닌 적용제외자가 될 수 있어 급여 수급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예시) 5년간 보험료 납입 후 실직한 여성이 미혼이면 납부예외자, 기혼이면 적용제외자로 관리
- 광범위한 적용제외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복잡한 가입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적용체계·가입구조 개편 필요
 - 현행 국민연금 적용 및 가입체계는 제도가 처음 도입(1988년)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10년 기준 납부예외·적용제외 관련 연간 35만건, 확인대상 및 적용제외·납부예외 관련 연간 437만 여건, 무소득배우자 확인정리 건수는 20만건에 달함

2) 개선방안

□ 적용제외자 범위 축소·국민연금 가입구조 단순화를 통한 보편성 확보

- 혼인여부에 따라 가입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여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가입 중' 요건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무소득배우자의 수급권 확보 기반 마련
 - ※ '12년 20대 여성 경제참가율(62.9%)이 20대 남성(62.6%)보다 처음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취업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전업주부가 된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 강화 기대
- 복잡한 가입구조로 인한 실익 없는 자격변동의 확인·처리 업무 최소화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도모

□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가입자/당연가입제외자/적용제외자로 구분

-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 소득신고자(당연납부자), 임의가입자(임의납부자), 납부이력 있는 무소득자인 가입이력자(비납부자)로 구분
- (당연가입제외자) 납부이력 없는 무소득자·타공적연금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가능

- (적용제외자)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수급자 등
-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불가

〈표 III- 1〉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 전 · 후 비교

(As - is) 3,285만명			(To - be) 3,285만명		
가입자 (2,011만명)	소득 신고자 (1,523만명)	사업장가입자 (1,133만명)	가입자 (2,357만명)	소득신고자 (당연납부자) (1,523만명)	사업장가입자 (1,133만명) (사업장납부자)
		지역가입자 (390만명)			지역가입자 (390만명) (지역납부자)
	임의가입자 (21만명)			임의가입자 (임의납부자)	임의가입자 (21만명) (임의납부자)
	납부예외자 (467만명)			가입이력자 (비납부자)	납부이력 있는 무소득자 (813만명)
당연가입 제외자 (1,112만명)	임의가입 가능자 - 무소득배우자 타공적연금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1,112만명)		당연가입 제외자 (766만명)	임의가입 가능자	납부이력 없는 무소득자 타공적연금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766만명)
적용제외자 (162만명)	임의가입 불가능자 타공적연금가입자(149만명) 조기노령연금수급자(13만명)		적용제외자 (162만명)	임의가입 불가능자	타공적연금가입자(149만명) 조기노령연금수급자(13만명)

3) 기대 효과

- 현행 국민연금에서 납부이력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납부예외(가입자) 및 적용제외(자격상실)로 차별되는 불합리 해소
- 동일 조건에서 다르게 분류(납부예외 vs 적용제외)되어 가입 자격에 따라 장애 · 유족연금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자 약 500만 명이 가입자로 편입되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및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가능
 - ※ 자격구조 개편에 따라 현행 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유지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추가 검토 필요

가입자 정의나 관리대상 정의에 따라 포괄적인 납부대상자 관리가 가능하므로 가입자의 전반적인 납부이력 제고 가능

- 적용제외자 축소(납부이력 있는 무소득자가 가입자로 포괄됨)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가능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 및 이에 따른 수급권 처리에서의 혼란과 민원발생 완화 가능

4) 한계 및 보완대책

가입구조 개편에 따른 실질납부자 증가 등 실익이 없을 경우 제도 개편에 따른 불신 및 혼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소득과약이 어려운 현실에서 납부이력이 있는 무소득자의 가입자로의 전환이 실질가입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 축소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무소득배우자가 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거부감 증가 가능성

가입구조 개편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 따라서 소득과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전환에 따른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의 조기수립 추진 필요

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12.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 및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동 사업은 부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제도 수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 130원 미만)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3~1/2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 '13.4월 이후부터는 보험료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

2012. 7-2013. 3	2013. 4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만원 미만 : 1/2 지원 ▲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만원 미만 : 일괄 1/2 지원

- 그 간의 실적
 - '12년의 경우 405,813개 사업장 및 815,557명 근로자 지원 (이 중에서 신규근로자는 전체 지원 근로자의 30.7%)

- '13.4.22일 기준 '12.12말 대비 사업장수는 5.9%, 지원 근로자수는 6.8%로 각각 증가

〈표 III- 2〉 두루누리 사업실적 현황

(단위: 명, %)

기준	사업장수	지원근로자수	기존근로자수	신규근로자수
2012.12.31	405,813	815,557(100.0)	565,012(69.3)	250,545(30.7)
2013.04.22	430,143	871,170(100.0)	493,534(56.7)	377,636(43.3)

- 재원 : 조세 (일반회계)
- 재정규모('13년 예산편성 기준) : 4,414억원

■ 문제점

- 현행 지원방식은 사각지대 축소에 한계
 - 보험료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이 사각지대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집행 결과를 보면 신규 가입자보다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고 있음
- 문턱 효과 등
 - 현행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사업장규모기준 '10인 미만')은 문턱효과(threshold effect)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1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
-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취약계층 배제 문제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 특수형태근로종사, 가사노동자 및 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노동자나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 등 대표적 사각지대 근로자들이 법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지원대상 사업장 범위의 확대 여부
 - 문턱효과 및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나 보험료지원사업의 근본 목적이 대규모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장 및 그 근로자를 집중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현행 유지가 바람직
- 지원대상 가입자 범위의 확대 여부
 - 당장에는 지역가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여건의 미비로 지원 확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현행 지원 범위를 유지
- 사각지대 해소 등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사업 추진 필요

□ 개선방안

- 사각지대 축소차원에서 신규가입자 집중 지원으로 전환
 -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목적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실질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목표
 - 이에 현행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기준은 유지하되 신규가입자 유인 차원에서 초기 가입기간 집중 지원방식으로 전환 검토
- 신규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주

책임 원칙도 강화

- EITC의 확충 등으로 소득과약률이 향상되는 대로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보험료지원 사업의 확대도 적극 검토

3) 기대효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신규가입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험료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인 사각지대 축소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 한계 및 보완대책

문턱효과 문제 및 지원대상과 비지원대상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잔존

- 이에 장기적으로 사업장 기준 지원방식 대신 소득 단일기준에 기초한 적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타 부처와의 협의 필요

- 현재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있어 동일 대상·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등과 긴밀한 협의 필요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기능 약화 우려

- 초기 가입기간 집중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수준 축소 시 근로자의 납부능력 약화로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실직하여 적용

제외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다. 크레딧 제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민연금은 현재 2 종의 크레딧(credit 가입기간 인정)제도 운영
- 출산 크레딧
 - 출산율 제고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확대를 목적으로 '07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
 - '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가 2 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 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 인정소득 기준은 A값의 100%
 - 필요재원은 국고와 기금이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현재 30:70으로 부담
 - 노령연금 수급자(보험료 납부기간과 출산크레딧 기간의 합산기간이 10년 이상)를 대상으로 급여지급 시점에 지원

〈표 III- 3〉 출산 크레딧 지급현황

(12. 12월 기준, 단위: 원)

구분	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금액	53,725,010	29,847,560	13,718,000	6,791,000	2,573,930	794,520

※ 재정: 국고(30%)와 국민연금기금(70%)

○ 군복무 크레딧

- 국가를 위한 의무 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07년 법 개정을 통해 출산크레딧과 동시에 도입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 인정
- 인정소득 기준은 A값의 50%
- 필요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노령연금 수급자(보험료납부기간과 군복무크레딧 등의 합산기간이 10년 이상)를 대상으로 급여지급 시점에서 지원

□ 문제점

○ 출산 크레딧

- 자녀가 1명인 경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여성가입자의 사각지대 축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 효과가 미미
 - 출생 순위에 따라 가입인정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첫째 자녀 적용 확대와 함께 개선할 필요
 - ※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독일은 자녀 당 3년, 프랑스는 자녀 당 2년의 양육 크레딧 적용
- 재원은 국고와 연기금이 공동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담비율이 명확하지 않고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군복무 크레딧과의 형평에도 어긋남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방식이므로 발생시점에서 보험료를 적립하는 것에 비해 정책 체감도가 낮음

○ 군복무 크레딧

- 우리나라의 군복무 기간이 21~24개월로 다양한데 반해 크레딧 인정기간은 6개월로 제한한 근거가 모호
- 연금액 산정 시 출산크레딧은 A값의 100%를 적용하나 군복무 크레딧은 A값의 50%를 적용하므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지원시점이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급여지급 시점에 이루어져 정책체감도가 낮음

○ 실업 크레딧

- 고용 유연화 정책과 노동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 크레딧 적용 요구가 높으나 제도에 반영되지 못함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실업(인정)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점도 감안 필요

2) 개선방안

□ 출산 크레딧

-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제공하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 제고 도모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자녀 당 12개월로 동일 적용하되
 - 최대 인정기간은 60개월로 확대
- 재원은 전액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연금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국가정책의 일환임을 명확히 함
 - 전액 국고로 조달되는 군복무 크레딧과 형평 제고 차원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현행 방식에서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 시점에 보험료로 적립(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 군복무 크레딧

- 연금액 산정 시 소득 수준은 해외사례 및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A값의 50%를 유지
 - 스웨덴은 평균소득의 50%, 독일은 평균소득의 60%를 사용하는 점 감안
- 다만,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 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크레딧 부여 시점 개선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현행 방식에서 크레딧 제공요인 발생 시점에 보험료로 적립(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실업 크레딧

-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도입가능성 및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토

3) 기대효과

□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사각지대 완화

- 출산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변경할 경우 정책 체감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특히 여성의 사각지대가 더욱 완화되어 제도내실화에 기여 기대

□ 크레딧 중간 형평성 확립

- 출산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조달함으로써 군복무 크레딧과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임.

4) 한계 및 보완대책

□ 국고부담의 증가

- 지출증가 요인 :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제공, 최대인정기간의 확대(50→60개월), 필요재원의 전액 국고부담화,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인정기간 확대
- 지출감소 요인 : 크레딧 지원방식의 변경(수급시점의 급여지원 → 크레딧 발생시점의 보험료지원)*

※ 국민연금 수익비가 평균 2라고 본다면 크레딧 발생시점의 지원은 1만 부담하면 되지만 수급시점의 급여지원은 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 전체적으로 볼 때 지출감소요인이 지출증가요인을 크게 상쇄하여 국민연금 재정이 개선될 전망
- 다만, 지원방식 및 지원시점의 변경으로 국고부담은 늘어남

〈표 III- 4〉 크레딧제도 개선전후의 재정전망 비교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기본안	2,561조원(2043년)	2044년	2060년(△281조원)
개정안	2,790조원(2044년)	2045년	2061년(△185조원)

* 위의 개선안을 모두 반영한 결과임. 다만,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일단 군복무 전기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대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증가 추세
 - ※ 대표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 이들은 유사 근로자이면서도 국민연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대부분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불리하게 취급
 - 또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대상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 높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국민연금은 물론 사회보장법, 세법, 노동법상 자영자로 간주되고 소득과약은 물론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 참고로, 산재보험에서는 '06.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따라 '08.7월부터 산재보험특례 적용(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적용제외된 상태임.*
 - ※ 산재보험의 특례허용범위 직종 :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건설기계 자차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방송사 구성작가, 오케스트라 단원, 각종 식음료배달원, 예술인 단체에서 인정한 예술인 등

□ 문제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후보장 사각지대
 -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영자로 간주되어 소득과약은 물론,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납부예외자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차별 문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갖고 있는 근로자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은 물론 사회보험에서도 차별되고 있음

2)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등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성격 문제가 우선적으로 정리될 필요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 (사용자가 보험료의 1/2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 나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 전환 내지 가입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연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의 사례를 참고하고 협조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검토
- 그나마도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3) 기대효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4) 한계 및 보완대책

- 공식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 사회적 논의와 법정비 상황이 지연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후보장개선에 한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은 사실 근로자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질적이고 수월한 실행이 가능한 만큼,
 -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 차원에서 적극적 문제제기 등을 지속 추진 필요

3. 국민연금의 부과 및 급여합리화

가. 보험료부과 소득 상·하한선 기준의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민연금은 '88년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을 가진 표준소득 월액등급체계를 도입 시행
 - 당시 하한액으로 7만원, 상한액으로 200만원, 총 53개 등급으로 설정
 - '95년에 하한액 22만원(20년 가입 시 1등급 가입자의 예상 소득 대체율 100%), 상한액 360만원(당시 전체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4배)으로 총 45개 등급체계로 변경
-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는 '07년 법 개정 시 폐지되고, 상한과 하한만 정하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소득월액체계로 전환
 - '10년부터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A값]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음
 - '12년 기준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임('12.7월 ~ '13.6월)

□ 문제점

- 저기여, 저급여로 인한 노후생계보장 기능 미흡
 - '95년 설정된 하한액(22만원)은 당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았으나, '12년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크게 미달
 - ※ 2012년도 정부 고시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5.3만원

- 상한액도 매년 조정되고는 있으나 지역가입자 소득과약 곤란 등으로 전반적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A값에 연동되고 있는 실정

○ 하한액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재분배 효과

-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10배 이상 많은 급여 지급 가능

○ 상한액 조정 경직성으로 인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부담률 저하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에 속하는 가입자가 18.1%에 이르는 등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음.

〈표 Ⅲ- 5〉 기준소득월액 분포별, 가입종별 가입자수 현황(2012년 8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원) 구분	전체		사업장		지역(소득신고자)	
	가입자수 (명)	비중(%)	가입자수 (명)	비중(%)	가입자수 (명)	비중(%)
~370,000원 이하	105,213	0.68%	72,453	0.64%	32,760	0.79%
371,000원~500,000원 이하	142,912	0.92%	92,189	0.81%	50,723	1.22%
501,000원~1,000,000원 이하	3,908,829	25.25%	1,500,819	13.25%	2,408,010	57.90%
1,001,000원~1,500,000원 이하	3,458,130	22.33%	2,341,467	20.68%	1,116,663	26.85%
1,501,000원~2,000,000원 이하	2,096,786	13.54%	1,843,464	16.28%	253,322	6.09%
2,001,000원~2,500,000원 이하	1,419,187	9.17%	1,298,355	11.47%	120,832	2.91%
2,501,000원~3,000,000원 이하	1,022,796	6.61%	969,252	8.56%	53,544	1.29%
3,001,000원~3,889,000원 이하	1,249,019	8.07%	1,155,881	10.21%	93,138	2.24%
3,890,000원	2,080,152	13.44%	2,049,938	18.10%	30,214	0.73%
합계	15,483,024	100.00%	11,323,818	100.00%	4,159,206	100.00%

2)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상·하한액은 전반적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정기준(A값 상승률)을 개선

- 'A값 상승률'을 대체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위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 동안 지체된 상·하한액의 수준은 당장 일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경우 A값의 급격한 상승,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저항 그리고 재정악화 등 부작용 예상
- 이에 다음 제4차 재정계산(2018년) 시에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 여부 및 구체적인 보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 개선방안

- 상한액의 조정기준
 - 상한액 수준('13년 398만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정기준만 'A값 상승률'에서 '중위임금상승률'로 변경
- 하한액의 조정기준
 - 하한액 수준('13년 24만원)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정기준만 'A값 상승률'에서 '중위임금상승률'로 변경

3) 기대효과

□ 급여적절성 제고

- 현행 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납부 기준소득이 전반적 국민소득의 증가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급여액의 적정 수준 확보 가능

- 이에 추가하여 A값의 적정한 상승에 따른 연금수준의 전반적 향상도 기대됨

▣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고소득자의 낮은 연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감소될 수 있으며,
-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일부 개선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4) 한계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야기 가능성

- 상·하한액 조정기준의 변경은 사업장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가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상한소득 이상 자 : 사업장가입자(2,050천명), 지역가입자(30천명)

▣ 연금재정 및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대한 영향 고려 필요

- 상·하한액 조정기준의 변경은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에 기여하나 그와 연동된 A값 상승으로 인해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 아울러 최근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액이 국민연금 A값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재정소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수급요건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
 - 가입중 요건: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신고, 납부예외 등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
 - 장애요건 : 의학적 장애 1-4등급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
 - 보험료 납부요건: 1월 이상 보험료 납부(최소가입기간) + 보험료고지 기간의 2/3이상 납부(미납기간이 1/3 미만) 충족

○ 장애연금액의 산정

- '07년 법개정으로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2028년 40%로 점차 줄어들면서,
 - 그에 연동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
- 장애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가입기간이 의제되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실가입기간을 사용함
- 장애연금 급여는 장애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의 10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12.12)

- 수급자는 약 76천명으로, 그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은 저등급으로 집중되는 추세

- 장애연금의 평균 연금월액은 411,360원임
- 아래 <표>는 2013년 기준 평균소득자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보여 주고 있음

<표 III- 6> 평균소득자의 장애연금 소득대체율(2013년 기준)과 전망

가입기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20년 미만	23.75(20.0)%	19.0(16.0)%	14.25(12.0)%
30년	35.63(30.0)%	28.5(24.0)%	21.38(18.0)%

참고: ()안은 2028년 기준임.

□ 장애연금의 문제점

○ 수급권의 보편성 문제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는 매우 적은 편임
 - 노령연금 대비 장애연금 수급자의 비율 측면에서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5%로서 미국 23.2%, 독일 9.0%, 영국 10.0%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이러한 취약한 보편성의 가장 큰 요인은 의학적 장애개념에 입각한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에서 찾을 수 있음
 - 의학적 기능손상 평가 중심의 장애판정기준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상실 내지 감소된 소득보전이라는 장애연금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움
 - 또한 장애를 의학적 차원의 정신적·신체적 기능 손상으로 정의할 경우 기능손상 면에서는 경미하지만 근로능력의 상실을 수반한 장애일지라도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갖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1988년 이후 장애4등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장애일시보

상금을 받은 자 중 2011년 6월 현재 기준 60세 미만인 장애연금 수급자 가운데 33.2%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4급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근로능력 상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음

○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

-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20년 미만 가입한 평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이 14.25~23.75%(2028년 12~2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음
-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이유는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기준가입기간을 비교적 짧은 20년으로 산정한 데서 찾을 수 있음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급여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 가입기간을 장애발생시점에서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 첫 번째는 성실납부자와 불성실납부자(납부예외자)간 형평성 문제로 납부예외자는 1개월만 납부하고도 장애연금 수급 가능
 -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득과약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납부예외제도에서 기인
 - 장기 가입자는 보험료 고지기간 2/3 이상 납부요건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노령연금과 일치시키자는 의견도 있으나 10년 이상 가입자도 성실납부 유인은 필요하고 해외 각국도 최근납부요건 등으로 지속적 성실납부를 요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제도 변경 부적절
- 두 번째는 적용제외자와 가입자(납부자+납부예외자)간 형평성 문제로, 전자는 장기간 납부에도 '가입중 요건'의 미충족 시 장애연금 수급 불가
 -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수급의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나

부상 시점을 가입 중으로 엄격하게 제한함.

- 그 결과 적용 제외 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기대와는 달리 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2) 장애연금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요건을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사회적 위험의 포괄성, 형평성)에 따라 현대화
-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높여 위험에 따른 생활보장 기능 강화

□ 개선방안

- 수급권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장애개념 및 장애판정기준의 개선
 - 의학적 장애개념에 근로능력 내지 소득활동능력 평가를 반영한 장애개념 및 장애판정기준으로 점진적 전환 추진
 - 기능손상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기능 손상과 근로능력을 교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준표를 개발하고
 - 장애판정과 관련된 의료 전문가 및 직업능력 전문가 양성 필요
 -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외사례 및 국내 여건의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장애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

- 검토 가능 대안

- (1안) 기준가입기간은 현행(20년)대로 유지하되 등급별 지급률만 상향 조정하거나(예시 : 1~3등급 100~60% → 120~80%)
- (2안) 등급별 지급률은 현행(60~100%)대로 유지하되 기준가입기간만 상향조정(예시 : 20년 → 30년)
- (3안) 기준가입기간 및 등급별 지급률 모두 현행대로 유지

- 기준가입기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2안)은 등급별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1안)에 비해 재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기금 소진연도가 1년 앞당겨 짐)을 미치는데다

- 가입자간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급별 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표 III- 7〉 장애연금 개선대안별 재정전망 비교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기본안(3안)	2,561조원(2043년)	2044년	2060년(△281조원)
장애연금 개선안(2안)	2,516조원(2043년)	2044년	2059년(△35조원)
장애연금 개선안(1안)	2,534조원(2043년)	2044년	2060년(△366조원)

주 : 각 개선안은 2014년부터 신규 및 기존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 현재 논의 중인 가입구조 개편 결정 후 현행 수급요건을 유지할 것인지 변경 및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최근 납부요건, 최소납부요건, 생애가입가능기간 중 납부요건 등

- 후자의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 안은 추후 마련

3) 기대 효과

- 장애연금의 보편성(장애개념의 개편), 적절성(지급률 등의 상향 조정), 형평성(수급요건의 개선) 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한계 및 보완대책

□ 연금재정 지출의 부담 증가

- 수급요건 및 장애개념의 변경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므로 그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곤란
- 하지만, 수급요건 및 장애개념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당한 지출 증가 및 그에 따른 기금소진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그러한 개선은 보험료 인상 등 수입구조 조정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급여간 형평성 문제 감안 필요

- 이미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다시 장애연금 급여수준을 올릴 경우 급여간 형평성 문제 야기 우려
-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률 인상은 노령연금의 급여추이를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 추진 필요

다. 유족연금제도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 가입 중 사망,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포함
 - 수급 중 사망 : 노령연금 및 장애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 (기준가입기간)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실체가입기간을 적용함
 - (급여수준)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 정지됨.
 - 반면,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하여 지급됨.

□ 문제점

○ 가입자간 형평성

- 장애연금과 유사한 수급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유족연금에서도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야기 중

○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 차등제의 비합리성

- 유족연금이 보험원리에 충실하려면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함.
-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액을 차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 가입기간별로 급여수준을 40%, 50%, 60%로 차등함으로써 가입기간 1년당 급여승률(accrual rate)조차 달리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그 결과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이 짧은 젊은 근로자일수록 유족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활 곤란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20년 미만 가입한 평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대체율 9.5~14.25%(2028년 8~12%)에 불과할 정도로 낮음
 - ※ 2012년 말 현재 유족연금 평균월액은 24.2만원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기준가입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데서 일정 부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급여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 발생 시점에서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표 III-8〉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2013년 평균소득자 기준)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기간 10~19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30년
9.5(8.0)%	11.875(10.0)%	14.25(12.0)%	21.375(18.0)%

참고: ()안은 2028년 기준임.

○ 유족연금 등 중복급여 조정의 적절성 문제

- 통상 과잉급여를 억제하기 위해 연금수급권이 복수로 발생할 경우 급여액이 큰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 중지하는 것은 원칙상 맞음.
-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연금수급권이 복수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복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이 중복조정 규정은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2) 개선방안

기본방향

-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요건을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사회적 위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에 따라 현대화하고,
-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높여 가구주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의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함.

개선방안

-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개선

-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를 가입자에 포함하는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을 통해 기여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의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 수급권 보장 필요
-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수급자격 조건은 향후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확정된 후 개선방안 마련
-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개선
 -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 지급률을 적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 유족연금의 목적에 상응하도록 단기 가입자의 유족을 고려하여 현행 보다 급여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로 급여수준 단일화 검토
- 유족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가입기간의 개선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현재까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유족연금의 기준가입기간은 현행(20년) 유지
 - 다만,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경우 유족연금 기준 가입기간의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간의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음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합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중복 급여의 조정 없이 두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일정기준으로 '최저생계비'나 '노령연금 평균액' 등이 고려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방안은 해외사례 및 조정 기준의 장 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3) 기대 효과

-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가입구조 개편 후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 보장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
-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
 -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기본연금액의 60%로 단일화하는 등의 개선은 유족연금의 보장수준 제고
-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주된 불만 중의 하나가 중복급여의 조정 문제임을 고려할 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방식 개선은 가입자들의 수용성 제고에 크게 기여

4) 한계 및 보완대책

- 연금재정 부담의 증가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60%로 단일화하게 되면 연금재정이 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음.
 - * 기금소진시점이 1년이 앞당겨 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악화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병행될 필요

〈표 III- 9〉 유족연금 개선(급여수준 60%로 단일화)에 따른 재정전망 비교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기본안	2,561조원(2043년)	2044년	2060년(△281조원)
유족연금 개선안	2,481조원(2043년)	2044년	2059년(△116조원)

주 : 개선안은 2014년부터 신규 및 기존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전제

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가.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1 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결과, 현 제도 유지 시 2044년부터 연금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
- 적립기금은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2043년에 최고 (2,561조원: 2010년 불변가 1,084조원) 수준에 도달한 이후, 2060년에 적립기금은 소진될 전망

□ 문제점

- 기금소진에 따른 국민 불신
 - '07년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2060년에 기금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여전히 가입자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 젊은 세대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문제
 - 기금소진을 방지할 경우 2060년경 보험료율은 수지균형 보험료율(15% 내외)을 초과하는 수준인 20% 이상으로 급등하고,

-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문제 내지 젊은 세대의 가입기피 문제로 이어질 우려

※ 일본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대 초 보험료 납부율이 90%에 근접하였으나, 인구 고령화 가속 및 이에 따른 연금재정 불안정 우려에 기인한 젊은층의 보험료 납부율이 매우 저조함(젊은층 납부율 40% 이하)

※ 약 76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후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최소화될 수 있음.

※ 현재 20~30대 초반 국민연금 가입자의 퇴직 이후 기금 소진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한 적립금 확보 차원에서도 조속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

○ 기금소진기의 평탄화 필요성

- 기금피크(peak)기에서 기금소진시점까지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기금 회수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 가능한 한 기금소진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기금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늘어나는 묵시적 연금부채

- 묵시적 연금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과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때문임.

- 수급부담 구조의 조기 개선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묵시적 연금부채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개선의 기본방향

○ 현행 재정방식(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전제 하에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를 기준(2083년)으로

최소한 적립배율 2배 이상 유지'를 재정안정화 목표로 설정함.

※ 4차 재정계산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안정이 달성 가능하도록 “재정추계 기간은 70년 이상으로 연장하되, ‘적립배율 2배 이상 유지’ 대신 ‘적립기금 미소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위의 재정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우선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추진
 - 재정안정화를 위한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방안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정은 곤란
 - 또 2013년부터 지난 1998년에 수립된 지급연령 상향조정계획이 막 실행되기 시작된 상황에서 재조정할 경우 국민 혼란과 저항이 예상됨.

□ 보험료율의 인상 방안(안)

- 설정된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2.91%(단, 2015년에 한꺼번에 인상 전제)로 추정
-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추진
 -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동일한 수준의 재정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는 최대한 빨리 인상해야 할 것임.

〈표 III- 10〉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단위 : 천명, %)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주: 2015년에 한꺼번에 인상 전제
자료 :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기타 재정안정화 대책

- 재정안정성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조기 재정경보시스템 구축
 - 현행 재정추계기간(70년)은 유지하되,
 - 기존의 재정평가기준(평가년도말 재정목표별 필요보험료율)에 ‘재정추계기간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한 개방형 계리적 수지차 (open actuarial balance) 개념’ 도입*
 - ※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에 제도를 중단했을 때 모든 연금채무를 총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수준과 실제 적용된 보험료수준간의 격차(gap)을 통하여 장기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 ※ 미국 국민연금(OASDI)에서 주로 사용 중
-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근본대책으로서 고용률, 출산율 제고 필요
 -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고용율, 특히 여성의 고용율을 높여 보험료수입 기반 확충
 - 최소한 인구의 현상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출산율을 제고하여 장기적 보험료 수입기반 강화
 - ※ 향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지난 20년 간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를 외국에서 대량 수입하지 않는 이상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며, 현재의 총인구수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함.
 - ※ 출산율과 고용률이 제고된다 하여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도에 내재된 재정 불안정 요인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함.

3) 기대효과

□ 세대간 연대와 형평성 그리고 장기지속성 제고

- 보험료율의 조기 인상은 세대간 연대성 및 형평성 강화로 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에 기여

▣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불신 및 불안감 완화

- 국민의 수급불안 완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4) 한계(예상부작용)와 보완대책

▣ 보험료율 인상 시 저소득층의 가입기피 및 체납 우려

-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 등의 가입기피와 체납 증가
- 보완대책으로 저소득층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두루누리 사업)의 내실화 및 확충, EITC 급여 수급 시 체납 연금보험료 우선변제 방안 등 검토 필요

▣ 기금규모의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기금운용 방안 강구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의 강구 필요
 - 기금투자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 적절한 기금투자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한 안정적 수익률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기금규모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투자비중의 조정, 투자대상의 다각화 등 검토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제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 추진 필요

<2 안>

1) 국민연금 재정 문제의 재인식

 지출총량으로 볼 때 재정위기 근거가 없음

- 2050년 기준 전체 연금지출이 2050년 기준 8.57%로서 OECD 평균 예측치 11.4%에 비해서 낮음(국민연금 5.5% +기초노령연금3.07%)
-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수입과 지출의 균형으로 정의한다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2043년까지 최소한 위기라고 볼 수 없음.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곧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2060년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재정방식 전환 자체가 위기를 의미하지 않음.
- 캐나다, 스웨덴,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의 연금은 제도 시행 초기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채로 운영하다가 적립기금이 소진 되었고, 현재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부과방식)로 운영 중임

 보험료율의 인상만이 재정안정화 대안이 아닌데다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낮다고 봄.

- 국민연금 급여수준(복지체감 수준)이 낮으므로 국민이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이 낮는데다
 - 보험료 인상 시 자영자, 영세사업장의 사용자, 저임금 노동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피 유인을 높여 사각지대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재정추계 마지막 연도(2083년)를 기준으로 일정 적립배율 유지라는

재정목표 하에 보험료율의 인상은 현실성이 없음

- 매 재정추계시마다 필요보험료율이 변동하는데다 추계 시마다 보험료율의 인상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미흡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외의 다른 재정안정화 대안을 마련해 본 후에 그래도 역부족일 경우 보험료율의 인상을 검토해도 늦지 않음

▣ 국민연금재정의 문제는 기금의 과다 적립과 고점 이후 단기간의 지나치게 빠른 기금소진에 있음.

- 즉, 한국 경제 및 자산시장 규모와 기금 관리능력에 비해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 그리고 2047년 이후 이 큰 기금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임.
-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연기금 규모를 한국 경제에서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즉 관리불가능한 수준(京단위 수준)으로 팽창시킬 우려
- 거대기금의 운용리스크(handling risks)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필요

▣ 연기금 규모 증가를 바로 재정안정화와 등치시키는 것은 오류임.

- 연기금 적립은 인구 및 고용률 감소 효과를 차단할 수는 없음
 -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 가치 실현 역시 해당 시기 인구 및 경제력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임. 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연금 기여를 할 인구와 경제력 필요함.
- 장기적으로 적정 경제성장의 지속, 연금보험료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집단의 등장(여성의 획기적 노동시장참여 증가, 출산률 반전 등)이 없다면,

- 204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측면의 지출 억제 및 수입증가를 통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2) 기본방향

국민연금의 재정목표를 '부과방식에서의 연착륙'으로 재설정하고
대안적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

재정목표의 재설정

- 기존 재정 목표(재정계산 마지막 년도를 기준으로 목표적립률 2배 유지 등)은 지속적 보험료율의 인상을 전제로 해야 하며, 기금의 과다적립 문제와 빠른 기금 감소 문제를 간과하는 등의 문제점 내포
- 이에 '부과방식에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대안적 재정목표로 재설정
 - 부과방식에서의 전환 시점을 무조건 늦추는 것보다는 기금 과다적립 및 기금의 급격한 소진을 피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연착륙 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목표 재설정
 - 인구 고령화가 2060년대 최고조에 달하는 점도 고려

3) 개선 방안

현행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포괄적 대책 집중 강구

- 대규모 사회투자를 통해 출산률, 고용률, 경제성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장기적 재정안정 기반 확충 플랜 가동
- 이는 연금보험료 인상 이상의 재정상태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수준과 범위 확대 등으로 수입기반을 확대하고 지출 억제수단을 동시 강구
 - 먼저, 수입기반 확대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을 건강 보험료 부과상한 등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이와 아울러 지출억제를 위해 급여상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함.
 - 위 두 가지 조치를 조합할 경우 급여상한 설정방식에 따라 최대 보험료 3% 인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고소득층 부담 늘려 재원조달단계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 급여액 상한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경우임.
- ▣ 보험료율의 인상은 수지차, 기금규모 등 적절한 재정적 신호와 합리적 지표로 감안하여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

4) 기대효과 및 한계

- ▣ 기대효과
 - 출산율 제고 등 포괄적 대책 및 수입기반 확대대책 등이 성공할 경우 보험료율의 인상시점을 크게 늦출 수 있음.
- ▣ 한계

- 그러나 포괄적 대책 등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재정안정화 시기를
실기할 우려가 있고 재정불신 완화 곤란
- 부과소득의 상한액의 대폭 상향 조정 및 급여액의 상한설정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은 가입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우려 내포
 - 게다가 동 재정안정화 방안은 적립기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실제로 적립기금의 거대화를 피하고 부과방식의 연착륙을 유도
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남.

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장기적 연금재정의 위기

-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4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60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재정불안은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과 빠른 인구고령화에
기인
 - 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수준이 2028년까지 40% 수준
으로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9%로 매우 낮은 관계로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지속
 - 저출산 현상과 기대여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노인부양비 2010년 15.2% → 2060년 80.6%)

연금개혁의 높은 정치적 비용

- 장기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3년부터 국민연금법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가입자 반발로 표류
 - 오랜 갈등 끝에 2007년 7월에야 비로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 국민연금법 개정이 정략적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법 개정애 높은 사회적 비용 발생
 -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수준 및 지급연령을 인구구조 변화, 경제여건 등에 자동 연동시키는 미세조정장치(built-in stabilizer)를 도입하는 추세

2)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가능성 검토

□ 자동안정화 장치의 유형

- 급여수준을 인구구조 및 제도적 부양율 등에 연동시키는 유형 : 독일, 일본, 스웨덴 등
- 연금지급연령을 인구변화(기대여명)에 연동시키는 유형 : 덴마크, 영국(논의 중) 등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 조건

- 제도의 높은 성숙도
 -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가입자수와 수급자수가 상당히 안정적임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 즉,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및 제도부양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 변수에 기초한 미세조정은 곤란

○ 부과방식적 재정방식

-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독일, 스웨덴, 일본의 경우 대체로 공적 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기금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낮음

○ 높은 보험료율 수준

-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연금보험료 수준(20% 내외)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한계선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매우 낮은 관계로 추가 인상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과는 여건이 크게 상이

○ 높은 급여수준

-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관대한 급여율 적용과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급여수준 또한 '98년과 '07년 두 차례의 제도 개혁으로 70%에서 40%로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에 있음

3) 검토 결과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에는 제반여건이나 필요성이 미흡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여건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국가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연금제도의 미성숙 그리고 과거 수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현 상황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은 매우 낮음.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은 장기적 복안으로만 검토 가능

-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는 동시에 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검토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포함),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으로 다층 보장체계의 기본 틀 완비
- 이중 핵심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제도
 -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현 노인세대의 빈곤구제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이며,
 - 국민연금은 현 근로세대 등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 중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러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 부여

□ 문제점

-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평균 13.5%) 중 최고의 노인빈곤율(45.1%)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발달과 미성숙에 크게 기인
 -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러한 노인빈곤을 완화하는데 있어 주효한 정책수단은 바로 기초노령연금인 바 그 역할 설정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음.
 - 즉, 기초노령연금을 항구적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보완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제도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중

2) 개선방안

□ 개선의 기본방향

-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노후소득의 적절성을 강화함.
- 공적연금 양 제도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서로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게 통합적으로 운영함.
- 공적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 개선대안

- 1안 :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부조제도로 전환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10%로 올리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
- 2안 : 기초노령연금을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으로 전환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10%로 인상하고 포괄범위도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

3) 기대효과

□ 노후보장 강화

- 어떤 형태로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화를 추진하든 세대내 재분배가 강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빈곤 문제 대처 능력 강화 가능
-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시 장래 낮은 국민연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보충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 선별부조제도로의 전환 시에는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통합적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

- 두 안 모두 국민연금과의 통합적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비용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4) 한계(예상부작용)와 보완대책

□ 어느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든 일장일단이 커 쉽게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

- 1안의 경우 노후보장의 적정성이 강화되나 국고부담의 증가로 인한 지속가능성이 취약
- 반면, 2안의 경우 지속가능성은 높으나 적정소득보장에는 한계
- 특히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구조개혁 문제는 이미 다른 사회적 논의기구(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등)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제도위에서는 결론을 유보하는 것으로 함.

6. 정책제언 종합

□ 가입내실화

- 소득활동기준, 혼인기준 등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불공평한 현행 가입구조를 소득활동기준으로 단순화
- 12.7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자 등에게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 추진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혜 기간을 확대하고 그 지원시점을 수급시점에서 크레딧 제공요인의 발생시점으로 전환
 - 크레딧 제공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이면서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대로 사업장가입자로 편입

□ 부과 및 급여 합리화

- 장기간 전체 국민소득의 상승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선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
 - 구체적인 상향조정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 필요
- 현행 장애연금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장애개념, 급여수준,

수급요건 등 전반에 걸쳐 점진적인 개선 추진

- 유족연금의 경우도 유족의 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요건,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고,
 - 특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은 현행 일률적 조정방식에서 두 급여의 합이 일정기준(예: 노령연금 평균액) 이상일 경우에만 조정하는 형태로 개선

□ 재정안정화

- 장기적 재정불안정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대체로 같이 하나 보험료율의 인상 등 구체적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달랐음.
- 국민의 수용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시기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구조적 개혁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등의 개편방안이 논의되었음.
- 이미 다른 사회적 논의기구(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의해 논의되고 있으므로 결론을 유보

부 록

부록1 : 국민연금제도 개요

부록2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부록3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일지

부록1: 국민연금제도 개요

1. 국민연금제도 연혁

□ 주요 제도연혁

-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1998. 12. 31 재정안정화, 급여제도 등과 관련된 법 개정
-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2004. 04. 01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 2007. 07. 23 재정안정화, 급여제도 등과 관련된 법 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험

- 노령,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능력 감소 또는 상실 대비한 사회보험
 -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 전 국민을 한 제도에 포괄
 - 공무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을 모두 국민연금제도에 적용시킴으로써 위험분산 및 국민간 형평성 최대화
-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
 - 급여산식을 통하여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를 꾀함.
 - 초기 가입자에 대한 낮은 보험료율 적용을 통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 달성

□ 확정급여방식

- 가입기간에 따라 향후 수급할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제시
 - 단,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급여수준을 낮추어 왔음.

□ 재정방식과 재정안정장치

- 재정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 도입 시부터 비교적 보험료율을 높게 적용하여 단기에 거대 기금을 적립하였고 향후 장기간 적립금이 쌓임으로써 상당기간 부분적립상태를 유지

- 1998년 법개정으로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5년 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음.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과 현황

□ 제도의 적용대상과 가입현황

○ 적용대상

- 국민연금 및 타공적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그들의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에게 적용
- 가입자는 당연가입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인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종류가 있음.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당연가입대상이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 18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 자의로 가입하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을 신청한 자
- 가입자로서 소득활동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음.

○ 가입 현황(2012년 12월 말 현재)

- 전체 가입자는 20,329천명이며, 사업장가입자11,464천명(56.4%), 지역가입자 8,568천명(42.1%),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296천명(1.5%)임.

-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는 3,903천명(45.6%), 납부예외자는 4,665천명(54.4%)임.

□ 보험료징수방식과 징수 현황

○ 보험료징수방식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그 외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공단에서 주로 월별로 징수
-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표준소득월액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등급표가 폐지되고 소득에 보험료율을 직접 적용함.

○ 징수현황(2012년 12월 10일 기준)

- 월수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당월 징수율은 67.2%이며, 사업장 가입자 81.7%, 지역가입자 61.1%로 지역가입자의 징수율 다소 저조
- 금액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당월 징수율은 88.9%이며, 사업장 가입자 93.6%, 지역가입자 62.1%임.
- 한편 2012년 12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941천원이며, 사업장 가입자 2,205천원, 지역가입자 1,166천원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에 52.8%에 불과함.

□ 부담수준과 급여수준

○ 부담수준

- 보험료율은 제도도입 시부터 9%이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장가입자는 5년 마다 3%→6%→9%로 상향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는 3%에서 출발하여 매년 1%p씩 올려 2005년부터 9%로 고정

○ 급여수준

- 제도 도입 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의 소득대체율 70%에서 1998년 말 법 개정을 통하여 60%로, 그리고 2007년 7월 법개정을 통하여 2008년 50%, 2009년부터 매년 0.5%p 삭감하여 2028년 40%가 되도록 변경하였음.

□ 급여의 산정방식

-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산액으로 구성

- 기본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
 - 이때 가입기간은 순수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추납 및 일시금 반납 기간 포함)을 말하며,
 - 납부예외기간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음.

$$\text{기본연금액} = 1.425 (A+B) (1+0.05n)$$

A : 연금수급직전 최근 3년간의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

B :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의 평균표준소득월액(소득비례부분)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1.425 : 평균소득자 기준 20년(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23.75%(47.5%)로 만들어주는 계수

0.05: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당 급여액 가산률

주 : 2013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7.5%일 때 급여산식의 예시

-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정액급여임.

□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액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마다 연령별 지급율 10% 증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연령 1세 증가시마다 연령별 지급율 6% 증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장애연금

-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 지급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 급 요 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단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그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 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던 자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유족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수 급 요 건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시금 형태의 급여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음

〈일시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종류	수 급 요 건	급여수준
반환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기간중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법정자 - 이자율 적용 · 납부기간 3년 만기 정가예금이자율 적용 · 자격상실기간 1년만기 정가예금이자율 적용
사망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이내 - 단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수급자 현황

- 연금수급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500천명이고, 그 중 노령 연금 수급자는 2,748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8.5%임.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12	수급자	3,499,522	3,310,211	2,748,455	75,934	485,822	189,311	2,862	175,716	10,733
	금 액	11,550,754	10,837,244	9,327,087	314,463	1,195,694	713,510	34,654	648,045	30,811
'11	수급자	3,166,983	3,015,244	2,489,614	75,895	449,735	151,739	3,480	136,628	11,631
	금 액	9,819,296	9,273,039	7,905,180	305,547	1,062,312	546,257	41,919	475,051	29,287
'10	수급자	2,975,336	2,820,649	2,330,128	76,280	414,241	154,687	3,447	141,347	9,893
	금 액	8,635,467	8,107,420	6,861,876	296,305	949,239	528,047	37,299	465,123	25,625
'09	수급자	2,770,344	2,602,630	2,149,168	74,535	378,927	167,714	3,836	154,119	9,759
	금 액	7,471,934	6,946,490	5,814,825	287,016	844,649	525,444	40,940	460,476	24,028
'08	수급자	2,517,579	2,366,626	1,949,867	72,166	344,593	150,953	4,902	137,654	8,397
	금 액	6,180,804	5,764,986	4,765,528	268,100	731,358	415,818	47,921	348,026	19,871

부록2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직 위)	비 고
위원장	문 형 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직
정부 위원 (2)	양 성 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당연직
	홍 남 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민간 위원 (12)	권 문 일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직
	김 상 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
	김 수 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 원 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 진 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신 기 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 상 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주 은 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 백 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간사	이 용 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부록3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일지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제1차 (2012.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국민연금제 정계산 추진경과 - 제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기본계획 ○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선정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분류를 기본(안)으로 하며, 위원회 논의를 통해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 ③ 재정안정화 방안 - 재정안정화 방안은 추계위 결과발표 (2013.2월경)를 바탕으로 진행 - 노인빈곤, 점진적 퇴직 활성화 등 큰 틀에서의 접근을 반영하는 주제 선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제2차 (2012.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회의결과 보고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내실화 관련 주제 발표 - 급여합리화 방안 관련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내실화 및 급여합리화 방안 관련 내용 검토 및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급여의 단순한 분류보다는 큰 틀에서의 접근도 필요함 - 국민연금제도의 현 위치에 대한 평가, 현황 등에 대한 논의 - 연구과제는 잠정적으로 총론과 세부적 각론으로 구성하도록 함
제3차 (2012.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회의결과 보고 ○ 논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방안 관련 연구과제 - 국민연금제도 현위치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 방안의 하위주제 선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재구조화는 총론부분에서 논의 -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논의시 퇴직시기와 수급개시연령 간의 괴리, 노동시장, 노인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함 - 재정목표 설정에 '재원조달과 정부의 역할'항목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함. - 국민연금 재정방식 방향 논의도 필요함 - 소득대체율 추정 및 논의 시 소득분위별 등 집단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총론 구성에 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평가를 정태적, 동태적 방식을 모두 고려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4차 (12.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관련 논의 - 세부 연구과제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주제 및 논의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발전방향 및 기초노령연금 등과의 재구조화 논의 ○ 세부 연구과제의 선정 및 위원별 과제 분담
워크숍 (13.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장기발전방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 연금의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장기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의 역할 및 국민연금 체제의 장기발전방향 - 연금의 보편성,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동시 충족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선의 대안 모색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작용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 기초연금 재원을 연금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5차 (13.2.7)	○ 주요논의사항 - 재정안정화 관련 주제별 논의	○ 재정안정화 방안 관련 논의 -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재정안정화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노인 빈곤 문제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내적 개선 노력뿐 아니라 고용률, 출산율, 경제성장률과 같은 제도 외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신중해야 하며, 기금 고갈이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료 조정은 재정안정화 목표에 따라 형태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고령화를 대비해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재정력 확보 기반을 넓혀야 함
제6차 (13.2.22)	○ 주요논의사항 - 급여제도 합리화 분야 주제별 논의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및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논의결과 - 급여의 적절성과 최저연금보장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외적 환경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내에서 최저 보장에 대한 기저를 마련해야 함 - 국민연금이 과거와 같이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은 되어야 함 - 최소가입기간을 재설정한다면, 최저연금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 있음 ○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논의결과 - 현재의 장애 판정 기준은 기능적 손실로, 근로능력을 고려한 판정 체계를 도입해야 함 -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 재활 급여의 개혁이 필요하며, 직업 재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행 18개월인 장애 판정 기간은 줄일 필요가 있고, 그 기간에 단기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장애·유족연급 수급권자가 경제 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의 조정이 필요함 - 20년 의제 가입기간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제7차 (13.3.8)	<input type="checkbox"/> 보고안건 :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input type="checkbox"/> 논의안건 : 사각지대	○ “적용체계 및 가입자 구조 효율화 방안과 특수직종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허용 여부” 논의결과 - 보험료 지원과 대납 등에 앞서 사용자의 근로자 미신고와 체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해소 등 가입내실화 및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 2개 주제</p> <p>- 주제 및 발제 : 적용체계 및 가입자 구조 효율화 방안과 특수직종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허용 여부(감수환 위원), 소득재분배의 합리성 확보방안(홍백의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수용성과 사회문제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함 - 국제청과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적용제외자는 유형별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법적인 문제이나, 특수고용관계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임 - 특수고용관계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로 구분해 각각의 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함 <p>○ “소득재분배의 합리성 확보방안” 논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소득 상한선을 올릴 경우 보험료 인상 효과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재분배의 개념은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에서 의견이 상이하므로 이를 비교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야 함 - 수익비가 1이 넘는 현재의 급여구조에서 고소득자의 수익비를 줄인다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보험료 인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급여상한과 부과소득 상한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검토해야 함 - 급여상한을 올리면 평균소득도 상승하므로 이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타당성 및 개선방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p>※ 위 내용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각 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논의였음</p>
<p>제8차 ("13.3.22)</p>	<p>□ 보고안건 : 제7차 회의 결과 보고</p> <p>□ 논의안건 : 인수위 안에 관한 토론</p>	<p>□ 주요 논의 결과</p> <p>○ 제도발전위원회 제안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연금은 항구적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 법 제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함 - 소득 상·하위 그룹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기초연금 차등은 동일한 논리로 이루어져야 함 - 소득 상·하위 그룹을 구분할 때,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가입기간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적은데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함 - 연금수급 여부가 아닌 소득분포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단순함 - 소득 상위 30%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수급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데, 이들 중에서 수급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한 보전 방안이 필요함 - 기초연금은 현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에 대한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대책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상위 30%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연금액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 - 고령화와 재정 상황을 감안해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을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일정한 격차를 두고 연동하는 조정이 필요함 - 연금제도의 명칭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명칭 변경은 자제해야 함 - 제도의 보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인수위의 행복연금안은 외국의 경우에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연금제도는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음 <p>○ 답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연금의 목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하는 것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제도적 유연성을 갖출 수 있음 - 소득분포는 하위 70%에서 수평을 이루고 상위 30%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기초연금의 차등을 두게 됨 - 다만 소득 상위 30%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미수급자보다 더 높게 설정된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임. - 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 없으며, 개인별 정확한 소득과약이 전제되어야 함 - 나이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연금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어려워 노후준비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소득 상위 30%그룹의 지급대상 제외 방안이나 소득 기준 차등화는 연금수급자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소득 구분 기준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며, 공적연금 간 연계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재분배효과가 있고, 그 중 6만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므로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소득역진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기초연금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모든 세대가 누리는) 1층 제도로서 완전한 수급권을 보장하며 소급 적용 가능함
제9차 ("13.4.12)	<p><input type="checkbox"/> 보고안건 : 제8차 회의 결과 보고</p> <p><input type="checkbox"/> 논의안건 :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2개 주제</p> <p>- 주제 및 발제 :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선</p>	<p>○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방안” 논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은 급여의 상한선과 함께 고려해야 함 - 매 5년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조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소득 상한선을 어떠한 경과 조치를 거쳐 올릴 것 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함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조정방안(허재준 위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및 크레딧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제갈현숙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한선을 낮게 유지하려는 국가의 취지는 가능하면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은 세대 간의 문제이지, 재분배효과가 적다고 할 수 없음 - 실제 소득분포를 보면(공단 내부자료) 고소득자는 굉장히 적고,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소득자가 없어 상한선을 올리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자영업자 중에서 고소득자가 없는 것은 소득과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가입자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p>○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및 크레딧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논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지원사업 개선안에 사업주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에서 발생하는 문턱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두루누리 사업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만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고용주에게 지원할 경우와 근로자에게 지원할 경우의 효과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함 -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금액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고시함. 이는 정책적 탄력성이 있어 개선사항을 즉각적으로 적용하기에 용이함 - 두루누리 사업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인데 전액 국고로 이루어져야 함 - 출산크레딧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2008.1.1시행) 현 시점에서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크레딧 제도의 명확한 목적을 정해야 함. 즉 연금액을 보조할 것인지,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입기간을 줄여줄 것인지 어느 것을 목표로 잡을 것인지 결정해야 함
<p>제10차 ("13.5.10)</p>	<p><input type="checkbox"/> 보고안건 : 제9차 회의 결과 보고</p> <p><input type="checkbox"/> 논의안건 :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2개 주제의 심의</p> <p>- 주제 및 발제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p>	<p><input type="checkbox"/> 결정사항</p> <p>○ “크레딧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 및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제공해야 함 - 차등적 출산 크레딧보다 한 아이에 대한 동일한 크레딧 적용이 바람직함 - 군복무 크레딧에서 실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제도 및 크레딧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제갈현숙 위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방안(허재준 위원)	현행의 A값의 50%에서 100%로 인상해야 함 - 크레딧제도의 재원은 전액을 국고에서 책임져야 함 - 제도발전위원회의 보고서에 '재정적인 요건을 고려하는 조건 하에서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전액 국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할지의 여부는 최종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함
제11차 ("13.5.24")	<input type="checkbox"/> 보고안건 : 제10차 회의 결과 보고 <input type="checkbox"/> 논의안건 :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급여제도 합리화, 재정안정화 6개 주제의 심의	<input type="checkbox"/> 주요 합의사항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및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 개선(안)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는 타 주제와 중복이 되므로 비중을 줄이되, 수급권 확보 방안을 강조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실제 납입기간 기준으로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강화와 구직 크레딧 도입방안을 비교 검토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함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가입구조 및 급여제도 개선방안" 개선(안) -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를 가입자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기본 방향에는 모두 합의함 - 다만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과 분류체계, 추납, 용어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합리성 확보방안" 개선(안) - 이 주제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많은 관련이 있어 재정안정화 논의와 함께 다루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재정안정화 방안" 개선(안) - 보험료 인상의 시기와 폭에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합의를 이룸 - 심의 안건을 재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심의 과정을 갖도록 함
제12차 ("13.5.31")	<input type="checkbox"/> 보고안건 : 제11차 회의 결과 보고 <input type="checkbox"/> 논의안건: 급여제도 합리화, 재정안정화 2개 주제의 심의 - 주제 및 발제 :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개선방안(권문일 위원), 재정안정화에서의 국가의 역할(김상호 위원)	<input type="checkbox"/> 주요 합의사항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개선방안" 개선(안) - 장애판정체계를 기능 손상과 근로능력을 교차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판정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룸 - 장애·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에는 모두 동의함. 다만 가입산입기간 상향조정과 지급을 조정을 비교 검토하여 급여산정 방식 개선안을 만들도록 함 -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한 노령연금수급연령 단축 문제는 특수한 경우로써 제도의 기본 틀을 바꿀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논의는 3차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함 - 병급조정 문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평균소득의 40% 미만일 경우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재조정하도록 함 - 병급조정 등 특수지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이룸. 다만 재정상황과 제도적 충돌을 함께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함 ○ “재정안정화에서의 국가의 역할” 개선(안) -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논의를 보고서의 안건으로 다룰지의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p>제13차 (‘13.6.5)</p>	<p>□ 논의안건 : 급여제도 합리화, 재정안정화 2개 주제의 심의</p> <p>- 주제 및 발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허용 여부(김수환 위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재정안정화 팀)</p>	<p>□ 주요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 각 심의사항에 대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이를 토대로 연구원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허용 여부” 개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시급히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도록 함. 특히 산재보험에서 특례 적용하고 있고, 고용보험에서 고려중인 직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도록 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개선(안) - 다음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의 전제조건에는 모두 합의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대로의 부담전가 최소화 · 급격한 부담인상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훼손 최소화 · 고용률, 출산율 제고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충실화 노력 병행
<p>제14차 (‘13.6.24)</p>	<p>□ 보고안건 : 제13차 회의 결과 보고</p> <p>□ 논의안건 : 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 안건 심의</p>	<p>□ 주요 합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각지대 해소 등 가입내실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수용 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현행 유지(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방향 : 신규가입자 유인차원에서 초기가입기간 집중 지원방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1년으로 제한’ 삭제 - ‘최초 6개월의 고용기간은 근로자부담 보험료의 100%, 그 이후부터는 1/2 혹은 1/3 등 지원’ 삭제 - ‘장기적으로 사업 효과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 확대 및 대상사업장을 확대 검토’ 추가 다. 크레딧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크레딧 : 첫째 자녀부터 제공하고, 자녀당 12개월 동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최고 50개월’을 ‘최고 60개월’로 제안 ○ 군복무크레딧 : 군복무 기간 전체(또는 비례)로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은 현행인 A값의 1/2 유지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 모색 방안 검토’ 삭제 2. 국민연금제도 급여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을 국민연금제도 급여합리화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부과 및 급여합리화’로 변경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가. 장애연금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 가입구조 개편 결정 후 개선방안 마련 ○ 급여산정 기준개선 : '기준가입기간 상향 또는 지급률 상향'으로 묶어 다수안 채택 <p>나. 유족연금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 가입구조 개편 결정 후 개선방안 마련 ○ 급여수준 : 현행 기준 유지(20년 기준가입기간) ○ 20년 미만 가입에 대한 지급률 차등제 폐지 ○ 중복급여 조정방식 개선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합이 일정기준 미만일 때 조정 없이 지급 <p>※ 부양가족연금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안건에서 제외(4차 재정계산에서 논의) <p>다. 보험료부과 소득상하한선 개선(소득재분배 효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임금의 몇 배(A값의 몇%)'의 형태로 기재 - 중위임금의 2.5 및 3배는 5년에 걸쳐 인상 - 중위임금의 4배는 '5년에 걸쳐' 부분을 삭제하고 단계적 인상으로 변경 ○ 소득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55만원)가 다수안으로서 소득하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모두 동의 - 조정 기준에서 '5년에 걸쳐 인상' 부분은 삭제 <p>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p> <p>가. 재정안정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안을 재정리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p>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검토 <p>다. 지급보증 등 국가역할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안건에서 제외 <p>4.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회의에서 논의
제15차 (1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 제14차 회의 결과 보고 □ 논의안건 : 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 안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합의사항 ○ 재정안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수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상'으로 수정 · 기타 재정안정화 대책 중 '재정형평기금의 설치' 부분 삭제 - 2안은 재정리 후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최대 보험료 3% 인상에 준하는 효과' 부분 삭제 ○ 보험료부과 소득 상하한선 기준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정기준만 'A값 상승률'에서 '중위임금상승률'로 변경 - 급여산정공식과 재평가율 등을 검토하면서 소득 상하한선 인상방안 마련 권고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안인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혹은 선별부조화하는 방안'을 재정리 및 두 개인 안으로 분리 - 기존 2안인 '국민연금 자체를 기초연금과 '유사한'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제도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최저보장제도(보충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부과기준 대폭 확충' 부분은 재정안정화의 2안에 포함 ○ 적용체계 및 가입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 1연금에서 1소득자 1연금으로 전환' 문구 삭제 ○ 유족연금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 지급률을 적용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연금액의 60%로 단일화' 부분 수정 후 재검토
제16차 (13.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 제15차 회의 결과 보고 □ 논의안건 : 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합의사항 ○ 재정안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2 수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선진국의 연금은...' 문장에서 '많은 선진국'을 삭제하고 해당 국가를 명기 · '보험료율의 인상은 대안이 될 수 없음' 문구를 '보험료율의 인상만이 대안이 될 수 없음'으로 수정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의 확대' 재정리 · '임대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내지 연금세 부과' 문구 재정리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가입자 범위의 확대 여부' 부분에 다음의 문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ITC제도 등을 통해 소득과약율이 높아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크레딧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의 크레딧 지원방식과 크레딧 발생시점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때 소요되는 재원을 계산한 재정추계표 삽입

2013 國民年金財政計算

國民年金 基金運用改善方向

2013. 10

國民年金基金運用發展委員會

머 리 말

국민연금법 제4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계산과 그에 따른 제도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재정계산은 2003년에, 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행된 바 있고, 2013년에 제3차 재정계산을 시행하고 있다.

3차 재정계산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2년 초부터 준비에 착수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재정추계위원회」를 그리고 동년 10월에는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장기재정추계를 수행한 「재정추계위원회」의 활동은 2013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기금운용을 집중 조명하는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작성을 끝으로 2013년 9월에 종료되었다.

5년 전의 제2차 재정계산과 이번 3차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의 구성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2차 때에는 「재정추계위원회」와 「운영개선위원회」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추계위원회 밑에 「추계모형소위원회」와 「재정평가소위원회」를, 운영개선위원회 밑에 「제도개선소위원회」와 「기금개선소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번 3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외에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지난 1·2차 재정계산과 달리 내실 있는 기금운용 개선방안 도출을 꾀하였다.

각 위원회의 활동시기는 지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달리 설정하였다. 즉 재정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및 기금운용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 정부부처대표 등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전문영역에 따라 개별 과제를 수행하고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전체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6회의 기금운용발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위원장(김경수 성균관대 교수)의 책임 하에 11명의 위원들이 연구 및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11개 과제 이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김용진 교수(아주대)가 수행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각 과제를 담당해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각 과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운용방향 설정: 이준행 위원
- 국민연금 거대화 관련 이슈 및 대안 모색: 김병덕 위원

- 기금운용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원승연 위원
- 재정안정 기준, 목표 및 목표수익률 분석: 신성환 위원
- 국면별 기준포트폴리오 및 투자정책서 검토: 이재현 위원
- 장기투자 관점의 자산배분: 신진영 위원
- 장기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안동현 위원
- 장기투자 관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남재우 위원
- 공공성 원칙과 복지사업 추진방향: 원종욱 위원
- 책임투자의 기본방향: 권순원 위원
- 국내주식투자에 따른 의결권·주주권행사의 기본방향: 조성욱 위원

절차상 본 보고서는 위에서 소개된 과제별 수행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최종 내용은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제 책임자의 개인별 검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보고서의 완성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분들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직접 과제를 담당하진 않으셨지만, 정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과제내용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해 주셨다.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신 이형훈 위원(보건복지부), 김재환 위원(기획재정부), 김완섭 위원(기획재정부), 김진홍 위원(금융위원회), 김정각 위원(금융위원회)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원장은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장으로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셨다. 또한 박태영 기금정책분석실장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간사로서 김영은 주임연구원과 함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수고해 주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실무지원단께도 감사를 전한다.

3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활동결과인 동 보고서에서는 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기금운용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나 전문가들의 정책 논의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 목 차 >

머 리 말

요 약	1
제 I 장 第3次 財政計算의 推進經過	7
1. 추진근거와 취지	9
2. 추진여건과 기본방향	9
가. 추진여건	9
나. 기본 추진방향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경과	14
제 II 장 與件變化 및 運營改善(案) 樹立의 基本方向	17
1. 여건변화	19
가. 기금운용여건의 변화	19
2. 운영개선(안) 수립의 기본방향	23
제 III 장 國民年金 基金運用部門의 改善事項	25
정책제언의 배경 및 방향	27
1.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29
가. 재정추계 주요결과	29
나. 국민연금기금의 특성과 운용철학	30
다.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수익률	36
라. 장기 자산배분 방안	43
마. 국민연금기금의 시장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운용방안	47
2.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52
가. 국민연금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자산배분	52

나. 장기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56
다. 장기투자 관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62
3.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	68
가.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체계	68
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72
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77
라.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복지투자	81
부록	87
부록1. 기금운용 관련 국민연금법령	89
부록2. 기금운용체계	91
부록3.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조직 및 구성	96
부록4.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회의일지	97

요 약

I. 제3차 재정계산의 추진경위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에 의거하여 '03년 제1차, '08년 제2차에 이어 '13년 제3차 재정계산 추진(5년 주기)
 - 이번 3차 재정계산에서는 「재정추계위원회」('12.6~'13.5)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12.10~'13.9)를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
 - 재정추계위원회는 장기 재정전망과 분석,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전망결과에 기초한 중장기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임무 각각 부여
 - ※ 지난 1·2차 재정계산과 달리 기금운용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 개선 방안 도출
-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위원장(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을 포함 민간위원 중심으로 총 15인(위원장 1, 당연직 정부위원 3인, 민간위원 11인)으로 구성
 -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 '재정계산지원단'을 설치 운영
-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2.10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친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 등 총 11개의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결정
 - 아울러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보고서」를 집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위원장 김경수)도 구성하여 1회 운영

II. 국민연금 기금운용부문의 개선사항

-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 검토
 -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공적 연기금 역할 강화

1.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 국민연금은 기금의 축적·소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단일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짐
 - 기금운용의 운용철학에 있어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될 필요
 - 기금의 목적, 운용원칙 및 투자정책 등을 담고 있는 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이 처한 시장 제약 등을 반영
 - 기금의 급속한 규모 증가와 소진에 따른 국가경제 및 자본시장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해외투자 및 유동화 전략 등 장기 전략 필요
- 장기 재정안정화의 관점에서 연금제도의 개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위험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최대화 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필요
 - 중장기 자산배분 프로세스도 재정추계 주기에 맞추어 재정안정화 분석을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재정지표에 적립배율 또는 적립금/임금 비율 목표치 대비 실제값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
-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규범적인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1단계를 거쳐 현행의 전략적 자산배분(2단계) 및 전술적 자산배분(3단계)의 3단계 기금운용 프로세스를 제안

- ALM 분석을 통해 제도 변경과 기금의 장기적인 운용전략의 조합을 도출하거나 기금규모 단계별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수행
-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시장과급효과를 고려한 장기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날 시장충격, 추종매매 등의 부작용과 적립금의 축소기에 자산매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붕괴 가설 관련 우려를 고려
 - 시장영향력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일정한 국내주식 투자 상한을 책정하거나 장기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2.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 기금규모 단계별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
 - 기금규모의 단계별로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경제적 관점과 수지전환에 따른 유동화 수요와 투자수익률이라는 투자운용 관점 등을 고려
 - 기금 성장기(2013~30년)에는 유동성 및 기간 프리미엄을 극대화하는 운용전략 하에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환위험 노출 비중을 증대
 - 기금 성숙기(2031~43년)에는 자산매각과 그로 인한 유동화 비용을 고려하여 국내채권 비중 확대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행함
 - 기금 이행기(2044~60년)에는 채권비중을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순차적인 자산매각 방안을 수립
- 장기 자산배분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도 장기투자 관점에서 위험관리를 검토할 필요

- 장기 투자에서 매수보유전략을 통해 시간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나 수익률 예측이 가능하다면 최적의 동적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자산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
- 금융위기 등 경기변동 상황을 사전적으로 자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전적 위험관리 체제로의 전환 및 위험관리 조직 강화
- 장기투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토록 하는 중요한 유인기제로서 장기투자 관점의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
 - 성과측정 기간을 장기화하여 성과 측정 단위를 연간이 아닌 최소 3년 이상 기간에 걸쳐 수익률을 측정하고, 대체투자 등 비유동성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나 국채의 시가평가 등에 있어서 장기평가 지향
 - 보상체계에 있어서는 가중평균방식보다 3년 평균수익률 자체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 공적연기금의 조직설계는 민간운용사와 같은 효율성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될 필요

3.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

-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체계는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일관된 기금운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제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정부 독립을 위해 민간위원회가 구성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방식대로 정부소속의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제기됨
 - 기금운용조직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라는 현행 방식의 운용성과가 나쁘지 않으며, 독립공사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은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
 - 의결권·주주권을 행사할 대상기업과 행사내용에 대한 사전적 원칙 확립
 - 다른 기관과의 연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극 제시, 심각한 주주권 훼손 시 주주소송 관련 제안 등 의결권·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노력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지는 장기투자과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기금의 특성에 부합
 - 장기적 차원에서 책임투자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책임투자의 원칙 및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국내 환경 및 연금의 역량 제고에 따라 본격적인 책임투자 도입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
- 국민연금의 복지투자는 국민연금법에서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에는 제약요건으로 작용
 - 국민연금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는 국공채와 지방채투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복지투자용 지방채 매입을 통한 복지사업의 간접적인 재원조달자 역할 수행이 바람직

제 I 장 第3次 財政計算의 推進經過

제 I 장 第3次 財政計算의 推進經過

1. 추진근거와 취지

○ 추진근거

- 1998년에 도입된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후 5년이 경과한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금년 2013년에 제3차 재정계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제도의 취지

- 인구 및 경제적 여건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의 여건변화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제적으로 기금운용의 방향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음
- 즉, 재정계산제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 계획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2. 추진여건과 기본방향

가. 추진여건

- 제1차 재정계산(2003년) 결과에 기초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07.7월에 국회 통과

※ 급여수준 하향 조정(60→40%)

- 국민연금법 개정 직후 이뤄진 제2차 재정계산(2008년)은 재정추계(장기재정전망 및 분석)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과 기금 운용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시행
- 제3차 재정계산은 신뢰성 있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하고 기금의 거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기금운용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나. 기본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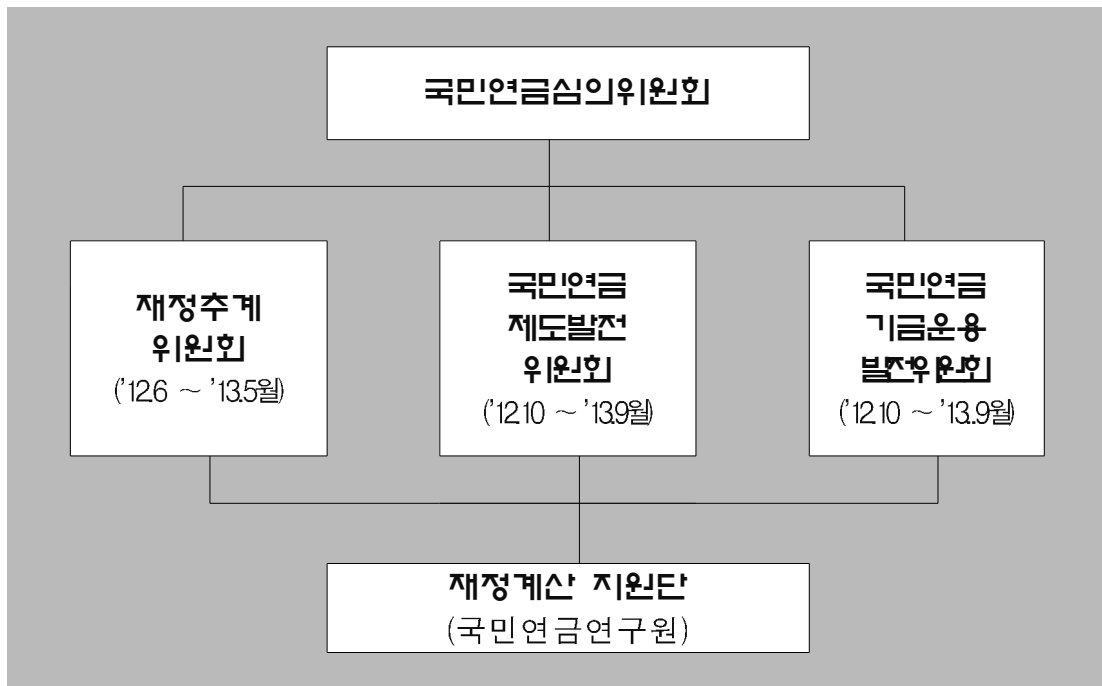
- ▣ 재정계산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증진과 사회적 합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운영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 재정계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기능 부여
 - 전문성·대표성 있는 인사로 재정계산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세미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재정계산 결과의 수용성 제고
- ▣ 재정추계와 제도 및 기금운용개선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재정추계 실시('12.6~'13.3)
 - 인구·거시경제 전망, 추계모형에 대한 검증, 추계결과 도출 등
 - 제도개선 논의 및 종합운영계획(안) 마련('12.10~13.9)
 -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자료 준비

3. 추진체계

-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재정계산업무의 실무지원을 위해 **재정계산지원단** 설치
- 재정추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관련 최고심의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함

※ 2차 재정계산 시에는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전문성 및 대표성 있는 인사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운영개선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각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였음

□ 추진체계의 구성도



□ 추진기구별 역할 및 구성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기능: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심의(법제5조제1항)
 - ※ 보고 : 재정계산시행계획, 재정계산업무처리지침('12.6)
 - ※ 심의 : 국민연금운영전반에 관한 계획('13.8)

② 재정추계위원회

- 기능
 - 재정추계의 총괄·조정
 - 재정계산 기본 틀 검토 및 설정
 - 재정건전성 기준, 재정추계기간 설정
 -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거시경제 가정 설정, 추계모형 및 기초율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주요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및 민감도분석
 - 기타 재정추계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총원: 위원장 포함 15인 (간사 별도)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위촉)
 - 당연직 정부위원 (2인, 과장급)
 - ※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 민간위원 (12인)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간사 (국민연금연구원)
- 운영기간 : '12.6~'13.5

③ 기금운용발전위원회

○ 기능

- 재정추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기금 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성

- 총원: 위원장 포함 15인 (간사 별도)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위촉)
 - 당연직 정부위원 (3인, 과장급)
 - ※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민간위원 (11인)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간사 (국민연금연구원)

○ 운영기간 : '12.10~'13.9

④ 제도발전위원회

○ 기능

- 재정추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 노후 소득보장 내실화 방안 등 발전방향 제시
- 사각지대 해소, 가입·급여제도 합리화 방안
- 공·사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방향

○ 구성

- 총원: 위원장 포함 15인 (간사 별도)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위촉)
 - 당연직 정부위원 (2인, 국장급)
 - ※ 복지부 연금정책국,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 민간위원 (12인) (보건복지부장관 위촉)
- 간사 (국민연금연구원)
- 운영기간 : '12.10~'13.9

⑤ 재정계산지원단

- 기능
 - 재정추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및 제도발전위원회 활동 및 전체 재정계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적으로 지원
 - ※ 용역과제에 대한 일정관리, 위원회 회의록 관리, 행사지원, 관계기관 업무연락, 회계·서무 업무 등
- 구성
 - 복지부 관계자 (연금정책국 각 팀 사무관급 참여)
 - 국민연금연구원 (위원회 간사 등 참여)
 - ※ 단장 : 국민연금연구원장

4. 추진경과

-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2.10.31일 발족하여 '13.9월 기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회의 16회, 편집회의 1회, 재정추계위원회 및 제도발전위원회와의 공동 Workshop 1회 개최
-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다음의 11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제시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결정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과제(11개)
 - 장기운용방향 설정
 - 국민연금 거대화 관련 이슈 및 대안 모색
 - 기금운용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 재정안정 기준, 목표 및 목표수익률 분석
- 국면별 기준포트폴리오 및 투자정책서 검토
- 장기투자 관점의 자산배분
- 장기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 장기투자 관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공공성 원칙과 복지사업 추진방향
- 책임투자의 기본방향
- 국내주식투자에 따른 의결권·주주권행사의 기본방향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개선 논의 결과를 '13년 9월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
- '13년 9월 말 「기금운용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동년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동년 10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일까지 국회 제출

제Ⅱ장 與件變化 및
運營改善(案) 樹立의 基本方向

제 II 장 與件變化 및 運營改善(案) 樹立의 基本方向

1. 여건변화

가. 기금운용여건의 변화

□ 기금 규모의 성장

○ 기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

- 현행 제도 하에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대 규모의 적립금이 축적되고 있으며, 기금 수익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의 대부분을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음
- 기금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진 2000년 이후 기금적립금은 연평균 16.8%씩 성장하여 2012년말 현재 392조원에 달함으로써 규모면에서 세계 4대 공적연기금의 지위를 차지
- 제도 도입 후 2012년 말까지 누적수익 172.8조원, 누적수익률 6.69%로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운용수익의 비중도 2012년 32.9% 달하여 향후 기금 규모 성장에 따라 기여도 증가가 예상됨

〈표 II-1〉 기금수입의 구성 변화추이

(단위 : 조원)

	2012	2011	2010	2009	2008
수입	44.9	41.2	38.6	32.3	32.3
연금보험료	30.1(67.1)	27.4(66.6)	25.3(65.5)	23.9(73.8)	23.0(71.1)
운용수익	14.8(32.9)	13.7(33.3)	13.3(34.5)	8.5(26.2)	9.3(28.9)
기타 ¹⁾	0.01(0.0)	0.01(0.0)	0.01(0.0)	0.02(0.1)	0.02(0.1)

주 1) 국고보조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회관임대사업 수입, 체납처분 환수액 등)

○ 기금 규모 증가에 따른 영향

- GDP 대비 기금규모는 2000년 10.2%, 2005년 18.9%, 2012년 31.7%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50% 수준에 달할 전망
- 기금규모는 2043년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가 시작되어 2060년 소진되는 변화가 예상됨
- 기금 성장기에는 기금규모가 경제나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서 시장지배력이 증가할 수 있고, 기금규모가 축소되는 시기에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유동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국내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말 5.8%에 달하고, 국내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추정됨
- 따라서 기금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규모 단계별 장기적 자산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

○ 투자 다변화의 진전

-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채권 위주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다변화를 지속 추진
- 해외투자 비중과 대체투자 비중은 2008년말 각각 7%, 3.7% 수준에서 2012년말 16%, 8.4% 수준으로 증가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해외연기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기금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국내시장에서의 투자기회제약, 향후 연금지급 도래에 대비한 자산 유동화 시의 시장 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

〈표 II-2〉 국민연금기금 연도별 자산비중 변화추이

(단위 : 조원)

구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자산	채권	주식	기타
2000	34.9	0.7	25.8	20.9(81.2)	3.0(11.5)	1.9(7.3)
2001	29.5	0.6	47.7	41.1(86.2)	4.9(10.2)	1.7(3.6)
2002	30.4	0.5	65.0	58.9(90.5)	5.6(8.5)	0.6(0.9)
2003	15.3	0.4	100.8	91.0(90.3)	9.1(9.1)	0.7(0.7)
2004	6.4	0.4	134.0	120.6(90.0)	12.7(9.5)	0.7(0.6)
2005	-	0.3	163.4	141.5(86.6)	20.4(12.5)	1.5(0.9)
2006	-	0.2	189.1	164.4(87.0)	22.0(11.6)	2.6(1.4)
2007	-	0.2	219.0	174.8(79.8)	38.5(17.6)	5.7(2.6)
2008	-	0.2	235.0	191.1(81.3)	34.0(14.5)	10.0(4.2)
2009	-	0.2	277.3	215.1(77.6)	49.5(17.9)	12.7(4.6)
2010	-	0.1	323.6	229.2(70.8)	74.9(23.1)	19.5(6.0)
2011	-	0.1	348.5	238.1(68.3)	81.9(23.5)	28.5(8.2)
2012	-	0.1	391.6	252.5(64.5)	104.6(26.7)	34.5(8.8)

주 1) 시가 평가액임

2) 괄호 안은 각 자산부문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장기적 관점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중요성 증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변동성 확대와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적 위험 관리체계 강화와 장기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전략 수립이 중요해짐
-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투자 자산의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고 전체 기금의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환헤지 정책을 마련
- 또한 비교적 정교한 위험관리와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 자산과 달리, 대체투자와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체계와 성과평가체계는 한층 개선될 필요가 증대

- 이에 따라 비유동성 자산의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중요해지면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벤치마크 설정 등 평가의 고도화 작업이 추진됨

□ 공적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기금운용체계의 개선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체계는 중장기적 운용효율성 제고,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 정부 간섭의 배제 등의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 추구가 필요

○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상장기업수와 의결권행사 안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 가치 제고와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성 증가

〈표 II-3〉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추이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 (비중)	반대 (비중)	중립/기권 (비중)
2012	641	587	2,565	2,125	436	4
				82.84%	17.00%	0.16%
2011	591	556	2,175	2,022	153	0
				92.97%	7.03%	0.00%
2010	563	528	2,153	1,979	174	0
				91.92%	8.08%	0.00%
2009	581	494	2,003	1,865	132	6
				93.11%	6.59%	0.30%
2008	505	514	2,010	1,899	109	2
				94.48%	5.42%	0.10%
2007	584	453	1,926	1,830	96	0
				95.02%	4.98%	0.00%

○ 책임투자

- 장기적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책임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 추진하면서 2009년 UN PRI에 가입하고 의결권행사지침에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명시
- 사회책임투자(SRI)펀드의 위탁운용을 2009년 1.3조원에서 2012년 5.4조원으로 확대
- 향후 장기투자과 지속적 수익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기금 운용특성에 부합하는 책임투자의 원칙 제도화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2. 운영개선(안) 수립의 기본방향

□ 근본적인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방향 제시

- 국민연금기금의 목적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투자다변화 방안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위험을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더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고 금번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운용방안을 제시
- 또한 기금이 분명한 역할을 부여받아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추계 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분석을 통해 기금의 장기(20~30년)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규범적인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설정할 것을 제안
-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설정한 후에 전략적 자산배분 및 전술적 자산배분을 하는 3단계 자산배분 프로세스를 제안

□ 기금운용방안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 관점에서 제시

- 2000년대 초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안정된 모습을 갖춘 상황인데다 기금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금규모 단계별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함
 -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거시경제적 관점과 수지전환에 따른 유동화 수요, 그리고 투자수익률 확보라고 하는 관점을 모두 고려한 기금 규모 단계별 자산운용전략을 제시
- 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 등 기금운용의 각 주요 단계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용방향 제시
 - 유동성 프리미엄과 가치 프리미엄 창출을 위한 운용전략과 금융위기 등의 사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성과평가 기간의 장기화와 장기투자 관점의 합리적 보상체계 설계를 제안

□ 공적연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

- 국민연금기금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대안을 제시
 - 장기 기금운용체계에 대해서는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 일관된 기금운용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의결권·주주권 행사방안과 책임투자 방안은 기본 원칙의 확립과 더불어 장기적 수익성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단계별 접근을 제안
-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각계각층의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다 더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제Ⅲ장 國民年金
基金運用部門의 改善事項

제Ⅲ장 國民年金 基金運用部門의 改善事項

정책제언의 배경 및 방향

- 국민연금의 주요 과제들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의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고 큰 틀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

□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 우선 재정추계 결과에 기초하여 기금운용의 철학과 목적을 고려할 때 장기 재정안정화의 관점에서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함
- 2013년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2043년 최고 2,561조에 이른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수할 만한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재정추계와 연계하여 2083년까지 70년 내에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별 위험투자자산 비중과 목표수익률을 탐색함으로써 장기 재정안정 및 이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금운용의 방향을 설정
- 합의된 장기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바탕으로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를 마련할 필요
 - ALM 분석을 통해 제도 변경과 기금의 장기적인 운용전략의 조합을 도출하도록 하고 장기 기금운용프로세스를 현행 2단계에서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을 포함하는 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운용 전략의 수립과 집행은 단기적인 시장 전망보다는 자산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관건임
-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기금운용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서 해외투자 비중 확대 등을 검토
- 장기투자 관점에서 평가의 주기는 연간으로 실행되더라도, 성과의 측정 단위는 연간이 아닌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투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는 현재와 같이 이미 결정된 과거의 보상 수준을 가중평균하는 방식 보다는 장기평가의 결과를 보상체계와 직접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

- 공적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검토
 - 공적연금기금의 특성상 노출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적연기금 설계의 원칙인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
- 연금기금이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가치 제고와 연결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책임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 목적에 맞게 복지사업 개선방향 등을 모색

1.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재정안정

가. 재정추계 주요결과

□ 재정추이

- 향후 20~30년간은 제도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 연도인 2043년에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는 소진 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이 달라졌으나, 각 변수들 간의 변동효과가 상쇄되어 2차 재정계산(기본가정)의 수지적자 발생시점(2044년) 및 기금소진 시점(2060년)은 동일하게 전망됨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8%수준에 접근

□ 재정평가

- 국민연금의 재정평가는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 하기에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재정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함으로써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평가기간 동안의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는 적립배율에 대한

복수의 기준을 설정

- 국민연금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안정의 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복수의 재정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을 추계
- 적립기금에 대한 4가지 목표를 적용하여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추계하였음

<표 III-1>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재정목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필요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나. 국민연금기금의 특성과 운용철학

1) 현황

□ 국민연금기금의 특성

-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년기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수단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적연금임
- 현재 연금가입자의 기여분과 급여액을 느슨하게 연동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사회보험으로서 초기에 상당한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 사회보험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보험료는 쌓이지만 연금 수급자가 적어서 상당기간 기금이 매년 적립될 것으로

추계됨

- 이에 따라 기금의 축적·소진이 단기간에 매우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추이를 보면 2043년까지 향후 30년간 2,561조원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17년 만에 급격히 소진되는 구조
- 대규모 기금의 적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단일 경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2012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잔액은 392조 원으로 2012년 명목 GDP 대비 31.7%에 달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여 2035년 명목 GDP 대비 49.4%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
-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확정급여방식의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재정의 부실은 국가재정의 부실화로 연결될 만큼 영향이 크고 중요한 이슈임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철학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국민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이의 관리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음
 -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
 -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
- 이러한 전제 하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된 관점에서 효율적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을 달성함으로써 장기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 국가경제와 자본시장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광의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산업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
- 제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60년 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
 - 제도 도입 초기의 저부담-고급여의 제도 설계 상 이슈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
 - 미래세대 인적자본의 양과 질이 대폭 확충될 때 현세대에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 정부는 국민연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님
- 연금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의 원칙은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받고 동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근간
 -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개선방안과 기금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검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구축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원칙>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II. 2.-

- (수익성) 기금 운용에 있어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
- (안정성)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
-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
- (유동성) 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을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 (운용독립성) 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장기수익률 제고 노력을 통한 장기재정 안정에의 기여와 함께 투자다변화를 통하여 투자위험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투자의 자국편중은 소득의 흐름과 투자자산이 창출하는 수익의 흐름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환위험, 국가위험 등 위험의 집중을 초래함
 - 해외투자 규제, 제약 등을 포함한 작은 거래비용이라도 심각한 자국편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
 - 투자다변화로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이득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교란의 잠재적 폐해를 줄일 수 있게 함
 - 원화가 강세일 때 해외투자를 늘리고 반대로 약세일 때 해외투자를 회수하는 수요공급의 원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뿐 아니라 환율안정화로 국민경제에도 기여
- 기금의 급속한 규모 증가와 소진에 따른 국가경제 및 자본시장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유동화 수요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해외투자 확대 등 장기적 전략 필요

- 기금의 거대화는 기금이 움직일 때 시장도 움직이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통화 및 재정정책을 왜곡할 우려
-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투자 다변화의 필요성 증대
 - 해외투자 다변화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소득의 흐름과 투자수익의 흐름이 공통요인인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의존,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결과 초래
 -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비록 자산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공통요인을 반영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에 한계가 있음

2) 문제점

- ▣ 기금운용목표는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이 처한 시장상황을 고려한 투자 제약 요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장기적으로 어떠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투자정책이 결여
 - 기금운용지침에는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에서 국내주식의 내부운용은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운용을 지향하고, 위탁운용은 액티브 운용을 지향한다고만 기술되어 있음
 - 국민연금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운용 상의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위험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를 기본적인 운용 철학에 사전 반영하여 수립될 필요

3) 개선방안

□ 투자정책서(IPS) 재정립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투자의 중심축으로서 단기적인 시장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금운용지침을 재검토할 필요
- 국민연금법 상의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는 한편, 초장기적인 투자시계와 재정수지 변화에 따른 기금성장 국면별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재정안정을 고려하는 장기 목표수익률 정립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지침을 재검토할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

-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투자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05조 1항에 의거하여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 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자산배분 정책으로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초과 수익률, 전술적 자산배분, 환헤지정책, 벤치마크지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표수익률
 - 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조정치’를 달성하도록 운용
 - 위험한도
 - 전략적 자산배분(안)의 위험한도는 “향후 5년 동안이 Shortfall Risk ≤ 10%”를 만족하여야 함
 - ※ 5년 동안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10% 이하로 함
 - 그 외에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성과평가 및 보상, 위탁운용, 의결권행사, 윤리기준,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다. 국민연금기금의 목표수익률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 재정추계 상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 현황

- 국민연금은 추가적인 투자위험이나 제도개선 없이는 2060년 경에 소진될 것이 예상되며 이후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금 및 기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24% 수준이 될 전망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수익률의 1.1배(위험자산 약 30%)로 가정하였으며, 2060년 소진시점까지의 연평균 명목 투자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기준으로 5.09%로 추정
- GDP 대비 연금급여 비율은 2013년 1.04%로 시작하여 2030년에 2.46%, 2050년에 5.71%, 2083년 7.70%까지 꾸준히 상승
 - GDP 대비 연금보험료율 1% 수입 비율은 2013년 0.27%에서 시작하여 2083년 0.33%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I-2>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금액	비중
국내주식	72	18.33% (위험자산)
해외주식	33	8.42% (위험자산)
국내채권	237	60.03%
해외채권	18	4.53%
대체투자	33	8.43% (위험자산)
단기자금	1	0.26%
계	395	10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2013년 1월 기준으로 자산배분 현황을 보면 위험자산(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대체투자의 합)비중이 전체 투자자산의 35%를 상회함

□ 목표수익률과 요구수익률간 괴리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내 목표수익률
 - 현재 장기 운용수익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단, 조정치는 목표수익률이 위험한도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
- 재정추계상 요구수익률 추정 방식의 문제점
 - 재정추계 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은 회사채 금리의 1.1배로 가정하고, 회사채 수익률을 이용한 근거로서 재정추계 시 가정된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과 유사함을 제시
 -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은 포트폴리오가 채권으로 구성되었던데 따른 사후적 결과임
- 기금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 1988년~2004년 기간 중에는 기금포트폴리오가 채권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상관관계가 0.71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공자기금 의무예탁 규정이 폐지되고 채권위주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투자다변화가 본격화된 2004~2011년 기간 중에는 상관관계가 -0.11로 나타나 회사채수익률의 일정배수를 대응치로 사용하는 방식은 한계를 노정
- 향후 재정추계상 요구수익률 가정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
 - 연금지급률 산식을 감안할 때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기대수익률 가정이 ALM 관점에서 타당

2) 목표수익률 분석

□ 국민연금 목표수익률 분석 및 설정의 의의

- 장기 재정안정 및 이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금운용 방향을 설정
 - 향후 70년 동안의 수익률 또는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목표를 갖고 기금운용 방향을 수정·보완해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위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제도 변경 없이는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연금 제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과도한 투자위험 부담으로 연금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공존

□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관점에서 모색

- 합의된 장기 재정안정화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의된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하여 보험료율 조정 등 연금제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모색
- 재정안정화를 보험료 총수입과 연금급여의 증가율, 그리고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보험료율 또는 연금급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보험료수입과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
- 2083년까지 70년 내에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별 위험투자자산 비중을 탐색하고 각 대안 별로 재정안정화에의 영향을 비교

○ 핵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III-3> 연금제도 지속을 위한 보험료율별 위험투자자산 비중

목표수익률 및 미달위험	위험자산비중	보험료율 대안	예상기금소진시기
국채이자율(5년)+1.5% 위험 I: 0.4%, 위험 II: 7.3%	30%	13%	2080년
국채이자율 + 2.0% 위험 I: 1.7%, 위험 II: 11.5%	40%	9%	2062년
		13%	2083년 이후
국채이자율 + 2.5% 위험 I: 3.8%, 위험 II: 14.9%	50%	9%	2065년
		13%	2083년 이후
국채이자율 + 3.0% 위험 I: 6.1%, 위험 II: 17.6%	60%	9%	2070년
		13%	2083년 이후

주) 위험I: 5년 수익률이 음일 확률, 위험II: 5년 수익률이 누적물가상승률에 못 미칠 확률

□ 재정추계 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적립배율 2배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에 근접한 13%와 현행 보험료율 9%를 두 개의 대안으로 놓고, 위험자산비중의 변화에 따른 재정안정화에의 영향을 비교

- 위험자산비중을 20% 증가시키면, 목표수익률이 1% 제고되고, 이것이 장기간 누적된 효과로서 기금소진 시기는 약 8년 정도 뒤로 미루어져 재정추계 민감도분석 결과와 유사
- 반면에 위험자산비중을 20% 증가시키면, 목표미달위험(shortfall 위험)도 커져서 5년 누적수익률이 음이 되거나(위험 I) 누적물가상승률을 하회할 위험(위험 II)도 증가함

3) 개선방안

□ 제도개선과 연계된 국민연금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제안

- (기본 가정) 다음 가정 하에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거나 재정안정화 목표에 근접하는 시나리오 조합(최소 위험자산 비중, 최소 보험료율, 최소 부족분)을 분석
 - '미달위험(Shortfall risk)'은 5년 누적수익률이 i) 누적물가상승률 이하가 될 확률과 ii) 음(-)이 될 확률로 정의
 - 위험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연간 5%로 가정
- 시나리오 분석의 목적은 보험료율과 위험자산 비중과의 관계를 통해 재정안정화 달성을 위한 합리적 목표수익률 수준의 제시
- (보수적 목표) 목표수익률 5년 국채수익률+2%, 허용위험한도는
 - i) 수익률 연간표준편차 8% ii) 5년 누적 손실확률 3%
 -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중 40% 수준이 필요
 - 위험자산 비중 40% 수준에서 미달위험은 5년 누적수익률이 음이 될 확률은 1.7%, 그리고 물가상승률 헷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5년 누적물가상승률에 미달할 확률은 11.5%
 - 보험료율 9%인 경우 위험자산 비중이 40%로 증가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2년으로 나타남
- (중립적 목표) 목표수익률 5년 국채수익률+2.5%, 허용위험한도는
 - i) 수익률 연간표준편차 10% ii) 5년 누적 손실확률 5%
 -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중 50% 수준이 필요
 - 위험자산 비중 증가로 미달위험도 증가하는데 미달위험은 5년 누적 수익률이 음이 될 확률은 3.8%, 그리고 물가상승률 헷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5년 누적물가상승률에 미달할 확률은 14.9%

- 보험료율 9%인 경우 위험자산 비중이 50%로 증가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5년으로 나타남

- (적극적 목표) 목표수익률 5년 국채수익률+3%, 허용위험한도는 i) 수익률 연간표준편차 12% ii) 5년 누적 손실확률 7%

-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중 60% 수준이 필요
- 위험자산 비중 증가로 미달위험이 더욱 커져서 5년 누적수익률이 음이 될 확률은 6.1% 그리고 물가상승률 헷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5년 누적물가상승률에 미달할 확률은 17.6%

- 보험료율 9%인 경우 위험자산 비중이 60%로 증가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70년으로 나타남

※ 보험료율 13%인 경우 위험자산 비중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금은 추계기간 말인 2083년까지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 자산배분 프로세스도 재정추계 주기에 맞추어 재정안정화분석을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재정지표에 적립배율 또는 적립금/임금 비율 목표치 대비 실제값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

※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미래 지급금도 증가하고, 따라서 필요한 적립금 규모도 증가함.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적립금/총임금 비율로 설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

□ 국민연금 자산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

- 재정추계가 5년마다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재정안정화 분석도 5년 주기로 수행되고, 분석 결과에 5년 전 시점의 분석 결과와의 차이점이 명시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
-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른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를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5년 중기 자산배분을 수행하고, 매년 중기

자산배분 대비 연간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

4) 기대효과

-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설정되는 목표수익률이므로 기금운용의 방향성 제시가 가능함
 - 기금운용의 자의성을 경감시켜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투자 목표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가능함
- 목표수익률 설정에 사용되었던 재정건전성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음
 -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5년 단위의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성과평가가 명시적으로 가능해 짐

5) 제한점

- 지나치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설정이므로 인구구조, 재정추계, 위험자산의 변동성, 위험프리미엄 등의 가정을 통해 추정된 숫자들이 향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용된 경제변수 등에 대한 정합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향후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수정·보완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라. 장기 자산배분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 기금의 운용목적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에 있음

□ 문제점

-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기금운용 목적으로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의 장기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그림 III-1] 재정건전성



- 국민연금 대표가입자의 제도 IRR은 6.5% 수준이나, 2013년 재정계산 가정치의 기금운용수익률 평균은 5.09%이며 세대간 부양비 증가로 인해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정부보조 등이 필요하며, 자산 배분에 따라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낮춤으로 인해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 및 정부 보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

- ALM 분석을 통해 제도 변경과 기금의 장기적인 운용전략의 조합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프로세스에서는 제도 변경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기금운용의 목표 설정이 경기변동에 의해 지나치게 쉽게 변동하는 측면이 존재함

□ 2단계 자산배분 프로세스의 문제점

- 현행 2단계 자산배분 프로세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ALM에 기반한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제도와 무관하게 자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즉 장기적인 목표수익률과 그 책임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성과보상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목표에 관심을 두기가 어려움
 - 또한, ALM은 합의된 재정목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데, 현재 재정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정 방식에 대한 논의 역시 매번 미루어지고 있음

2) 대안의 검토

□ 3단계 기금운용프로세스 제안

- ALM 분석을 통해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규범적인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설정한 후 전략적 자산배분 및 전술적 자산배분을 하는 3단계 자산배분 프로세스를 제안
- 3단계 기금운용프로세스의 정의
 - [1단계] 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규범적인 기준 포트폴리오의 정의*가 요구됨

- * 이때 기준포트폴리오는 현행 5개 자산군과 같이 구체적인 것 보다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유동성자산과 같은 자산군 분류나 주식, 채권, 실물자산과 같은 자산군 구분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기준포트폴리오는 5년의 재정계산 주기에 의해 기금운용발전 위원회에서 해당 시점의 재정계산 가정치 및 제도 변경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수 있음
- [2단계] 장기 기준포트폴리오를 준거로 하여 기금운용위원회는 현행과 같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허용된 위험과 범위 내에서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 등 5개 자산군에 대한 배분 비중을 정함
- [3단계] 기금운용의 실무조직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기초로 매월, 매 분기 주기의 전술적 조정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알파)을 추구하는 전술적 자산배분을 정함
- 장기기준포트폴리오의 설계
 - ALM 분석을 토대로 기금규모 단계별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ALM 분석은 제도 변경과의 조합을 통해 기준포트폴리오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에 대한 역할을 정의할 수 있음
 - 제도와 장기적인 기금운용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매년 ALM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동시에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정계산에서 재정계산 가정치와 제도변경(안)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 3단계 기금운용프로세스의 장점
 - 전략적 자산배분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적 자산배분을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위기 등 기금운용의 위험이 발생할 때 전략적 자산배분의 잦은 변경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철학을 제공
 -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전략을 대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음
- ALM 분석을 통해 제도와 자산운용의 위험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할 수 있음
-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정계산시 제도와 기금운용의 통합적 의사결정 채널을 마련할 수 있음

4) 제한점

- 재정계산 모형과 ALM 모형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ALM 모형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의 모형과 가정치가 변경되게 되는 데, 이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ALM 모형 개발이 요구됨
 - 연구원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와 장-단기 역할분담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연금기금의 시장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운용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주식시장

- 향후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의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35년 이후에는 10%를 상회할 전망
- 노출된 국민연금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주식시장에서의 선행 매매, 추종매매, 머니게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대형주·우량주 위주 주식 투자로 인해 국민연금이 주요 대형주 및 4대 금융그룹(KB, 신한, 우리, 하나)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되면서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축소되는 시기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붕괴 가설(melting down hypothesis)와 관련된 우려도 존재함
- 국민연금의 주식시장에서의 과도한 영향력과 관련된 이상의 논의들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채권시장

- 국민연금이 향후 국고채 및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는 행태를 유지한다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국민연금이 국고채 중심의 만기보유 전략을 유지하면 국민연금의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 438.3조 원 중에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비중은 24.6%(107.7조원)으로, 이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 13.0%(56.9조원)을 약 2배에 이룸
- 한편 국민연금이 국고채 및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특수채 위주의 투자(cherry picking)를 실행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저 신용등급 위주의 채권투자로 내몰리게 되는 시장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도 있음
- 채권시장에서도 기금적립금 축소국면에서 단기간 대량의 국채를 국민 연금이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붕괴의 상황에서는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 및 대체투자

-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시장 영향력 감소를 위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외환시장에의 영향이 증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유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출 필요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관련 제한된 인력과 투자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자산을 기금 성숙기 이후 투자를 회수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영향력 감소를 위한 대안의 검토

□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과 국내주식 투자전략

- 국내주식시장에서의 매매집중률에 따른 시장충격비용의 증가분을 측정하여 적정 국내주식 투자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충격을 가능한 최소화
- 검토결과 개별주식 지분율이 15%를 상회할 때 시장충격비용 급증
 - 실제 국민연금의 보유 종목수는 상장주식의 30%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시가 대비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보다는 실제 보유하는 개별 종목별 국민연금의 보유비중이 클 것임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 국내주식 투자 상한은 전체 금융자산의 20~25%로 책정하는 것을 제안

□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과 국내채권 투자전략

- 장기재정수지 전망과 페널추정을 이용하여 채권시장 규모와 국민연금의 채권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추정하고 시장 교란 효과를 검토
- 검토결과 국내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은 2020년경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3년경에는 국민연금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30년대 중반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유동화에 대비할 목적으로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채권시장 규모의 전반적인 확대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시장 지배 현상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대체시장에 대한 영향과 국내대체 투자전략

- 국민연금의 대체시장에서 현재 수준의 투자 비중과 투자전략을 유지

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자산 점유율은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GDP와 대체자산 시장 규모 간의 관계를 통하여 향후 대체자산시장 규모 추정
- 국내 대체자산 비중 7.5%, 대체자산 중 SOC, 부동산, PEF 비중을 각기 40%, 20%, 30%로 가정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SOC, 부동산, PEF시장 점유율은 최고 시점에서 각기 현재의 2.5배, 2배, 2배 가량인 23.1%, 69.2%, 34.6% 까지 상승
- 대체자산시장의 특성 상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추가적인 시장왜곡을 초래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음

□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투자방안

- 해외투자는 미래시장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기 보다는 국내자산의 다변화 효과 및 국민경제에 대한 헤지 효과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장기적인 해외투자 추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투자전략은 10~20년의 기간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주식은 개별종목 선별에 의한 초과수익 창출보다는 지역별 자산 배분이나 투자스타일 선택을 통한 수익률 제고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해외채권은 매입 후 보유 전략을 시행하여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산의 국내외 분산을 도모하며,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역별 자산배분을 통해 국가신용 스프레드를 이용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외환관리 방안
 - 단기적 시장전망에 입각한 적극적 환위험 관리는 환율예측의 부정

확성 및 원달러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음

- 외환관리 방안은 전략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다만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화오버레이 전략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외환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3) 기대효과

- 시장영향력을 감안하여 각 금융시장별로 투자한도를 정하여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가능한 한 해당 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시장중립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러한 시장영향력을 감안한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당 자산시장에서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국가적으로도 동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4) 제한점

- 시장영향력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시행할지라도 국민연금의 기금규모가 국내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이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각 자산군별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시장별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방안

가. 국민연금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자산배분

1)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규모 변화에 대응한 자산운용 전략 수립
 -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2043년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급격한 유출이 시작되어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기금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금 성장기에는 국민연금의 국내시장에 대한 지배력 증가로 인한 제약요인이 존재하나,
 - 연금지급액이 보험료보다 확대되고 기금규모가 절대적으로 축소되는 시기에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운용의 기본적 방향과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투자자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장기투자 필요성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향후 20여년의 성장기에 있어서의 장기 자산배분 전략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향후 적립금 추이 변화에 따른 상이한 자산배분과 기금 운용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향후 20년간 자금순유입으로 기금적립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장기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운용전략의 수립 및 집행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장기투자는 단기적인 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대상 자산의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의 장기로 유지하여 투자 성과를 개선하려는 시도
-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장기투자는 자산배분 구성의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개별 자산의 경우에서와 같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와 위험 감소를 얻으려는 시도로 이해됨

3) 기금규모 단계별 자산운용전략

- 기금규모 단계별 최적자산배분안 및 실행 방안
 - 기금 성장기(2013~30년)
 - 제약요인 측면에서 유동성 제약은 없으나, 국내자산 시장 지배력 증가로 인한 제약 요인 존재
 - 운용전략
 -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유동성 및 기간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운용전략 수립
 - 국내자산의 시장지배력 및 국민경제에 대한 헤지 효과를 감안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환위험 노출 비중을 증대시킴으로써 기대수익률 제고
 - 기금 성숙기(2031~43년)
 - 제약요인 측면에서 보험료수입을 초과한 연금지급액 지불을 위해 투자수익 일부의 현금화 필요
 - 운용전략

- 기존 자산에 대한 매각과 그로 인한 유동화 비용의 문제를 고려, 국내채권 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나,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 점진적 축소
- 주식매각을 고려한 유동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행기 상황을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해외자산과 대체자산은 일부만을 축소하는 대신, 대체투자의 신규 투자분은 유동성을 감안하여 투자

○ 기금 이행기(2044~60년)

- 제약요인 측면에서 보면 연금지급을 위한 투자원금의 유동화로 기금 적립금 2060년 소진 전망
- 운용전략
 - 연금지급액을 위해 현금자산을 포함한 채권 비중을 70%로 확대
 - 순차적인 자산매각 방안의 수립: 국내·외주식→해외채권 →국내채권
 - 유동성이 부족한 대체자산은 이행기시 신규투자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해외자산은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헤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나, 시장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헤지를 통해 현금흐름의 확실성을 증가시킴

4) 개선방안

- ▣ 국민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내할 만한 위험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세부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장기투자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 특히 유동성 프리미엄 및 가치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함
- 장기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분산투자 효과로 매매시기의 포착

(market timing)이나 개별 종목에 대한 선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종목 선택 전략 등은 지양

- 대체투자 비중 증가에 의한 유동성 프리미엄의 획득은 장기투자자의 이점을 활용한 기금운용 성과 제고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 국민연금의 장기투자자로서의 특성을 활용한 장기자산배분과 투자 전략의 수립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기할 수 있음
 - 장기투자 전략의 수립을 통해 유동성 프리미엄 및 가치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자산운용 전략의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함

6) 제한점

-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적 개편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제도적 개편이 전제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수립, 실행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투자전략의 수립과 이행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은 달성되기 어려움
 - 국민연금의 특성 상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자산배분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경제와 금융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주기적인 자산배분의 조정은 필요함

나. 장기 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을 장기로 유도하는 연구를 수행 중임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금융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
 - 이들의 단기투자 비중 증가는 변동성 확대 및 시스템 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버블의 가속화 및 금융위기 시 투자 자금 회수로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반면에 분산투자효과 및 인플레이션 헤지 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규제로 투자기회가 제한됨
 -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OECD가 제시하는 방안은 장기 리스크가 포함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자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임
- 거시 건전성 규제를 위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하거나 비유동성 자산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이는 시스템 위험관리를 위해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위험관리 기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존재함
 - 장기 자산배분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도 투자기간 장기화에 따른 위험관리의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하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기적인 자산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 존재
 -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은 기존에 가정했던 위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산가격 하락이 향후에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위험에 대비해야 함

2) 장기 투자의 개념과 위험관리

□ 장기 투자의 개념 확립

- 장기 투자란 매수보유전략 및 동적자산배분전략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으며, 흔히 투자기간이 장기화가 될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속설은 매수보유전략에 해당함
- 매수보유전략(buy-and-hold strategy) :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투자기간의 장기화. 투자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 기간 당 위험이 감소하는 시간분산효과를 볼 수가 있음
- 동적자산배분 : 목표 투자기간은 길어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끊임 없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Merton(1973)은 ICAPM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연속 시간 모형 하에서 소비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다루었음
 - 이 모형의 시사점은 상태변수 변화에 따른 리밸런싱이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이지만, 상태변수 변화에 따른 리밸런싱은 거래비용이 존재할 경우 증가되는 거래횟수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매수보유전략과 동적자산배분의 비교
 - 장기의 매수보유전략을 통해 시간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 단, 수익률이 예측 가능할 경우 최적의 동적자산배분(dynamic asset allocation) 전략을 통해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시간분산효과가 존재하거나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장기 매수보유전략보다는 동적 자산배분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음

□ 장기 투자의 위험

- 동적자산배분의 경우 예측 모형에 근거한 동적 자산배분전략은 모형 리스크로 인한 위험에 노출
- 투자기간의 확장과 유동성 위험 프리미엄
 - 투자기간의 확장으로 만기보유자산 중 자산 듀레이션이 긴 상품도 투자 대상에 편입이 가능해져 투자 유니버스가 확대 됨
 - 전통 자산 군과의 상관성이 낮은 상품들, 특히 대체투자 상품의 편입 시 이 효과가 극대화 됨
 - 자산 듀레이션이 긴 상품의 경우 유동성 프리미엄을 충분히 보전 받아야함
 - 유동성 유실은 손절 기회의 부재, 모니터링 부재, 시장상황변화 (time varying risk/premium)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결정적으로 꼬리위험(tail risks)에 매우 취약하게 됨
 - 또한 비전통적 자산 대체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전통적 자산과 상관계수가 낮아 분산 효과가 제고됨
 - 분산효과가 가장 요구되는 시장 충격 시점에 비전통적인 자산과 전통적인 자산의 상관성은 증폭하고 더욱이 이들의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짐에 따라 분산효과의 실효가 없음
-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 자산의 투자기간과 관리자의 책임기간 불일치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발생. 자산배분 전략 수립과 보유 자산 위험관리, 그리고 매니저에 대한 보수 체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됨
- 부분 적립식인 국민연금은 부채 부문에 대한 고려가 최소화된 자산 부문만 고려한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수행
 - 장기적으로 연금지급금이 유입보험료를 초과하고 기금 규모가 감소

하는 시기에는 단순한 연금의 규모와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금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한 자산의 유동성 관리 역시 위험관리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

□ 장기투자의 시장 위험관리

- 매수보유전략의 경우
 - 장기투자로 투자기간이 바뀌었을 때 위험자산은 누적수익률로 파악했을 때 양의 값을 가질 확률이 높음. 하지만 그 최종수익률이 실현될 때까지의 중간수익률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
 - 사전적 심사 강화 및 탈출 계획 보장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집단별 성과평가, 유동성 위험 대비 수익률 평가 및 관리 필요
 - 네거티브 감마 위험 및 꼬리 위험 관리를 위해 사전적으로 시나리오 분석, 확률분포 분석, 팩터 노출도 분석까지 고려
- 동적자산배분전략의 경우
 - 각 경기 순환 단계에 따라 기대하는 수익률과 변동성이 다르며 경기 단계가 위험 관리 시 주요 변수가 되어야 함을 뜻함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태 변수로 무위험자산 수익률, 기간 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 등이 있음
 - 경기 순환 단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상태변수로는 상태변수에 따른 위험관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비유동적 장기투자자산의 리스크 관리
 - 집단별 성과평가 필요
 - 낮은 베타에 대한 고려하여 자산 편입
 - 미래 투자기회에 대한 기회비용 고려
 - 비유동적 장기투자자산의 높은 유동성 위험 보상 요구

3) 개선방안

- 매수보유 전략을 통하여 시간분산효과를 향유하는 한편, 수익률이 예측 가능할 경우 동적자산배분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투자기간의 확장은 투자대상군(spanning set)을 확장해주는 반면에, 유동성 유실, 상관관계추정의 에러, 비대칭 상관계수 등의 단점이 존재
- 투자기간과 매니저의 계약기간의 불일치는 투자성과의 평가 및 매니저의 인센티브에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
- 비유동성 투자자산은 그 특성에 따라, 집단별 성과평가, 유동성 프리미엄, 경기 확장과 축소에 따른 비대칭적인 베타, 미래의 투자기회 포기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더 고려되어 위험 관리가 되어야 함
- 금융위기의 주기적 발생과 위기 시 자산가격 하락의 동조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전적 위험관리의 중요성 강조
 -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자산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전적 위험관리 체제로의 전환
 - 위험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사전적 위험관리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인력과 체제를 보완
- 자산운용과 위험관리의 상호 유기적 연계 개선
 - 경기변동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이를 자산배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위험관리와 자산운용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으로 기금 규모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연금지급에 따른 부채가 고려된 ALM의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4) 기대효과

-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자산 운용 전략에 반영하여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변동성 감소를 동시에 추구
- 위험관리 측면에서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다면 운용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자산운용과 위험관리의 상호 유기적 연계 개선은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위험관리에서 나아가 선제적 위험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 수익률이 예측 가능할 경우 최적의 동적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비전통적 자산, 대체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전통적 자산과 상관계수가 낮아 분산 효과가 제고됨

5) 제한점

- 동적자산배분의 경우 예측 모형에 근거한 동적 자산배분전략은 모형 리스크로 인한 위험에 노출
- 비유동적 장기투자자산의 경우에는 높은 유동성 위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
- 금융위기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자산운용전략에 반영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위험관리가 사후적인 위험측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전적인 위기의 인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개선 방안 검토

다. 장기투자 관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1) 현황 및 문제점

-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기금은 최소 30년 이상의 투자시계(investment horizon)를 갖는 전형적인 장기투자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다양한 요구 및 주장에는 장기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빈번한 것으로 관측됨
- 집행조직이 스스로 장기투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토록 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 기제는 적절한 성과평가 및 그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보상체계의 설계임
 -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투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장기투자 관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의 목적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대국민 공시’와 ‘운용에 피드백’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 강제가입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자(국민)에게 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을 통하여 기금 운용역에게 피드백 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추구라는 긍정적 유인 기제 확보

□ 성과평가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의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라 할 수 있음
- 성과평가에 대한 언론 및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사안은 지난 일 년 동안의 단기적 수익률 또는 수익 금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결과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적정 투자 비중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일관성 없는 지적이 반복됨
- 전통적 자산(traditional asset)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매우 정교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대체투자(AI) 같은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성과평가의 어려움이 점증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 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벤치마크(performance benchmark) 설정 등 평가의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대체투자 성과평가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자산 운용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로 평가됨

□ 장기투자자 관점에서 시가평가(mark to market)의 문제

-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운용자산은 시장가격(market price) 또는 공정가치(fair value)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체투자와 같이 유동성이 극히 낮은 장기투자 자산을 분기 단위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 또는 만기보유 기초 하에서 국채와 같은 무위험채권을 일간으로 시가평가하는 것 등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평가 관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상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장기투자자로서 요구되는 기금운용역의 바람직한 행태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체계(incentive scheme)의 설계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현행 보상체계는 기본적으로 장기평가 관점에서 설계되어,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 모두 과거 3년 성과를 가중 평균하여 당해연도 성과급이 설정되는 구조임
 -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정보비율(IR) 목표, 평균적으로 낮은 보상 수준, 그리고 장기성과에 대한 비효율적인 가중 방식 등으로 인하여 기금 운용역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3년 또는 5년 기간으로 측정된 평균 초과수익률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기금 성과급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목표 IR=0.5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3) 개선방안

□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기간의 장기화

- 정량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률 산출에 있어 수익률의 측정 기간과 측정 주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수익률의 측정 주기는 전통적 투자의 경우 일간(daily)이며 대체투자는 분기(quarterly)로 설정되어 있음
 - 연평균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한 성과의 측정 기간은 1년, 3년 또는 5년을 기준으로 함
- 상시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수익률의 측정 주기는 가능한 단기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 및 보상의 관점에서 수익률의 측정 기간은 보다 장기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상에는 장기평가를 지향하기 위하여 3년 평가를 중심으로 기금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기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상의 수많은 왜곡들이 수익률 측정의 장기화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비유동성 자산의 시가평가(mark to market)

-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위험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현행 분기별 평가와 같이 가능한 짧은 주기로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발전 방향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측정 기간에 있어서는 대체투자 자산의 J-curve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투자자산 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음
- 국채의 시가평가 문제 역시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자산군을 처음부터 만기보유 채권으로 분류하여 매도가능 증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므로, 측정 기간 측면에서 장기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임

□ 장기성과 유인 기제로서의 보상체계

- 현재와 같이 과거 3년 동안의 기 결정된 지급률을 가중평균 하는 방식 보다는 성과평가에서 도출된 3년 평균 수익률 자체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가 산정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임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업력이 축적됨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연간 수익성과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자 한다면 1년 평균 수익률(20%), 3년 평균 수익률(30%), 5년 평균 수익률(50%)를 가중평균 한 연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가 산정되는 방식을 설계할 수 있음

□ 공적연기금의 바람직한 조직 설계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의 운용 조직의 설계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간 자산운용사와 같은 높은 수익성 또는 효율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의 안정성임
 -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조직 역시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스타플레이어를 지향하기 보다는 업계 중상위 수준 정도로 평가되는 양질의 운용역이 장기 근속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상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목표 IR 역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준용하고 있는 목표 IR=0.5는 액티브운용의 관점에서 상위 75% 이상의 높은 수준에 해당함
 -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공적연금에 이렇게 적극적인 액티브운용을 요구하는 조직 구조는 적절치 않음
- 적정 정보비율(IR)에 대한 문제는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기본적인 투자 신념(investment belief)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절대 규모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공적자금으로서의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기금은 기본적으로 패시브운용을 지향하고, 개도국 중심의 해외투자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액티브 운용을 허용하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운용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신념을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은 기금운용역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유인기제이며, 이는 공적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의 성과평가는 가입자(국민)에게 공시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금운용 및 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5) 제한점

- 공적연금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에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3. 공적연기금 역할 강화

가. 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체계

1)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요

- '97년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IMF의 구제자금 조건으로 기금운용 체계 개선 수용
 - 국민연금법('98.12)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경제기획원 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정부위원 6인,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 14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공단에 기금운용본부를 설치('99.11)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기금운용업무(종래 공단일반직 수행) 전문화 개시
 - 공공자금관리기금법('99.1)을 개정하여 국민연금의 공자기금 의무 예탁 규정 폐지(총 예탁금액 45조 6,371억원, '05.12월말 회수 완료)
-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 보완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구성('06)하여 의결권행사지침 제·개정, 주식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방향 심의, 행사사례 집람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07)하여 성과평가보상지침 제·개정, 내·외부 평가를 심의하여 정량/정성평가 및 성과급 결정
 -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구성('11)하여, 자산배분, 해외투자, 대체투자, 자원개발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활동 강화

2) 기금운용체계의 역할 분담 및 문제점

□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본부의 역할과 책임(R&R)

-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지침서(IPS) 정립,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정책, 위험관리정책, 성과평가보상정책 등 담당
- 기금운용본부는 전술적 자산배분,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집행 및 사후관리, 위험관리 등 수행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속의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의 전문성 부족, 일부 위원의 대표성 논란, 과도한 정부위원 등에 대한 비판
 -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유사하여, 추천위원에게 기능적으로 기대되는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
- 전문위원회의 법적근거가 없고,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중복되며, 위원회 지원 인력·조직이 약한 상황임

□ 기금운용본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적용되어 자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어려움
- 운용지원(back office), 경영지원을 공단 일반직이 담당하여 해외거래 결제업무, 인사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서 한계 존재

3)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갖추어야 할 주요 가치

□ 기금운용의 독립성

- 기금이 운용목적 이외 정책적 목표의 달성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로 인해 가입자 전체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됨

□ 기금운용의 전문성

- 기금규모의 급증과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능력 필요
-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

□ 가입자 대표성

- 기금 주인(principal)인 가입자·수급자의 이익이 대표되어야 함
- 운용성과는 보험료·급여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 운용 정책결정에 가입자의 참여 필요

□ 정부의 책임성

- 정부는 제도운영 및 기금운용에 대해 궁극적 책임(last resort)을 갖는 당사자임
 - *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책임은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책임 불가피
- 향후 보험료·급여 수준 등 제도변수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정책에 따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게 됨

4)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안

- (문제점)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 논란, 과도한 정부위원 등
- (개선안) 기금운용의 정부 독립을 위해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 기금운용의 책임, 세대간 형평성, 시장 독립 등을 위해 현행방식(정부 소속 위원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부위원 축소, 위원 자격의 전문성과 대표성 조화, 위원의 임기 연장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 *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정책(투자 원칙, 위험 한도 등)을 결정하여, 운용조직은 개별투자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기금운용조직의 독립성 강화

- (문제점)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 책임이 없는 국민연금공단 소속으로, 본부의 인력충원 및 보상체계에 한계
- (개선안) 기금운용 성과 제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기금 운용기구(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현행 방식(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성과가 나쁘지 않으며, 독립 공사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 개진
 - * 공사가 설립되어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면 독립성 강화를 통한 성과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개선방안의 보완사항

- 기금운용기구의 독립성 확보는 지배구조의 하드웨어적인 개선으로,

- 이와 함께 투자 과정 및 인프라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국민연금의 성과제고 및 가입자이익 기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은 제도적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기금 운용이 제도개선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기금운용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채용 및 역량 제고,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맞는 조직문화를 조속히 도모해야 함
- 또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응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의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지배구조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이 국가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에 있어서 주요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위치를 가지게 됨
- 연금기금이 기업에 투자한 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매매 차익을 통한 수익성 확보 보다는 장기투자가 중요해짐
 -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 증가
 - 최근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거의 없었던 상황임

□ 국민연금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 현황

- 최근 수년간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 가운데 90% 이상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있음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자제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전 또는 정관 변경 안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주주소송 또는 사외이사 추천 등의 주주권 행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음

□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 현황

- 주총에서의 기관투자자의 행태 또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정도에 있어 기관투자자간의 차이가 있으며 해외주요 연기금 역시 의결권 행사 행태에 차이를 보임
 - 일부는 사외이사후보 DB를 활용하거나, 주총안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등 다른 주주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
 - 또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함
 - 의결권행사 주체, 기관투자자와의 연대, 회사경영진과의 대화 시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문기관 이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
 -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권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보다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 즉 출구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본시장에서의 비중, 지분율이 높은 국민연금의 경우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2) 개선방안

□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기본 원칙 확립 필요

-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기업과 행사내용에 대한 사전적 원칙을 확립하고 이 원칙에 기초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종권한을 갖는 내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결권행사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권리행사의 원칙을 확립하고 운용사례집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
- 연금의 적립금 규모 증가로 신흥개발국을 포함한 해외투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에 대내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원칙 확립필요

□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주주의 의결권이 높은 기업에 있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주주의 의결권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맡은 운용사와 연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지침을 연금의 지침 및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의결권행사 기준 및 투표결과를 국민연금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운용사 평가에도 반영
- 다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사안을 사전공시

□ 사외이사 추천 관련 제안

- 국민연금이 특정 (또는 복수)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보다는 연금이 수용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
-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특성과 환경 그리고 사외이사 후보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매칭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대주주로 하는 기업들이 법률상 연계될 수 있으므로 이에 수반하는 잠재적 비용과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

□ 주주소송관련 관련 제안

- 주주소송은 경영진 등에 의한 심각한 주주권 훼손이 있거나, 감독 기관의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등 승소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주대표소송 참가·제기
- 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과 연금에 있어 많은 비용을 야기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합리적인 주주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에 공헌한다면 시장에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수의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증권관련 경우 집단 소송 참여
- 소송관련 절차, 기준, 의사결정 등에 관한 원칙 등을 마련할 필요

□ 감시대상기업목록에 대한 제안

- 사전에 작성된 원칙에 따라 상당기간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배임·

횡령 등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진들과 협의를 통해 경영성과 및 지배구조 개선을 추구할 필요

- 대상이 되는 중점감시기업 목록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도록 할 것
-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는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영개입 이전에 사전단계로 중점감시목록을 외부에 공시하였지만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기대효과

- ▣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부분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장기적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배주주의 경영권 장악에 따른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소수 주주권 보호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4) 제한점

- ▣ 의결권 등 행사강화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
-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정치권 또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
-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통한 산업 정책, 물가정책, 노동정책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국민연금의 이사선임 또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정치권 인사를 기업에 임명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

다.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1) 책임투자의 개념과 필요성

□ 책임투자(RI)의 의의

- 책임투자는 장기적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투자에 반영하는 방식
 - 주로 연기금들이 활용하는 투자방식이며 ESG이슈와 재무적 성과와의 통합성을 강조함

□ 책임투자(RI)의 핵심 전략

- RI 개념은 RI를 실행하는 투자주체들의 성향과 시각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정의됨
 - 연금, 보험 및 일반 공모 및 사모펀드들의 경우에 수탁자 책무 (Fiduciary Duty)의 큰 틀에서 ESG 요소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관점을 유지해 옴
- Mansley(2000)는 SRI에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가치를 추출: i) 장기 투자의 추구, ii) ESG 스크리닝, 그리고 iii) 주주권의 적극적 활용
 - 장기투자의 추구
 - SRI가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단기투기에 의한 '일과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투자(Long-term Investment)에 의한 '지속가능한 이익'
 - ESG 스크리닝
 - ESG분석은 기업의 무형적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로 수용되는 추세

- 주주권의 적극적 활용

- 전통적인 투자는 이른바 월 스트리트 룰에 따라 수동적으로 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을 유일한 목적함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는 주식에 부수된 각종 주주권(주체로서의 경영관여, 주주제안, 이사 및 감사 추천, 임시주총 소집, 의결권의 행사 등)을 활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해 왔음
- 그러나 RI 투자자들은 주주권을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의해 행사하는 것을 수탁자 책무의 이행으로 간주함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의 필요성

- 연금은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고 투자기업에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어 임의적인 투자회수나 종목제외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 장기투자과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책임투자는 연기금 운용특성에 부합하는 투자기법으로 이해됨

2) 현황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배경

- 국민연금은 2006년 중 투자검토를 거쳐 2006년 11월 3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투자 방식의 RI 투자를 시작함
 - 도입 배경은 초과수익 제고 및 연금의 전반적인 주식투자 철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 2009년 7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 서명

□ 국내주식위탁 책임투자형 운용 현황

- 운용사 선정 및 평가
 - 운용사 선정과정은 타 유형의 선정과정과 동일함

- 선정할 운용사 수와 투자금액은 연간 투자계획에서 사전에 정함
- 절차 : 선정공고 ⇒ 제안서 심사 ⇒ 현장실사 ⇒ 구술심사
- 제안서 심사 점수와 구술심사 점수를 합하여 점수 상위 순서로 선정
- 반기별로 운용성과, 지침준수여부, 운용 일관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등급(S,A,B,C)으로 분류함
- 운용성과는 과거 1년, 3년 5년 성과를 반영함
- 타 투자유형과의 비교
 - 투자종목 선정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요소를 고려
 - 운용사 정기평가 시 ESG분석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여, 정성평가에 반영

<표 III-4> 국내주식위탁 사회책임투자형 운용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적(연율)
책임 투자형	운용사 수(개)	6	9	8	8	8	10	
	평가액(억원)	4,134	5,947	12,828	23,632	34,497	52,444	
	운용수익률(%)	41.9	-39.2	65.1	27.3	-10.8	8.8	9.87
	BM수익률(%)	32.3	-40.7	49.7	21.9	-11.0	9.4	5.86
	초과수익률(%)	9.7	1.5	15.5	5.4	0.2	-0.5	4.01

3) 개선방안

- 연기금의 책임투자 원칙 제도화 및 정책 마련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기금 책임 투자를 위한 원칙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와 관련 최근에 수행된 연구, 'SRI펀드의 사회책임요소 분석(2012)'는

의미 있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

- 즉, 연구 결과 RI 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는 기타 투자 전략에 기반한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비해 우월
- 이는 RI 전략에 기반한 가치투자 전략의 성과가 투자 성과의 측면에서도 열등한 투자성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함

□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방향

- 장기적 차원에서 책임투자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책임투자의 원칙 및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국내환경 및 국민연금의 역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므로 본격적인 책임투자 도입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
- 국내 책임투자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선진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축적된 글로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법
- 이를 위해 ESG 평가를 위한 분석 및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투자대상을 모색하며 나아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장기적 차원에서 초과수익 제고
 - 연금은 장기적 운용 특성상 단기매매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함
- 연기금 주식투자의 수준을 선진화
 - 기금규모의 확대나 UN PRI 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선진화에 기여

5) 제한점

-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미비
 - 책임투자의 전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가 미비함
 - 즉, 투자 대상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ESG평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발달하지 못함
- 책임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 책임투자 전략의 이론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으로서의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아울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존재함

라.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복지투자

1) 현황 및 문제점

□ 법체계 상의 제약

- 복지투자의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금운용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법 제 46조와 102조의 비교
 - 우선 국민연금법 제46조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복지사업을 크게 대여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분류하고 있음
 - 법 제102조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야하며,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 법 제46조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고 있지만 법 제102조는 복지사업을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복지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에는 제약요건으로 작용

- 국민연금법시행령은 복지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휴양시설, 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와 학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개인별 대여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 이러한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지금까지 수행해 온 복지사업은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의 운영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여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

□ 정부 일반예산사업과의 차별성과 그간의 실적부진에 대한 지적

- 일반예산사업과의 차별성

-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고 연금공단 등 추진체계도 갖추고 있으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실무평가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투자수익성, 유동성, 일반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규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1조 제 1항에 열거된 각종 복지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분포는 매우 다양하여 복지요구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사업의 부정적인 시각과 시설투자사업의 실적부진
 - 복지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추진된 각종 대부사업이 부실하였던 점과 대표적인 시설투자사업인 청풍리조트의 실적이 부진한 것에 기인함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대여사업은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보육시설대여의 거치기간 연장(3년) 등으로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또한 생계자금 대여사업의 경우 미상환금을 연금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대출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거나 수급권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함
 - 공무원연금의 상록리조트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골프장과 물놀이동산 등 종합리조트의 면모를 갖고 있는 반면, 청풍리조트는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며, 숙박시설 이외에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함
- 가입자와 수급자의 욕구반영
 - 국민연금법상에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추가된 배경이 가입자와 수급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본 사례를 벤치마크 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가입자와 수급자에 대한 욕구를 상호 달리 해석하는 것도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공공성의 개념

□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재원구분과 공공성 수준

- 국가재정법 제 5조(기금의 설치)

-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재원은 크게 정부의 출연금과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으로 구분
- 국민연금기금은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기금으로 구분됨
- 국가재정법 제 63조(기금자산운용원칙)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상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원칙은 국가재정법 제 63조의 내용을 원용한 것임
 - 정부출연으로 구성된 기금은 각종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 당연하며, 부담금으로 구성된 기금의 경우에도 각종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출연 또는 부담금으로 구성된 공공성기금 보다는 공공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도는 국공채와 지방채투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복지투자 역시 공공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비시장성 지방채를 보유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익성 또는 안정성 차원이 아닌 공공성으로 해석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복지투자용 지방채매입을 통한 복지사업의 재원조달자 역할수행
 -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참여하거나 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에서 벗어나 채권매입을 통한 간접적인 자금 조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연금법 제 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와 관련 법 조항, 시행령, 기금운용원칙 개정
 - (현행) ② ...(생략)...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개정) ② ...(생략)...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하고, 제 5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채를 매입한다.

-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5. 제46조에 따른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 복지사업의 주체는 지방정부로 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발행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은 국채매입을 통한 국가신인도에 대한 기여와 지방채매입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기여로 해석

4) 기대효과

기금의 복지사업투자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를 미연에 방지

-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공공성원칙에서 해석하여 복지사업의 정당성을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원칙을 만드는 등과 같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개별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데 따른 업무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이 복지사업의 주체가 아닌 복지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자 역할을 수행하여 신규복지사업의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됨

5) 제한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기존 부채수준도 높아 지방채의 신규발행이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수준인 신규여유자금의 1%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근거를 완전히 국민연금법에서 전부 삭제하지 않는 한 복지사업에 대한 또 다른 대안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음

부 록

부록 1 : 기금운용 관련 국민연금법령

부록 2 : 기금운용체계

부록 3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조직 및 구성

부록 4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회의일지

부록1: 기금운용 관련 국민연금법령

1. 국민연금법

□ 목적(제1조)

-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제4조)

-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10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을 설치
- 재원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102조)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제103조, 제104조)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 ※ 기금운용지침·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설치
 - ※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 성과의 측정,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기금 운용계획 등(제10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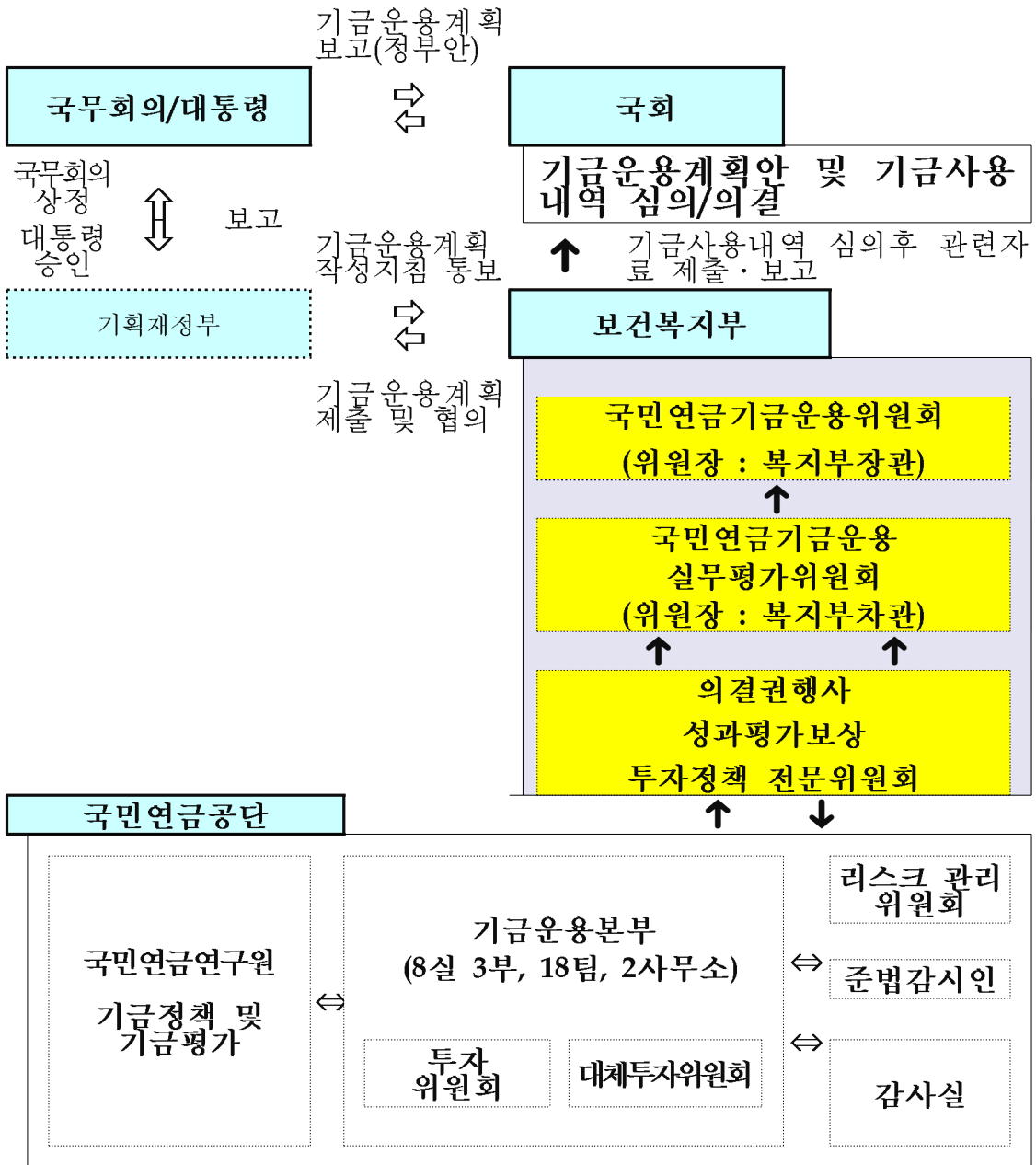
부록2: 기금운용체계

1. 기금운용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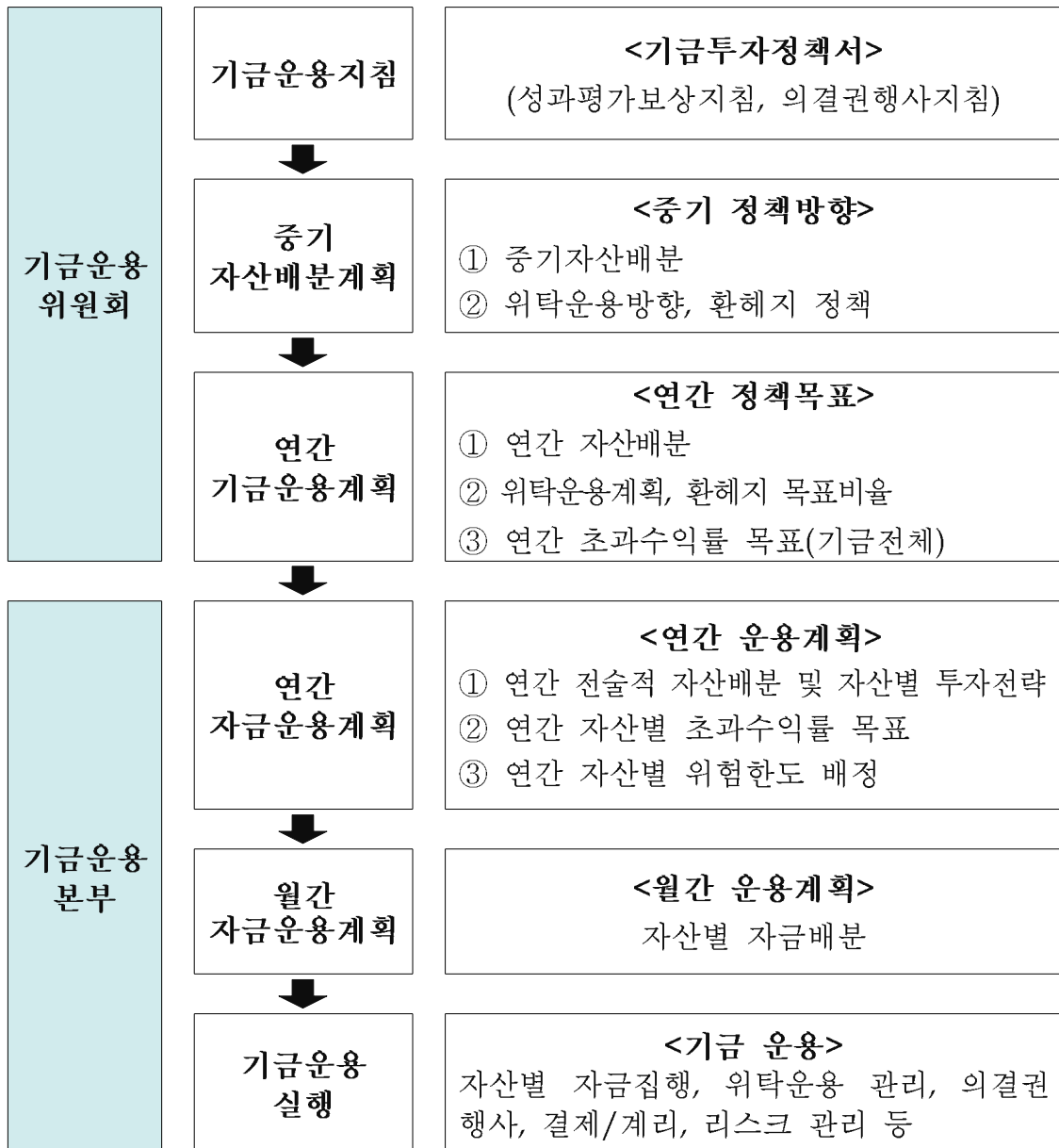
□ 기금운용체계 개요

- **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금기금을 관리·운용**
 -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지침, 중기자산배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장(복지부장관)을 포함 당연직 위원 6인*, 각 계 대표인 위촉직 14인**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 당연직(6): 위원장, 정부4인, 이사장
 - ** 위촉직(14): 사용자3인, 근로자3인, 지역가입자6인, 전문가2인
-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설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안건을 실무차원에서 사전 검토**
 - 위원장(복지부차관)을 포함 당연직 위원 6인*, 각 계 대표인 위촉직 14인**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 당연직(6): 위원장, 정부5인
 - ** 위촉직(14): 사용자3인, 근로자3인, 지역가입자6인, 전문가2인
- **(국민연금공단)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의 관리·운용업무 담당**
 - 기금운용 전담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

○ 기금운용 관리체계도



□ 국민연금기금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



□ 정책수립 의사결정기구 기능과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구 분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기능	▪ 기금운용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기금운용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평가
구 성	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5)	▪ 기재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차관 및 공단 이사장
	위촉직 (14)	▪ 사용자(3), 근로자(3), 지역가입자 대표(6) 및 관계 전문가(2)
	간사	▪ 연금정책국장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차만 연임 가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중임 가능
법률근거	▪ 국민연금법 제103조	▪ 국민연금법 제104조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 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구성연도	2006	2007	2011
위원수	9인 (위원장 : 위원중 호선)	12인 (위원장 : 위원중 호선)	33인 (위원장 : 실무위 위원중 1인)
위원구성	민간 전문가	민간 전문가	민간 전문가
임기	2년	2년	2년
주요기능	주식의결권 행사관련 주요사항 결정	기금운용성과 평가 및 보상관련 주요사안 검토	투자정책 자문
비고	-	-	* 소위원회 · 기금운용 및 금융(8명) · 대체투자(8명), 해외투자(8명) · 자원개발(8명)

○ 기금운용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

구 분	의결안	주요 의결 내용	중요성
지침	기금운용 지침	▪ 기금의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 윤리기준 및 성과평가기준	▪ 기금운용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확보
	의결권행사 지침	▪ 의결권 행사 기준·방법·절차 등	▪ 투자주식의 장기적 가치 증대
	성과평가보상 지침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의 기준	▪ 우수인력 확보·유지 장기수익률 제고
자산 운용 정책	중기자산배분	▪ (중기) 자산구성비 목표	▪ 기금운용성과의 90% 이상을 결정
	연간 기금운용계획	▪ (차년도말) 자산구성비 목표	▪ 중기자산배분안의 이행계획, 성과 평가의 기준 비중
	환헤지정책	▪ (중기·차년도) 환헤지 목표비율	▪ 환 관련 기금 수익률에 영향
	위탁운용 정책	▪ 자산군별 위탁운용 목표비율	▪ 기금 수익률에 영향 - 운용전문성 효율성, 투자분권화 제고
	벤치마크	▪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 자산군별 운용목표 제시
	목표초과수익률	▪ (차년도) 기금전체 초과수익 목표	
성과 평가	기금운용 성과평가	▪ (전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 우수인력 확보·유지 장기수익률 제고

<참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 분	주요 내용	
기능	▪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연금보험료, 연기금 관련 심의	
구성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당연직)
	위촉직(19)	▪ 사용자(4), 근로자(4), 지역가입자 대표(6) 및 공익대표(5)
	간사	▪ 국민연금정책과장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법률근거	▪ 국민연금법 제5조	

부록 3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조직 및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위촉직
정부위원 (3)	이 형 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당연직
	김 재 환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과장	"
	김 진 홍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
민간위원 (11)	권 순 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위촉직
	김 병 덕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남 재 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
	신 성 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신 진 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안 동 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원 승 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원 종 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
	이 재 현	승실대 금융학과 교수	"
	이 준 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조 성 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간사	박 태 영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	

부록 4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회의일지

<부록표 4-1>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회의내용 및 주요결과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제1차 (12.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경과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 ○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간 연계 중요 - 재정추계를 위한 기금수익률, 자산배분을 위한 목표수익률,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수익률의 일치 필요성 제시 - 기금운용수익률 추정 시 세계 경제 변수 등 정교한 가정 필요 제시
제2차 (12.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체계 및 주요정책 ○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추계 시 기금운용수익률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추계 시 기금운용수익률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목표수익률 추정 시 과거 자산배분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 - 기금의 성장·성숙·쇠퇴기의 3국면으로 나누어 기금수익률 변화 추정하는 방안 제시
제3차 (12.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기금운용 평가 ○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 등 추진경과(04~12년) - 연구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기획단 등 추진경과(04~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성격, 기금운용 목표, 잠재부채 및 세대간 부담 등에 대한 이해 필요 ○ 연구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과제의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분야별로 소주제 선정·논의 - 제도개선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와 연계 강화 필요 * 위원 개인별로 정책과제 보고서 작성은 지양
제4차 (12.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분야 및 세부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분야 및 세부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가지 분야와 각 분야별 위원 배정, 분야별 참여위원들이 협의하여 세부주제 마련하고, 5차 회의(13.1.9)에서 논의 * 4 분야 : 현황과 이슈, 장기재정안정, 장기투자가, 공적연금
제5차 (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제도의 입장에서 바라 본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적립금 목표수익률 설정 ○ 주요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제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은 제도 안정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며, 수익성 위주 운용은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부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자 필요성 제기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분야별 세부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적립금 목표수익률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안정화 지표로 임금배율 제안 * 임금배율: 총임금이 상승하면 임금대비 적립 배율 유지를 위해서 적립금 규모가 상승해야 함(운용수익률이 높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을 수록, 필요보험료율은 낮아짐) ○ 연구분야별 세부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분야별 참여위원들이 협의하여 세부주제 확정
<p>제6차 (13.1.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 국민연금기금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운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운용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규모 증가가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방향 설정 - 단계별 자산배분 전략 및 위험관리 강화 방안 모색 ○ 토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를 위해 국민연금 자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 -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해외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정추계시 요구수익률과 기금운용지침의 목표수익률 간의 괴리와 관련한 추후 논의 필요
<p>제7차 (13.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및 직접 운용 평가와 시사점 - 중기자산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및 직접운용 평가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은 모멘텀 요인으로 설명 - 위탁운용에서 운용수수료 절감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에 기여할 수 있음 ○ 중기자산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자산배분 모델인 평균분산최적화모델(MVO)을 자산군의 비정규성을 반영하는 Resampled Efficiency 모델로 개선할 것을 제안 - 신규 정책조건으로 국내주식(20~22%) 투자 한도 및 대체투자(14%) 비중 제안 - 기존 자산군 종류에 따른 분류에서 수익과 위험 요인에 따른 자산군 배분 방식 제안 -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위탁비중은 허용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p>범위 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p>
<p>제8차 (13.2.20)</p>	<p>○ 보고안건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 국민연금의 의결권 외 주주권 행사 방안</p>	<p>○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논의 사항 -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화 되더라도 현재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어려움 -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공시화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기금운용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방식이 중요함 - 지배구조의 핵심가치인 책임성,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절충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의결권 외 주주권 행사 방안 관련 논의사항 -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는 한 수동적인 의사표현인 의결권 행사는 찬성하나 주주권 행사는 신중 - 정부가 법률안을 심사할 때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양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포괄적 주주권 행사에는 공감.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전략 중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시장 영향력을 감안한 주주권 행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p>
<p>제9차 (13.3.6)</p>	<p>○ 「기금운용 문제점과 이슈」 관련 발제 및 논의 -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이슈 -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이슈 - 국민연금 거대화 관련 이슈 및 대안 모색</p>	<p>○ 기금분할과 관련하여 실제 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과 지배구조상에서도 충분한 논의 필요 ○ 국부의 유출이 아닌 국민연금기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투자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적립방식->부과방식)의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 반면 추후 기금고갈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재 정부의 역할을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p>
<p>제10차 (13.3.20)</p>	<p>○ 「공적연기금」 관련 발제 및 논의 - 국민연금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과 복지투자 -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 전략</p>	<p>○ 공공성과 복지투자 관련 논의 사항 - 복지투자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개연성은 인정되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p>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배분에 있어 정책적으로 사회책임투자나 복지 부분을 따라 구분하는 것도 방법임 ○ 의결권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 사항 -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적인 원칙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핵심 - 의결권행사 지침과 관련하여 운용사례집을 만들어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할 필요 -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경영자와 이사회간의 갈등과 관련해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책임투자 관련 논의 사항 - 책임투자도 시장을 통해 하는 것 보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임 - ESG 원칙에 동의. 수익률과 재정안정성에 기여 여부 고려해야 함
제11차 (1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투자」 관련 발제 및 논의 - 장기투자 관점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중장기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 국민연금 장기투자 관점에서의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투자를 할 경우 수익률 하락 사이클을 감당하면서 장기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민연금의 기준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함. 제도 변경이 없다는 가정 하에 유동화를 생각하는 자산배분 필요.
제12차 (13.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재정 안정」 관련 발제 및 논의 - 국민연금의 ALM 분석 - 제3차 관련자료 연도별 재정추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M분석이 기금운용에 주는 시사점 논의 - 장기적 horizon에 맞춰 ALM 분석 필요 ○ 다음 재정계산에서 재정방식, 재정지표와 이를 토대로 재정목표 설정방식 등이 논의 되어야 함 ○ 기금의 국면별 자산운용 방식 중요 - 기금이 소진되는 과정에서 시장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방안 모색
제13차 (13.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안건 - 소득 분배와 최적의 복지 연금제도 ○ 심의안건 - 국민연금 거대화 관련 이슈 및 대안 모색 - 기금운용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분배와 최적의 복지 연금제도 관련 논의 사항 -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GDP성장률(인구증가율+GDP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낮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의견 - 교육 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거나 보육 양육비에 대한 보조를 인상하는 경우, 젊은 세대 내의 소득 분배의 사전적 보험기능은 증가시키면서 부과방식 세율을 낮추는 것이 최적의 복지시스템 이라는 의견
제14차 (13.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안건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보고서 초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일정	회의안건	주요결과
제15차 (13.6.17)	○ 심의안건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보고서(2차 draft)	기금운용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편집 논의
제16차 (13.8.7)	○ 심의안건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보고서	기금운용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심의